연구총서 14-AA-04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

Policy Measures for Food Safety in the Aspect of Criminal Policy

박미숙 | 조병인 | 임유석 | 송봉규 | 김태민

KIC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발 간 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싸움은 근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식품관련 사건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고, 식품안전 사고 등에 대하여 국민여론이 비등할 때마다 엄벌에 처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되지만, 마치 숨바꼭질처럼 숨었다 때되면 다시 등장하는게 식품사고이다보니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도 여전합니다. 전세계가 글로벌화하는 가운데 식품안전 문제도 국내의 울타리를 벗어나 전지구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 출범한 새 정부가 식품안전 확보를 통한 선진강국 실현을 국정과제와 그 실천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들어와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안전문제가 국민들의 생활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매일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안전과 부정불량식품 근절문제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국정과제수행 그리고 그 실천과제로서의 전략과 전술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보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식품안전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원의 정책과제 수행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맞게 정책수행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편으로는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 인식과 평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등을 통해 위해식품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행에 보다 도움이 되는 귀중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박상옥

목 차

국문요약 ····· 15

제1장 서론(박미숙) ····· 39
제1절 문제의 제기 ····· 41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 45

제2장 위해식품·불량식품 대처현황과 문제점(박미숙·임유석·김태민) ·· 47
제1절 위해식품 규제 관련법규 검토 ····· 49
1. 식품안전 관련법규 ····· 49
가. 관련법규체계와 현황 ····· 49
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그 의의 ····· 50
2. 식품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의 토대로서의 위해식품 ····· 51
가. 위해표지 ····· 52
나. 위해평가 ····· 54
3. 국정과제 대상으로서의 불량식품 ····· 58
가. 법적 개념으로서의 불량식품 ····· 58
나. 불량식품 규제법률의 필요성 ····· 59
4. 식품위해행위에 대한 처벌의 성격과 문제점 ····· 61
가. 식품위해사범의 법적 성격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 62
나. 위험범의 과실범 규정 흠결 ····· 64
제2절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5
1.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의 운영 현황 ····· 65
2.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문제점 ····· 67
3.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개선방안 ····· 67
제3절 위해식품·불량식품 수사 및 처리현황 ····· 69
1. 불량식품 주요 수사사례 ····· 69
2. 식품사범 처리실태와 문제점 ····· 73
가. 식품사범 처리의 실태 ····· 73
나. 공식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3

제4절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조사 실태 및 문제점 ····· 84
1. 양형조사의 목적 및 범위, 방법 ····· 84
가. 양형조사의 목적 ····· 84
나. 양형조사의 범위 ····· 84
다. 양형조사의 방법 ····· 85
2. 식품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 ····· 86
가. 식품범죄의 개념과 특징 ····· 86
나. 식품범죄의 통계적 현황 ····· 87
3. 대법원 양형기준과 식품 형사사건 판결문의 통계 자료의 관계 ····· 89
가. 대법원 양형기준의 내용 ····· 89
나. 식품사범 판례의 특징 ····· 90
다. 판결문 자료 분석결과 ····· 91
라. 양형기준 적용 판결문 분석 ····· 100
4. 식품사범 처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01
가. 문제점 ····· 101
나. 개선방안 ····· 102
5. 결론 ····· 104

제3장 각국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대처방안(박미숙 · 조병인) ····· 107
제1절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 ····· 109
1. 미국의 식품안전감시 동향 ····· 109
2. 식품안전을 위한 법규 및 조직현황 ····· 111
가. 식품안전 관련 법규와 지침 ····· 111
나. 식품시설 검사 및 조사업무 관련 지침 ····· 119
다. 식품관련 감시기관의 조직과 주요 업무 ····· 120
라. 연방행정청의 식품긴급대처 네트워크(FERN)의 역할 ····· 122
3. 식품사범에 대한 연방 법집행기관의 역할과 주요 활동 ····· 124
가. 식품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증가 ····· 124
나. 식약청(FDA) 범죄수사단(OCI)의 역할 및 수사 활동 ····· 124
4. 검토 및 시사점 ····· 134
제2절 독일의 식품위해사범 대처현황 ····· 135
1. 독일의 식품법 제정의 의미 ····· 135

2. 독일 식품법의 규정 특성 ····· 136
3. 독일 식품법상 식품의 개념 ····· 138
4. 위해식품 (제5조) 유형과 관리 ····· 138
5. 벌칙 ····· 139
제3절 일본의 식품안전사범 통제와 관리방안 ····· 140
1. 식품안전관련 법제도 ····· 140
2. 식품안전 관련 조직 ····· 141
3. 식품안전사범 검거 및 단속현황 ····· 142
4. 식품사범 처리기관의 역할 ····· 144
5. 식품안전사범의 처벌과 형량 ····· 149
6.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식품안전 ····· 151

제4장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전문가 인식 조사
(송봉규) ····· 157
제1절 일반국민 인식조사 ····· 159
1. 조사 설계 ····· 159
가. 조사 설계 ····· 159
나. 조사 항목 ····· 160
다. 표본 설계 ····· 161
라. 응답자 특성 ····· 162
2. 4대 사회악에서 불량식품의 위치 ····· 164
가. 4대 사회악 인지 ····· 164
나.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 ····· 164
다. 4대 사회악의 중요도 ····· 165
3. 식품안전 정보의 인지경로와 불안 요소 ····· 166
가.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 166
나.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 요소 ····· 167
다. 식품구입 및 먹을 경우 불안요소 ····· 168
4.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 170
가. 식품 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 170
나.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171
5. 식품안전정책의 만족도 ····· 173

6.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 ····· 174
가.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평가 ····· 174
나. 위해식품사범 형사정책 만족도 ····· 175
7. 위해식품사범 처벌의 효과 ····· 177
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형사 처분 이행의 적절성 ····· 177
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효과성 ····· 178
8.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방안 ····· 180
가. 위해식품사범 근절 노력의 문제점 ····· 180
나.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 182
9. 위해식품 경험과 신고 ····· 185
가. 위해식품 경험과 신고 ····· 185
나. 위해식품사범 경험과 신고 ····· 187
다.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과 신고 ····· 189
제2절 전문가 조사 ····· 193
1. 조사 설계 ····· 193
2. 1차 조사결과 ····· 194
가.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 195
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평가 ····· 206
3. 2차 조사결과 ····· 217
가.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 217
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평가 ····· 226
제3절 조사결과의 요약 ····· 234
1. 일반국민 인식 ····· 234
2. 전문가 평가 ····· 237

제5장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박미숙) ····· 243
제1절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초 ····· 245
제2절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토대로서 위해성평가시스템 확립 ····· 246
제3절 식품안전관련 법제도 및 조직 정비 ····· 247
1. 법제도 및 조직 정비방향 ····· 247
2. 규제대상의 명확화 및 규제의 효율화 방안 ····· 250
가. 규제대상으로서 불량식품, 위해식품과 허위과장광고 ····· 250

나. 고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엄중처벌 ····· 251
다. 단속공무원 등의 신고의무 인정 ····· 253
라. 식품관련 담당공무원의 공무원 의제 ····· 253
3. 무분별한 단속 지양 ····· 254
4. 식품사범 대응 조직기관과의 협조 등 효율성 강화 ····· 255
5. 적정한 처벌 및 양형 ····· 258
가. 양형기준의 준수 ····· 258
나. 식품위생사범 재범방지 대책으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활용 ·· 259
다. 부당이득환수제도 및 최저형량제의 재고 ····· 260
6. 기타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방안 활용 ····· 261
가.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 ····· 261
나. 식품이력추적제도 구체화 ····· 263
7. 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공개 ····· 263

제6장 결론(박미숙) ····· 265

참고문헌 ····· 275

Abstract ····· 281

부록 ····· 309
부록 1. 일반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 ····· 309
부록 2. 전문가조사 설문지 ····· 388

표 차례

〈표 2-1〉 식품위생법상 행위유형별 처벌 유형 및 법정형 ····· 63
〈표 2-2〉 불량식품사범 현황(2013년 9월말 기준) ····· 74
〈표 2-3〉 경찰의 불량식품 수사전담반 현황 ····· 75
〈표 2-4〉 식품제조·가공업체 감시 및 위반건수 ····· 76
〈표 2-5〉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 건수 ····· 77
〈표 2-6〉 형법 vs 특별형법 vs 식품사범 발생 및 검거건수 비교 ····· 78
〈표 2-7〉 식품사범 발생·검거현황(2002년~2011년) ····· 78
〈표 2-8〉 식품사범(식품위생법) 검찰처리 인원 및 구성비 ····· 79
〈표 2-9〉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 80
〈표 2-10〉 식품사범 제1심 처리결과 ····· 81
〈표 2-11〉 식품사범 항소심 처리결과 ····· 82
〈표 2-12〉 식품사범 상고심 처리결과 ····· 83
〈표 2-13〉 식품사범 발생·검거현황 (1997년~2012년) ····· 87
〈표 2-14〉 여성범죄자 발생현황 (2006년~2012년) ····· 88
〈표 2-15〉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검찰처리 인원 및 구성비
(2010년~2012년) ····· 88
〈표 2-16〉 허위표시 양형기준 ····· 89
〈표 2-17〉 유해식품 양형기준 ····· 90
〈표 2-18〉 전국 지방법원별 사건통계 ····· 91
〈표 2-19〉 사물관할 ····· 92
〈표 2-20〉 평균 처벌 수준 ····· 92
〈표 2-21〉 양형기준 대상 재판 통계 ····· 93
〈표 2-22〉 평균 판매금액 및 범행기간 ····· 93
〈표 2-23〉 판매금액에 따른 평균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 93
〈표 2-24〉 범행기간에 따른 평균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기간 ····· 94
〈표 2-25〉 초범 횟수 ····· 94
〈표 2-26〉 평균 사회봉사 시간 ····· 94
〈표 2-27〉 무죄 및 선고유예 ····· 95
〈표 2-28〉 깊은 반성을 한 횟수 ····· 95
〈표 2-29〉 반성여부에 따른 평균 벌금형 및 평균 집행유예 ····· 96
〈표 2-30〉 위반조항 적용횟수 ····· 96

〈표 2-31〉 위반조항 적용횟수(중복포함) ····· 98
〈표 2-32〉 위반조항별 평균 판매금액과 범행기간 ····· 100
〈표 2-33〉 양형기준 적용판결문 내역 ····· 101
〈표 3-1〉 최근 식품안전 관련 주요사건 ····· 143
〈표 4-1〉 일반국민 인식조사 설계 ····· 159
〈표 4-2〉 조사 내용 ····· 161
〈표 4-3〉 일반국민 인식조사 표본 설계 ····· 162
〈표 4-4〉 응답자 특성 ····· 163
〈표 4-5〉 4대 사회악 인지여부 ····· 164
〈표 4-6〉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 ····· 165
〈표 4-7〉 4대 사회악의 중요도 ····· 166
〈표 4-8〉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 167
〈표 4-9〉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요소 ····· 168
〈표 4-10〉 식품에 대한 불안요소 ····· 169
〈표 4-11〉 식품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 171
〈표 4-12〉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172
〈표 4-13〉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인지여부 ····· 173
〈표 4-14〉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만족도 ····· 174
〈표 4-15〉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 ····· 175
〈표 4-16〉 정부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만족도 ····· 176
〈표 4-17〉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형사 처분 이행의 적절성 ····· 177
〈표 4-18〉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선호도 ····· 178
〈표 4-19〉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행정처분 종류 ····· 179
〈표 4-20〉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형사처벌 종류 ····· 180
〈표 4-21〉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문제점(1순위) ····· 181
〈표 4-22〉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문제점(1+2+3순위) ···· 182
〈표 4-23〉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1순위) ·· 183
〈표 4-24〉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
(1+2+3순위) ····· 184
〈표 4-25〉 위해식품 경험여부 ····· 185
〈표 4-26〉 위해식품 경험시 신고처 종류 ····· 186
〈표 4-27〉 위해식품사범 경험여부 ····· 187
〈표 4-28〉 위해식품사범 경험시 신고처 종류 ····· 188

〈표 4-29〉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여부 ····· 189
〈표 4-30〉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시 신고처 종류 ····· 190
〈표 4-31〉 식품에 의한 경험여부 ····· 191
〈표 4-32〉 식품에 의한 경험별 신고처 종류 ····· 192
〈표 4-33〉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현황 ····· 193
〈표 4-34〉 전문가조사 방법 ····· 193
〈표 4-35〉 전문가조사 응답률 ····· 194
〈표 4-36〉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 196
〈표 4-37〉 불량식품의 심각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 197
〈표 4-38〉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관한 전문가 의견 ····· 199
〈표 4-39〉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 201
〈표 4-40〉 식품안전정책의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 203
〈표 4-41〉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205
〈표 4-42〉 위해식품사범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 207
〈표 4-4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 209
〈표 4-44〉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관한 전문가 의견 ····· 211
〈표 4-45〉 위해식품사범 형사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215
〈표 4-46〉 우리나라 먹을거리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 218
〈표 4-47〉 불량식품의 심각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 219
〈표 4-48〉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 221
〈표 4-49〉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에 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 222
〈표 4-50〉 식품안전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 223
〈표 4-51〉 식품안전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 225
〈표 4-52〉 위해식품사범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 227
〈표 4-5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 229
〈표 4-54〉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 230
〈표 4-55〉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 개선방안 ····· 232
〈표 5-1〉 부정·불량식품(1399) 등 신고처리 건수 ····· 262
〈표 5-2〉 부정·불량식품(1399) 등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 ····· 262

그림 차례

[그림 2-1] 식품위해사범 대응 조직운영도 ····· 66
[그림 3-1] FERN National Programme Structure ····· 123
[그림 3-2] 독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 137
[그림 3-3] 식품위생처리 행정절차 ····· 146
[그림 4-1] 4대 사회악 인지여부에서 '알고 있다' 응답비율 ····· 164
[그림 4-2]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에서 '5점 평균' 분포 ····· 165
[그림 4-3] 4대 사회악의 중요도 평균분 ····· 166
[그림 4-4]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분포 ····· 167
[그림 4-5]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요소 응답분포 ····· 168
[그림 4-6] 식품에 대한 불안요소 응답분포 ····· 170
[그림 4-7] 식품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분포(불안, 보통, 안전) ····· 171
[그림 4-8]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응답분포(위험, 보통, 안전) ····· 172
[그림 4-9]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인지분포 ····· 173
[그림 4-10]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만족도 응답분포(불만족, 보통, 만족) ····· 174
[그림 4-11]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 응답분포
(불만족, 보통, 만족) ····· 175
[그림 4-12] 정부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만족도 응답분포
(불만족, 보통, 만족) ····· 176
[그림 4-13]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및 형사정책 만족도 비교 ····· 177
[그림 4-14]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형사 처분 이행의 적절성
응답분포 ····· 178
[그림 4-15]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효과도 응답분포 ····· 178
[그림 4-16]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행정처분 종류
응답분포 ····· 179
[그림 4-17]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형사처벌 종류
응답분포 ····· 180
[그림 4-18]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문제점(1순위)
응답분포 ····· 181
[그림 4-19]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문제점(1+2+3순위)
응답분포 ····· 182

[그림 4-20]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1순위) 응답분포 ····· 183
[그림 4-21]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 (1+2+3순위) 응답분포 ····· 184
[그림 4-22] 위해식품 경험여부 응답분포 ····· 185
[그림 4-23] 위해식품 경험시 신고처 종류 응답분포 ····· 187
[그림 4-24] 위해식품사범 경험여부 응답분포 ····· 187
[그림 4-25] 위해식품사범 경험시 신고처 종류 응답분포 ····· 188
[그림 4-26]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여부 응답분포 ····· 189
[그림 4-27]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시 신고처 종류 응답분포 ···· 190
[그림 4-28] 식품에 의한 경험여부 응답분포 ····· 191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식품안전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의 수행 2년차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 시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새 정부초기 도입된 새로운 제도, 기구 등의 식품안전전략 수행성과를 점검해보는 것은 향후 식품안전확보를 위해 시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과연 우리는 식품안전을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무엇을 하였는지, 식품불안감이 감소되었는지, 실제 위해식품 내지 불량식품이 감소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식품안전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부처로서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부처기능 총괄과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조직 및 그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식품안전관련 법률상 처벌대상이 되는 위해식품의 정의 및 그 범위는 여전히 광범위하고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나아가 국정과제로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 되는 불량식품의 범위는 더욱 더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하며, 무엇보다 현행 식품안전관련 법규의 기본 틀은 식품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짜고 있어서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규제의 기본 틀이 과연 적정한가? 식품위생법의 정당화근거가 식품소비자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에 있다고 하여 현행 제도는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식품위생법은 소위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각종 식품관련 법규를 통해 실현하고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과연 현행 제도와 정책이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사실 식품안전의 문제는 안전만큼이나 식품산업 진흥 및 육성이라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이다. 즉 식품산업육성과 일반소비자 보호를 양 축으로 하는 체계적 고리속에 있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서나 위해식품의 경우 생명·신체·건강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고, 그 피해의 발생도 신속하기 때문에 그 침해행정의 단속과 그 후속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산업의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점, 식품산업의 특성, 대형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으며, 법정책상으로는 제조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 등으로 인한 영세 영업자의 성장성 저하와 소비자 선택권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실태와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목적적인 형사정책의 제언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제18대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공과의 점검과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형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이다.

먼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관련법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형사정책방안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식품문제는 더 이상 국내문제에 한정하지 않으며,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한 문제의식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도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각국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하였다(제2장). 특히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양형이 관대하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 장에서는 양형실태를 파악해보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양형상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보기로 하였다. 한편 식품안전강국실현은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이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조사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제4장).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및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제5장).

이를 위하여 국정과제 선정 이후 식품안전 체계 및 법제도 현황 파악을 위해 문헌연구를 시작으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정책과 인식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현행 식품안전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식품안전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몇 가지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제6장).

3. 연구의 이론적 논의

가. 불량식품의 법적 개념 및 규제의 필요성

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부정식품 및 첨가물 등의 제조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한다. 그런데 동법 또한 부정식품의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해 등의 기준에 대하여 단순히 '유해'해서는 안 되며, '현저히 유해'하다는 것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부정식품의 '현저히 유해의 기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식품이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관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동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은 위해식품이 아니라 부정식품이며, 이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그 형이 가중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으로 위해식품이 아니라, 단순히 인·허가 관련 행정단속 위반사항까지 형사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량도 가볍지 않다는 점은 문제이다. 단순한 위해식품 정도가 아니라 보건범죄단속법상의 부정식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또 중대범죄유형에 대하여는 이 가중처벌규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다만 문제는 이 경우에도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에 버금가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형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현행법상 불량식품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과 내용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불량식품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정부

의 입장에 의하면 불량식품은 일반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식품으로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식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비위생적인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의로서는 예컨대 부패·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 광의로서는 허위과대광고, 가짜식품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즉 원산지를 속인다든가 과대광고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속여 파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불량식품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불량식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량식품 정의에서 그 유형으로서 '사회적인 통념상 위생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식품을 고의적으로 생산·제조·유통·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량식품의 정의를 제시함에 있어서 '사회통념, 위생적, 부적절한' 등의 용어는 소위 근절대상으로 포섭하기에는 매우 불명확하고도 애매한 개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식품위해사범과 죄형법정주의

식품위생법상 식품위해사범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식품관련 인·허가 제도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로써 바로 '위해하다'는 판단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제도를 강화해야 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은 바로 위해하다는 결론으로 이르는 것은 위해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위해판단의 대상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며, 결국 이는 처벌의 확대를 가져오며,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

또한 식품위해사범은 위험범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으나,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분에 따른 처벌의 차등화가 적정한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결국 식품사범의 특성상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식품법상으로 고의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식품사범의 특성에 비추어보아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실범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다. 식품위해사범 대응 조직의 현황

1) 식품위해사범관리의 문제점

최근 식품사범관련 기관의 공식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식품사범에 대한 용어의 정비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제 정비도 필요하다.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식품사범 관리 기관별 문제점을 살펴보면, 경찰의 경우 식품사범 전반에 대해 구속수사가 적게 나타나 범죄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세업체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식품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검찰단계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나 구약식 사건으로 처리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식품사범의 경우 재범률도 높게 나타난 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이 접근할 경우에는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의해 영장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사전정보와 범죄혐의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재원의 뒷받침 없이 실시되는 단속과 수사가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은 각 해당영역에서 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한 전문수사관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소속 행정청 조직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수사지원활동비용 등)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를 실시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중앙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사법경찰들은 검사의 일괄적인 지휘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와 조직의 자체업무 수행만으로도 모든 재원을 투입시켜서 활동하고 있는바, 전문적인 단속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의 합동단속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유이기도 하다.

2) 식품위해사범 관리 대응

식품위해사범 척결이라는 국정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식품안전중점검찰청 지정을 시작으로 경찰과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지휘 및 감독문제, 유관기관 간 업무의 중복성 및 복잡성, 그리고 식품안전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인식과 억제를 위한 위하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직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식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처벌의 신속성과 엄격성 그리고 확실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유관기관 행정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식품위해사범 관련 유관기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은 특별형법범상 식품범죄를 중심으로 단속과 행정처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행정청이 접근하는 경우 범죄현장 단속에서 시작하여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현장에서 수집가능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물 채택에 있어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셋째, 식품위해사범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더해진 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는 실제 공판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능력 확보를 중심으로 검사의 공소유지를 위한 일련의 형사소송절차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지식까지 구비된다면 단순한 고발이나 송치업무가 아닌 전문수사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일반적인 범죄수사는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고소 및 고발을 시작으로 일선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수사기관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범죄를 임의적으로 수사하고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식품범죄에 대한 증거채증 활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에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형사절차보다는 행정절차에 의한 증거채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법률전문가인 검찰과 수사전문가인 경찰과는 달리 식품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이러한 별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식품사범을 집중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기에 궁극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조직이 운영될 것이다.

라. 식품위해사범 관련 판결문 양형 조사결과

최근 시리얼 대장균군 검출 사건으로 촉발된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결방안은 또 다시 처벌 조항의 강화였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식품 사건에 대한 엄벌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고 이에 대하여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처벌 조항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단의 괴리는 점점 더 깊어져가고 있다. 전체 입건 수 대비 '구공판' 기소율이 불과 1%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실형선고 건수 역시 한해 평균 5.3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판결이 벌금형이며, 평균 벌금형이 불과 599만원이라는 것은 최고 벌금형이 1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처벌 조항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조사된 판결문의 위반조항을 보면 단순 영업자 허가 등에 대한 사항과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등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이외에 관행적으로 형사고발조치를 병행하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인 검찰에서도 간단한 약식기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등록 및 신고 내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것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만으로 처벌하거나 기존 처벌조항을 보다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실제 처벌을 구하는 수사기관인 검찰조차 재판조차 불필요한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하여 약식기소를 하게 될 정도인 것을 법령 개정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처벌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위해식품에 대한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93조와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인 제10조 및 제13조에 대한 선고형에 대한 기준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식품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자 등록 및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다보니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는 사건에 대해 예단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어려우며,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각급법원 재판부 역시 상황과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적절한 양형이 선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당장 식품위생법의 처벌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

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보다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영업자 등록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것을 포함시키는 작업도 고려해 볼만 하다.

또한 현행 양형기준조차 각급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적용여부를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강력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조사되었듯이 전체 300건 가운데 93건이 현재 양형기준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판결문을 통해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한 것은 8건에 불과했다. 물론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당연히 양형기준이나 선행 판결 등을 통해서 고심을 할 것이지만 이미 재판부의 편의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서 어렵게 제정해 놓은 것을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을 아닐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각급 법원 담당 재판부에 보다 강력한 권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결과는 기초자료를 확보한 것에 큰 의미를 두면서, 향후 여건이 된다면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급 법원, 대검찰청 등과 연계하여 식품사범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양형기준의 실제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를 토대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현행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처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가능하며, 이런 연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 각국의 식품위해사범 정책

가. 미국

미국 사회에서 인식하는 식품범죄에 대한 심각성 수준은 건강권 침해 문제를 넘어서서 식품테러로까지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식품범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법률에서 예방과 대처에 대해 규정하고, 끊임없이 개정되는 가운데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간의 충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전제조건으로 식품범죄 담당 조사관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특히,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능력을 보았을 때, 식약청(FDA) 범

죄수사단(OCI)의 조사관들은 전직 범죄수사나 비밀경호 등 특수한 영역에서 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유경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식품범죄 조사에 있어서는 확실한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물론 영미법계 국가의 형사사법제도 중에서 특히 수사시스템은 원론적으로 다른 문제이지만, 식품안전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한다는 국가행정의 합목적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통제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범죄자에 대한 처벌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의 식품위생법과 같이 위반유형과 처벌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식품안전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이나 민사금전벌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징구하고 있다.

나. 독일

독일은 국가의 위험방지의무에 대한 이론적 법리적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것이 오늘날 헌법적 가치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도 전 유럽을 휩쓴 BSE 스캔들로 인하여 식품관련법령과 조직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식품안전 관련 위기는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고, 식품안전관련법규 및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독일 식품법의 대부분이 EU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식품안전법규를 만들고 식품안전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법규의 기본법인 식품 및 사료법(Lebensmittel und Futtermittelgesetzbuch)의 목적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 사료, 화장품과 생활필수품의 유통에 있어서 기망(Täuschung)을 방지하며 경제참여자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 법은 종전 유럽의 식품관련 법률이 국내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이 유럽공동체법과의 식품 정의를 따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혼재되어 적용상 어려움을 겪던 문제점도 개선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독일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당국의 관리·감시체제는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우병을 계기로 독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위해성 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관리기관)과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 평가기관)로 분리하였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식품안전을 위한 위해평가와 위해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연방식품 및 소비자보호부에서는 식품안전법규 제·개정과 식품안전 조치수행을 담당한다. 이는 모두 위해관리로서 적어도 위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모든 조치를 수행하고, 연방식품 및 소비자보호부(BMELV)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에 특정 위해관리 활동을 위임하며,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위해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여러 주정부의 식품 및 사료 모니터링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러한 보고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새로운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된다.

다. 일본

일본은 2000년대 들어와 대규모 식품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적인 대응모델과 정책을 수립하여 오늘날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식품안전 분야)을 중심으로 소비자청과 식품안전위원회를 두어 전문가들이 각 성(省)과 청(廳)을 지도·감독하고 소비자위원회와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청은 소비자위원회와 식품안전위원회와 연대하고 있고, 식품 관련 내각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조치와 요구사항을 권고하고 있으며, 상호 필요한 정보를 연대하여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청은 식품사업자에게는 권고·명령·지도, 소비자에게는 공표·주의 환기 권고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행정기관으로서 식품위생행정을 담당하고, 농림수산성은 식품행정에 대해서 생산부터 출하 전 단계만을 책임지며 후생성과의 책임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긴밀한 연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식품안전관리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고, 각 지자체들이 연대하여 정보의 교류와 의견교환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5. 일반 국민인식 조사결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 조사의 주요 조사 설계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20대에서 60대까지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로 인구비례 할당하였다. 일반국민 인식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95%이다.

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첫째, 일반국민들은 4대 사회악 중에서 불량식품을 가장 모르고 있으며, 중요도는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의 4대 사회악 인지조사에서 학교폭력('알고 있다' 응답비율 95.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식품('알고 있다' 응답비율 9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국민들의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 5점 평균에서 가정폭력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량식품이 2.19로 높게 나타났다. 4대 사회악의 중요도 조사에서는 성폭력이 3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식품이 18.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일반국민은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76.0%), 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62.9%),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30.2%), 중앙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18.0%) 순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국민들이 식품안전에서 불안해하는 요소는 원산지, 가공식품, 화학첨가물, 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위생상태,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유해물질, 외식 및 길거리 음식 등이다. 주관식으로 직접 기입한 일반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요소는 원산지 30.0%, 가공식품 23.5%, 화학첨가물 18.5%, 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위생상태 15.8%,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15.5%, 유해물질 14.9%, 외식 및 길거리 음식 10.7% 등이다.

넷째, 일반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뉴스, 프로그램 등 방송보도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방송보도 54.9%, 막연한 불안감 17.6%,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1.3% 순으로 일반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반국민들은 식품의 생산과정, 제조(가공)과정, 유통과정, 소비(판매)과정, 수입 등 전반적인 식품과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불안'과 '안전'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생산과정 불안 44.1% 안전 11.1%, 제조(가공)과정 불안 49.6% 안전 10.2%, 유통과정 불안 47.2% 안전 9.3%, 소비(판매)과정 불안 37.9% 안전 13.3%, 수입 불안 65.5% 안전 6.9% 등 전반적인 식품과정의 안전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일반국민들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일반국민들은 현재의 식품안전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위험'과 '안전'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식품안전 위험 34.6% 안전 9.9%, 과거대비 식품안전 위험 29.5% 안전 28.9%, 미래의 식품안전 위험 25.5% 안전 40.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절반 이상의 일반국민은 식품안전정책을 모르고 있으며,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성, 효과성, 신뢰성,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이다.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5%로 나타났다. 또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불만족'과 '만족'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체계성 불만족 47.0% 만족 13.2%, 효과성 불만족 46.8% 만족 12.5%, 신뢰성 불만족 46.0% 만족 16.0%, 전반적인 만족도 불만족 36.4% 만족 22.5% 등 전반적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인식

첫째, 일반국민들은 식품위해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식품위해사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처벌도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부정'과 '긍정'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식품위해사범 현황에 대한 개선 부정 56.9% 긍정 14.3%, 식품위해사범 단속의 적절한 수행 부정 58.4%

긍정 10.8%, 식품위해사범 처벌의 적절성 부정 60.9% 긍정 15.4% 등 식품위해사범의 형사정책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다. 정부의 식품안전정책보다 형사정책이 더욱 부정적이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불만족'과 '만족'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체계성 불만족 52.9% 만족 10.4%, 효과성 불만족 55.5% 만족 9.5%, 신뢰성 불만족 54.8% 만족 13.3% 등 전반적인 정부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일반국민들은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이 행정처분보다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형사처벌 77.4%, 행정처분 22.6%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일반국민들은 영업소의 폐쇄(37.8%), 정지(21.7%), 취소(19.3%) 명령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형사처벌이 벌금과 징역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형사처벌은 벌금 2.9%, 징역 14.9%, 벌금과 징역 82.1%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국민들은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법원의 형량,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등이 위해식품사절 근절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법원의 형량,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 경찰의 수사,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등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일반국민들은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20.1%, 법원의 형량 19.6%,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13.4% 등이 가장 문제이며, 법원의 형량 26.0%,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13.8%,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10.1% 등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 식품위해사범,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등에서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이 가장 많으며, 식품위해사범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 식품위해사범,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을 경험할 경우 경찰, 검철, 법원 등 사법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식품관련기관에 가장 많이 신고하

고 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들 22.6% 위해식품, 10.6% 식품위해사범, 30.5%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이 위해식품, 식품위해사범,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을 경험한 경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하다는 응답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6. 전문가인식 조사결과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식품안전사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 검찰, 학자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조사는 1차와 2차 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 검찰, 학자 및 연구자 50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설문문항은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설문지로 진행되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식품안전 6개 분야와 식품위해사범 4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분야별로 분류한 전문가 의견에 대해 2014년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일간 1차 조사와 동일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조사하였다. 전문가 조사 응답률은 1차 조사 38%, 2차 조사 44%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응답률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가장 높았으며, 검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 조사대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크게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분하였다.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견은 1)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2) 불량식품의 심각성, 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4)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 5) 식품안전정책의 평가, 6) 식품안전정

책의 개선방안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전문가들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의견은 1) 식품위해사범의 심각성, 2) 식품위해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 3) 식품위해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4) 식품위해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개선방안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다. 1차조사결과

1)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첫째,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안전하다'와 '안전하지 않다'로 대립되었다. 둘째, 불량식품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로 대립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불량식품이 심각한 이유로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셋째,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높다'와 '낮다'로 대립되었다.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이유로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섯째,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잘되고 있다', '문제가 많다'로 대립되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조직의 일원화, 업무분위기 조직문화', '유관기관의 협업', '프로그램', '강력한 법과 효율적인 정부의 안전관리체계', '언론의 통제', '특별한 관리' 등으로 분류되었다.

2)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인식

첫째, 식품위해사범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심각하지 않다'와 '심각하다'로 대립되었다. 둘째, 식품위해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적절하다'와 '적절하지 않다'로 대립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식품위해사범의 단속과 처벌이 '예방적 효과'에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 '단속과 수사에 문제가 있다', '재

판과 형량이 문제가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문제' 등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해사범의 형사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전문성', '실효성', '법 정비' 등으로 분류되었다.

라. 2차 조사결과

1)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첫째, 전문가들은 불량식품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불량식품의 심각성 여부에 대해서 '불량식품의 심각하다(8명 동의)'이 '불량식품의 심각성이 낮은 편이다(2명 동의)'보다 전문가 동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중국산 식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 유통, 비위생적 생산시설, 식용불가 식품첨가제 사용 제품 등의 위험성,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 부재, 식품위해사범에 의한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 과학적 사실보다는 경험 등 감성적 판단에 의존, 소비자와 관리자의 시각의 차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요소와 실제 위해요소의 차이, 제도권 외의 식품, 중국산 식품의 위험성 증대 등이 불량식품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먹을거리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식품안전 수준이 높은 편(15명 동의)'이 '식품안전 수준이 낮은 편(6명 동의)'보다 전문가들의 동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식품안전 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 소규모 영세 시장,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 신소재 식품의 생산, 신종 유해물질의 검출에 따른 신규 업무, 수입식품 증가가 식품안전 수준에 위협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편이다(15명 동의)', '일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식품안심도가 낮은 편이다(16명 동의)' 등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낮은 편이다(1명 동의)'보다 전문가들의 동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 욕구 증대, 영업자와 정부관리자와 달리 소비자의 주간적인 불안 상태,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가중, 수입 농산품(가공품)의 안전성, 일부 사건 발생 등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전문가들은 '무허가 불법 식품제조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학교 앞 불량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대부분 국내영세업체이거나 중국에서 수입된 가공품을 소포장하여 납품하는 업체)', '학교 앞 문구점', '학교 앞 판매식품', 'GM 식품, 악덕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다원화', '노인전문병원, 복지원 등 복지시설', '수확 후 농산물 생산지 집하장부터 가공라인에 들어오기까지의 단계', '식품공급사슬단계를 연결하는 운송, 원료보관 등의 단계', '길거리 음식,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로 지적하였다.

다섯째,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식품안전정책 동의정도에서 '식품안전정책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12명 동의)'보다 식품안전정책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동의가 높은 의견에 의하면 인터넷 및 정보습득 매체 증가 및 다양화, 소비자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언론, 외식과 단체급식의 급증, 식품업계의 영세성,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공존으로 인한 정책 수립, 집행의 어려움 등이 식품안전정책에 문제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으로 단속 및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업,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차별화된 적정한 판별법 마련, 식품안전 및 안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방법 교육, 현재의 식품안전 수준 등에 대한 소통, 강력한 법과 효율적인 정부의 안전관리체계, 개고기와 같은 식품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살되어 유통될 수 있는 법적인 보완, 인체유해성 관련 강화,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제 대폭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평가

첫째, 전문가들은 식품위해사범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식품위해사범 심각성 여부에 대해서 '식품위해사범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11명 동의)'이 '식품위해

사범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5명 동의)'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은 '식품위해사범은 피해자가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식품위해사범 중 특히 원산지 위반 사범의 경우는 죄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해 더 심각하다', '위해식품은 단순한 품질기만이 아니라,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범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수반하고 있다', '고의적 식품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등이다.

둘째, 전문가들은 식품위해사범의 단속과 처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식품위해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 동의정도에서 '단순 위해사범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6명 동의)', '식품위해사범의 단속과 처벌은 적절한 편이다(5명 동의)', '원산지관리와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4명 동의)', '단속 및 처벌, 재판 형량 등은 현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명 동의)' 등 식품위해사범의 단속과 처벌이 적절하다는 의견의 동의보다 '대부분이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다(16명 동의)', '법정형은 약하지 않지만 실제 선고되는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16명 동의)', '법률상 법정되어 있는 형량은 높은 편이나, 실제로 처분 받는 형량은 낮아 위반자가 줄지 않고 있다(16명 동의)', '식품위해사범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문제이나, 이에 비해 처벌수준은 가볍다(12명 동의)', '양형에 대한 법원 기준은 경미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11명 동의)', '식품위해사범의 단속과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11명 동의)' 등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문가들은 식품위해사범 단속과 처벌의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요식품위해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서 '식품위해사범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와 감독이란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다', '식품사범은 적극적이고 엄격한 처벌이 해결책이 아니라, 평소 관리와 감독을 통한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대책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의견에 전문가들의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들은 형사정책 식품위해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이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의 포함, 경찰업무의 풍선효과, 비전문가인 일반공무원의 수사, 증명력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식품위해사범의 형사정책 개선방안으로 '고의적 식품안전과 관련되어서는 강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 '과대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를 넣은 식품제도 등으로 유형화하여 집중 단속 또는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 식약처, 검찰, 경찰뿐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안전성 담보가 필요하다', '식품안전범과 관련하여서는 일선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필요하다', '식품담당 특사경의 전문성 키우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이 중요하다', '원산지 단속은 식당, 정육점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리기구(칼 등)등으로 인한 신변 위협 등을 받는 경우도 있어, 신변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 강력한 처벌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고의적, 지능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단속과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위해사범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영세업체나 자영업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일관적 처벌을 확인할 수 있는 양형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정책 및 형량 등의 형사정책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식품에 대한 단속, 수사, 재판 등에 있어 식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단속부터 사법절차가 진행되도록 식약처 뿐 아니라 경찰, 검찰, 지자체 등도 이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7.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가.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토대로서 위해성평가시스템 확립

식품안전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이후 불량식품 근절이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식품안전사고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산업계의 대응방안, 관련법의 재정비 문제, 불량식품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거시적으로는 정부정책의 방향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식품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식품위해평가, 위해관리, 그리고 의사소통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은 특히 국민들이 갖는 식품에 대한 불안감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나. 식품안전관련 법제도 및 조직 정비

식품관련법제는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과 관리기관이 달라 규제가 중복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규제의 중복은 거꾸로 미규제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식품사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식품위해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부처 부속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형태로 존재하는 등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평가기관이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기관과 평가기관이 통합된 형태는 양 기관이 독립된 경우 보다 식품위기상황에서 긴급히 대응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다. 즉 규제와 평가가 통합된 형태에서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 등에 대한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추적조사 또는 검사명령을 통해 보다 긴밀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담당조직과 식품위해평가조직을 별도로 두어 식품위해평가와 위해관리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체계화방안에서 위해관리, 위해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즉 국민과 식품안전관련당국의 정책수립 및 시행 그리고 성과, 위해식품 문제 등에 대한 판단여부 등이 상호간 지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규제대상의 명확화 및 규제의 효율화 방안

첫째, 식품법의 규제대상으로서 위해식품 내지 불량식품의 경우 그 개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유해의 양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도 식품위생법 제4조 2항의 예를 보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유독·유해 물질'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다. 유독·유해 물질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유해 물질의 '양'이 존재할 때에 한해 규제를 하는 규정이다. 향후 정책과제로서의 지표 및 방향설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회자되는 용어로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시행방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기를 기대해본다. 굳이 공정하고도 엄정한 법집행 및 법적용을 위한 용어 통일을 시도해본다면 식품위생에 대한 기본법규라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으로 통일하여 정의해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이들 경미한 행위들에게까지 법위반으로 강한 처벌규정을 두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점이 정책방향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순한 비고의적 행위와 고의적이고도 악질적인 행위,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 일어나는 식품안전 기준위반 사범 등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과도한 처벌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불량식품의 정의에 의할 경우 단순실수로 인한 표시사항 오기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 등도 포함되는바 이는 과도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제조업체들로부터 무분별한 단속 등으로 인한 영세 영업자의 성장성 저하와 소비자 선택권 저하 우려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규제관련 용어정리, 과도한 개입 자제, 벌칙 정비 등을 통해 적정한 식품규제와 식품산업진흥을 아울러 도모할 필요가 있다.

라. 단속기관의 책무

첫째, 위해식품 제조·판매의 특성상 일반인의 경우보다 전문적인 단속기관 예컨대 공무원 등에 의해 업무수행중 적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식품사범의 경우 특별

사법경찰관리에 의해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사상 전문성 부족으로 실제 위반행위의 인지, 입건, 수사, 및 검찰송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그리하여 이들 단속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있다. 물론 수사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수사보다는 행정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고로 귀속되는 벌금보다는 자체수입 내지 세외수입으로 편입되는 과태료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보다는 당해기관에서 행정처분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식품분야는 그 단속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부패가 구조화되어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점을 인식하여 이미 2004년 대검찰청에서는 부정식품 단속과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유착·묵인·감독소홀 행위까지도 철저히 규제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향후 개정에서는 위해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의 임직원에 대하여까지 공무원 의제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무분별한 단속은 영세사업장의 성장성 문제, 식품관련제품 시장 및 제품 개발 축소,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 저하 등의 문제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이에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한 득실을 가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단계에서부터 유통·판매 등 전단계에 이르기까지 감시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

마. 적정한 처벌 및 양형

1) 양형기준 검토

재범율이 유난히 높은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은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면 위해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한 선고형에 대한 기준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자 등록 및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대법원 양형기준에 영업자 등록 및 준수사항 등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범죄수익몰수제도를 통한 재범방지

식품위생법상 제4조의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범죄수익몰수가 인정된다.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인정되는 특정범죄에는 식품위생법 제94조도 포함된다(범죄수익규제법 별표 제23호). 즉 식품사범의 경우 범죄수익규제법에 따라 제조 및 판매등에 이용된 기구, 원료 등의 몰수가 가능하다. 이로써 식품사범의 경우에도 범죄원인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범죄수익몰수제도를 활용하여 범죄수익의 원천을 철저히 제거하여 식품위해사범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3) 부당이득환수제도 및 최저형량제 재고

2013년 7월 도입된 부당이득환수제도와 최저형량제도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리가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 과연 처벌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행위의 특성인가 하는 점 등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약식명령으로 대부분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식품사범의 경우 대부분 영세, 소규모 영업이라는 특성, 그리고 비고의적 행위라는 특성,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행위특성, 규모, 고의여하 등을 철저히 가릴 수 있는 수사상 기법이 더욱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행위유형 차등화, 엄정한 처벌로 다루겠다는 법집행·법적용기관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바. 기타 식품위해사범 근절 방안

첫째,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처리 건수에 의하면 허위신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방지를 위해서는 허위신고방지는 포상금 액수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책보다는 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식품안전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정부는 식품이력추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유통되는 불량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의무화와 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현재의 낮은 회수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식품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안전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식품등 안전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제정할 때, 그리고 식품안전법령위반 사건 수사시 해당사건의 공표 문제 등을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에게 해당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8. 결론

본 연구는 새정부 출범 이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선정된 불량식품과 그 근절을 통해 식품안전강국을 실현하려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식품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가운데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법제도적인 변화도 적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식품안전확보와 불량식품근절이라는 국정과제 평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해 향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토대로서 활용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여 법제도적 측면, 국민 및 전문가 인식측면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원칙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토대로서의 개념 확정이 필요한 바, 식품위생법상 '유해'의 개념과 불량식품의 정의를 제시함에 있어서 '사회통념, 위생적, 부적절한' 등의 용어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부합하는 위해식품 등의 개념 통일과 그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품위해사범관리 체계정비와 높은 재범률 억지방안 필요하며,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범죄수익몰수제도 활용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위해식품사범 특성에 따른 행위유형 차등화, 처벌 기준 이원화 필요가 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허위신고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식품위해사범 단속 및 처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엄격한 법집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넷째, 국민의 식품안전 불안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서 론

박 미 숙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불량식품이 선정될 만큼 그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규제대상의 식품이 무엇인지도 정확하지 않은 채 식품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1)]

그동안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기존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통합하여 먹거리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식품안전 확보는 우선적인 정책순위를 차지하고 있다.[2)] 또한 경찰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사범 근절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0일간(2013년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3)]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조직개편 및 법적 대응방안이 과연 성과를 거두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

1)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보도자료, 2013.8.8.
2)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독립부로 한 것은 식품안전 일원화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 이현규, 식품안전 R&D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1호, 2013, 30면.
3) 경찰청 국회제출자료(http://www.police.go.kr/assembly/main.do).

2011년 통계청이 행한 '2010 사회조사 개요'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도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62.7%가 안전하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4] 반면 불안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는 '식품업체의 안전의식부족'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응답자의 46.6%).[5] 한편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하여는 2012년 사회조사에서 54.7%가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 이유로서 첫째로 꼽은 것이 정부의 규제관리 미흡(50.1%)이며, 그 다음으로 수입업체의 식품안전의식 부족(22.9%)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으로서는 응답자중 66.7%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이 결과는 2010년에 비하여 4% 정도 식품안전체감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체감도 관련 사회조사에서 드러나는 것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체감 정도인데, 국내산 농산물에 비하여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2010년 37.5%에서 2012년 77.5%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짐작해보는 대목이다. 또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히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관리 및 규제, 식품업체의 안전불감증 등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품안전문제, 특히 먹거리 위해사고는 특정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며, 이는 모든 국민들과 소비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식품의 위해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7] 식품안전을 위한 전방위적 시스템의 확보, 인식변화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8]

이처럼 식품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를 이들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데에서 찾기도 한다. 최근 전국의 형사법관들이 모여 식품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

4) 통계청, 2010 사회조사보고서 Ⅳ통계표 7-1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5) 통계청, 2010 사회조사보고서 Ⅳ통계표 7-2 식품안전이 불안한 이유.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6) 통계청 2012년 사회조사결과 참조.

7) 이재삼/박문선,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방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4집, 2014.6, 133면.

8) 통계청 고시 제2014-175호. http://kostat.go.kr 참조. 한편 통계청은 이런 조사결과와 국정과제로서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안전체감도조사'를 통계작성 승인고시하고 매년 1회에 한하여 국무조정실을 작성기관으로 조사통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 통계작성의 목적은 식품안전에 대한 체감도 조사를 통해 정책수립·평가·분석 등에 활용하는데 있다.

식품위생법으로 기소된 천2백여 명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1%도 채 되지 않았고 60% 이상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9]

사실 식품관련 사기나 속임수는 역사상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10] 이미 1820년경에 식품의 부정불량은 그 '정교함이 완벽한 수준'에 달하여 다양한 종류의 부정불량 품목이 어디서나 발견되었으며, 전문가들조차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11] 더욱이 놀라운 일은 당시 이들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게 된 것은 과학적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식품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라는 것이다. 한편 당시 국민들 또한 전반적으로 식품안전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지나치게 안이했다.[12] 이미 당시에도 구리로 선명한 색을 만들어낸 야채, 오이피클 등이 횡행하였으며, 이를 먹은 사람들이 구토와 복통을 겪고 죽음에 이르렀지만, 식품제조업자들은 이러한 조리법에 대하여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식품검사관의 문제, 불성실한 식료품상, 식음료 관리에는 소비자보호보다는 정부의 재정 보호가 우선되는 등의 사고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식품이 산업화될수록 광고는 더욱 과장된다. 허위과장광고는 오늘날 거의 모든 광고에 어느 정도까지는 스며들고 용인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13] 따라서 이러한 식품법에 있어서 결국 식품업자의 의도 즉 속일 의도가 증명되었는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즉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만 기소되었다. 그러나 속일 의도를 밝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설사 기소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을 뿐이다.[14] 역사적으로도 불량식품의 정의나 그 범위 그리고 사업주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오랫동안 공방을 해왔다. 이러한 쟁점은 오늘날 식품법의 근간을 형성한다.[15]

사실 식품안전의 문제는 안전만큼이나 식품산업 진흥 및 육성이라는 과제도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이다. 즉 식품산업육성과 일반소비자 보호를 양 축으로 하는 체계적 고리속에 있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서나 위해식품의 경우 생명·신체·건강

---

9) 실제 양형조사에 의하면 이러한 수치는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참조.
10) 비윌슨/김수진, 공포의 식탁- 식품사기의 역사, 2008.
11) 비윌슨/김수진, 앞의 책, 39면.
12) 비윌슨/김수진, 앞의 책, 49면.
13) 이 점은 판례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도4633판결 ; 헌법재판소 2000.3.30. 선고 97헌마108 결정 참조.
14) 비윌슨/김수진, 앞의 책, 204면.
15) 비윌슨/김수진, 앞의 책, 212면.

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고, 그 피해의 발생도 신속하기 때문에 그 침해행정의 단속과 그 후속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6]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산업의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점, 식품산업의 특성, 대형안전사고의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으며, 법정책상으로는 제조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 등으로 인한 영세 영업자의 성장성 저하와 소비자 선택권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안전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부처로서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부처기능 총괄과 기술적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부조직 및 그 여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17] 그런데 식품안전관련 법률상 처벌대상이 되는 위해식품의 정의 및 그 범위는 여전히 광범위하고도 불명확한 상태이다. 나아가 국정과제로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 되는 불량식품의 범위는 더욱 더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국정과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불량식품이라는 용어는 일반국민들의 사용례에 의하면 흔히들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앞 문방구나 구멍가게에서 하교길의 다정한 동무가 되는 놀이감이 되는 어린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할 뿐이다. 싸워도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 무작정 헛발질만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무엇보다 현행 식품안전관련 법규의 기본틀은 식품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짜고 있다. 이러한 식품위생법상 규제의 기본틀이 과연 적정한가? 식품위생법의 정당화근거가 식품소비자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에 있다고 하여 현행 제도는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가 하는 점이다. 식품위생법은 소위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각종 식품관련 법규를 통해 실현하고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과연 현행 제도와 정책이 식품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제기된다.

따라서 식품사범에 대하여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

16) 박창석,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법학논총 제24집 제4호, 2007, 118면.
17) 권대영, 국민먹거리 사각지대, 여연시선, 2014, Vol.1, 121면.

도적인 불법행위와 비고의적 사고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계로 잡을 수 있을지 단순한 약식기소사건만으로 이를 비고의적 사고로 분류할 수 있을지, 현행통계로 사건유형 분류가 가능할지 등에 대하여 의문이 남는다. 이는 결국 식품관련 법규상 처벌대상인 불량식품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고도 불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더욱이 오늘날 식품업계도 예외가 아니듯이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하여 세계적인 식품브랜드 및 외식업체 등도 한국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품안전 문제는 더 이상 국내문제로만 머물러 있지 않다. 국제적 협력, 식품안전관리의 글로벌망 구축 등 향후 과제도 적지 않다.

이제 식품안전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의 수행2년차가 지나가고 있다.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 시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새 정부초기 도입된 새로운 제도, 기구 등의 식품안전전략 수행 성과를 점검해보는 것은 향후 식품안전확보를 위해 시기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과연 우리는 식품안전을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무엇을 하였는지, 식품불안감이 감소되었는지, 실제 위해식품 내지 불량식품이 감소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본 연구는 국정과제로서의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정과제 선정 이후 식품안전 체계 및 법제도 현황 그리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정책변화,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현행 식품안전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식품안전 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본목적이 있다. 이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도모하고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선진국가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행 식품안전 체계 및 현황에 대한 문헌자료 및 비교법

자료를 검토하고, 나아가 국정과제 평가를 위하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평가를 함과 동시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형사정책 방안을 도출해내는 조사연구를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엇보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사범에 대한 공정하고도 엄정한 법적 규제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실태를 파악하여 현행 양형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양형실태 조사를 같이 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관련법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형사정책방안과 관련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식품문제는 더 이상 국내문제에 한정하지 않으며,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대응은 국제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한 문제의식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대처도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각국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하였다(제2장). 특히 이 장에서는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양형이 관대하다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본 연구에서는 양형실태를 파악해보고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양형상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도 함께 짚어보기로 하였다. 한편 식품안전강국실현은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이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조사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제3장). 마지막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및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다(제5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위해식품 · 불량식품 대처현황과 문제점

박미숙 · 임유석 · 김태민

제2장

위해식품·불량식품 대처현황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위해식품에 대한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하여 형사정책방안과 관련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식품안전 관련 법규는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형사정책적 과제를 점검해보는데 기본적인 토대로서, 입법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국민건강에 대한 배려,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실천전략을 거꾸로 가늠하게 한다.[18]

제1절 위해식품 규제 관련법규 검토

1. 식품안전 관련법규

가. 관련법규체계와 현황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식품안전법령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전염병예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약사법」, 「비료관리법」, 「인삼산업법」,

18) 한편 식품안전 개념은 결국 본 연구에서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귀착점이기도 하면서 형사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궁극적 목표이다. 현재 국정과제 전략으로서 사용되는 식품안전이란 개념 정의는 식품안전관련 법령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식품안전관련이란 단순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의 문제는 아니며, 식품섭취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하거나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양곡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학교급식법」, 「학교보건법」,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소금산업 진흥법」, 「주세법」, 「대외무역법」, 「산업표준화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되는 법률과 위 법률의 위임사항 또는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명령·조례 또는 규칙 중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말한다."[19]고 규정되어 있다.

실제 식품안전관련법령은 식품위생법을 포함하여 27여개 법률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망라적인 식품안전관련법령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법체계가 각 영역별로 개별적으로 규율된다는 것을 말해줄 뿐, 개별 법률간 관계, 주무부처간의 협력 여하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식품안전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개별 법령이 다수 산재해있음으로 인해 식품안전 규제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겠다는 점이다.[20] 예컨대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유통단계의 농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 가운데 우유류 등을 원료로 가공한 유가공품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구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에 포함시킨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3)가 유통기한이 지난 유가공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유통기간 위반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다. 식품군별로 위반행위 유형이 다르고 각 주무부처별로 그 특성과 정책의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품종류별 규제기준이 다르고, 준수사항 및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량을 달리 규정하는 것[21]이 과연 적정한 입법인가 처벌의 불공정성 형평성문제를 야기할 여지는 없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22]

나.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과 그 의의

식품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식품안전 정

19)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제5호.
20) 박균성/정관선, 한국프랑스 식품안전법비교,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2012, 83면
21) 이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에서도 개선필요성을 강하게 공감하고 있다. 유무영, 국정과제 실현방안 전문가 간담회, 2014.5.7., 31면.
22) 같은 취지, 박균성/정관선, 앞의 글, 83-84면.

책의 일관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안전행정체계를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각 부처가 담당하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 조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할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식품안전기본법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된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창설하고,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위해성평가와 시험·분석·연구기관의 운용과 같은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등 식품안전법의 기본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법은 위해식품에 대한 생산·판매 등의 금지와 검사명령, 추적조사, 식품 등의 회수 등 식품안전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는 식품규제의 일원화 내지 개별 법령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다.[23]

2. 식품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의 토대로서의 위해식품

현행법상 식품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의 토대로서의 개념은 위해식품이며, 식품위해사범이란 위해식품을 파는 자이다(식품위생법 제4조).

현행법상 식품안전을 위한 규제수단으로서는 식품등을 생산·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시설기준 및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허가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신고·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항을 위반하여 미신고 및 미등록하거나 식품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위해사범으로서 처벌된다.

위해식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해성과 무관한 관련식품이 식품안전을 구실로 위해식품에 포함되어 규제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 반대로 처벌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규제대상이 불명확하게 되며, 규제의 자의성이 개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식품영역에서 부패가 발생할 여지도 매우 크다.[24]

---

23) 박균성/정관선, 앞의 글, 84면.
24) 이로 인해서 이미 식품영역은 한국사회에서 부패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영역으로 지목된 바 있다;

가. 위해표지

1) 위해와 위해평가, 위해성평가

식품위생법상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25] 위해평가에 대하여는 제1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상으로 위해평가의 개념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지 않으며, 제1항에 의하면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해평가는 유해물질 함유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이라고 보인다. 한편 식품안전기본법에서는 위해성평가에 대하여 ... '식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 식품 등의 국민건강에의 위해발생 가능성 여부 판단이 위해성평가로 이해된다. 또한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위해성평가란 식품등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인체의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6] 이러한 식품위해평가제도의 목적은 첫째, 국민보건상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위해평가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 등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치하고, 둘째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품성분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소비자의 보호와 사업자에 대한 과잉규제를 방지하는데 있다.[27]

먼저 이러한 양 법의 위해 및 위해성 평가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은 그 규정상 식품위해사범을 위험범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하면서도 그 결과발생 여부에 대한 문언을 빠뜨리고, 단순히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그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질상으로 위험범의 특성에 비추어서도 규정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적어도 문언상 '유해물질을 함유하여' '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여부' 등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여 위험범으로서의 규정형태를 갖추는 것이 적절하다.

1999년 국무총리실 자료실 참조.

25) 식품위생법 제2조 제6호.

26)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6호.

27) 박창석,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법학논총 제24집 제4호, 2007, 119면; 이종영, 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성 확보제도, 중앙법학 제7집 제2호, 2005.8, 47면.

2) 위해요소 등 개념정의 흠결 및 불명확성, 그리고 혼용

그 다음으로 위험요소, 위해요소, 위험식품 등의 개념구분이 애매하다. 식품위생법 어디에도 이러한 개념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하면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제6호)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위험요소를 위해와 동일한 의미전달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의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 이라고 하여 위해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대상이 유해물질함유 식품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법률규정으로부터 법적 규제의 대상 나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전제개념인 위해식품, 내지 위해성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식품안전을 명문으로 하여 광범위하게 처벌의 대상으로 포섭될 여지도 없지 않다.[28]

3) 식품위해사범의 개념표지로서의 위해와 그 법적 효과

현행법은 위해성을 이유로 행정규제의 대상으로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도 있다.[29]

이런 점에서 현행법상 위해성 여부는 행정단속과 동시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 결국 식품위해사범은 행정단속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형사범이다. 따라서 형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개념과 내용 및 범위가 명확해야 함은 물론이다.

생각건대 위해개념을 사용한 것은 식품위해사범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즉 행위 결과발생뿐만 아니라 구체적 또는 추상적 위험발생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단속 및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위해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또한 식품위해사범의 위험범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영업자에 의해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이

28) 강석구/하상도/송봉규, 위해식품의 제조, 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2009, 28면 참조.
29) 식품위생법 제4조, 제94조.

위험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적인 구제는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는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와 같은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외에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있음만 인정된다면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2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30]

결국 현행법상 식품위해사범은 결과발생없이 위해성을 전제로 한 위험범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경우에까지 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나. 위해평가

1) 현행법상 위해평가 주체

식품의 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행한다(제15조). 다만 특정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한 평가에 시일이 소요되어 국민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에 대하여는 위해 여부 확인 이전이라도 일시적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식품위해성 평가에 대하여는 위해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법률상 위해평가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31] 말하자면 식품위해성 평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

30)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9171 판결.

31)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대법원2014.4.10. 선고 2013도9171 판결)고 인정하면 위해평가가 이루어진다. 즉 실제로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지 않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염려가 있음만 인정된다면 위해식품 금지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여기서 문제는 위해성평가와 관련하여 위생개념까지 포섭하는 개념인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가 위해평가업무인가 등의 의문이 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위해와 위생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32]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33] 현행법에 의하면 그리고 판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위해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행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살펴보면 이는 위해평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으로 식품안전기본법상으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으로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식품위생법상 식약처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원회의 판단만 거치면 되는 것인지,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34]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해평가와 위해관리가 동일한 기구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해평가는 보다 독립적이고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한 독립된 기구설치 필요성은 인정된다. 따라서 식품위해성 평가는 전문가 그룹에 맡겨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구나 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32) 식품위생법 제2조 제6호,
33) 식품위생법 제2조 제11호.
34) 문상덕, 식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37호, 2013, 251면.

2) 위해관리 및 평가의 기본접근방법

미국 환경청(EPA)에서 내린 정의에 의하면 위해성관리 개념은 기본적으로 위해성평가, 위해성관리, 위해성소통 등 3가지를 기본요소로 하고 있다.[35] 유럽 식품안전청 또한 위 세 가지 요소를 위해성관리 기본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위해성 평가란 특정한 오염물질의 존재 또는 잠재적 존재 및 이요에 의하여 인체의 건강 및 환경에 초래되는 위해성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행되는 정성적(qualitative)·정량적(quantitative) 평가이다. 한편 위해성관리는 위해성에 대한 비규제적 대응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이고, 위해성소통은 위해성평가자, 위해성관리자, 국민, 대중매체, 이익집단 사이에 건강 또는 환경적 위해성에 관한 정보교환을 말한다.[36] 첨가물 자체는 위해요소가 아니다.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과학적 위해평가는 위해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정책결정자가 적절한 위해관리 조치를 수립하기 위해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포함된 위해가 무엇이든, 과학적 위해평가는 취해지는 조치(들)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크건 작건, 주관적이건 객관적이건,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적당한 위해 정보전달 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

위해성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예방적 성격을 갖는다. 위해성평가는 인체 내 독성을 확인(위험성 확인)하고 위해요소의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위험성 결정)한 후, 위해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노출평가과정을 거쳐 해당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위해도 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37]

3) 심의위원회 의견의 구속력 여하의 독립성 보장

현행법상 위해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구속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되는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시금지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식약처장은 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35) 전재경, 위해성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법학논문집 제27집 제1호, 2003.8, 53면.
36) 전재경, 앞의 글, 53-54면.
37) 박균성/정관선, 앞의 글, 95면.

현행법상으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이를 자문기구로 보는 이상,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의 심의에는 기속되지 않는다.[38] 반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에 예방조치로서 취해진 일시적인 금지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의결에 구속되며 그 결정에 따라 처분을 행한다고 보아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39]고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특히 특정식품의 위해와 관련하여 "1.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40] 이 경우 관련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41]

또한 위해성평가에 대하여는 식품안전기본법은 식품위생법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식품위해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두고 있는데, 이에 의해서도 위해평가의 대상(시행령 제4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규정은 없다. 위해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그리고 의견의 법적 구속력 등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

4) 규제기관과 평가기관의 통합 문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효율적인 식품위생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식품안전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규제하는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평가기관이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기관과 평가기관이 통합된 경우 식품

38) 박창석,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법학논총 제24집 제4호, 2007, 120면.
39) 박균성/정관선, 앞의 글, 86-87면.
40) 식품위생법 제17조.
41) 식품위생법 제17조 제5항.

안전평가의 독립성·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식품안전평가가 과학적인 실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실험의 방법 및 과정 등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국은 식품안전에 있어서 위해평가와 위해관리의 개념은 따로 정의 논의되고 있으며, 동시에 식품안전정책에 있어서 이 둘은 가능한 한 이원화하여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위해평가와 위해관리는 정책과 법규에서 통합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42]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 위해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43]

3. 국정과제 대상으로서의 불량식품

가. 법적 개념으로서의 불량식품

이는 법적 개념화 대상으로서의 불량식품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하면 부정식품 및 첨가물 등의 제조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한다. 그런데 동법 또한 부정식품의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유해 등의 기준(동법 제8조)에 대하여 단순히 '유해'해서는 안 되며, '현저히 유해'하다는 것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부정식품의 '현저히 유해의 기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조[44]에서 규정하고 있다.

---

42) 전재경, 앞의 글, 53면.

43) 곽노성/정지원/이종경, 최근 3년(2008-2010)간 식품안전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분석, 식품영양 및 안전 제28권 제2호, 2013, 115면 이하.

44) 제4조(부정식품의 유해기준)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체에 현저한 유해"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류 허용외의 착색료가 함유된 경우
2. 과자류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2ppm이상 또는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3. 빵류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4. 엿류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된 경우
5. 시유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포스파타제가 검출된 경우
6. 식육 및 어육제품 허용외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납이 3ppm이상 함유된 경우
7. 청량음료수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

먼저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식품이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관련 인·허가(동법 제37조 제1항 및 제4항)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동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은 위해식품이 아니라 부정식품이며, 이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그 형이 가중된다.

이러한 법률체계에 의하면 위해식품이 법률상 요구되는 영업관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식품으로서 부정식품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으로 위해식품이 아니라, 단순히 인·허가 관련 행정단속위반사항에 대하여까지 형사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량도 가볍지 않다는 점은 문제이다. 단순한 위해식품 정도가 아니라 보건범죄단속법상의 부정식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또 중대범죄유형에 대하여는 이 가중처벌규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이 경우에도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에 버금가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형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나. 불량식품 규제법률의 필요성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현행법상 불량식품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그 개념과 내용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불량식품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의하면 불량식품은 일반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식품으로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식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45] 한마디로 비위생적인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본다는 것이다.[46]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의로서는 예컨대 부패·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 광의로서는 허위과대광고, 가짜식품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 등이 이에 포함

상 함유된 경우
8. 장류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비소가 5ppm이상 함유된 경우
9. 주류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메칠알코올이 1ml당 1mg이상 함유된 경우
10. 분말 청량음료 허용외의 착색료나 방부제가 함유되거나, 수용상태에서 비소가 0.3ppm이상 또는 납이 0.5ppm이상 함유된 경우

45)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2013.
46) 이재삼/박문선, 앞의 글, 149면.

된다.[47] 즉 원산지를 속인다든가 과대광고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속여 파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불량식품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불량식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48]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량식품 정의에서 그 유형으로서 '사회적인 통념상 위생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식품을 고의적으로 생산·제조·유통·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량식품의 정의를 제시함에 있어서 '사회통념, 위생적, 부적절한' 등의 용어는 소위 근절대상으로 포섭하기에는 매우 불명확하고도 애매한 개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49]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제화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식품사범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새 정부 초기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검찰청은 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2013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바 있다. 당시 경찰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100일 집중단속기간 동안 3,011명 검거, 이중 70명 구속조치하였고, 압수한 식품은 1,228톤 상당에 이르렀다.[50] 당시에도 단속상 혼선이 적지 않게 제기되었는데, 이는 바로 부정불량식품의 정의가 애매한 데에서 비롯되었다.[51] 현행 식품법체계에 의해서도 산재한 법령, 복잡한 처벌체계 등으로 관계 공무원조차 체계적 이해가 어렵고 일선 단속공무원이나 경찰 등에게 단속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이러한 상황은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52]

---

47) 식품저널,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불량식품의 정의와 유형, 2013.3.23.

48) 유무영, 앞의 글, 31면.

49) 물론 여기서 불량식품의 정의와 더불어 대표적인 불량식품의 판매유형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량식품 판매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악덕 행위
* 유해·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사료용 원료 등을 식품에 넣어 판매
②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기만 행위
* 가짜참기름, 신선도가 떨어지는 원료에 색소를 사용하여 판매
③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
* 국내 무신고 제품 판매,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④ 저가·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소비자 심리 악용 행위
* 담배, 화투 모양 과자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미끼 상품 판매
⑤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비양심적 행위
* 세균수 초과 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반찬 재활용 등

50)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보도자료, 2013.8.8., 3면.

51) 푸드투데이,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기능 마비, 2013.5.25. 물론 이러한 개념 개선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인 개념설명에 의해서도 불량식품 용어로서 머릿속에 상상되는 것은 먹거리 전체의 안전보다는 소위 회자되는 불량식품 정도의 인식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수준에서는 생계형이 대부분인 불량식품 사범의 특성[53]상 동네 문방구를 그 근절대상으로 겨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54] 국정과제로서의 불량식품 근절은 포괄적이고도 근본적인 먹거리 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문가들만이 인지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며, 보다 범국민적이고도 전기업적인 인식전환을 가져올 외포를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대규모자본과 시설이 투자된 소위 식품위생법상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경우에도 위해식품이 문제될 수 있으며, 소규모 자본이 투입된 영업시설이라고 하여 모두 비위생적인 것은 아니다. 불량식품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규제대상으로서의 식품 곧 먹거리의 차등화, 양극화를 가져올 매우 위험한 용어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2013.10. 근절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207호) 또한 작은 소규모의 영업시설을 타겟으로 한 단속과 실적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필요한 정책기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소위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한 위생문제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무허가 내지 미신고 영업시설을 겨냥한 단속이나, 이들 시설은 비위생적일거라는 막연한 불안감속에 가중처벌의 잣대를 대는 그런 극히 일부문제를 겨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보건건강에 대한 책무를 지는 국가책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식품위해행위에 대한 처벌의 성격과 문제점

식품위생법 제4조의 경우 식품안전을 직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로서의 성격과 행정의무위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행위특성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55] 아래에서는 참고로 위해

52) 유무영, 앞의 글, 31면 이하 참조.
53) 유무영, 앞의 글, 32면.
54) 이러한 문제점은 MBC 시사매거진 2580 "우리가 불량식품"(제856회), 2013.5.26.에서 드러난 바 있다.
55) 강석구외, 앞의 글, 29면 참조.

식품을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제시하였다.[56]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3. 병(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가. 식품위해사범의 법적 성격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먼저 동 규정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실상 형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 ...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5호에서 7호는 행정의무위반사항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5호에서 7호까지의 규정은 인허가 사항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위해하다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법적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57]

이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해사범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식품관련 인·허가 제도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로써 바로 '위해하다'는 판단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제도를 강화해야 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은 바로 위해하다는 결론으로 이르는 것은 위해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위해판단의 대상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며, 결국 이는 처벌의 확대를 가져오며,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

---

56) 식품위생법 제4조 2014.03.18 [법률 제12496호]
57) 강석구외, 앞의 글, 29면 참조.

참고로 식품위생법상 행위유형별 처벌유형 및 법정형(조문)을 비교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식품위생법상 행위유형별 처벌 유형 및 법정형

위반 행위		처벌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제4조)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제5조) •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제6조)	•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제8조) •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3조제1항제1호) • 영업허가 등 신고의무 위반(제37조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 ※제37조제1항의 형벌 확정 후 5년 이내의 재범자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의 확정 후 5년 이내의 재범자가 해당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때 :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제7조제4항)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제9조제4항) • 허위표시 등의 금지(제13조제1항제2호-제5호) • 수입 식품등의 신고의무 위반 등(제19조제1항)	• 영업허가 등 신고의무 위반(제37조제5항) • 영업 제한 위반 (제43조) • 폐기처분 등 명령 위반(제72조제1항·제3항) • 위해식품등의 공표 명령 위반(제73조제1항) • 허가취소 등 명령 위반(제75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
• 조리사 직무 수칙 및 필수채용기준 위반	• 영양사 직무 수칙 및 필수채용기준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이를 병과
• 표시기준표시 위반 식품 판매 금지(제10조제2항)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위반 식품 판매 금지(제12조의2제2항) • 긴급대응 필요판단여부 미확인 식품 판매 금지(제17조의제4항)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제31조의제1항) • 시민식품감사인 영업비밀 누설 금지(제34조의제4항) • 영업허가 등 신고의무 위반(제37조의제3항·제4항) • 영업 승계 신고의무 위반(제39조제3항)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반(제48조제2항·제10항)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신고의무 위반(제49조제1항의 단서) • 명칭 사용 금지(제55조)	• 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제19조제2항)의 거부·방해 • 출입·검사·수거 등(제22조제1항)의 거부·방해 • 폐기처분 등(제72조제1항·제2항)의 거부·방해 • 우수수입업소 등록기준 위반(제20조제4항제1호-제3호) • 시설기준 위반(제36조) • 영업허가 등 기준 위반(제37조제2항) • 품질관리 및 보고(제42조제1항)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제44조제1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 제외) • 허가취소 등 명령 위반(제75조제1항) • 품목 제조정지 등 명령 위반(제76조제1항) • 폐쇄조치 등 명령 위반(제79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행위		처벌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제44조제3항) • 식품등의 이물 발견에 대한 거짓 보고 등(제46조제1항)	•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위해식품등의 회수 보고 위반(제45조제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의 영양표시 등 기준 미준수(제11조제2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제3조) •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제40조제1항) •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제41조제1항·제5항) •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의무 위반(제86조제1항) • 식품안전 교육명령 등 위반(제19조의3 제1항) • 검사명령 등 위반(제19조의4 제2항)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제31조제3항)	• 시민식품감사인 위촉·해촉 보고의무 위반(제34조제5항) • 영업허가 후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제37조제6항) • 품질관리 및 보고-식품 생산실적 보고의무 위반(제42조제2항)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미적용 업소의 명칭사용금지(제48조제9항) • 교육의무 위반(제56조제1항) • 시설 개수명령 등 위반(제74조제1항) • 집단급식소 신고의무 위반(제88조제1항·제2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품질관리 및 보고(제42조제1항) •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제44조제1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 • 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신고의무 위반(제46조제1항)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제49조제3항)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험범의 과실범 규정 흠결

식품위해사범은 위험범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으나,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분에 따른 처벌의 차등화가 적정한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4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정형 규정에 비추어보면 식품위해사범은 상당히 중하게 처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식품위해고의범인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죄로 의율되는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58] 다만 식품위생법상 과실범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과실로 위해식품등의 판매를 행

58) 형법 제257조 제1항.

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로 의율되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생각건대 식품사범의 특성상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식품법상으로 고의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은 식품사범의 특성에 비추어보아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과실범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

제2절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식품안전에 대한 모든 규제와 책임이 하나의 식품통제기구에 놓여있는 단일기구형에 비해 체계적인 식품안전 규제정책마련이 미흡하고, 규제사각지대 또는 중복규제의 문제와 위기관리능력 저하 등 업무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59]

그리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기존에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 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축·수산물 위생안전 기능을 통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하여 식품안전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먹거리 안전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는 기존의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농산식품과 축산식품의 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지만, 생산·가공·유통 등 단계별로 담당부서가 바뀌고 있었고, 먹는 샘물은 환경부, 주류는 국세청, 수입식품은 관세청, 유전자조작농산물은 지식경제부, 학교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관할하는 등 담당부서의 분산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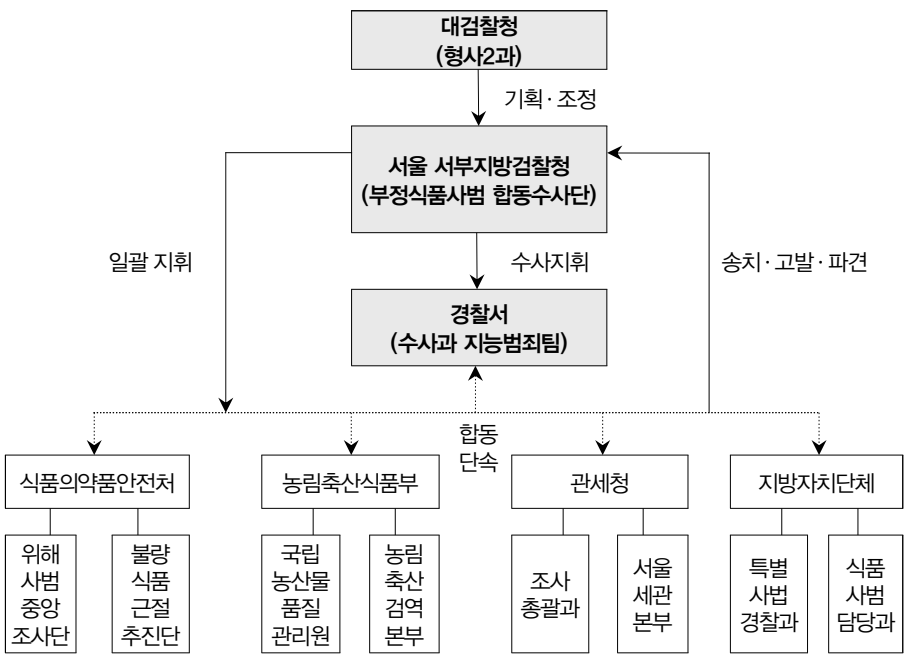
1.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의 운영 현황

2013년 5월 1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이 식품안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발족하

59) 박균성/정관선, 앞의 글, 85면.
60) 이처럼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세정, 식품·의약품 안전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9, 21면.

여 현재까지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적극적인 식품위해사범 척결에 나서고 있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는 대검찰청(형사2과)의 기획·조정 역할을 시작으로 서울 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이 중심이 되어 일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식품안전중점검찰청은 식품사범 관련 행정청 즉,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행정청 소속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세관본부, 서울시청 특별사법경찰의 파견 및 근무지원을 받으면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식품위해사범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일선경찰서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합동단속 및 기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협의체 유관기관들은 검찰의 일괄적인 수사지휘를 받고, 업무처리 결과 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하기도 한다.



[그림 2-1] 식품위해사범 대응 조직운영도

2.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문제점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는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이 주체가 되어 범죄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해사범은 형법범죄가 아닌 특별형법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이다 보니 이에 대응하는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수사활동의 장단점이 상존하고 있다.

먼저,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이 접근할 경우에는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의해 영장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사전정보와 범죄혐의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재원의 뒷받침 없이 실시되는 단속과 수사가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둘째, 수사기관이 아닌 검사장의 지명에 의해 활동하는 특별사법경찰들은 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 송치 또는 고발하는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별사법경찰은 각 해당영역에서 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한 전문수사관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소속 행정청 조직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수사지원활동비용 등)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를 실시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셋째, 식품위해사범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 그리고 식품안전관련 행정청의 특별사법경찰 등이 다양하게 접근하다 보니 업무처리에 있어서 중복성과 복잡성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중앙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사법경찰들은 검사의 일괄적인 지휘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와 조직의 자체업무 수행만으로도 모든 재원을 투입시켜서 활동하고 있는바, 전문적인 단속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의 합동단속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유이기도 하다.

3. 식품위해사범 대응조직 운영의 개선방안

식품위해사범 척결이라는 국정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식품안전중점검찰청 지정

을 시작으로 경찰과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지휘 및 감독문제, 유관기관 간 업무의 중복성 및 복잡성, 그리고 식품안전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인식과 억제를 위한 위하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직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식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처벌의 신속성과 엄격성 그리고 확실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유관기관 행정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재원은 형법범의 주요 강력사건에 집중하고, 이 외에 특별형법범에 해당하는 식품안전범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성과 재원이 확보된 특별사법경찰이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것이 실효적인 재원배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식품사범들이 인식하는 처벌의 억제력이 가지는 위하력은 수사기관보다는 일반 행정청 공무원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다.

둘째, 식품위해사범 관련 유관기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은 특별형법범상 식품범죄를 중심으로 단속과 행정처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관련 행정청이 접근하는 경우 범죄현장 단속에서 시작하여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현장에서 수집가능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물 채택에 있어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더해진 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는 실제 공판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능력 확보를 중심으로 검사의 공소유지를 위한 일련의 형사소송절차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지식까지 구비된다면 단순한 고발이나 송치업무가 아닌 전문수사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적인 범죄수사는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고소 및 고발을 시작으로 일선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수사기관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범죄를 임의적으로 수사하고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식품범죄에 대한 증거채증 활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에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형사절차보다는 행정절차에 의한 증거채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의 범죄에 대한 사전 정보력과 행정청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기동성이 더해진다면 보다 효과적인 범죄검거가 이루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법률전문가인 검찰과 수사전문가인 경찰과는 달리 식품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이러한 별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식품사범을 집중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기에 궁극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조직이 운영될 것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전문성 확보는 비단 식품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실질적 의미의 경찰활동이 요구되는 다양한 특별형법 영역에서 요구되는 공통적인 조건이다.

제3절 위해식품·불량식품 수사 및 처리현황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2013년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61]

1. 불량식품 주요 수사사례

2014년 상반기 주요 불량식품 수사사례는 다음과 같다.[62]

○ (부산 금정서) '01. 1월 ~ '14. 3월간, 중금속에 오염된 톱밥과 깻묵으로 만든 유해 건강음료를 암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인터넷 및 약국, 건강식품 도매상 등을 통해 전국에 32억 상당(소매가격 220억원) 유통시킨 제조업체 대표 등 검거 (구속 1, 불구속 6)

○ (부산 부산진서) '09. 3월 ~ '14. 3월, 노인들을 상대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실데나필)이 함유된 '동보-칸' 제품을 "하나만 드시면 관절염에 좋고, 특히

61) 경찰청 국회제출자료(http://www.police.go.kr/assembly/main.do).
62) 경찰청, 2014년 상반기 내부자료.

정력에 아주 좋다"고 허위과대 광고하는 등 50억 5천만원 상당 유통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 등 검거(구속 1, 불구속 27)

○ (부산 동래서) '11. 1월 ~ '14. 3월(3년 2개월간), 무료 관광 소문을 듣고 홍보관을 찾아온 노인들을 경남 산청에 있는 식품 제조공장으로 데려가 '산청구지뽕'등을 판매하면서 '혈압과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고, 뇌출혈을 예방한다'며 허위·과장광고(8억 상당 매출, 3억 상당 순익) 피의자 등 검거(불구속 12)

○ (대구 수사2계) 피의자는 불법도축한 흑염소 및 식용으로 도살한 개에 물을 강제주입하여 무게를 늘여 대구, 경북지역 유명 보양식당에 38억 유통, 총 18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식육도매업자 등 4명 검거(구속 1), 현장에서 범죄 수익금 4억5천만원 압수, 송치

○ (대구 동부) 피의자는 젖소·육우를 대구·경북 일대 유명 생고기 전문점 등에 70톤, 총 10억원 상당을 유통하여 7억원 상당 부당이득 챙긴 대형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 등 5명 검거(구속 1)

○ (인천 남부서) '11. 3월경부터, 축사에 기립불능소가 발생하자 수의사로부터 도축 가능한 '부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72두를 도축,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고, 농협손해보험금 협회에 가축재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도합 4억8천만원 (국가보조금 50%, 2억4천 만원 포함)을 부당수령 한 것임.

○ (인천 부평서) 2010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무허가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복합 조미식품을 생산하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마늘, 멸치, 오징어 엑기스 등을 재가공하여 약 29억원 상당의 '야채 시즈닝 엑기스' 등을 생산·유통시킨 피의자 검거

○ (광주청 수사2) 광주 구 번화가에 9층 건물에 다단계 판매사업소를 차려두고, 노인 및 주부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광고 및 불법 다단계영업을 하여 약 39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7명 검거

○ (광주 북부서) 광주 ㈜○○민물에서 국내산 미꾸라지와 중국산 미꾸라지를 섞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광주·전남·북 175개 추어탕 전문식당에 21,789 kg 1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2명 검거(1명 구속, 1명 불구속)

○ (대전 수사2계) 유명 제약회사를 사칭한 홍보관을 차려놓고, 모집책, 팀장, 강사, 도우미 등 역할을 분담한 뒤 '무료관광'을 빙자하여 모집한 전국 노인들

을 상대로 키토산 농축액등이 혈액순환과 당뇨, 고혈압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하고, 원가 5만5천원의 제품을 15만원에 판매하여 80억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것임.

○ (대전 수사2계) 참깨 원액(참기름)에 다른 어떠한 식용유지(옥배유,대두유 등)를 혼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인도산 참깨를 압착한 원액에 옥배유와 대두유를 혼합하여 식품 제조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향미유를 전국 30곳 대리점를 통해 전국 식당으로 약 20억 상당을 유통한 것임.

○ (울산 중부서) 2012. 3월 ~ 2014. 3월까지 울산시 소재 ㈜○○허브 울산비젼센터, 울산센터, 울산명성센터, 광주시 소재 광주상무센터, 전주시 소재 더조은센터 등 총 5개소의 ㈜○○허브 지역센터에서 암, 뇌경색, 파킨스병에 걸려 치료중인 노인, 중증환자들에게 원가 불상의 식품인 '○○생식환'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2년간 3,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박스에 60만원씩 합계 23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피의자 6명 검거(불구속)

○ (울산 중부서) "○○식품"이라는 축산물 판매업을 하면서, 2012. 12월 ~ 2014. 5월까지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업소 내 가공기계를 설치한 후 돼지내장을 삶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4억원 상당의 돼지 부산물을 울산시내 순대공장 및 식당 등에 유통한 피의자 1명 검거(불구속)

○ (경기 수원서부) 중국산 수입민물장어 118,860Kg을 구입하여 '원산지 : 국내산'으로 기재된 비닐봉지에 재포장하여 약 52억원에 유통·판매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 1)

○ (경기 고양) 노인들에게 녹용 등 건강기능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수도권 내 판매업체 6개 대표 등 66명 검거

○ (경기 용인동부) 질병에 걸려 죽은 사슴을 도축하여 중국산 약초와 함께 중탕기를 이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 수도권 일대 노인들 상대로 6억2천만원 상당 판매한 피의자 4명 검거

○ (강원 수사2계) 일반 돈육을 박스갈이 수법을 이용, 생산이 중단된 '자시라 포크' 브랜드로 둔갑시켜 이마트에 3년간 5,384회에 걸쳐 370억 2,300만원 상당 허위 제조·유통사범 및 자치단체 예산 3억 4천만원 상당 손해를 입힌 공무원 등 23명 검거(불구속 23)

○ (강원 원주) 중국산 향미유 엑기스에 대두유·옥배유를 혼합한 향미유 제조 허가를 받은 후, 이디오피아 및 수단 등지에서 수입된 참깨를 압착해 추출한 기름을 섞거나 중국산 참깨 엑기스를 혼합한 가짜 향미유를 제조하여 서울·경기·충북 등 17개 식자재 업체에 3년간 4억 3천만원 상당(156만리터)을 판매한 피의자 2명 검거(불구속 2)

○ (청주 흥덕서) 피의자 홍○○(41세, 남)은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소재 "○○축산"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돼지내장 등 부산물을 구입한 후 비위생적인 시설(부산물을 더러운 바닥에 적재하고 LPG가스버너 등을 이용하여 솥에 삶음)로 가공하여 청주시내 순대집에 4.9억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청주시내 18개 순대집에 10.3억원 상당을 판매한 무허가 돼지 부산물 가공업체 3개소, 피의자 3명 검거(불구속, 돼지부산물 175.46kg 압수, 폐기)

○ (충주서) 2013. 10월 중순경부터 2014. 3월 중순경까지 충주시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생필품 등의 미끼상품 제공과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주로 고령의 노인들만을 행사장으로 유인한 후 원가 8만 원 상당의 프로폴리스제품 및 의료기기 등이 마치 각종 질병에 효능·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40만 원에 판매하여 노인들 약 250여명으로부터 도합 3억 6천여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5명 검거

○ (충남 금산서) 피의자들은 홍보관을 개설, 관광버스기사 등 모집책을 통해 무료관광 등을 빙자하여 전국 노인 약 54,000명을 모집한 후, '13. 7. 18 ~ '14. 3. 21까지 중국산 저가의 한약재를 이용하여 제조한 가짜 녹용제품을 마치 각종 암, 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는데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 시가 2만원 상당의 가짜 녹용제품(90g 50봉지)을 33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5,457명에게 15억8,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피의자 25명 검거

○ (충남 금산서) 피의자들은 유명가수를 홍보원으로 고용한 후, '14. 4. 23. 15:00경 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오리알 액기스를 "백내장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하여, 노인 34명에게 4,692만원 상당의 부정·불량 식품을 판매한 피의자 10명 검거(14. 4. 30)

○ (전북 정읍서) '14. 2. 13 ~ 3. 5.경 사이 정읍시 소재 행사장에서, 프로폴리스 제품을 직접 개발한 유명의사라고 소개하며 해당 제품이 간, 췌장 등 인체에

좋다고 허위·과대광고하여 3,80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노인 280명 상대로 숯매트, 수의 등 총 8억원 상당을 판매하고, 서울시 소재 절에서 "영산천도제를 지내야 자손이 번창한다. 영산천도재는 1,200만원이 넘는데 특별히 169만원에 지내게 해주겠다"고 35명을 속여, 69만원에 제를 지내주고 3,5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 검거

○ (전북 장수서) '14. 1. 20. ~ 1.24.경까지 유통기한이 8개월 경과한 삼겹살, 갈비 제품 21,800kg, 시가 183,700,100원 상당품을 경기도 소재 ○○유통에 판매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 검거

○ (전남 순천서) 2009. 1월 말경부터(고로쇠수액 채취시기 : 약 40일) '14. 2. 14.까지 고로쇠 약수가 비싸게 팔리는 것을 기회로 값이 싼 거제·양산에서 생산되는 나무수액을 구입하여 지하수와 사카린성분이 함유된 당원을 혼합한 가짜 고로쇠 약수를 제조, 광양 백운산 일대 산장, 순천선암사 일대 식당 약 30여 개소에 납품 판매하여 약 15,000여통(1통 18ℓ) 약 5억1천만원상당을 제조, 판매한 피의자 및 식당 21개소 적발

○ (경남 광수대) '10 ~ '14. 4. 1사이 경남 함양군 소재 농원에서, 충남 금산의 인삼시장에서 대량구매한 *파지인삼을 산양삼 재배시에 심은 후 3년이 지나면 캐내어 마치 **산양삼인것처럼 둔갑시켜 포장한 후 불법제작한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판매하여 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3검 검거(구속 3)

○ (경남 수사2계) '13. 12월 ~ '14. 3월사이 경남 김해시 소재 농원 창고에서 흑염소 113두를 불법도축 한 후, 정상적으로 도축되어 생산된 염소고기인 것처럼 표시스티커 및 허위도축증명서를 복사하여 부산·경남 50개 음식점에 9,150만원 상당에 해당하여 판매 한 피의자 6명 검거

2. 식품사범 처리실태와 문제점

가. 식품사범 처리의 실태

식품사범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찰, 검찰, 식약처들의 공식통계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품사범에는 소위 '안전사범'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 이하에서 식품사범 처리실태와 관련하여 공식통계자료에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1) 식품사범(불량식품)의 경찰단속 현황

경찰의 불량식품사범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월 8일에서 8월 31일 단속기간 동안 1,840건(3,823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에서 구속 86명, 불구속 3,73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100일 집중단속 이후에는 상시단속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테마별 집중단속을 병행하고 있다.[63] 위반유형으로는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1,215명)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기준 제조·유통(1,049명), 기타 유형(718명),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유통(493명), 무허가 도축 및 병든 가축 제조·유통(348명)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에서 단속 수사한 위해사범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표 2-2〉 불량식품사범 현황(2013년 9월말 기준)

유 형	검거별		조치별	
	건	명	구속	불구속
계	1,840	3,823	86	3,737
위해식품제조·유통	455	1,215	47	1,168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유통	259	493	22	471
무허가 도축·병든 가축 제조·유통	198	348	6	342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기준 제조·유통	504	1,049	7	1,042
기타	424	718	4	714

* 자료: 경찰청 국회제출자료(http://www.police.go.kr/assembly/main.do).

또한, 식품사범 단속과 관련하여 경찰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에서 불량식품 수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관서별 지능수사요원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불량식품 수사전담반 현황은 전국에 걸쳐 약 1,225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 중

63) 경찰청 국회제출자료(http://www.police.go.kr/assembly/main.do).

에서 경기와 서울지역에서 불량식품전담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과 경북, 전남지역의 불량식품 전담반이 비교적 원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경찰의 불량식품 수사전담반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수	1,225	142	105	55	42	53	46	29	185	91	32	62	60	118	107	86	12

* 자료: 경찰청 국회제출자료(http://www.police.go.kr/assembly/main.do)

한편, 경찰에서는 불량식품사범 검거에 있어서 실무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개념 정리, 법령 및 판례, 사례분석, 수사요령, 관계기관 연락처 등을 총 망라한 「부정·불량식품 수사매뉴얼」을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배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식약처와 MOU를 체결하여 업무 중복이나 협업 분야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정상 추진 중에 있는바, 경찰은 단속 대상을 월매출 500만원 이상의 제조·유통사범으로 한정한 점은 식품사범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세업체들의 경제적 여건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사범 단속현황

국내 식품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41.70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50%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식품생산액은 113.93조원으로 전년대비 9.26%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12.21조원으로 전년대비 4.14%, 수입액은 39.98조원으로 3.11% 증가하였다. 농업 및 수산업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61.65조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55%로 나타났다. 축산업 역시 시장규모는 약 20.97조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5.3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64]

이와 같이 식품산업은 의식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시간이 흐를수록

6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2013, 36-40면.

집중되어가고 그 시장규모가 함께 성장되어 가고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와 통제가 없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국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에 대한 감시 및 위반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30,503건의 행정청 감시가 이루어졌고, 3,0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위반내용으로는 성분규격 위반이 53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474건, 표시기준 462건, 시설위반 340건, 건강진단 위생기준 171건, 자기품질 154건, 위해우려식품 116건, 허위과대광고 94건, 보존 및 유통기준 29건, 무허가(무신고) 1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한 식품섭취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식품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영업자들은 실제 위해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나타났는바, 영업자들은 여전히 식품의 위해성이 가져오는 추상적 위험성과 심각성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이 식품범죄의 유입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표 2-4〉 식품제조·가공업체 감시 및 위반건수

구분	감시	위반내용											
		소계	무허가 무신고	위해 우려 식품	시설 위반	성분 규격	유통 기준	허위 과대 광고	표시 기준	자기 품질	건강 진단 개인 위생	영업자 준수 사항	기타
2012년	30,503	3,018	15	116	340	538	29	94	462	154	171	474	625
2011년	35,962	3,318	31	69	308	692	19	114	500	167	155	356	689
2010년	35,446	8,580	57	284	888	1,655	69	267	1,318	439	448	1,177	1,760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2013, 116-117면.

한편, 최근 부정·불량식품 신고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내역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8,810건이 신고 접수되었다. 이 중에서 허위신고가 5,424건(61.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고발 1,667건(18.9%), 행정처분 등의 조치(19.5%)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중에는 시정명령이 1,447건(84.1%)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영업정지 221건(12.6%), 허가취소 35건(2.0%), 품목(류) 정지 16건(0.9%) 순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처분 대부분은 시정명령 내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건수의 상당 부분이 허위신고(영업신고 및 허가) 등 행정청의 확인 없이 행해지는 식품접객업이나 소규모 업종에 해당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5〉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 건수

구분	신고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허위신고	고발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품목정지	시정명령		
2012년	8,810	1,719	35	221	16	1,447	5,424	1,667
2011년	8,411	1,927	37	193	55	1,642	5,036	1,448
2010년	8,050	2,061	99	133	26	1,803	3,299	1,487
2009년	4,538	1,256	3	209	70	974	2,618	323
2008년	2,967	1,289	13	136	17	1,123	630	283
2007년	885	338	2	70	16	250	372	148
2006년	924	488	2	65	17	404	244	151
2005년	8,505	4,887	68	579	89	4,151	2,272	1,228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2013, 170-171면.

3) 검찰의 식품사범 처리현황

식품사범의 발생 및 검거건수를 살펴보면, 일반 형법범이나 특별형법범에 비해 최근 10년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발생건수에 대비한 검거건수는 매년 95%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식품사범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사범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은 2002년 22,691건이 발생하였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에는 12,211건으로 줄어들었고,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사범 또한 감소추세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 증가하였다가 2011년에는 88건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사범 발생건수는 2002년 788건이던 것이 2005년 1,553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06년부터 감소하여 2011년에는 133건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형법 vs 특별형법 vs 식품사범 발생 및 검거건수 비교

종류 / 연도	형법			특별형법			식품사범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2011년	997,263	678,817	740,372	984,831	666,747	727,407	12,432	12,070	12,965
2010년	939,171	710,146	820,074	925,952	697,032	807,362	13,219	13,114	12,712
2009년	993,136	836,099	1,162,426	977,867	820,966	1,143,952	15,269	15,133	18,474
2008년	897,536	709,117	1,014,392	884,745	696,436	1,000,310	12,791	12,681	14,082
2007년	845,311	667,959	958,804	832,477	655,245	945,189	12,834	12,714	13,615
2006년	828,021	640,296	849,482	811,739	624,151	832,662	16,282	16,145	16,820
2005년	825,840	634,244	856,072	808,274	617,016	837,888	17,566	17,228	18,184
2004년	826,886	667,503	725,726	802,833	643,823	707,249	24,053	23,680	18,477
2003년	857,488	681,488	1,014,131	834,696	658,882	989,564	22,792	22,606	24,567

* 자료: 범죄분석(2004년–2012년), 대검찰청.

** 주: 특별형법은 식품사범(식품위생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을 제외한 수치에 해당함.

〈표 2-7〉 식품사범 발생·검거현황(2002년~2011년)

구분 / 연도	식품위생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 인원
2002년	22,691	22,683	24,489	3,649	3,664	3,715	788	761	879
2003년	19,362	19,210	20,963	2,823	2,773	2,906	607	623	698
2004년	19,848	19,583	14,562	3,011	2,994	2,997	1,194	1,103	918
2005년	14,072	13,703	14,405	1,931	1,935	2,103	1,563	1,590	1,676
2006년	13,894	13,751	14,328	1,646	1,660	1,648	742	734	844
2007년	10,841	10,749	11,551	1,473	1,449	1,498	520	516	566
2008년	10,448	10,323	11,538	1,777	1,790	1,836	566	568	708
2009년	12,212	12,093	15,322	2,590	2,580	2,625	467	460	527
2010년	10,629	10,518	10,722	2,219	2,224	1,591	371	372	399
2011년	12,211	11,854	12,743	88	87	92	133	129	130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3년–2012년) 재구성.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검찰처리 인원 및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기준 8,125건 기소되었고, 이 중에서 구공판 139건(구속 15건, 불구속 124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구약식 사건이 7,986건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사건으로는 기소유예가 3,365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기소사건의 평균을 보면 기소 7,965건(68.5%), 불기소 3,499건(30.1%)으로 나타났고, 기소사건 중에서 구약식 7,843건(98.5%), 구공판 120건(1%)으로 검찰에 송치된 식품위해사범 중에서 1%의 인원만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는 있지만, 단속과 수사 단계를 거쳐 공판에 들어가기까지 식품범죄 사안은 심각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처분이나 구약식 사건으로 처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2-8〉 식품사범(식품위생법) 검찰처리 인원 및 구성비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073	22,002	1,301	11,398	11,364	12,077	16,239	12,332	14,289	13,167
기소	소계		1,594	16,868	865	8,726	8,865	8,964	10,227	6,852	8,568	8,125
	구공판	구속	28	81	7	17	14	13	17	10	10	15
		불구속	35	153	28	74	120	129	126	101	108	124
	구약식		1,531	16,634	816	8,635	8,731	8,822	10,084	6,741	8,450	7,986
소년보호송치			-	-	-	-	-	-	1	1	1	7
가정보호송치			-	-	-	-	-	-	-	-	-	-
불기소	소계		479	4,673	424	2,410	2,349	2,972	5,841	5,355	5,575	4,914
	기소유예		116	2,360	253	1,179	1,062	1,644	3,896	3,775	3,941	3,365
	혐의없음		29	1,458	112	926	796	980	1,535	1,323	1,317	1,278
	죄가안됨		11	1	1	1	-	1	1	2	1	4
	공소권없음		149	854	58	304	491	347	409	255	316	267
기소중지			-	375	21	200	129	89	130	100	105	97
참고인중지			174	85	5	62	21	52	40	24	40	24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2004년-2013년).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검찰처리 인원 및 구성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기준 757건 기소되었고, 이 중에서 구공판 15건(구속 3건, 불구속 12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구약식 사건이 742건으로 나타났다. 불기소 사건으로는 기소유예가 56건으로 가장 많이 나

타났고, 혐의 없음 48건, 공소권 없음 2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약 98% 이상이 구약식 사건으로 진행되었고, 불기소 사건에 있어서는 약 52% 이상이 기소유예 처리되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검찰처리 인원 및 구성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33건 기소되었고, 구약식 사건 33건으로 처리되었다. 불기소 사건으로는 기소유예가 4건, 죄가 안됨 2건, 혐의 없음 1건순으로 나타났다.[65]

식품사범에 대한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 대부분의 사건이 형집행 종료, 기소유예, 집행유예, 기타 미상 사건으로 분류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 및 미상 사건을 제외하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사범들은 초범보다는 재범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2년의 경우 미상 사건을 제외한 식품위생법 위반자들의 재범률은 약 65%(9183건중 6005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구분		계	초범	재범													미상
				소계	즉결심판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중	보석형집행정지중	가석방	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기타	
A	'12	13,503	3,178	6,005	24	371	2	2	11	9	25	24	2	4,418	-	1,117	4,320
	'11	14,289	5,407	5,883	17	394	2	4	15	12	22	18	-	4,383	-	1,016	2,999
	'10	12,332	5,503	5,797	6	307	2	3	9	12	33	6	-	4,389	8	1,022	1,032
	'09	16,239	7,143	7,885	20	424	3	2	5	9	57	5	1	5,817	17	1,525	1,211
B	'12	17	6	6	-	-	-	-	-	-	-	-	-	4	-	2	5
	'11	87	17	9	-	-	-	-	-	-	-	-	-	8	-	1	61
	'10	864	490	143	-	8	-	-	1	-	-	1	-	123	-	10	231
	'09	3,206	2,629	536	3	31	-	3	1	-	3	-	-	438	-	57	41
C	'12	40	14	26	-	3	-	-	-	-	-	-	-	22	-	1	-
	'11	148	39	102	-	1	-	-	-	-	1	1	-	89	-	10	7
	'10	438	151	267	-	7	-	-	1	-	2	-	-	217	-	40	20
	'09	672	225	371	-	6	-	-	-	-	2	-	-	301	-	62	76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0년–2013년.

** 주: 형집행 종료는 재산형을 포함한 수치임(A: 식품위생법, B: 농산물품질관리법, C: 축산물가공처리법).

65)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년-2013년 재구성.

4) 법원의 식품사범 처리현황

법원의 범죄백서에 의하면, 식품사범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을 식품사범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최근 5년간 식품사범에 대한 법원의 제1심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2008년 1,505건이 접수되었고 2012년에는 1,144건 접수되는 등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범은 2008년 430건 접수되어 2011년에는 49건, 2012년에는 4건이 접수되는 등 신고접수가 9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사범의 경우에는 2008년 64건이 접수되었고 2012년에는 66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5년간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감 변동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식품사범에 대한 제1심 판결 결과는 대부분 재산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기타 선고유예와 유기징역 그리고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특히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있어서는 면소판결이나 관할위반 그리고 공소기각, 형의 면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표 2-10〉 식품사범 제1심 처리결과

구분 / 죄명	년도	금년 접수	처리														
			합계	판결												소년부 송치	기타
				사형	자유형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관할위반	공소기각		
					무기	유기	집행유예										
식품 위생법	2008	1,505	1,449	-	-	12	61	-	998	29	27	1	3	-	2	-	316
	2009	1,431	1,414	-	-	9	83	-	975	52	24	-	8	-	1	-	262
	2010	1,329	1,547	-	-	8	95	-	982	52	37	-	3	-	1	-	369
	2011	1,338	1,261	-	-	5	72	-	774	30	25	-	2	-	1	-	352
	2012	1,144	1,166	-	-	15	56	-	753	51	22	-	-	-	-	-	269
농산물 품질 관리법	2008	430	401	-	-	16	82	-	226	18	7	-	-	-	-	-	52
	2009	642	586	-	-	12	88	-	369	11	14	-	-	-	-	-	92
	2010	499	585	-	-	7	52	-	379	21	7	-	-	-	-	-	119
	2011	49	115	-	-	2	11	-	68	3	16	-	-	-	-	-	15
	2012	4	6	-	-	-	4	-	1	-	-	-	-	-	-	-	1
축산물 가공 처리법	2008	64	50	-	-	3	8	-	36	1	-	-	-	-	-	-	2
	2009	71	66	-	-	6	19	-	32	-	-	-	-	-	-	-	9
	2010	54	65	-	-	2	8	-	34	7	6	-	1	-	-	-	7
	2011	77	75	-	-	17	7	-	34	-	4	-	-	-	-	-	13
	2012	66	67	-	-	2	6	-	47	1	3	-	-	-	-	-	8

*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9년–2013년 재구성.

** 주: 범죄백서에 의하면, 보건범죄는 일반적으로 식품사범(식품위생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의약사범(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범을 통칭함.

식품사범에 대한 항소심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제1심에 대한 판결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는바, 대부분 재산형과 선고유예 및 무죄가 선고되었다. 자유형으로는 집행유예와 유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대한 일부 사건이 면소 결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항소기각에 있어서는 대부분 변론을 경유하였고, 항소 취하와 기타 결정 사건도 상당부분 나타났다.

〈표 2-11〉 식품사범 항소심 처리결과

구분 / 죄명	년도	금년 접수	처리																		
			합계	판결															소년부송치	항소취하	기타
				파기												항소기각					
				자판											환송	이송					
				사형	자유형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면소	공소기각			변론경유	변론불경유			
					무기	유기	집행유예														
식품위생법	2008	208	204	-	-	-	8	-	35	3	5	-	-	-	-	-	112	14	-	8	19
	2009	156	155	-	-	2	10	-	16	5	3	-	-	-	-	-	84	4	-	4	27
	2010	249	250	-	-	-	12	-	37	4	7	-	1	-	-	-	152	2	-	8	27
	2011	177	185	-	-	1	5	-	32	1	6	-	-	-	-	-	112	-	-	6	22
	2012	199	213	-	-	4	8	-	3	3	8	-	-	-	-	-	128	1	-	1	17
농산물품질관리법	2008	75	72	-	-	1	11	-	15	1	-	-	-	-	-	-	33	3	-	5	3
	2009	97	100	-	-	2	11	-	23	2	1	-	-	-	-	-	50	-	-	3	8
	2010	92	90	-	-	3	3	-	13	3	-	-	-	-	-	-	57	1	-	1	9
	2011	33	43	-	-	-	1	-	7	3	1	-	-	-	-	-	28	-	-	2	1
	2012	6	14	-	-	1	3	-	1	-	-	-	-	-	-	-	7	-	-	1	1
축산물가공처리법	2008	8	7	-	-	-	-	-	-	1	-	-	-	-	-	-	4	-	-	1	1
	2009	9	4	-	-	-	3	-	4	-	1	-	-	-	-	-	3	-	-	1	2
	2010	27	24	-	-	2	5	-	-	-	-	-	2	-	-	-	15	-	-	-	-
	2011	21	10	-	-	-	1	-	1	-	-	-	-	-	-	-	8	-	-	-	-
	2012	8	21	-	-	3	3	-	1	1	-	-	-	-	-	-	11	-	-	-	2

*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9년-2013년, 재구성.

식품사범에 대한 법원의 상고심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사건의 경우 대부분 상고기각 판결이 났고, 2012년의 경우에만 4건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이 상고기각 및 기타 판결로 처리되었고, 상고취하 및 파기환송 판결도 일부 결정되었다.

〈표 2-12〉 식품사범 상고심 처리결과

구분 / 법명	년도	금년 접수	처리															
			합계	판결												상고 취하	기타
				파기														
				자판														
				사형	자유형			자격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형의 면제	면소	공소기각	환송	이송	상고기각	
					무기	유기	집행유예											
식품 위생법	2008	42	39	-	-	-	-	-	-	-	-	-	-	-	2	-	32	-	5
	2009	46	44	-	-	-	-	-	-	-	-	-	-	-	3	-	33	-	8
	2010	86	85	-	-	-	-	-	-	-	-	-	-	-	3	-	27	1	54
	2011	45	48	-	-	-	-	-	-	-	-	-	-	-	1	-	33	1	13
	2012	55	58	-	-	-	-	-	-	-	-	-	-	-	1	-	29	2	26
농산물 품질 관리법	2008	-	-	-	-	-	-	-	-	-	-	-	-	-	-	-	-	-	-
	2009	22	11	-	-	-	-	-	-	-	-	-	-	-	-	-	9	-	2
	2010	15	27	-	-	-	-	-	-	-	-	-	-	-	-	-	16	-	11
	2011	11	7	-	-	-	-	-	-	-	-	-	-	-	-	-	7	-	-
	2012	11	15	-	-	-	-	-	-	-	-	-	-	-	4	-	11	-	-
축산물 가공 처리법	2008	-	1	-	-	-	-	-	-	-	-	-	-	-	-	-	1	-	-
	2009	9	4	-	-	-	-	-	-	-	-	-	-	-	-	-	4	-	-
	2010	9	8	-	-	-	-	-	-	-	-	-	-	-	4	-	1	1	2
	2011	4	9	-	-	-	-	-	-	-	-	-	-	-	-	-	9	-	-
	2012	5	6	-	-	-	-	-	-	-	-	-	-	-	-	-	5	1	1

*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9년–2013년, 재구성.

나. 공식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최근 식품사범관련 기관의 공식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식품사범에 대한 용어의 정비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법제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식품사범 관리 기관별 문제점을 살펴보면, 경찰의 경우 식품사범 전반에 대해 구속수사가 적게 나타나 범죄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세업체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식품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검찰단계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나 구약식 사건으로 처리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식품사범의 경우 재범률도 높게 나타난 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제4절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조사 실태 및 문제점

1. 양형조사의 목적 및 범위, 방법

가. 양형조사의 목적

현재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조직개편 및 단속 그리고 식품위생법 처벌조항에 기존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제도 이외에 동종범죄를 5년 이내에 재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징역형을 정한 형량하한제와 불량식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의 4배에서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한 부당이익환수제를 포함시키는 개정 등의 대책이 제시되는 등 각종 정책이 마련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으며,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양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식품산업계에서는 경미한 행정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도한 기소로 인한 전과자양산의 문제점과 벌금형 병과, 형량하한제, 부당이익환수제 등의 시행으로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과도한 양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현황에 대한 통계 수집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형조사연구에서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식품사건들의 통계자료 및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수집 및 분석하여 실질적인 식품사건 재판에 대한 양형기준 해당여부와 선고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양형기준 및 식품위생법상 처벌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나. 양형조사의 범위

완벽한 연구를 위해서는 식품관련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기관의 입건자료와 전국 각급법원의 판결문을 전수 조사하여 사건처리현황과 선고형의 적절성 및 양형기준 적용여부 등을 조사했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3

개년간의(2010년부터 2012년) 검찰청 사건 처리현황과 전국 각급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판결문 수집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급법원의 공식적인 협조가 시간관계상 어려운 관계로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판결문 제공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얻었기 때문에 실제 선고된 판결 전체를 포함할 수는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3개년 간 기소된 사건이 총 368건(2010년 111건, 2011년 118건, 2012년 139건)이었으며, 연구를 위해 수집된 판결문은 총 300건으로 82%에 해당하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석에 충분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한편 형사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하여 법원에 접수가 되는 시점에 사건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사건의 발생시점과 선고시점이 일치할 수는 없다는 점도 참고적으로 밝혀두는 바이다.

다. 양형조사의 방법

이 연구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형사 사건에 대한 전국 각급 법원의 판결문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기본적인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양형조사에 있어서 식품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과 관련된 형사정책적 연구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 이 연구에서는 수집된 판결문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식품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통계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범죄분석 자료를 기초로 했으며, 판결문 수집은 대법원 중앙도서관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국 각급 법원에서 3개년간(2010년~2012년) 선고된 판결문에 대한 사건번호를 일일이 기록하여 다시 해당 법원에 신청하여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판결은 재판 진행 중 또는 최근 판결이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는 법원의 통보에 따라 수집이 제한되었다.

2. 식품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

가. 식품범죄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식품범죄는 보건범죄에서 약품범죄와 의료범죄를 제외한 개념으로 특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식품관련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모두 포함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란 제2조 제1호에 따라 '모든 음식물을 말하고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13장에서 식품범죄에 대한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3조 내지 제98조는 개별 범죄에 대한 처벌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0조는 양벌규정이 있다.

결론적으로 식품범죄에 대한 광의적인 개념은 '식품위생에 관한 단속법규 중 식품위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협의의 개념은 '식품을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등에 실해 또는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형벌을 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2) 특징

식품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해악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범죄이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실질적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국민의 정신적 피해가 더 큰 것이 다른 범죄와의 차이다. 식품사범은 크게 부정식품사범과 영업과 관련된 사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정식품사범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위해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거나 식품접객사범이 있고, 영업과 관련된 사범은 주로 무등록 또는 무신고 영업에 대한 것이다.

나. 식품범죄의 통계적 현황

최근 16년간 식품위생법위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49,284건에서 1998년 61,652건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대비 검거건수는 전체 평균 99.4%를 기록하고 있다. 즉, 범죄발생이 적발되면 거의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이는 식품산업의 특성상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한 법인형태가 많고, 지속적인 영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표 2-13〉 식품사범 발생·검거현황 (1997년~2012년)

	식품위생법위반		
	발생건수(건)	검거건수(건)	검거인원(명)
1997	49,284	49,033	51,775
1998	61,652	60,405	63,234
1999	41,565	42,618	47,100
2000	29,704	29,576	31,809
2001	28,934	29,129	31,773
2002	22,691	22,683	24,489
2003	19,362	19,210	20,963
2004	19,848	19,583	14,562
2005	14,072	13,703	14,405
2006	13,894	13,751	14,328
2007	10,841	10,749	11,551
2008	10,448	10,323	11,538
2009	12,212	12,093	15,322
2010	10,629	10,518	10,722
2011	12,211	11,854	12,743
2012	13,137	13,061	13,290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식품사범 중 여성범죄자가 2006년도 50%미만에서 2012년 약70%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자에 대한 여성의 비가 약 16%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여성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점과 식품사범에 대한 잦은 단속으로 부부간에 실제운영은 남자가 하지만 배우자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단속 적발

시 양형부과에 이용하고자 하는 이유로 추측이 가능하다.

〈표 2-14〉 여성범죄자 발생현황 (2006년~2012년)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명)	6,381	6,657	7,348	10,110	7,764	8,898	8,381

* 주: 대검찰청 범죄분석

또한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전체건수의 25.6%를 기소유예로 불기소하고(전체 형사범죄의 경우 18%), 전체 13,167명의 식품사범에 대해서 60.7%를 약식 기소했고(전체 형사범죄의 경우 33%), 구공판의 경우는 단지 1%(전체 형사범죄의 경우 7%)에 지나지 않았다.

〈표 2-15〉 식품위생법 위반 사범 검찰처리 인원 및 구성비(2010년~2012년)

구분 \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2,332 (100)	14,289(100)	13,167(100)
기소	소계	6,852(55.6)	8,568(60.0)	8,125(61.7)
	구공판	111(0.9)	118(0.8)	139(1.1)
	구약식	6,741(54.7)	8,50(59.1)	7,986(60.7)
소년보호송치		1(0.0)	1(0.0)	7(0.1)
가정보호송치		-	-	-
불기소	소계	5,355(43.4)	5,575(39.0)	4,914(37.3)
	혐의없음	1,323(10.7)	1,317(9.2)	1,278(9.7)
	기소유예	3,775(30.6)	3,941(27.6)	3,365(25.6)
	죄가안됨	2(0.0)	1(0.0)	4(0.0)
	공소권없음	255(2.1)	316(2.2)	267(2.0)
참고인 중지		24(0.2)	40(0.3)	24(0.2)
기 소 중 지		100(0.8)	105(0.7)	97(0.7)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 주: ( )안은 분포백분율

3. 대법원 양형기준과 식품 형사사건 판결문의 통계 자료의 관계

가. 대법원 양형기준의 내용

식품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1. 3. 21. 의결되어 2011. 7. 1. 시행 된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허위표시와 유해식품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면서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3가지 유형, 유해식품에 대해서는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허위표시에 대한 3가지 유형은 5천만원미만, 5억 초과와 그 중간으로 범주가 10배에 달하는 간격을 보여 현실적으로 매출 10억 원 이하 중소규모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식품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표 2-16〉 허위표시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미만)	~8월	4월~1년	10월~1년 6월
2	일반유형	4월~1년	10월~2년	1년 6월~3년 6월
3	대규모 유형 (5억원 초과)	8월~2년	1년 6월~3년	2년~4년 6월

또한 유해식품에 대한 5가지 유형은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식품 등의 제조,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 범죄는 기준·규격 위반 식품 제조 또는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가 전부이므로 이에 대한 유형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 대상에 식품사범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업자 미신고 및 무등록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2-17〉 유해식품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식품 등의 제조	8월~1년 6월	1년~2년 6월	2년~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1년~2년	1년 6월~3년	2년 6월~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1년 6월~3년	2년~4년 6월	4년~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2년 6월~4년	3년 6월~6년	5년~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7년	5년~8년	7년~10년

나. 식품사범 판례의 특징

전국 각급법원에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접수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대략 전국 각급 법원을 통해서 식품사건에 대해서 매년 1,000여건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으며, 사건은 크게 검찰이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진행되는 '고정'이 약 700여건(약 70%), 단독사건인 '고단'이 약100여건(10%), 2심 사건인 '노'가 약 150여건(15%), 합의부 사건인 '고합' 등 기타가 나머지 50여건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정'사건은 대부분 식품접객업소의 청소년 고용 또는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불량식품'과 관련된 국민건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선 전국 각급 법원의 판결문 제공서비스를 통해서 취합한 자료는 전체 300건이었다. 대검찰청 통계자료는 입건일이 기준이고, 본 자료는 입건이후 수사를 통해 기소되거나 피고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두 가지 자료가 일치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구공판' 건은 2010년 111건, 2011년 128건, 2012년 139건 총 368건인데, 본 연구를 통해서 취합한 판결문은 2009년 34건, 2010년 99건, 2011년 103건, 2012년 64건 총 300건이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 사건을 배제하였으며, 오직 1심 단독 및 합의부 사건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했다. 전체 300건 가운데 면소가 1건, 무죄가 6건 이었고,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294건이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총 17건이었다.

다. 판결문 자료 분석결과

1) 전국 지방법원별 사건 내역

전체 300개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84건, 2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제조업체는 경기도와 충청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강남구에 방문판매업과 다단계판매업 등 판매회사가 밀집해 있으며, 식품사건 전담검찰청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목동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의 입건이 모두 서울에 위치한 5개 지방법원에 접수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 2-18〉 전국 지방법원별 사건통계

지역	개수	백분율
서울	84	28.0%
부산	34	11.3%
수원	32	10.7%
대전	27	9.0%
대구	26	8.7%
인천	24	8.0%
의정부	17	5.7%
광주	16	5.3%
창원	10	3.3%
전주	8	2.7%
청주	8	2.7%
춘천	6	2.0%
울산	4	1.3%
제주	4	1.3%
합계	300	100.0%

2) 사물관할 내역

전체 300건 중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이 290건으로 96.7%를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단독판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나머지 10건은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으로 추정된다. 합의부에서 진행된 10건중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없으며, 전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마황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제품'을 제

조·판매하다 기소된 사건만 유일하게 벌금형이 병과되었다. 이 사건은 판매액인 1억6천만원을 전부 벌금으로 선고한 것이 특이했다.

〈표 2-19〉 사물관할

사건기호	횟수	백분율
고단	290	96.7%
고합	10	3.3%
총합계	300	100.0%

3) 평균 처벌 수준

전체 300건에 대해서 벌금형, 징역형 및 그에 대한 집행유예의 평균 수치를 계산해 보면, 평균 벌금액수가 599만원이었고, 평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2.5월에 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징역형의 2배수를 부과하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판결처럼 징역 8.8월에 집행유예 24월, 창원지방법원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4월을 선고하는 등 재판부에 따라 최대 4배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0〉 평균 처벌 수준

평균 벌금액수(만)	평균 징역형(월)	평균 집행유예(월)
599	8.8	22.5

4) 양형기준 대상 재판

전체 300건 중 대법원 양형기준을 적용해야하는 판결은 93건으로 30.9%였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판결문에 적시된 것은 8건으로 전체 건수대비 8.6%에 불과했다. 특히 8건 가운데 단독사건이 6건이고, 합의부 사건이 2건으로 나타났다. 물론 연구조사범위가 판결문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실제 담당판사가 판결문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양형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권리보호측면에서도 어떤 근거로 양형이 설정되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양형기준이 제정된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판결문에는 반드시 양형기준 적용여부 및 근거에 대해서 명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표 2-21〉 양형기준 대상 재판 통계

적용대상판결	실제적용판결
93	8

5) 평균 판매금액 및 범행기간

전체 300건에 대한 평균 판매금액은 약 2억6700만원, 평균 범행기간은 11개월로 나타났다. 결국 식품사범에 대한 범죄 검거율이 100%에 가깝고, 경쟁업체나 소비자의 신고, 관련기관의 수사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1년 이내에 적발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22〉 평균 판매금액 및 범행기간

평균 판매금액(만)	평균 범행기간(개월)
26,798.5	11

전체 300건에 대해서 판매금액을 1억원이하, 1억원초과부터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로 구분할 때 평균 벌금형과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는 아래 <표 2-22>과 같았는데, 판매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징역형과 그에 따른 집행유예가 늘었기는 하나 벌금형의 경우 10억초과보다 오히려 1억원초과부터 10억원이하의 판매금액이 더 컸는데, 이는 10억초과의 경우 단순 벌금형보다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형에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고, 병과시에는 벌금형이 감액되는 것이 반영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표 2-23〉 판매금액에 따른 평균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판매금액	평균 : 징역형(월)	평균 : 집행유예(월)	평균 : 벌금형(만)
1억이하	8.3	22.3	698.1
10억이하	11.9	23.6	2,423.3
10억초과	16.4	30	1,416.7

범행기간을 1년이하와 1년초과부터 2년이하, 2년 초과로 구분할 때 징역형과 그에 따른 집행유예, 벌금형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년초과시에는 벌금형의 금액이 3배가까이 증가하는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표 2-24〉 범행기간에 따른 평균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기간

범행기간	평균 징역형(월)	평균 집행유예(월)	평균 벌금형(만)
1년 이하	8.1	22.4	485.2
1년 초과~2년 이하	11	23.4	797.7
2년 초과	12.4	25.1	2,444.3

6) 초범비율과 평균 선고된 사회봉사시간

전체 300건 중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된 사건은 62건이며, 선고된 평균 사회봉사시간은 130.6시간이었다. 또한 전체 301건 중 초범이라고 판결문에 적시된 사건은 88건으로 약 30%에 이르렀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초범여부에 대해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재범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표 2-25〉 초범 횟수

초범여부	횟수	백분율
0	87	29.0%
x	213	71.0%
총합계	300	100.0%

〈표 2-26〉 평균 사회봉사 시간

건수	평균 사회봉사(시간)
62건	130.6

7) 선고유예와 무죄

전체 300건 중 선고유예는 2건이었고, 무죄선고는 6건으로 2%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의 무죄비율인 1.5%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선고유예가 선고된 2건은 농산물의 과대광고로 인한 벌금 50만원형과 일반음식

점에서 노래방기기를 설치한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의 건으로 역시 벌금 50만원형이었다. 무죄가 선고된 6건은 증거불충분이 2건, 고의성 결여 1건 등이었고, 이 밖에 면소판결이 1건 있었는데, 이는 영업범의 특성상 동종행위를 반복하는 집합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식기소된 기존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서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표 2-27〉 무죄 및 선고유예

선고유예	무죄
2	6

8) 반성 여부

반성여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감경인자로 적시되어 있으며, 실무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하는 형태나 구두변론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전체 300건 중 판결문을 통해서 이런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한 사건은 131건으로 43.7%였다. 다만 판결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을지라도 양형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표 2-28〉 깊은 반성을 한 횟수

깊은 반성	건수	백분율
o	131	43.7%
x	169	56.3%
총합계	300	100.0%

반성여부에 따른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를 조사해 보니 판결문에 깊은 반성이 인정된 경우 평균 벌금액수는 약 800만원인데 비해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1,260만원으로 50%이상 차이가 있었고, 평균 집행유예 역시 인정된 경우 22월, 인정되지 않은 경우 약 26월로 20%가량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판매금액, 범죄기간 등 다른 요소가 고려되어야 정확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재판을 담당하고 양형을 결정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대한 인정여부는 양형 고려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추측이 다르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2-29〉 반성여부에 따른 평균 벌금형 및 평균 집행유예

	평균 벌금형(만)	평균 집행유예(월)
깊은 반성 O	804.3	22
깊은 반성 X	1,257.1	26.4

9) 위반 조항

위반조항은 두 개 이상을 위반하여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들이 10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당 법령 조항상 위반 건수의 합은 300건을 초과하게 되었다. 식품위생법에 대한 것으로 제37조 영업자 허가 등 위반이 141건으로 전체 44.3%를 차지했고, 제13조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위반이 40건,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위반 33건, 제4조 및 제7조 위해식품 및 기준규격 위반이 각각 27건, 30건 등이었다. 이 밖에 제10조 허위표시,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

〈표 2-30〉 위반조항 적용횟수

위반조항	횟수	백분율
4	27	8.5%
6	4	1.3%
7	30	9.5%
10	18	5.7%
13	40	12.7%
19	1	0.3%
22	4	1.3%
25	1	0.3%
31	6	1.9%
36	2	0.6%
37	141	44.3%
39	1	0.3%
42	3	0.9%
44	33	10.4%
51	1	0.3%
75	2	0.6%
79	2	0.6%
93	1	0.3%
총합계	317	100%

* 두 개 조항이상을 위반하는 경우 중복하여 표시함.

하지만 이 중 제4조[66], 제6조[67], 제7조[68], 제10조[69], 제13조[70], 제93조[71]만이

---

66)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67)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68)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69)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제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0)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

양형기준 적용대상이며, 앞선 통계와 같이 전체 110건으로 36.7%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영업자에 대한 위반과 나머지 부분이 이 6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조차 없어 법원에 따라 판결 선고 범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표 2-31〉 위반조항 적용횟수(중복포함)

위반조항	횟수	백분율
4	25	8.3%
6	3	1.0%
7	24	8.0%
10	13	4.3%
13	36	12.0%

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1.8.4., 2013.3.23.>

71)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6.7.>

1. 마황(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섬수)
7. 백선피(白鮮皮)
8. 사리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가공·수입·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6.7.>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3.7.30.>

위반조항	횟수	백분율
19	1	0.3%
22	4	1.3%
25	1	0.3%
31	5	1.7%
36	1	0.3%
37	137	45.7%
39	1	0.3%
42	3	1.0%
44	31	10.3%
51	1	0.3%
75	2	0.7%
79	1	0.3%
93	1	0.3%
7, 10	1	0.3%
7, 13	1	0.3%
4, 37	1	0.3%
37, 44	1	0.3%
4, 7, 13	1	0.3%
6, 10, 13	1	0.3%
7, 10, 37	1	0.3%
79, 77, 31	1	0.3%
7, 10, 13, 44	1	0.3%
7, 10, 36, 37	1	0.3%
총합계	300	100.0%

*개별 사건별로 위반 사항을 표시함.

개별조항별로 평균 판매금액과 평균 범행기간자료를 보면 허위표시와 과대광고 위반인 제10조 및 제13조의 평균 판매금액이 가장 컸으며, 특이한 것은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제4조 내지 제7조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짧은 범행기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제10조 및 제13조는 주로 판매회사가 위반하는 것이나 제4조 내지 제7조는 제조 또는 제조·판매회사가 적발되는 것과 연관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개별조항별로 처벌수준을 조사해 보면 평균 징역형 및 그에 따른 집행유예의 경우 제4조, 제10조, 제13조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은 제4조와 제7조가 다른 위반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표 2-32〉 위반조항별 평균 판매금액과 범행기간

위반 조항	평균 판매금액 (만)	평균 범행기간 (월)	평균 징역형 (월)	평균 집행유예 (월)	평균 벌금형 (만)
4	24,761	18.4	12.3	24.6	1,654
6	29,875	34.8	18	24	500
7	14,237	19.4	11.2	24.6	2,147
10	56,729	16.7	13.1	25.5	1,114
13	63,466	11	10.2	24	930
19		53	8	24	500
22	315	3.6	18	36	143
25		5			30
31	8,760	0.4	8	24	225
36		0.17			50
37	18,068	9.9	7.2	21.3	393
39	729	4	6	24	
42	462	0.8	7	24	260
44	6	2.2	6.5	21.8	110
51	12	0.03			500
75	1.7	0.5	4	12	150
79		0.03			700
93	10	0.03	8	24	20
7, 10	1,050	8	10	24	2,200
총합계	26,799	11.1	9.3	22.8	646

라. 양형기준 적용 판결문 분석

<표 2-33>에 따르면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전체 300건의 판결문 가운데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총 93건이었으나 실제로 적용여부가 명시된 판결문은 8건에 불과했다. 이 8건은 선고일이 모두 2012년이고 3건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다.

전체 8건 중 단독사건이 5건, 합의부 사건이 3건이었으며, 평균 벌금형은 3,625만원, 평균 징역 13.3월에 그에 따른 집행유예는 28.8월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조항은 제13조 위반이 5건이었고, 제7조 위반이 3건이었다. 초범은 6건으로 나타났으며, 깊은 반성을 인정했거나 판결문에 명시한 사건은 4건이었고, 평균 범행기간은 38개월이었다.

〈표 2-33〉 양형기준 적용판결문 내역

법원	기호	징역형 (월)	집행유예 (월)	벌금형 (만)	위반조항	판매금액 (만)	초범 여부	깊은 반성	범행기간 (개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고합	18	36	5,000	7, 10, 36, 37	9,600	o	x	6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고합	18	36	5,000	4, 7, 13	30,900	o	x	60
대전지방법원	고단	10	24	1,500	7	10,000	o	x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고단	12	24		13	42,000	x	o	3
부산지방법원	고단	12		3,000	13	235,000	o	o	34
서울중앙법원	고단	18			6	64,400	x	o	7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고단	8			13	-	o	x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고단	10	24		13	49,800	o	o	48
평균값		13.3	28.8	3,625		63,100			38

4. 식품사범 처리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

1) 미진한 기소율

2010년부터 2012년 3개년간 전체 식품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 59.1%로 낮아보이지 않으나 대부분이 '구약식' 기소이고, 실제 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기소율은 2010년 0.9%, 2011년 0.8%, 2012년 1.1%로 평균 0.93%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수위를 미리 판단해서 약식기소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에 대해 대부분의 피고인들도 이의신청없이 받아들여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는 형국을 취하고 있다.

결국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첫째는 식품위생법의 처벌조항이 실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보다 높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수사기관 스스로도 식품위생법의 처벌 조항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할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대법원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이 수사기관에서도 무리하다고 판단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의 문제이다. 연평균 13,000여명이 입건되는 상황에서 기소된 59.1%의 피고인들 중 99%가 벌금형이다. 또한 이 가운데 많은 수를 차지하는 영업자준수사항 위반과 단순 미신고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영업자에게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사고발을 의뢰하는 실무관행에 따른 벌금형 전과자 양산은 비록 이중 처벌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실효성에 있어서 큰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이다.

2) 미진한 양형기준 적용

조사된 300건 가운데 양형기준 적용 대상 판결은 93건이었으나, 양형기준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불과 8건이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는 법관을 수범자로 한 규범에 해당한다.[72] 양형기준이 비록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적절한 양형부과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설명을 위해서 위반 조항에 대한 양형기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기준 적용여부를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피고인뿐만 아니라 상소에 의한 상급법원에서도 원심에 대한 판단 시 가장 기본적인 판단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개선방안

1) 처벌 조항 현실화

최근 '시리얼 대장균군 검출' 사건으로 촉발된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결방안은 또다시 처벌 조항의 강화였다. 매번 반복되는 식품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이 '처벌 조항 강화'이다 보니 이미 처벌 조항은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을 정도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현실은 본 연구와 같이 평균 벌금액 600만원, 평균 징역 8.8월에 그에 따른 집행유예는 22.5월에 불과했다. 또한 조사대상 300건의 판결에서 실형을 선

72) 한국 법원조직법 제81조의 6 제1항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라고 규정한다.

고받은 사건 역시 불과 16건이었으며, 평균적으로 징역 15.8월이었다.

결과적으로 3년간 전체 40,000여건의 식품사건 가운데 16건이 실형일 수 있다는 것으로 실형 선고율은 0.04%정도에 불과했다. 법원에서 해당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이미 감경하여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로 처분하기 때문에 실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적용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조항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2) 처벌 조항 세분화

현재 대법원이 제정한 양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 모든 조항이 아니다.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포함한 위해식품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고, 영업허가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것은 제외되어 있다. 본 조사를 통해서 조사된 300건의 판결문 가운데 식품위생법 제37조[73]의 영업허가 등에 대한 조항과 제44

73)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3.23.>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조[74]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조항 위반이 각각 141건, 33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44.3%, 10.4%를 차지했고, 합하면 54.7%에 해당되었다.

조사결과 영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실형 선고가 된 건수도 전체 16건 중 4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낮은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약식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법원 양형기준도 영업자 그중에도 식품접객업에 종사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조·가공업 영업자와 구분하여 처벌 조항을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최근 '시리얼 대장균군 검출' 사건으로 촉발된 식품위생법상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결방안은 또다시 처벌 조항의 강화였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식품 사건에 대한 엄벌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고 이에 대하

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1.6.7.>

74)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제19조에 따라 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1.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여 대책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어서 처벌 조항강화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단의 괴리는 점점 더 깊어져가고 있다.

전체 입건 수 대비 '구공판' 기소율이 불과 1%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실형선고 건수 역시 한해 평균 5.3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판결이 벌금형이며, 평균 벌금형이 불과 599만원이라는 것은 최고 벌금형이 1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처벌 조항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조사된 판결문의 위반조항을 보면 단순 영업자 허가 등에 대한 사항과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등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행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외에 관행적으로 형사고발조치를 병행하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인 검찰에서도 간단한 약식기소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이처럼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등록 및 신고 내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것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만으로 처벌하거나 기존 처벌조항을 보다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실제 처벌을 구하는 수사기관인 검찰조차 재판조차 불필요한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하여 약식기소를 하게 될 정도인 것을 법령 개정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전반적인 처벌조항에 대한 개정 작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위해식품에 대한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93조와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인 제10조 및 제13조에 대한 선고형에 대한 기준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식품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자 등록 및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다보니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법원의 양형기준이 없는 사건에 대해 예단하여 약식기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어려우며,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각급법원 재판부 역시 상황과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적절한 양형이 선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당장 식품위생법의 처벌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보다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영업자 등록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것을 포함시키는 작업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양형기준조차 각급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적용여부를 판결문에 명시

하도록 강력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조사되었듯이 전체 300건 가운데 93건이 현재 양형기준이 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판결문을 통해서 적용여부를 명확히 한 것은 8건에 불과했다. 물론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당연히 양형기준이나 선행 판결 등을 통해서 고심을 할 것이지만 이미 재판부의 편의성과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서 어렵게 제정해 놓은 것을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을 아닐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각급 법원 담당 재판부에 보다 강력한 권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부족하지만 기초자료를 확보한 것에 큰 의미를 두면서, 향후 여건이 된다면 법원행정처 및 전국 각급 법원, 대검찰청 등과 연계하여 식품사범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양형기준의 실제 자료 수집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를 토대로 정밀하게 분석하여 현행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처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가 가능하며, 이런 연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각국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대처방안

박미숙 · 조병인

제3장

각국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대처방안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고, 동시에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법제도 개선에 있어서 현재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식품제조 판매 등의 국제화이다. 오늘날 어느 국가든 수입품이 식탁의 주요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식품안전청의 식품안전백서가 유럽 각국의 식품법 제·개정에 영향을 미치고, 각국은 이러한 논의와 주요전략을 발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이제 각국은 그 스스로 식품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같이 위생이 취약한 국가나 일본의 방사능 사고로 인한 영향 등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식품을 이들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는 각국의 식품안전을 위한 법제도 및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고 현행 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제1절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

1. 미국의 식품안전감시 동향

미국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자료에 의하면, 미국사회에서 식품으로 인하여 매년 약 4천 8백만명(미국인 6명 중 1명)의 국민이 질병에

걸리고 12만 8천명이 입원을 하며 3천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사회의 공공보건정책에 있어서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지만, 대개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75]

미국은 현재 약 12개의 연방정부기관과 50개의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기관에서 40여개의 식품안전법제와 제도를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76] 식품의 제조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감시는 대표적으로 연방법전(U.S.C. 21, §372)에 명시하여 식품 제조·가공·포장·저장 시설의 점검(Inspection), 검사 및 조사(Examination and Investigation)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77] 아울러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식품안전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of 2011: FSMA, Public Law 111-353)을 공표하였고, 이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통제와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고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식품회사의 임원과 개인에게 법규위반에 대한 민·형사 벌금을 부과할 때 회사의 임원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은 지금까지 식품안전규정 위반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만 처벌하였지만, 회사와 개인 모두 민·형사 법령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 회사 임원 개인에 대해 식품산업 범죄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식품안전정책과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래서 기업의 중역들이 회사에 의해 식품의약과 관련된 범죄를 행할 때 의도하지 않은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파크 독트린(Park Doctrine)[78]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79] 식약청(FDA) 역시 특정 상황에서 기업의 임원에 대한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부 규제절차를 변경하였다.[80]

---

75)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Facts, Food Safety Legislation Key Facts, 2011. 7. 12.

76) Adam Stirrup, "A Cautionary Tale about Agroterrorism and the Safety of Imported Produce", 16 San Joaquin Agric. L. Rev. 171, San Joaquin College of Law, 2007, 180면.

77) 미국 연방정부인쇄실(http://www.gpo.gov/fdsys/pkg/USCODE-2010-title21/html/USCODE-2010-title21-chap9-subchapVII-partA-sec372.htm, 2014. 9. 10. 검색)

78) Trent R. Taylor, "United States: 2014 Food Industry Outlook- Criminal Investigations"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285864/food+drugs+law/Criminal+Investigation, 2014. 10. 11. 검색).

79) United States v. Park, 421 U.S. 658 (1975).

80)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at Section 6-5-3. 3.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2012. 4. 24.

또한, 법무부(DoJ) 민사집행부에서는 식품의약품과 화장품의 허위표시나 이와 관련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기업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전가하고,[81] 연방검찰은 파크 독트린에서와 같이 식품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을 표명하였다.[82]

2. 식품안전을 위한 법규 및 조직현황

가. 식품안전 관련 법규와 지침

미국 사회에서 식품안전을 감시하기 위한 관련 법규[83]와 지침은 다양한 기관의 소관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84] 식품위생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s Act : FDCA)이고 식품의 안전과 공중

81)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2012. 4. 24.

82) Trent R. Taylor, "United States: 2014 Food Industry Outlook-Criminal Investigations"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285864/food+drugs+law/Criminal+Investigation, 2014. 10. 11. 검색).

83) FDA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Chapter 2 (FDA Authority), 2012. 7.; Food, Drug and Cosmetics Act of 2012,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of 2011,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FDA Amendments Act of 2007, Dietary Supplement and Nonprescription Drug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6,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4, Minor Use and Minor Species Animal Health Act of 2004, Project BioShield Act of 2004, Pediatric Research Equity Act of 2003, Animal Drug User Fee Act of 2003 (ADUFA),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2002, Best Pharmaceuticals for Children Act of 2002, Medical Device User Fee and Modernization Act of 2002, FDA Modernization Act of 1997, Food Quality Protection Act of 1996, FDA Export Reform and Enhancement Act of 1996, Dietary Supplement Health and Education Act of 1994, Animal Medicinal Drug Use Clarification Act of 1994,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of 1992, Generic Drug Enforcement Act of 1992, Medical Device Amendments of 1992, Safe Medical Devices Act of 1990, Medical Device Reporting as Amend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of 1990, Electronic Product Radiation Control of 1990, Anti-Drug Abuse Act of 1988, Orphan Drug Amendments of 1988, Prescription Drug Marketing Act of 1987,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Amendments of 1984, 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of 1984, Orphan Drug Act of 1983, Infant Formula Act of 1980, Medical Device Amendments of 1976, Public Health Service Act - Biological Products (Part F, Subpart 1), Public Health Service Act - Control of Communicable Diseases (Part G), Mammography Quality Standards Act of 1992, Federal Anti-Tampering Act of 1983,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66, 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mendments of 1996, Sanitary Food Transportation Act of 1990, Pesticides Monitoring Improvements Act of 1988, AIDS Amendments of 1988, Lead-Based Paint Poisoning Prevention Act of 1971, Egg Products Inspection Ac of 1970,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of 1966, Federal Import Milk Act,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Equal Access to Justice Act of 1980, Sentencing Reform Act of 1984,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84) 식품안전정보원, 제외국 식품위생감시 규정 및 제도 등 현황, 2012.

보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은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 FSMA)이다.

1)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의 주요내용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정의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법률에 해당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321(f)에 의해 식품(food)이라 하면, 사람이나 기타 동물에 사용된 식품이나 음료, 씹는 검(chewing gum) 그리고 특정 식품의 구성 물질로써 사용된 물질을 의미한다.[85] 그러나 이 외에도 광범위한 의미로서 식품첨가물(food additive)까지 포함하고 있다.[86] 식품첨가물은 식품의 생산, 제조, 포장, 처리과정, 준비, 운송, 보관에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식품의 특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질은 과학적인 검사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전문가 또는 과학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87]

나)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상 규제식품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에서 분류하고 있는 식품의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위해식품(Adulterated food)이라 하면, (a) 독성 및 비위생적 물질(Poisonous, insanitary, etc., ingredients), (b) 결함, 대체, 추가물질(Absence, substitution, or addition of constituents), (c) 색소첨가물(Color additives), (d) 알콜이나 비영양물질이 포함된 과자류(Confectionery containing alcohol or nonnutritive substance), (e) 부패하거나 썩은 물질이 함유된 올레오 마가린(Oleomargarine containing filthy, putrid, etc., matter), (f) 안전관련 식이보충제 또는 물질(Dietary supplement or ingredient: safety), (g) 제조관리기준관련 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 manufacturing practices), (h) 무허가 식품 재공급 물질(Reoffer of food previously

85) 21 U.S.C. § 321(f).
86) Neal, D. Fortin, Food Regulation: Law, Science, Policy and Practice, A John Wiley & Sons, Inc., Publication, 2009, 38면.
87) 21 U.S.C. § 321(s).

denied admission), (i) 비위생적 운반시설기준 위반(Noncompliance with sanitary transportation practices) 식품을 의미한다.[88]

허위표시식품(Misbranded food)이라 하면, (a) 거짓 또는 허위표시 식품(False or misleading label), (b) 차명 판매식품(Offer for sale under another name), (c) 이미테이션 식품(Imitation of another food), (d) 허위표시 함유물(Misleading container), (e) 포장형태(Package form), (f) 중요정보표시(Prominence of information on label) 등을 의미한다.[89]

다) 규제행위 유형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지행위(Prohibited acts)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 식품을 주간 통상거래(interstate commerce)를 위한 소개나 운반하는 행위, 허위표시식품(misbranded food)이나 위해식품(adulterated food)을 주간 통상거래하거나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 위해 또는 허위표시식품 거래와 관련된 개런티(guaranty) 지급 행위, 무허가 또는 검역이 거절된 식품을 거래하는 행위, 특정 지역에서 허위표시식품이나 위해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권한 없이 식품의 표시(mark, stamp, tag, label)를 위조(forging, counterfeiting, simulating, or falsely representing)·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표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조·훼손·파괴·삭제하는 행위, 올레오마가린 또는 색소가 첨부된 마가린을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90]

라) 벌칙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상 금지행위(21 U.S.C. § 331)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Imprison)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Fine)을 병과 할 수 있다.[91] 또한 금지행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의도를 가지거나 금지행위 위반

88) 21 U.S.C. § 342.
89) 21 U.S.C. § 343.
90) 21 U.S.C. § 331.
91) 21 U.S.C. § 333(a)(1).

에 대한 유죄선고 이후에 행위를 범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Imprison) 또는 10,000달러 이하의 벌금(Fine)을 병과 할 수 있다.[92] 아울러 식품안전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에 대해서도 거액의 민사금전벌(Civil money penalty)이 선고되고 있다.[93]

한편, 2014년 11월 기준 미국 연방양형가이드라인 매뉴얼에 의하면, 식품, 의약품, 농작물, 화장품 등과 관련된 식품범죄에 대해 초범의 경우 범죄 수준(offense level)은 6등급에 해당하여 최대 6개월까지 구금에 처해질 수가 있다. 이에 대한 벌금도 최저 5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선고받는다. 또한 이러한 범죄행위가 사기, 절도, 손괴를 수반하는 행위나 범죄의 심각성 및 은닉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가중 및 감경 처벌받을 수가 있다.[94]

2)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주요내용

식품의 안전 및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최근에 공표된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of 2011, Public Law 111-353)은 2011년 1월 4일 오바마 대통령이 발효한 법으로써 식약청(FDA)으로 하여금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보장하게 하고 공중보건을 더욱 양호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식약청(FDA)이 주로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방안에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고,[95]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보다 식품안전시스템 강화에 의해 식약청(FDA)의 공중보건 보호능력을 강화·확장시킨 법률이라 할 수 있다.[96]

또한, 식품안전의 예방과 위험성을 토대로 한 식품안전기준을 더욱 높은 비율로 준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발생 시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새로운 법집행 권한을 식약청(FDA)에 부여하고 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 식품과 동

92) 21 U.S.C. § 333(a)(2).
93) 21 U.S.C. § 335(b).
94) 미연방양형위원회(http://www.ussc.gov/guidelines-manual/2014-ussc-guidelines-manual 2014. 11. 1. 기준).
95) FDA(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247546.htm, 2014. 10. 1.)
96) FDA,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Chapter 2 (FDA Authority), 2011, 2-4면.

일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을 식약청(FDA)에 공여하고 있으며, 식약청(FDA)이 주 및 지방의 기관과 동반 관계로서 제휴하여 통합적인 국가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식약청(FDA)에게 지시하고 있다. 아울러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예방에 기초한 새로운 식품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식약청(FDA)은 이러한 일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FDA)은 식품업체로 하여금 식품을 강제 수거하도록 명령함과 동시에 새로운 추가사항이 시행될 예정이며, 그 외의 사항들은 식약청(FDA)이 해당 규정과 지침서를 준비하고 공고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상 식약청(FDA)에 새롭게 부여된 임무와 각종 위임사항 및 권한의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 식품안전을 위한 예방 조치사항

식약청(FDA)은 식품공급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과학에 기초한 예방적 통제(science-based preventive controls)를 요구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97]

첫째, 식품시설에 대한 의무적 예방 관리와 관련하여 식품업체가 서면으로 작성한 예방관리 계획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 식품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성 평가, (2) 유해성을 최소화 또는 방지하고자 예방적 조치 또는 관리방법 명시 (3) 해당 업체가 관리에 차질 없이 시행하는지에 대한 감독방법 명시, (4) 감독기록을 일상 업무로서 유지, (5) 해당 업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식품생산의 안전기준을 설정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식약청(FDA)은 과일과 채소의 안전한 생산과 수확을 위하여 과학에 기초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까지도 고려해야 하며, 퇴비와 같은 토양첨가물의 변화, 위생, 포장, 온도 조정, 재배 지역에서의 동물 및 물 등도 다루어야 한다. 셋째, 국제적 식품오염 방지를 위한 권한으로 식약청

97) FDA, Background on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2014. 8. 5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239907.htm).

(FDA)은 특정 취약 지점에서의 식품 공급망 마련과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학에 기초한 조정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국제적인 식품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공고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식품시설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예방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98]

나) 식품안전 검사와 관련 법준수 권고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식품안전 예방관리 기준이 식품안전을 향상시키고, 생산업자와 가공업자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이에 식약청(FDA)은 식품안전을 전반적으로 감독하고 법적 의무 조건의 준수가 분명히 지켜지도록 하며,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식약청(FDA)에 식품안전검사와 관련 법준수를 위한 새롭고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99]

첫째, 필수적 검사 항목으로써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식품의 위험성에 기초하여 식품업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의 빈도수를 설정하고, 고위험성을 지닌 모든 국내 업체는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검사를 받고 재검사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둘째, 기록조회와 관련하여 식약청(FDA)은 식품관련 업체의 식품안전 계획과 계획을 시행한 기록 문서를 포함하여 모든 해당 기록을 조회할 권한을 지닌다. 셋째, 공인시험기관과 관련하여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특정 식품검사를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하도록 요구하며, 식약청(FDA)으로 하여금 미국의 검사기관이 질적으로 높은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험기관 공인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식품안전 재조사와 관련된 비용이나 법률준수를 어긴 사항에 대한 리콜 등과 관련된 식품안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100]

다) 식약청(FDA)의 적극적인 식품관리 대응조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식약청(FDA)의 식품안전 예방 관리에도 불구하고

98) FDA,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Chapter 2 (FDA Authority), 2011, 2-4면.
99) FDA, Background on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2014. 8. 5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239907.htm).
100) FDA,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Chapter 2 (FDA Authority), 2011, 2-4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101] 이와 관련된 식약청(FDA)의 새로운 권한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식품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특정 업체가 식약청(FDA)이 요청한 후에도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자발적으로 수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식품을 수거하도록 강제명령을 발동할 권한을 식약청(FDA)에 부여하였다. 둘째, 행정적 억제 조치를 확장하였는바 식약청(FDA)에 잠재적인 위법 소지가 있는 제품을 행정적으로 억류하기 위하여 더욱 탄력적인 기준을 부여하였다. 셋째, 식약청(FDA)은 특정 업체의 식품이 건강에 심각하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합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업체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식품유통행위가 금지된다. 넷째, 제품의 추적기능을 향상시켰는바 식약청(FDA)은 국내 식품과 수입 식품 모두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 향상되는 체제를 구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식약청(FDA)은 식품에 의한 질병 발생을 예방 또는 통제하기 위하여 식품사용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위험성 식품의 추가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식약청(FDA)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위험성 식품으로 지정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업체에 해당 기록의 보존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공고해야 한다.[102]

라) 수입식품에 대한 통제 및 유관기관 간의 상호협조 체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식약청(FDA)에 수입식품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하고 미국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되도록 보다 확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례가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권한으로 아래와 같다.[103]

첫째, 수입업자의 책임으로써 최초의 수입업자는 외국의 공급업자가 그들이 생산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적절한 예방관리 체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명시적 책임을 진다. 둘째, 제3자 인증으로 자격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외국 식품업

101) FDA, Background on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2014. 8. 5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239907.htm).

102) FDA,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Chapter 2 (FDA Authority), 2011, 2-4면.

103) FDA, Background on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2014. 8. 5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239907.htm).

체가 미국의 식품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인증은 수입식품의 반입을 원활하게 하도록 사용할 수 있다. 셋째, 고위험성 식품의 인증제도로서 식약청(FDA)은 고위험성 수입식품이 미국에 반입되는 조건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기관의 인증서를 첨부하거나 안전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넷째, 수입업자의 자발적 자격 구비 제도로서 식약청(FDA)은 수입업자를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업업자가 수입식품 검사와 반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자격은 무엇보다도 검증된 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을 제공하는 수입업자만으로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반입금지 권한으로서 식약청(FDA)은 외국의 생산업체나 그 업체가 상주하는 국가가 식약청(FDA) 출입을 금지할 경우 동 외국 업체로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식품을 거부할 수 있다.[104]

한편,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국내·외의 다른 정부기관들과 식품안전을 위한공식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식품안전기관이 통합된 방식으로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105] 정부부처의 다기관 간 협조체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와 지방 기관의 법집행능력 향상을 위해 식약청(FDA)은 주 및 지방 기관이 식품안전과 보호기능을 사용하고 증진하도록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아울러 국가적 목표로서의 식품안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성취하고자 주 기관의 기능에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식약청(FDA)에 다년간 보조금을 제공한다. 둘째, 외국 기관의 법집행능력 향상을 위해 식약청(FDA)으로 하여금 다른 국가의 정부와 업체가 그들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계획을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바, 미국의 식품안전 요구 조건에 관한 교육을 외국의 정부와 식품 생산업체에 제공한다. 셋째, 타 기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식약청(FDA)은 국내 식품업체를 상대로 증가된 검사업무를 소화하도록 연방, 주 및 지방의 해당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었다. 또한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국내외의 수산 식품업체는 물론, 수입 수산식품검사와 관련하여 해당

104) FDA,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Chapter 2 (FDA Authority), 2011, 2-5면.
105) FDA, Background on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2014. 8. 5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239907.htm).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청(FDA)이 해당 기관과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한다.[106]

아울러 국가적 농업과 식품보호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며, 검사기관 간에 통합적인 제휴를 구축하고 식품에 기인한 질병감시 체계를 향상하기 위해 각 해당 기관과의 제휴관계가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해산물안전 증진을 위해 식약청(FDA)은 연방기관 간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하고 외국의 장비검사와 배치·시험·테스트 등에 대해서도 협조하여야 한다.[107]

나. 식품시설 검사 및 조사업무 관련 지침

식품의약품청(FDA)는 식품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 및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먼저 FDA가 관리하는 법률준수 여부 평가 시 필요한 참고사항과 미국 내 특정 식품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법률준수 프로그램 사항을 생태학(Biologics : CBER), 생태연구 모니터링(Bioresearch Monitoring : BIMO), 장비 및 방사능(Devices/Radiological Health : CDRH), 의약품(Drugs : CDER), 식품 및 화장품(Food and Cosmetics : CFSAN), 수의학(Veterinary Medicine : CVM) 분야로 구분하여 법률준수 프로그램 지침서(Compliance Program Guidance Manual : CPGM)를 제공하고 있다.[108] 또한 법집행 절차를 위한 규제절차지침(Regulatory Procedures Manual),[109] 특정 식품군별 점검지침,[110] 법률준수 정책지침(Compliance Policy Guides)[111] 등을 마련하고 있다.

---

106) FDA,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Chapter 2 (FDA Authority), 2011, 2-5면.
107) FDA,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Chapter 2 (FDA Authority), 2011, 2-5면.
108) FDA(http://www.fda.gov/ICECI/ComplianceManuals/CompliancePrograManual/default.htm 2014. 10. 5. 검색).
109) FDA(http://www.fda.gov/ICECI/ComplianceManuals/RegulatoryProceduresManual/default.htm 2014. 10. 7. 검색).
110) FDA(http://www.fda.gov/ICECI/Inspections/InspectionGuides/default.htm 2014. 10. 5. 검색).
111) FDA(http://www.fda.gov/ICECI/ComplianceManuals/CompliancePolicyGuidanceManual/ucm116791.htm 2014. 10. 7. 검색).

다. 식품안전 감시기관의 조직과 주요 업무

1) 식품안전 감시기관 조직의 분류

미국 사회에서 식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법집행 행정기관은 식품의 성격에 따라 크게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청 및 질병통제예방센터,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 및 동식물검역국, 환경보호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의 해양어업국,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과세·무역청 등에서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112] 식품범죄를 통제하는 법규정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책임기관은 주로 식약청(FDA)과 농림부(USDA)에 직접적인 권한이 있다. 다양한 연방기관들이 식품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지만, 식품안전의 유형과 행태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식품안전에 대해 개입할지라도 식약청이나 농림부와 같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니고 중요성과 필요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미약하다 할 수 있다.[113]

2) 식품안전 감시기관의 주요 업무내용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산하의 대표기관으로서 식약청(FDA)과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 CDC)가 운영된다.[114] 식약청(FDA)의 경우 식품이나 화장품 그리고 인체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효과 및 식품안보를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115]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상의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부정 표시된 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116] 또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식중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예방활동과 모니터링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관련조치와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식품안전

112) 식품안전정보원, 제외국의 식품관련 정부조직 및 영업 인허가 제도 조사, 2012.
113) Neal D. Fortin, Food Regulation: Law, Science, Policy and Practice, A John Wiley & Sons, Inc., Publication, 2009, 23면.
114) DoH(http://www.hhs.gov/about/ 2014. 10. 5. 검색).
115) FDA(http://www.fda.gov/AboutFDA/WhatWeDo/default.htm 2014. 10. 8. 검색).
116) FDA(http://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Legislation/FederalFoodDrugandCosmeticActFDCAct/defa ult.htm 2014. 10. 5. 검색).

현대화법(FSMA)을 통해 공중보건 관리기관 간 자료를 공유하여 협력하고, 특정 질병의 특성을 규명하여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117]

둘째,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소속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과 동식물검역국(APHIS)이 운영된다.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대표적인 업무내용은 육류, 가금류, 계란 제품의 안전성 그리고 올바른 표시와 포장을 관리·검사를 하며,[118] 특히 선적 상품(ship product)이 주(sate) 간 통상의 대상이 될 경우에 그 가공설비를 담당하며 이는 FDA에서도 하지 않는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고유한 업무로써 수행하고 있다.[119] 아울러 동식물검역국(APHIS)은 각종 동식물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방과 긴급대응활동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작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120]

셋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식품 중에 포함된 잔류농약의 허용치와 최대잔류기준을 설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상 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의 경우 제품 등록 전에 식품 중 잔류 허용치를 정하거나 허용치 설정 면제 지위를 부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121]

넷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서는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검사프로그램을 통해 제품의 등급을 부여하고, 로트별 제품 및 분석 검사, 수출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122]

다섯째,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산하의 주류·담배·과세·무역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 TTB)에서는 알코올음료의 생산·수입·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허가증을 발부하거나 취소하고, 올바른 라벨 표시와 광고를 관리하며, 수입업체가 미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제품라벨인증(COLA)을 받도록 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123]

---

117) CDC(http://www.cdc.gov/foodsafety/fsma.html 2014. 10. 8. 검색).
118) FSIS(http://www.fsis.usda.gov/About_FSIS/index.asp 2014. 10. 10. 검색).
119) Eric M. Goldstein, "Inspecting the Hands that Feed US: Requiring U.S. Quality for All Imported Foods", 7 Wash. U. Global Stud. L. Rev. 137,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2008, 139면.
120) APHIS(http://www.aphis.usda.gov/about_aphis/ 2014. 10. 12. 검색).
121) EPA(http://www.epa.gov/lawsregs/laws/ffdca.html 2014. 10. 11. 검색).
122) NOAA(http://www.seafood.nmfs.noaa.gov/ 2014. 10. 11. 검색).
123) TTB(http://www.ttb.gov/trade_practices/federal_admin_act.shtml 2014. 10. 11. 검색).

한편, 식품시설에 대한 점검과 조사 그리고 검사 기관으로는 별도의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식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기관 즉, 연방기관으로는 식약청(FDA) 소속의 규제업무사무소(Office of Regulatory Affairs : ORA)에서 담당하고 있으며,[124] 규제업무사무소(ORA) 소속 범죄수사단(OCI)은 연방식품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125] 규제업무사무소(ORA)에서는 식약청(FDA)이 실시하는 수입관리 및 점검, 법집행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주와 지방정부에서는 주와 지방정부 소속 담당검사가 오염된 식품 및 부정 표시된 식품 등 해당 주와 지방정부 법률을 위반한 식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통상금지령을 내리고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126] 또한 각 주와 지방의 관리감독 담당자를 통해 식약청(FDA)과 주와 지방 검사담당자의 합동 점검이 실시되며,[127] 자격을 인정받은 규제업무 담당자는 연방법에 의거해서 식품검사와 점검 및 조사와 샘플 수거업무를 실시할 수가 있다.[128]

라. 연방행정청의 식품긴급대처 네트워크(FERN)의 역할

식품긴급대처 네트워크(Food Emergency Response Network : FERN)는 2004년 국토안보 대통령령 제9호(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9 : HSPD-9) 시행으로 응급대처수단으로 개발되었다. 화생방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과 주 그리고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식품테스트 전문기관을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129]

---

124) FDA(http://www.fda.gov/AboutFDA/CentersOffices/OfficeofGlobalRegulatoryOperationsandPolicy/ORA/default.htm, 2014. 10. 1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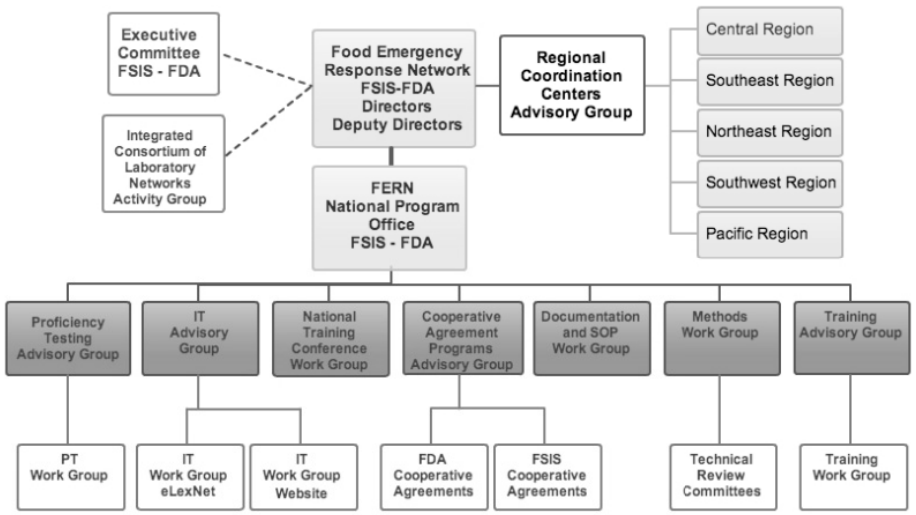
125) US GAO, Improved Monitoring and Development of Performance Measures Needed to Strengthen Oversight of Criminal and Misconduct Investigations, GAO-10-221, 2010. 1. 8면.

126) FDA(http://www.fda.gov/ICECI/Inspections/IOM/ucm122520.htm#3.3.3, 2014. 10. 15. 검색)

127) Public Health Service Act (42 USC 243). Section 311(a).

128) FDA(http://www.fda.gov/downloads/ICECI/Inspections/FieldManagementDirectives/ucm056730.pdf).

129) FDA, "Biennial Report to Congress on the Food Emergency Response Network", Report Congress, pp.4-5.



* 자료: FERN(http://www.fernlab.org/index.cfm/structure/ 2014. 10. 02. 검색)

[그림 3-1] FERN National Programme Structure

식품긴급대처 네트워크(FERN)는 운영위원회, 국가프로그램실(NPO), 지원프로그램, 지역조정센터(RCC's)로 구성되어 있다. FERN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FDA, 질병통제센터), 농림부(식품안전검사국, 동식물건강검사국, 농림시장국, 곡물검사국), 관세청, 국방부, 연방수사국, 환경보호청, 국토안보부와 파트너로서 주 농림부·환경부, 공중보건부, 수의진단실험실을 운영한다. FERN은 지역조정센터는 미국 전역에 걸친 관련 기관을 비롯하여,[130] 의사교환과 정책 그리고 현재 활동사항에 대한 지침과 운영전략을 수립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주 정책과 지역의 요구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상호 지원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국가프로그램실(NPO)은 개발기법, 훈련, 능숙도 테스트, 감시, 전자통신 영역에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131]

130) FERN(https://www.fernlab.org/structure/, 2014. 10. 8. 검색);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FERN consists of the National Program Office (NPO) with personnel located in Athens, Georgia and Rockville, Maryland. Additionally, there are Regional Coordination Centers, (RCCs), located in each of the (5) FDA reg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131) US GAO, Improved Monitoring and Development of Performance Measures Needed to Strengthen Oversight of Criminal and Misconduct Investigations, GAO-10-221, 2010, 3면; FDA OCI field offices are located in Chicago(IL), Kansas City(MO), Los Angeles(CA), Miami(FL), New York(NY),

3. 식품사범에 대한 연방 법집행기관의 역할과 주요 활동

가. 식품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증가

지난 수년간 식품산업 경영진에 대한 기소 증가 목표를 계획한 연방검찰의 노력으로 2013년 연방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식품회사 중역들에 대한 형사기소가 실현되었다. 2013년 2월 20일 법무부는 Peanut Corporation of America(PCA)사의 제조과정과 관련하여 5명의 전직 임원과 직원을 기소하였다. 정부는 PCA사의 회장과 소유주를 포함한 4명을 76건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협상을 하였다. 2009년 식약청(FDA)이 조지아에 소재한 PCA사의 로스팅 공장을 추적하여 살모넬라균 발생에 대해 기소하였다. 식약청(FDA)은 부패되어 리콜이 된 땅콩제품을 섭취하여 최소 9명이 사망한 혐의를 주장하였다. 기소 내용의 중요사항은 PCA사가 6년 동안 불량식품과 허위식품을 판매하였고, PCA 시설에 대한 정부조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한 사안이다. 식품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법집행활동은 PCA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13년 9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균(listeria monocytogenes)이 함유된 과일 섭취로 인해 3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메론 농장 소유자 Eric and Ryan Jensen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졌다.[132]

이 사안에서는 범죄의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범죄(misdemeanor)로 기소되었다. 식품의약화장품법(FDCA)에서는 불순물이 포함된 식품에 대한 자료가 없을지라도 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배분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그 결과 사장에 대해 150만 달러의 벌금과 징역 6년이 병과 되었다.[133]

나. 식약청(FDA) 범죄수사단(OCI)의 역할 및 수사 활동

식약청(FDA)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검사(Inspections), 법규 준수(Compliance),

Washington, D.C.

132) USA Today, "Colo. Farmers arrested in listeria outbreak that killed 3," September 26, 2013.

133) Trent R. Taylor, "United States: 2014 Food Industry Outlook-Criminal Investigations"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285864/food+drugs+law/Criminal+Investigation, 2014. 10. 11. 검색).

법집행(Enforcement), 범죄수사(Criminal Investigations) 등에 대해 외부의 전문적인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1991년 범죄수사단(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s: OCI)을 설치하였고, 식약청(FDA)의 내부업무를 규제하기 위하여 1995년 규제업무실(Office of Internal Affairs: OIA)을 설치하였다.[134]

범죄수사단(OCI)은 식약청(FDA) 소속의 범죄수사를 실시하는 부서이다. 범죄수사단(OCI)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135] 연방위조방지법(the Federal Anti-Tampering Act), 기타 식품관련 연방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고 법집행에 필요한 기술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되며, 각종 자료에 대한 평가와 주도, 수사의 개시, 정보수집, 사건 해결을 하는 역할을 한다.[136]

또한 공중의 건강과 관련된 위험한 요인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식약청(FDA)은 식품의약품, 생물학 약품, 의료장비, 화장품, 방사능 장비 등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규제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식약청(FDA) 소속 기관으로 범죄수사단(OCI)이 이러한 물품에 대하여 관련 법규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협조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137]

1) 범죄수사단(OCI)의 수사영역(Investigative Jurisdiction)

범죄수사단(OCI)은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A), 연방위조방지법(Federal Anti-Tampering Act : FATA),[138] 미연방법전(18 United States Code § 1365)[139] 관련

134) US GAO, Improved Monitoring and Development of Performance Measures Needed to Strengthen Oversight of Criminal and Misconduct Investigations, GAO-10-221, 2010, 1면.

135) 21 U.S.C. §§ 301-399a.

136) US GAO, Improved Monitoring and Development of Performance Measures Needed to Strengthen Oversight of Criminal and Misconduct Investigations, GAO-10-221, 2010, 12면.

137) FDA, Consumer Health Information, "What OCI Investigates", 2011. (http://www.fda.gov/downloads/ForConsumers/ConsumerUpdates/UCM048718.pdf).

138) 18 U.S.C. § 287(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Claims), § 371(Conspiracy to Commit Offense or to Defraud the United States), § 1001(False Statements to the Government), § 1035(False Statements Relating to Health Care Matters), § 1341(Mail Fraud), § 1343(Wire Fraud), § 1347(Health Care fraud), § 1505(Obstruction of Proceedings before Departments/Agencies), § 1518(Obstruc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of Health Care Offenses), § 2314(Interstate Transportation of Stolen Property, or Articles used in Counterfeiting), § 2315(Sale or Receipt of stolen goods moved interstate), § 2320(Trafficking in Counterfeit Goods).

139) FDA(http://www.fda.gov/ICECI/CriminalInvestigations/ucm123079.htm 2014. 10. 10. 검색);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며, 주요 법규위반 조사대상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승인 약품 위조판매 및 제조, 규제대상 약품의 불법 유용, 처방약품 마케팅법(Prescription Drug Marketing Act) 규정, 치료·의료장비를 포함한 의료사기, 식약청(FDA)승인 의약품 및 의료장비의 초과승인사항, 신약사용사기, 의료조사사기, 약품변경, 식약청(FDA)규제 물품의 인터넷 불법거래, 상품의 허위표시 거래 등에 대해 조사한다. 범죄수사단(OCI)는 위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연방과 주, 지역기관 그리고 국제법집행 기관과의 협조체재를 유지하며, 대테러임무와 관련된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IC)와 협조하기도 한다.[140]

2) 특수요원(Special Agents)의 역할

범죄수사단(OCI)의 특수요원들은 다른 법집행기관의 수사관들과 상당 부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전역에서 식품과 마약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조사하는데 특별한 지식과 기법을 사용한다. 또한 특수요원들은 범죄수사과정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방검찰청에 전달해야하는 책임이 있고, 지방검사들은 기소를 해야 될 사항인지 결정해야 하며, 식약청(FDA)의 법집행관들은 증거를 수집하여 기소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사단(OCI) 특수요원들은 대부분 비밀경호국(SS), 연방범죄수사국(FBI), 이민·세관 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소속의 연방법집행기관과 교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근무도 실시하며, 총기교관, 체포·수색영장 집행, 증거수집, 거짓말 탐지기, 컴퓨터 포렌식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141]

3) 연방 법집행기관의 공조수사

범죄수사단(OCI)은 대기업의 비리나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만약 범죄수사단(OCI)의 수사가 기소와 유죄로 이어진다면 피고인은 연방교도소의 형량을 선고받기도 하고, 회사는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명령 받기도 한다. 아울러 범

---

18 U.S.C. § 1365.

140) FDA(http://www.fda.gov/ICECI/CriminalInvestigations/ucm123062.htm 2014. 10. 14. 검색).

141) FDA, Consumer Health Information, “What OCI Investigates”, 2011. (http://www.fda.gov/downloads/ForConsumers/ConsumerUpdates/UCM048718.pdf).

죄수사단(OCI)은 다른 연방법집행기관 또는 외국의 법집행기관과도 공조수사(Agency collaboration)를 하고 있으며, 1992년 설립 이후 수많은 기관과 협조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범죄자들을 이송하는데 교류하고 있다.

또한 현장요원들은 범죄수사단(OCI)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범죄수사 분석 및 전문가들이고, 식약청(FDA) 과학수사센터에 의해 다양한 실험과 물품에 대한 수사지원을 받기도 한다.[142]

4) 범죄수사 사례 및 활동

범죄수사단(OCI)에서 적발하여 처벌한 대표적인 식품범죄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43]

사례 1: 2008년 2월 6일 중국과 미국의 사업가들이 애완동물 사료로 사용하기 위해 오염된 원료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됨

• 혐의
- 멜라민에 오염된 불량식품 및 거짓정보가 표시된 식품을 주 간 통상에 이용한 점
- 사기를 공모한 점(원료 구매자들에게 원료와 관련한 사항을 은폐함)

• 처벌
- 해당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최대 2년의 가석방 없는 연방 교도소형, 20만 달러의 벌금, 그리고 손해배상 선고가 가능

사례 2: 2008년 7월 31일 맨하탄의 한 남자가 유아식에 독극물을 탔다는 협박 비디오를 게시한 행위로 체포됨

• 사건개요
- 자칭 "Trashman"이라는 자가 Gerber사 직원에게 지시하여 Gerber사의 유아식에 독극물을 혼입했다고 주장하는 유투브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연속적인 동영상을 통해 Gerber사 유아식을 먹은 아이들이 죽었다고 허위

142) FDA, Consumer Health Information, "What OCI Investigates", 2011. (http://www.fda.gov/downloads/ForConsumers/ConsumerUpdates/UCM048718.pdf).
143) FDA(http://www.fda.gov/ICECI/CriminalInvestigations)

사실을 유포함. 그러나 Gerber사나 FDA는 Gerber사 유아식을 섭취하고 사망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음.

• 혐의
- 주 간 통상과 관련하여 협박을 한 행위
- 소비자가 이용하는 식품에 대하여 독극물 테러 등을 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행위

• 처벌
- 각각 행위에 대하여 5년씩 최대 10년의 징역
- 각각 행위에 대하여 최대 250,000만 달러 또는 협박행위에 의한 회사의 총 금전손실이나 협박행위로 얻은 협박자의 총 수익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구형
-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벌에 대한 정보는 없음

사례 3: 2009년 5월 19일 불법으로 메기를 수입하는 회사의 사장이 5년 이상의 연방 교도소 형을 선고받음

• 사건개요
- 1천만 파운드가 넘는 냉동 메기(1550만달러 가치)를 베트남에서 수입한 후 가자미, 그루퍼 그리고 다른 종의 물고기로 둔갑시켜(거짓정보 기재) 판매하는 공모에 참여한 혐의로 63개월의 연방 교도소 형을 선고받음. 다른 공모자는 거짓정보가 기재된 물고기를 수입하여 연방 세관을 회피한 것으로 인해 1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 혐의
- 거짓정보를 표시한 행위
- 거짓정보가 표시된 물고기를 수입함으로써 세관을 회피하여 적정 시장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

• 처벌
- 전자에 대해서는 63개월의 징역, 후자에 대해서는 1년의 보호관찰 선고
- 그 외에 이 사건 공모와 관련하여 형선고를 받은 사람들
- David wong : 1년 1일의 징역, 이 후 1년의 보호관찰, 2만 5천 달러의 벌금

- Tai Wadi David Chu : 6개월 소년원을 포함한 2년의 보호관찰 3천 달러의 벌금
- Henry C.D. Yip : 1년의 보호관찰과 4만 달러의 벌금
- Dakon International : 2년의 보호관찰, 공공 서비스 광고 게재, 10만 달러의 벌금
- T.P. Company : 1년의 보호관찰, 공공 서비스 광고 게재, 15만 달러의 벌금
- True World Foods Inc : 197,930달러 몰수 및 6만 달러 벌금

사례 4: 2009년 9월 30일 송아지고기 회사가 오염된 사료와 관련하여 기소됨

• 사건 개요 및 혐의

- Select Veal Feeds라는 회사와 경영자 Wayne A. Marcho가 1998년부터 적어도 2005년 5월까지 사육자들로 하여금 포름알데히드와 과망간산칼륨을 첨가한 사료를 식용으로 판매될 송아지들에게 먹이도록 함. 이런 약물은 PDA의 승인이나 지시 없이 첨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해당 송아지에 거짓정보가 표시되게 하였고, 또한 Select Veal Feeds사는 FDA의 조사 중 거짓말을 하거나 오도하여 송아지들이 위의 첨가물을 먹는다는 사실을 모르게 만듦.

• 처벌

- 유죄가 확정될 경우 Wayne A. Marcho는 최대 1년의 징역, 10만 달러 또는 총 수익 또는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 1년의 보호관찰, 몰수
- Select Veal Feeds는 최대 70만 달러 또는 총 수익 또는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 5년의 법원 감독, 손해배상, 몰수
-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벌에 대한 정보는 없음

사례 5: 2010년 1월 13일 콜로라도주 롱몬트의 한 남자가 게토레이 병의 라벨을 제거하고 교체한 행위로 체포됨

• 사건개요

- Jason Eric Kay가 1쿼트짜리 열대망고 맛 게토레이 병의 라벨을 다른 내용으로 다시 부착하는 행위를 함(타이거우즈와 그의 아내 엘린 우즈의 사진이

한쪽에 붙어있고, 다른 한 쪽 면에는 “불륜”이라고 적혀있음).

• 혐의 및 처벌

- 불량하거나 허위정보가 표시된 음식을 주 간 통상에 도입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임.
- 라벨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변경, 절단, 파괴, 삭제, 제거하는 행위 또는 식품과 관련한 어떤 행위가 주 간 통상에서 배송 이후 판매되는 도중에 행해진 경우 그리고 그러한 물품이 불량하게 되거나 허위정보를 표시하도록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 상품을 오염시키거나 주 간 또는 해외 통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의 라벨 또는 포장용기를 변경시켜 오도하는 행위는 3년 이하 감금 그리고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
-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벌에 대한 정보는 없음

사례 6: 2010년 4월 23일 오염된 식품을 만든 혐의로 2명 체포됨

• 주요내용

- The Lacteos Factory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Francisca Josefina Lopez와 Jorge Alexis Ochoa Lopez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 니카라과에서 322,200달러어치의 치즈를 수입하였음.
- FDA 테스트에 의하면 그 중 총 4개의 선적함 중 3개는 포도상 구균에 감염되어 있었고, 나머지 한 개의 선적함은 포스파타아제 적용 기준을 위반하였음. 이는 해당 치즈가 적절한 세관 수입 사무에 신고 된 대로 살균되지 않았음을 의미.
- 총 17만 파운드가 넘는 4개 선적함의 치즈는 주 간 통상으로의 도입이 불허되었고 따라서 폐기하거나 재수출하라는 명령을 받음. 2010년 4월 1일에 관세국경보호청(CBP)이 Lacteos회사에서 폐기 또는 재수출 명령을 받아 항구로 반송된 화물컨테이너를 검사하였는데, 컨테이너 위쪽에만 치즈가 있었을 뿐 아래에는 폐수로 채워져 있었으며, 대부분의 치즈는 없었고 따라서 Lacteos회사에 대한 수색 영장이 발부됨. 수색 결과 이미 소비자들에게 팔

린 상태였음

• 혐의 및 처벌

- FDCA법에 따라 불량식품을 주 간 통상에 도입하거나 도입을 위해 배달하는 행위는 각 행위마다 3년 이하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반밀수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밀수품에 대한 몰수를 할 수 있음
-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벌에 대한 정보는 없음

사례 7: 2010년 7월 27일 해산물 수입회사 전직 사장이 거짓정보가 표기된 생선을 수입한 혐의로 연방교도소형 선고받음

• 주요내용 및 혐의

-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메기류 물고기를 그루퍼로 거짓 라벨을 붙여 판매함(모든 메기류는 최대 63.99%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그루퍼는 반덤핑 관세가 붙지 않음).
- 피고는 50만 달러 이상의 그루퍼를 구입하여 메기류로 거짓 라벨을 붙여 6천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회피함

• 처벌(선고형)

- 22개월의 연방 교도소형, 64,173,839.16달러의 손해배상
- 5만 달러의 지역 봉사기금을 National Fish and Wildlife Foundation에 납부

사례 8: 2010년 9월 1일 독일 식품 대기업과 관련된 11명의 독일인과 중국인과 6개의 회사가 중국산 꿀을 불법수입하려고 공모한 혐의로 기소됨

• 주요내용 및 혐의

- 11명의 사람과 6개 회사가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거짓정보를 표기하고, 꿀 생산 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를 함유한 중국 산 불량 꿀을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 미국 상무부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허위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불법적 밀수를 숨기고 확대한 혐의
- 2002년부터 2009년까지 4천만 달러 이상을 불법으로 수입함

• 처벌
- 공소장에는 회피한 반덤핑관세 7천8백만 달러 이상의 몰수,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러시아산, 인도산, 인도네시아산, 말레이시아산, 몽골산, 필리핀산, 한국산, 대만산, 그리고 태국산으로 표기되어 미국으로 수입된 606개의 적재함 분량의 중국산 꿀로 신고 된 가격 3천9백5십만 달러 이상의 몰수, 그리고 미국에 의해 압류된 중국산 꿀 2,441개 드럼통 몰수를 청구
- 최종적으로 선고된 형벌에 대한 정보는 없음

사례 9: 2011년 2월 9일 레넥사 레스토랑에서 살사소스에 독극물을 혼입한 혐의로 켄자스 여성이 징역형 선고받음

• 주요내용
- 레스토랑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살충제를 살사소스에 혼입하여 36명의 레스토랑 손님들이 해당 소스가 있는 음식을 먹고 메스꺼움, 복부 경련, 가슴 통증의 증상을 호소함

• 처벌(선고형)
- 87개월의 연방 교도소형

사례 10: 2011년 7월 29일 불량 치즈를 밀수한 혐의로 마이애미의 부부와 회사가 실형을 선고받음

• 주요내용
- 살모넬라균과 포도상 구균이 있는 치즈를 밀수해 미국에 반입한 혐의
- FDA로부터 피고인들이 생산한 유제품이 오염되었다는 경고를 받고, 폐기하거나 역수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하지 않음

• 처벌(선고형)
- 부부 각각 30개월과 27개월의 징역형
- 회사에 대해서는 2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5) 범죄수사단(OCI) 업무의 특징

식약청(FDA) 범죄수사단(OCI)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매년 약 1,200여건에

달하는 형사사건을 조사하는데 약 300여명의 용의자들을 검거한다. 1993년 설립 이후 2010년 11월까지 조사관들은 5,702명을 체포하여 4,748명을 유죄 선고받게 하였고 약 15조원 이상의 벌금을 환수하였다. 또한, 범죄수사단(OCI)은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도 준비하여 막대한 합의금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Glaxo Smith Kline의 자회사를 상대로 형사기소에 대해 유죄 협상을 하였고, 약 1,500억 상당의 벌금을 환수하였으며, 민사사건에서도 약 8,000억 정도의 배상금이 지급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144] 아울러 식약청(FDA)의 범죄수사단(OCI) 운영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범죄수사단(OCI)은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조직과 같이 강제적인 단속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제보나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는 때에 식약청(FDA)의 규제업무 중에서 식품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규위반사실을 객관적·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보조하는 역할만을 담당한다. 따라서 단속권한으로는 질문권 및 시료수거권만을 가지며, 범인 체포,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권한은 경찰이 행사하게 되지만,[145] 식품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증거채집과 법률적 판단으로 형사기소를 위한 전문적인 조사 자료로서 중요한 영역에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 범죄수사단(OCI) 소속의 특수요원(SA)들의 인력풀은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비밀경호국(SS), 연방범죄수사국(FBI), 이민·세관 단속국(ICE), 마약단속국(DEA) 소속의 연방 법집행기관 출신의 전직 수사관들이 근무를 하기도 하고, 상호 간의 공조수사를 위해 근무 및 파견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법집행기관의 식품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려는 표명과 함께 기존의 관행과는 달리 기업의 중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와 관련된 연방검찰의 역할과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Lipitor 회사에 42억의 민·형사 벌금 집행, 세로스팀(Serostim)사례의 회사에 대한 7,400억의 민·형사 벌금 집행, 옥시콘틴(OxyContin) 사례의 회사에 대한 60억의 민·형사 벌금 집행, Glaxo Smith Kline사에 대한 9,500억의 민·형사 벌금을 집행하는

144)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Glaxo Smith Kline to Plead Guilty and Pay $3 Billion to Resolve Fraud Allegations and Failure to Report Safety Data, 2012. 7. 2. 기사.

145) 강석구·하상도·송봉규, "위해식품의 제조·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방안", 연구총서 09-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79-81면.

등의 사례에서도 확인되었고, 정부에서도 최근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을 통해 식품사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무 부처에 해당하는 식약청(FDA)에 보다 포괄적인 통제와 조사 그리고 감시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넷째, 범죄수사단(OCI)의 주요 역할 및 활동과 관련하여 규제업무 중에서 식품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제도적·법률적 체제가 상시 구비되어 있으며, 실제 식약청(FDA) 소속의 모든 일선공무원에 의한 범죄인지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이는 식품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피해에 대한 추상적인 위험성을 적극 고려하여 사전예방과 사후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관련 법집행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명이라 볼 수가 있다.

4. 검토 및 시사점

미국 사회에서 인식하는 식품범죄에 대한 심각성 수준은 건강권 침해 문제를 넘어서서 식품테러로까지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식품범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법률에서 예방과 대처에 대해 규정하고, 끊임없이 개정되는 가운데 사후 재발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간의 충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전제조건으로 식품범죄 담당 조사관들의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

특히,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능력을 보았을 때, 식약청(FDA) 범죄수사단(OCI)의 조사관들은 전직 범죄수사나 비밀경호 등 특수한 영역에서 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유경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식품범죄 조사에 있어서는 확실한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물론 영미법계 국가의 형사사법제도 중에서 특히 수사시스템은 원론적으로 다른 문제이지만, 식품안전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한다는 국가행정의 합목적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통제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식품안전범죄로 인해 발생하게 될 대규모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예방 통제장치와 긴급대처 시스템(FERN)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체제

를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범죄자에 대한 처벌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의 식품위생법과 같이 위반유형과 처벌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식품안전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고,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이나 민사금전벌 또한 상당한 금액으로 징구하고 있다.

제2절 독일의 식품위해사범 대처현황

1. 독일의 식품법 제정의 의미

국가의 위험방지의무에 대한 이론적 법리적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것이 오늘날 헌법적 가치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도 전 유럽을 휩쓴 BSE 스캔들로 인하여 식품관련법령과 조직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식품안전 관련 위기는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고, 식품안전관련법규 및 조직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독일 식품법의 대부분이 EU 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식품안전법규를 만들고 식품안전을 위한 각종 조치를 수행한다.

식품안전관리법규의 기본법인 식품 및 사료법(Lebensmittel und Futtermittelgesetzbuch)은 총 7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46] 이 법의 목적은 인간의 건강에 대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 사료, 화장품과 생활필수품의 유통에 있어서 기망(Täuschung)을 방지하며 경제참여자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동법 제1조 참조). 이 법은 종전 유럽의 식품관련 법률이 국내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이 유럽공동체법과의 식품 정의를 따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혼재되어 적용상 어려움을 겪던 문제점도 개선되기에 이르렀다.

146) www.juris.de

2. 독일 식품법의 규정 특성

우선 독일 식품법은 특히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그 규제대상을 위해식품과 허위과장광고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독일 식품안전 관련 조직의 운영상 특기할 만한 점이 소비자보호책임이 단일부처로 통합되었으며, 위해관리와 위해평가가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독일의 경우 광우병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그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였다. 이로 인해, 2001년 연방건강부와 연방경제부·연방기술부로부터 소비자의 건강보호임무는 연방식품 및 소비자보호부(BMELV)로 통합 이관되었다. 물론 개별영역에서의 식품안전관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예컨대 연방건강부(화학물질의 안전성, 음료수의 위생, 유전자공학과 감염증대책 등)와 연방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식품의 환경오염, 화학물질의 제조·유통·조합 등)에는 관련된 사무가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독일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당국의 관리·감시체제는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우병을 계기로 독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위해성 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관리기관)과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 평가기관)로 분리하였다. 즉 독일의 경우에는 식품안전을 위한 위해평가와 위해관리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연방식품 및 소비자보호부에서는 식품안전법규 제·개정과 식품안전 조치수행을 담당한다. 이는 모두 위해관리로서 적어도 위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모든 조치를 수행한다. 연방식품 및 소비자보호부(BMELV)는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에 특정 위해관리 활동을 위임한다.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은 위해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여기서는 모든 가능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한다. 여러 주정부의 식품 및 사료 모니터링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새로운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는데 활용된다.[147]

한편 연방위해평가연구소(BfR)는 위해평가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148] 여기서는 모든 형태와 크기의 식품, 물질, 제품에 의한 건강 위해를 분석하고 평가할 책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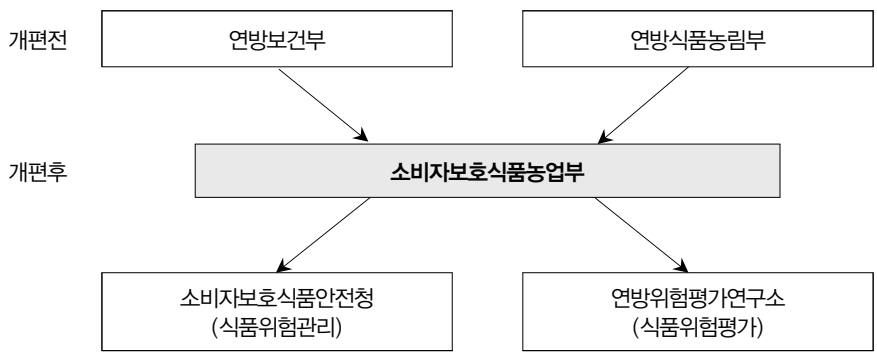
147) www.bvl.bund.de
148)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33면.

있다. 이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거의 1만 건 이상의 전문가진술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그들은 화학물질부터 농약, 식품의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위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이슈를 다룬다. 여기서 작성한 보고서는 연방 및 주 정부 그리고 법적 판단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제공되며, 동시에 일반국민 및 소비자협회 등에게 정보로서 제공되기도 한다.[149]

그 외 식품에 대한 신속한 경보시스템을 관리하고 국민건강에 위해한 물질에 대한 식품모니터링도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의 업무에 속한다. 그리고 연방위해평가연구소의 주업무는 식품의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하는 것이다.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정청과 연방위해평가연구소 모두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소속하에 있다.

다만 위해평가 및 연구의 독립성을 위해서 연방위해평가연구소는 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관련 법령에 근거한 중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에 위해평가업무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150] 독일 위해평가연구소의 주요업무는 소비자건강보호 및 식품안전성 재개혁에 관한 법령(2002, 08)을 근거로 하여 위해요소에 대한 위험평가로는 2008년 2,600건의 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8개 이상의 EU 관련 과제 및 20개의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다.[151]



* 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II), 8면.

[그림 3-2] 독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149) www.bfr.bund.de
150)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34면.
151) 한국법제연구원,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II), 10면.

3. 독일 식품법상 식품의 개념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독일 식품 및 사료법은 유럽공동체의 식품정의개념(EG Nr.178/2002)을 따라서 새로이 규율되었다. 이에 따르면 식품이란 가공되었거나, 부분적으로 가공된 채로 혹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사람에 의해 섭취되거나 또는 합리적인 평가에 따라 그와 같이 기대될 수 있는 모든 물질 내지 생산품을 의미한다.[152]) 이러한 개방적이고 넓은 개념정의는 이전의 식품위생법(LMBG)의 정의와는 달리 영양생리학의 효용성을 기초로 하지도 않고 중요한 영양섭취 혹은 기호의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다. 나아가 유럽공동체명령 178/ 2002 제2조 제2항에서 음료수, (추잉)검(Kaugummi), 물을 포함하여 생산 혹은 가공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모든 물질이 포함된다.

4. 위해식품 (제5조) 유형과 관리

독일의 식품 및 사료법은 기본적으로 건강에 위태로운 식품으로부터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해식품 및 첨가물의 제조 및 판매는 금지된다(제5조). 허가받지 못한 첨가물 금지(제6조)되며, 그 금지품목은 연방의 식품국이 정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허가받지 못한 방사선 등의 사용과 이를 이용한 조사, 그리고 이들이 첨가된 식품의 유통은 당연히 금지되며(제8조 제1항), 허위과장광고금지(제11조) 규정에 의하면 i) 식품에 있어서 속성에 대하여, 특히 종류, 상태, 구성, 양, 유효기간, 원산지, 생산지, 생산 혹은 이윤의 방식에 대하여 적합한 명칭, 표시, 포장, 묘사 그리고 기타 현을 기망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ii) 과학적 지식에 의해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효과가 식품에 첨부된 경우, iii) 모든 비교 가능한 식품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이 특별한 속성을 가진다고 이해될 경우, iv) 식품에 의약품의 외관이 주어질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허위과장광고로서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식품 및 사료법에 근거하여 식품법의 준수에 관한 감독권은 연방의

152) 식품 및 사료법 제2조 제2항.

권한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州가 갖는다. 식품안전 관련 규제기관은 "감독이 위임된 자(제42조)"로서 주의 공무원(관할행정청이나 수의사국) 또는 식품검사관이다. 이들 감독이 위임된 자는 관련 건물, 영업장소, 운송수단에 의 출입권이 있으며(제42조 제2항 제1호, 제2호), 또한 시찰권(제3호), 검사권 그리고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보제공요구권(제4호)을 갖는다. 나아가 식품안전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서 견본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식품모니터링을 위해 연방 및 주정부의 해당관청의 식품감독관들은 서로 협력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에도 신속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교류와 식품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것이다.[153] 신속경보시스템은 식품 등에 관한 사고를 탐지하였을 경우에 각 관계기관들로 하여금 대응수단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교환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독일의 경우 신속경보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이며, 경보통지와 정보통지를 그 유형내용으로 한다.[154]

독일 식품법의 기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일내의 식품 유통관계법규에 의한 식품감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연합 전체시장의 식품이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5. 벌칙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58조). 또한 이들 행위로 다수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거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거나, 이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자유형으로 가중처벌한다(동조 5항). 이들 위해식품사범의 과실범에 대하여는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동조 제6항).

첨가물 규정위반과 방사선이용 금지 규정 위반식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행위에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제59조). 그리고 형벌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인 물건 등에 대하여는 몰수할 수 있다.

---

153)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34면.
154)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35면.

제3절 일본의 식품안전사범 통제와 관리방안

1. 식품안전관련 법제도

일본은 식품안전[155]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극 도입하여 사전위험관리와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제도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2001년에 발생한 광우병 사건과 수입채소에서의 잔류농약검출 등 일련의 식품사고가 크게 작용하였다.[156] 그리하여 전 국민의 관심과 필요성에 의해 내각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하는 법률들이 순차적으로 제·개정되었으며, 2014년 6월 13일 식품위생법 또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가. 개정 식품위생법의 주요내용

개정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공중위생에 필요한 규제와 조치강구, 식품위해 발생방지, 식품규격기준에 첨가물 성분규격, 식품제조 및 보존 등의 기준설정, 공중위생의 측면에서 표시기준 강조, 영업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영업허가와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기준 설정, 정부와 지자체 간의 위험정보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57]

나. 식품안전기본법의 주요내용

식생활이 풍부해지는 반면,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은 최근 크게 변화하고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58]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식품안전기본법은 국민의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하

---

155) 일본의 경우 식품안전사범 관련 기관의 공식통계자료에서는 전반적으로 식품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하에서도 자료에 따라 식품안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56) 田村善弘·이병오, "일본 나가사키현의 식품안전 정책과 시사점", 「식품유통연구」제22권 제4호, 2005, 29-30면.

157) 食品衛生法(平成26年6月13日 法律 第19号) 第一条 この法律は、食品の安全性の確保のために公衆衛生の見地から必要な規制その他の措置を講ずることにより、飲食に起因する衛生上の危害の発生を防止し、もつて国民の健康の保護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http://law.e-gov.go.jp/cgi-bin/strsearch.cgi, 2014년 8월 13일 검색).

158) 食品安全基本政策研究會, 「食品安全基本法解說 逐條解說」, 大成出版社, 2005, 101頁.

고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의 조치를 전문적으로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동향과 국민의 의견을 배려하여 과학적 지식에 바탕을 두는 것을 강조, 식품안전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소비자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사항,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59]

식품안전위원회는 과학에 기초한 식품안전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나 지도 등의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후생노동성이나 농림수산성 등의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동시에 공정하게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 식품안전 관련 조직

일본은 2000년대 들어와 대규모 식품사건이 발생하여 국가적인 대응모델과 정책을 수립하여 오늘날까지 시행해 오고 있으며,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식품안전 분야)을 중심으로 소비자청과 식품안전위원회를 두어 전문가들이 각 성(省)과 청(廳)을 지도·감독하고 소비자위원회와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청은 소비자위원회와 식품안전위원회와 연대하고 있고, 식품 관련 내각에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조치와 요구사항을 권고하고 있으며, 상호 필요한 정보를 연대하여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있다. 동시에 소비자청은 식품사업자에게는 권고·명령·지도, 소비자에게는 공표·주의 환기 권고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행정기관으로서 식품위생행정을 담당하고, 농림수산성은 식품행정에 대해서 생산부터 출하 전 단계만을 책임지며 후생성과의 책임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긴밀한 연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160]

---

159) 食品安全基本法(平成26年6月13日 法律 第67号) 第一条 この法律は、科学技術の発展、国際化の進展その他の国民の食生活を取り巻く環境の変化に適確に対応することの緊要性にかんがみ、食品の安全性の確保に関し、基本理念を定め、並びに国、地方公共団体及び食品関連事業者の責務並びに消費者の役割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施策の策定に係る基本的な方針を定めることにより、食品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施策を総合的に推進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http://law.e-gov.go.jp/cgi-bin/strsearch.cgi, 2014년 8월 13일 검색).

160) 總務省 報道資料, 食品表示に関する行政評価·監視: 監視業務の適正化を中心として, 平成22年9月3日.

또한 일본의 식품안전관리에서 전국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식품안전에 관한 기본지침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고, 각 지자체들이 연대하여 정보의 교류와 의견교환[161]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162]

3. 식품안전사범 검거 및 단속현황

가. 식품안전사범 검거현황

경찰청의 생활경제사범 중 식품안전사범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식품위생 관계사범 및 식품원산지 등 위장표시부착 사범 검거 건수는 41건으로 전년도 대비 2건(5.1%)이 증가하였으며, 검거 인원은 73명으로 전년도 대비 3명(3.9%)이 감소하였다. 검거된 법인 수는 14개로 나타났고 전년도 대비 1개(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역은 식품위생 관계사범이 21사건(전년도 대비 6건 감소, 22.2% 감소), 22명(전년도 대비 17명 감소, 43.6% 감소)에서 식품원산지 등 허위표시 사범이 20사건(전년도 대비 8건 증가, 66.7% 증가), 51명(전년도 대비 14명 증가, 37.8% 증가)으로 나타났다.[163]

또한, 2005년 이후 최근 10년 식품사범 전체 검거건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식품위생사범은 증가하는 반면 식품원산지위장사범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식품위생사범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식품원산지위장사범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체 식품사범건수와 검거인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4] 2012년 식품리콜건수는 총 920건으로 나타났는데, 원산지 표시부적절에 의한 건수가 482건(52.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규격 및 기준표시 부적절 140건(15.2%), 품질불량 108건(11.7%), 이물질 혼입 84건(9.1%), 기타 78건(8.5%), 용기 및 포장불량 28건(3.0%) 순으로 나타났다.[165]

---

161) 식품안전정보원, 제외국의 식품관련 정부조직 및 영업 인허가 제도 조사, 2012, 29면.
162) 內閣府, 國·地方公共團體等の推進體制, 平成18年版「食育白書」, 2006, 34-35면.
163) 警察庁生活安全局 生活経済対策管理官, 平成24年中における 生活経済事犯の検挙状況等について, 平成25年2月; 2012년의 식품산지 등 위장표시사범 내역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19건),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1건)이며, 이 건수는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서 계상하고 있음.
164) 警察廳 生活安全局, 生活經濟事犯 檢擧現況, 2013.
165)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식품리콜 현황, 2012.

나. 식품안전관련 주요사건 및 검거사례

〈표 3-1〉 최근 식품안전 관련 주요사건

시기	주요 내용
2001. 09.	국내에서 처음 BSE 감염 소가 발견되어 육류 소비에 큰 영향
2001. 12.	중국산 냉동 소(牛)의 10%정도가 잔류 농약 기준치 클로르 피리포스 등(クロルピリホス)을 초과하는 사실이 밝혀짐
2002. 02.	대기업 식품 메이커에 의한 쇠고기의 원산지 등의 부정식품 무단표시 사건이 연이어 발생
2002. 08.	무등록 농약 다이호루탄(ダイホルタン) 불법수입, 판매, 사용 된 32개 도현에서 농산물을 회수, 폐기
2003. 07.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및 식품안전위원회 발족
2003. 12.	미국에서 BSE 발생
2004. 01.	국내에서 79년만에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2004. 02.	BSE 발생국의 소 등뼈를 포함한 식품 제조, 가공, 판매 금지
2006. 05.	잔류 농약 등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2008. 01.	중국산 냉동 만두에 의해 유기물 인 중독 사안 발생
2008. 09.	미국의 판매·가공업체가 비 식용 쌀 껍질을 식용으로 재판매 발견
2008. 09.	대형 식품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 가공식품 원재료의 일부에 멜라민을 혼입·확인된 제품을 리콜
2008. 09.	하치오지에서 중국산 냉동 강낭콩에서 농약 지쿠로루보(ジクロルボ) 6,900 ppm 검출
2010. 09.	소비자청 발족
2011. 03.	도쿄전력 (주)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 중 방사성 물질의 잠정 규제치를 설정
2011. 10.	식용 가축 육류의 규격 기준 설정
2012. 04.	식품 중의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 설정
2013. 02.	BSE 대책의 검토 및 월령 기준 개정

* 자료: 厚生労働省 医薬食品局 食品安全部, 食品の安全確保に向けた取組, 2013. 3면.

○ **검거사례 1**: 부적격 식품규격기준에 의한 식품판매

2012년 1월 홋카이도 불고기 레스토랑 경영자는 가열된 식육 취급 장비와 구분하지 않는 시설에서 가공·조리한 식용 쇠고기를 육회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식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적발되었으며, 2012년 2월 해당 업주를 식품위생법위반(식품규격기준 위반)으로 검거했다.[166]

166) 警察庁生活安全局 生活経済対策管理官, 平成24年中における 生活経済事犯の検挙状況等について,

○ 검거사례 2: 원산지 오인 허위광고 판매행위

효고 지역 농산물 가공·판매회사 임원들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중국산 양파를 아와지산 양파라고 속여 판매업체와 상품을 거래하는 등 견적서 서류에는 "아와지산 양파"라고 표기하였다. 소비자들이 원산지 표시를 보았을 때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삽입하여 약 800톤을 5개 업체에 판매하고 약 1억엔의 이득을 얻었다. 2012년 11월까지 1개 법인 6명을 사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오인 야기 행위)로 검거하였다.[167]

○ 검거사례 3: 식용 불가능한 곡물 판매행위

오사카, 후쿠오카, 쿠마모토에서 곡분 쌀가루 제조가공 판매회사 사장 A(73)씨 등은 최근 2008년 8월까지 걸쳐 식용으로 판매 할 수 없는 곡분을 사고, 미국산 곡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서에 "특정 미곡 백미" 등으로 기재하여 마치 식용쌀인 것처럼 표지를 보여주고, 쌀 1,000 톤을 주조회사 등 7개사에 판매했다.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1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오인 야기 행위)에서 검거했다.[168]

4. 식품사범 처리기관의 역할

식품사범에 대한 관리와 지도 감독의 주무 부처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2003년 7월 이후 BSE(광우병)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 대책 등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의견교환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쿄전력

平成25年2月, 20면; 焼肉レストラン経営者による生食用牛肉の提供に係る食品衛生法違反事件.

167) 警察庁生活安全局 生活経済対策管理官, 平成24年中における 生活経済事犯の検挙状況等について, 平成25年2月, 20면; 農産物加工 ・販売会社役員らによる玉ねぎの産地偽装に係る詐欺及び不正競争防止法違反事件; 農産物加工 ・販売会社役員らは、平成22年5月から平成24年4月までの間、中国産玉ねぎを淡路産玉ねぎであると偽って、販売先との商品取引に用いる納品書等の書類に「淡路産剥き玉ねぎ」等と表\記し、商品の原産地について誤認させるような表\示をして、約800トンを5業者に販売し、約1億円をだまし取るなどした。24年11月までに、1法人6人を詐欺\罪及び不正競争防止法違反(誤認惹起行為)で検挙し.

168) 警察庁生活安全局 生活安全確保犯罪捜査活動 평성22년, 72면; 穀粉米粉製造加工販売会社社長 らは、19年12月ころから20年8ころにかけて、食用として販売できない事故米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納品書に「特定米穀白米」等と記載してあたかも食用米であるかのように表\示して、事故米約1,000トンを酒造会社等7社に販売した。21年2月から同年3月にかけて、3法人、13人を不正競争防止法違反 (誤認惹起行為) で検挙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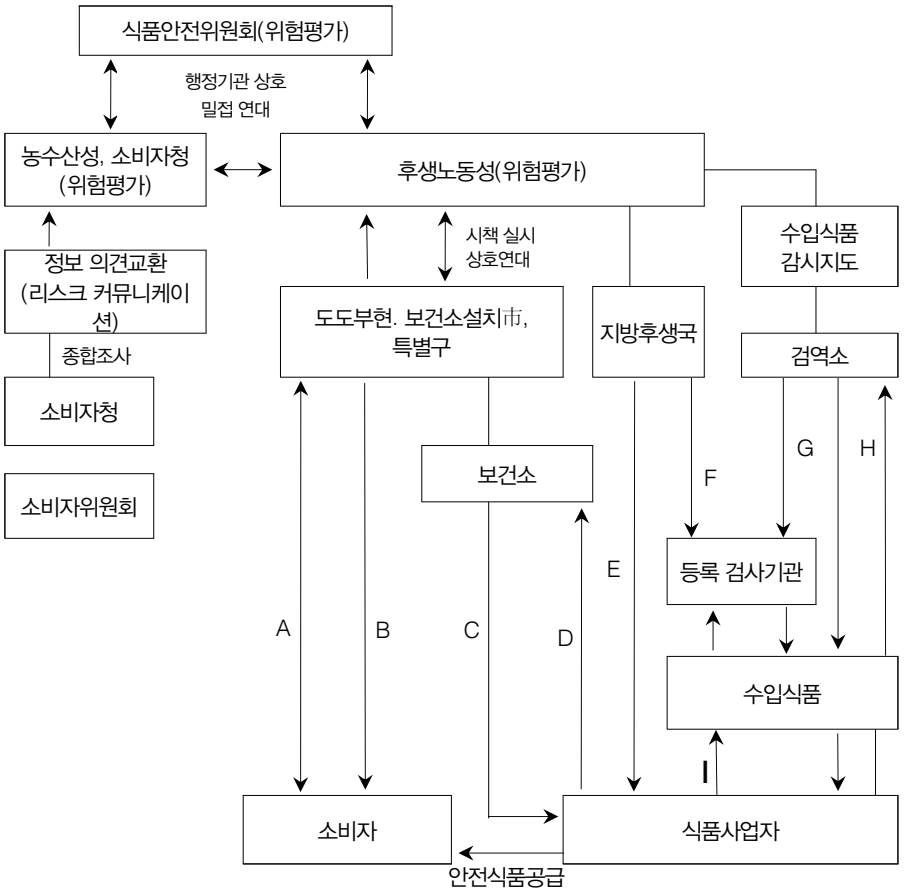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식품 중의 방사성 물질에 대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후생노동성은 식품안전위원회와 농림수산성, 소비자청과의 밀접한 상호연대를 통해 적극적인 정보교환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규제설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제출을 위해 공론 수렴을 실시하고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관계자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여 참고하고 있다.

가. 행정청의 처리

식품의 안전과 안심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불평과 상담이 관련 행정청에 민원 접수 되면 관련 정보와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단서로 행정청은 사안조사를 시작하게 된다. 행정청의 조사 초기단계에서는 악의적이거나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경찰에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피해가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특이한 사안인 경우에는 폭 넓은 정보 수집을 실시하고, 사태의 조기 파악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확대 방지 관점에서 조기 공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시정촌(市町村), 도도부현(都道府県), 국가의 소관 행정청 등 관계 행정기관 간의 초기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169]

아울러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태에 대한 기초 정보에 따라 사업자의 영업장에 대한 외관 조사와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청취를 실시하는 등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법적인 상태의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의도적이고 악의적 행태가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조기에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169) 厚生労働省 医薬食品局 食品安全部 監視安全課, 消費生活侵害事犯対策ワーキングチームの検討結果について, 平成21年 7月 7日. 15면.



* 자료: 厚生労働省 医薬食品局 食品安全部, 食品の安全確保に向けた取組, 2013. p.5

* 주: A: 주민의견 청취 및 시책실시상황 공표/ B: 국민의견 청취 및 시책실시상황 공표 C: 영업 인·허가, 출입감시지도, 수거검사, 검사명령, 식중독 등 조사, 불만상담창구, 식품위생 보급 계발/ D: 신청 및 상담/ E: 시설 승인 검사/ F: 감사지도 및 등록(취소)/ G: 모니터링 검사 및 검사명령/ H: 신고·상담/ I: 검사의뢰

[그림 3-3] 식품위생처리 행정절차

나. 식품사범에 대한 경찰의 조사 및 처리상 문제점

1) 식품사범에 대한 범죄수사와 행정조사의 경합

식품사범에 대해 행정기관과 경찰은 범죄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장 수준에서의 협력 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소비자청 설치 후에는 다른 행정청이나 경찰에서도 소비자청과의 연계를 긴밀히 하여 기존의 행정

기관과 경찰과의 연계를 한 층 강화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170]

먼저 식품사범에 대한 각 기관에 제기되는 상담이나 불만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수시로 실시하여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통합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 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행정청의 상담 및 불만 접수창구에 정보가 전해진 경우 해당 정보를 받은 행정청에서 사실 관계와 정보의 신뢰성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가장 먼저 실시한다. 특히, 악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파악한 초기 단계에서 당해 행정청은 경찰과 연락을 취하고 충분한 사전 준비와 비밀유지 아래 고발하는 것을 염두 해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청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도도부현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관계 기관의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정보교환을 실시하며, 돌발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공유 및 대응책을 검토하고 실시하는 등 현장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즉각 작동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171]

한편, 행정청과 경찰 사이의 정보제공과 교환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진압까지 전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행정청에서 초기 단계에 지득한 정보와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보해야 한다.[172] 또한 경찰에서는 식품사범 사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경우 초기에 행정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배의하며,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피해가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등 특이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청과 경찰 사이의 긴밀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행정청과 경찰이 초기 단계에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당해 행정청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73]

---

170) 澁谷 樹, 食品偽装表示における行政調査と犯罪捜査との競合,「社會技術研究論文集」Vol. 9, 2012. 124면.

171) 厚生労働省 医薬食品局 食品安全部 監視安全課, 消費生活侵害事犯対策ワーキングチームの検討結果について, 平成21年 7月 7日. 13면.

172) 澁谷 樹, 食品偽装表示における行政調査と犯罪捜査との競合,「社會技術研究論文集」Vol. 9, 2012. 124-125쪽.

173) 厚生労働省 医薬食品局 食品安全部 監視安全課, 消費生活侵害事犯対策ワーキングチームの検討結果について, 平成21年 7月 7日. 13-14면.

2) 단속기관과 수사기관의 공조문제

2008년 12월 22일 범죄대책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2008」에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고려한 생활경제사범에 대한 대책 강화가 새롭게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① 식품안전·안심에 관한 사범 등의 대책 및 불법행위 모니터링 강화, ② 사업자에 대한지도 감독 등의 강화, ③ 악질 상법위반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예방, ④ 사채업자 대책 추진, ⑤ 모방품·해적 버전 대책추진이 명기되었다. 아울러 「소비생활 침해사범 대책 워킹팀」이 설치되었으며, 이 팀은 전문적인 학식과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관계 부처에서 청문을 실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174]

행정기관과 경찰과의 제휴를 빠르고 안정적 도모하고, 현장 수준에서 협력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소비자청 설치 후에는 다른 행정청이나 경찰에서도 소비자청과의 연계를 긴밀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많은 피해자의 관심사는 피해 복구로써 반드시 범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확실하지 않기에 경찰 피해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결국 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상담·불만 접수창구에서 정보가 전해진 경우 해당 정보를 받은 행정청에서 사실관계, 정보의 신뢰성 등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악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를 파악한 초기 단계에서 경찰과 연락을 취하고 충분한 사전준비와 비밀유지 아래 고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행정청과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도부현(都道府県) 등 같은 지역수준에서 관계기관의 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정보교환 실시, 돌발 사안 발생시 임시회의 개최, 정보공유 및 대응정책 검토 및 실시, 현장 수준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의 대량 퇴직 및 채용 시대를 맞이하여 숙련된 수사기술을 가진 베테랑 사원이 순차적으로 은퇴하는 사유로 전문적 수사력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입 직원의 전문적인 조기 육성을 도모하기도 한다.[175]

---

174) 厚生労働省 医薬食品局 食品安全部 監視安全課, 消費生活侵害事犯対策ワーキングチームの検討結果について, 平成21年 7月 7日. 8-12면.

175) 厚生労働省 医薬食品局 食品安全部 監視安全課, 消費生活侵害事犯対策ワーキングチームの検討結果について, 平成21年 7月 7日. 14-15면.

5. 식품안전사범의 처벌과 형량

가.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법원의 태도

일본 재판소의 양형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통일적인 양형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양형통념을 기준으로 법관들의 양형기준이 존재할 뿐이다. 양형통념(量刑相場)이란 법관들이 검사의 구형을 참고하면서 동시에 과거 유사한 판례에서 양형에 관한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이며, 현재 사건과 사안이 가장 근접한 판례에서 선고된 형을 수정하여 최종적인 형을 결정하는 관행을 말한다.[176] 또한 2000년 7월부터 양형데이터를 신속하게 검색해 주는 양형검색시스템을 전국 재판소에 설치하였으나 재판관만이 사용할 수 있어서, 현재는 재판원제도 하에서 일반인도 이용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있다.[177]

이와 같이 식품위해사범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의 사법부 태도와는 달리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성청(省廳)의 정책은 다양한 사전예방 사후조치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나. 식품안전사범 처벌 형량기준

일본의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H26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은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어 있는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중위생에 필요한 규제와 조치, 위해식품의 유통관리,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및 표시기준 강조, 영업시설과 관련하여 영업허가와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기준 설정, 유관기간 간의 식품위험관련 정보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인 관리에 있어 구조적·체계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식품안전사범의 처벌에 있어서는 형량이 비교적 경미하다.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 및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76) 原田男, 量刑判の際, 立花書房, 2003, 1-2면.

177) 이정민, "협동적 양형판단을 준비하는 일본의 양형논의 및 양형정책",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372면.

첫째, 부패, 유독, 오염 미생물, 이물질 첨가물 판매 또는 판매용으로 가공 후 조리, 저장, 진열하는 행위 및 질병, 폐사한 가축의 고기, 뼈, 우유, 장기, 혈액을 식품 판매용으로 채취, 가공 후 조리, 저장, 진열하는 행위 및 기타 후생노동상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영업정지 및 내각 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食品衛生法 第71條).

둘째, 식품 또는 첨가물 또는 규격 미달 식품 제조 가공 후 저장, 조리, 보존, 판매, 수입하는 행위 및 농약, 사료, 동물용 의약품 등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기준 잔류량을 초과한 식품을 가공 후 사용, 조리, 저장, 판매하는 행위 및 유독 물질 포함, 건강 위해 기구,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등을 판매용으로 제조, 수입하여 영업하는 행위 및 규격기준 미표시 식품 판매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진열, 영업하는 행위 및 공중위생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표장의 허위 또는 과대표시 및 광고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食品衛生法 第72條).

셋째,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식품위생기준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질병 수축 및 가축 고기 또는 장기를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행위 및 식중독 환자를 진단하거나 시체를 감안한 의사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및 특정 주체에 의해 채집되어 제조, 가공, 조리, 저장되는 특정 식품 또는 첨가물에 대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食品衛生法 第73條).

넷째, 후생노동상, 내각총리대신, 도도부현지사의 영업관련 업무보고 요구에 대한 해당 직원의 임검, 수거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미보고 및 허위보고한 자 및 판매용으로 저장,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의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 및 후생노동대신 등록검사기관 이외의 자가 표시 및 광고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 및 미허가 제품검사업무를 전부 폐지, 허위 장부 및 제품검사 기재 및 후생노동대신에 대한 등록검사기관의 업무, 회계 보고 및 직무관련 질문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하는 행위, 검사 거부, 방해, 기피 또는 허위로 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食品衛生法 第71條-第75條).

6.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식품안전

2011년 3월 11일 도호쿠(東北) 지역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후생노동성은 일본 전역에 걸쳐 식품 중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잠정 규제치를 재설정하고, 원자력 재해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잠정 규제치를 초과하는 식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출하 제한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오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기준치를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여 식품장비에서의 피폭선량 한도를 연간 5mSv에서 연간 1mSv로 인하하여 이를 바탕으로 방사성 세슘의 기준치를 재설정하였다.[178]

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관련 정책 변화

1) 유관기관의 방사선 물질 제거 추진

수산청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사성물질 유출에 의한 수산물 오염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단체 등과 연계하여 후쿠시마현 및 인근 현의 주요 항구에서 수산물을 주 1회 정도 검체를 채취하였다. 조사한 결과 원전사고 이후 2013년 11월 30일 기준 42,739건 검사 대상에서 기준치(100Bq/kg) 초과 비율이 사고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현의 경우 2011년 3월에서 6월에는 기준 초과 비율이 53%였으나 2013년 7월에서 9월에는 2.2%까지 감소하고 후쿠시마 현 이외 지역은 0.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79]

2) 방사선 물질통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전반적인 식품유통과정에 대

178) 厚生労働省 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 食品中の放射性物質の新たな基準値, 2014; 방사성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을 포함한 재기준치로는 일반식품 100Bq, 유아용식품과 우유 50Bq, 음료수 10Bq로 재설정하였다.

179) 日本 水産廳(http://www.jfa.maff.go.jp/j/housyanou/kekka.html 2014. 07. 01. 검색)

한 방사성 물질 잠정 규제치를 재설정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실시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방사선 물질 통제를 위한 일본 정부의 실제 대응을 살펴보면,[180]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2012년 3월말까지 잠정 규제치를 알림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규제 대상으로 준용하여 왔다.[181] 그러나 2011년 3월 17일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에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의 취급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의 하위 법령에 해당하는「乳及び乳製品の成分規格等に関する省令 및 食品添加物 規格基準」이 개정[182]되어(후생노동성 고시 제129호) 시행하고 있다. 동 규격기준에 따라 세슘의 규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성령(省令)이 새롭게 정비되었다(후생노동성 고시 제129호).

나.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및 수입통제

1) IAEA 조사단 파견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이후 국제사회는 국제기구와 제외국 정부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13년 4월 후쿠시마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였으며, 이어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이후 방사성물질 제염작업 지원, 해수 중 방사성물질 분석법 협의, 폐로작업 검증 등을 위해 추가로 조사단을 파견하여 국제적 협력을 통해 방사능 물질을 통제하고 있다.[183]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능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방사성물질 제거 처리를 위한 기준치를 재검토하고, 한국 등 각국에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관리 기준을 토대로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유통시키지 않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180) 石川一洋 による解説「食の安全·ベラルーシから学ぶこと」2011年11月7日,「スタジオパークからこんにちは」の枠内で放送, 概要は解説委員室解説アーカイブスでも検証可能..

181) 厚生労働省 食安発0317第3号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長 放射能汚染された食品の取り扱いについて, 2011年3月17日.

182)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告示 第129号, 2012年3月15日.

183)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3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2014, 77면.

2) FAO/WHO 코덱스위원회 지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는 유럽 지역 각료회의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응과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자 식품규격논의 필요성으로 인해 위원회를 1993년 설립하였다.[184] 농업 당국자는 먹을 수 있는 식품의 불필요한 손실 또는 폐기를 비난하며,[185] FAO는 지역의 음식 손실 및 폐기, 우유, 생선, 고기, 과일, 야채, 지방 작물, 곡류의 공급망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세계 각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식품 로스의 패턴은 크게 달라 선진국에서 주로 소비 단계에서 낮은 소득에서 중간 소득 국가에서 생산 및 수확 후 가치 사슬에서 일어나는 점을 검토하였다.[186]

세계보건기구(WHO)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에 대해 수은(mercury)을 중요한 공중보건 우려물질 화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메틸수은(methyl mercury)이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형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위해물질 정보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부나 관련 기관의 홍보는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부정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187] 메틸수은의 신경 독성분의 위험성 검토 결과 여성과 유아의 모발 중 및 혈중 수은 함유량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188]

3) 카르타헤나 의정서 규제

2012년 10월 1일~5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된 제6회 「바이오 안전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生物の多様性に関する条約) 조약국 회의에서는 바이오 안전에 관한 정보교환센터 운영 및 활동, 유전자 변형 생물의 취급, 운송, 포장 및 표시,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책임 및 구제, 의정서의 유효성 평가 등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었다.[189]

---

184) 中島 貴子, 食品安全をめぐるイ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 : 食品安全委員會への提言, 「社會技術研究論文集」, Vol. 2, 2004, 321면.

185) FAO(http://www.fao.org/news/story/en/item/219025/icode/, 2014. 7. 1. 검색).

186) FAO(http://www.fao.org/docrep/meeting/030/mj621e.pdf, 2014. 7. 1. 검색).

187) WHO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Volume 92, Number 4, April 2014, 229-308면(http://www.who.int/bulletin/volumes/92/4/en/).

188) 코덱스위원회 지침(http://www.codexalimentarius.org/codex-home/en/)

다. 도쿄도 식품안전 관리 및 대책

1) GAP와 생산정보제공 식품사업자 등록제도

도쿄도는 농업생산 공정관리기법(農業生産工程管理手法, 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이라 함은 제조자 스스로가 식품안전 확보, 품질 개선, 환경 보전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① 농사 점검항목 결정, ② 검사항목에 따라 농사 기록, ③ 기록 점검·평가하고 개선, ④ 차후 농사에 활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검사방법을 의미한다.[190]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공정별 검사항목 결정 확인·기록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식품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도민과 함께 성장시키는 도쿄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농약사용기록 등 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용도 도쿄도 GAP 기술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도쿄도 GAP은 기술도입을 추진하여 도쿄 농산물의 안전을 확보해오고 있다.

아울러 도쿄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산정보 제공식품 사업자 등록제도[191]는 식품의 생산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를 등록하고 도시 전체에 널리 공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생산사업자의 활동을 촉진하고, 도민이 식품생산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 등록추진과 설명회를 통해 도내 배송 또는 다른 현 지역의 제도와 연계하여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와 다른 지자체의 제도와의 연계를 추진하여 전반적인 등록 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192]

---

189) 外務省(http://www.mofa.go.jp/mofaj/gaiko/kankyo/seibutsu_tayosei/cop-mop6_1210_gh.html, 2014. 7. 2. 검색)

190) 東京都, 東京都食品安全推進計画, 平成22年度-平成26年度, 50면.

191) 도쿄도 산업노동국 농림수산부 식료안전과에서는 식품생산 등의 이력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도쿄도가 등록을 함께 실시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식품에 등록 마크를 표시하 등 도민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도 제공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http://www.sangyo-rodo. metro.tokyo.jp/norin/syoku/seisanjoho/index/index.htm).

192) 東京都, 東京都食品安全推進計画, 平成22年度-平成26年度, 10-11면.

2) 식품안전추진계획

사업자의 준수의식 향상 지원, 식품위생 자주관리 인증제도의 보급, 비상시 위기관리체제의 정비, 식품안전 정보수집 및 평가, 건강식품에 의한 건강피해의 방지, 수입식품의 안전확보 대책마련, 식품 알레르기 예방촉진, 식품표시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적정표시 추진, 음식에 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193]

또한, 식품위생 관련 사업방침의 기획 및 사업실시 관련 기관과의 연락을 조정하고, 도쿄도내 전역의 대규모 식품제조시설과 도매업 및 수입업 등을 대상으로 한 광역유통식품과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전문 감시 및 도매시장 유통거점 감시지도, 식중독 관련 조사 및 건강안전연구센터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식품관련 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감시지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3) 東京都, 東京都食品安全推進計画, 平成22年度-平成26年度, 10-27면.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전문가 인식 조사

송 봉 규

제4장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국민·전문가 인식 조사

제1절 일반국민 인식조사

1. 조사 설계

가. 조사 설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 조사의 주요 조사 설계는 <표 4-1>과 같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되었으며,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20대에서 60대까지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로 인구비례 할당하였다. 일반국민 인식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95%이다.

〈표 4-1〉 일반국민 인식조사 설계

구분	세부항목
조사지역	- 전국 16개시도(제주도 포함)
조사방법	-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대상	- 20~60대 성인 남녀
표본 규모	- 1,100명
표본추출방법	-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95%
조사기간	- 2014년 9월 22일~9월 24일

나. 조사 항목

이번 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표 4-2>와 같다. 조사내용은 4대 사회악에 대한 인식,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인식 등 크게 4개 분야이다. 4대 사회악에 대한 인식 조사항목은 4대 사회악 인지여부,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 4대 사회악 각각의 중요도이며,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항목은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식품구입 및 먹을 경우 불안요소,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 요소, 식품 원료 생산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식품 제조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식품 유통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식품 소비(판매)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수입식품의 안전인식 정도,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 과거대비 현재 식품안전수준 인식정도, 미래의 식품안전수준 인식정도 등이다.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항목은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인지여부,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성 동의정도,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신뢰성 동의정도,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 등이며,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인식 조사문항은 위해식품사범 현황에 대한 개선 인지정도, 위해식품사범 단속의 적절한 수행 인지정도,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체계성 인식정도,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효과성 인식정도,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신뢰성 인식정도,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이행의 적절성,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형사처벌 이행의 적절성,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문제가 되는 것,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효과적인 것, 위해식품 경험여부 및 신고처, 위해식품사범 경험여부 및 신고처,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 신고처 등이다.

〈표 4-2〉 조사 내용

구분	조사 항목
4대 사회악에 대한 인식	- 4대 사회악 인지여부 -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 - 4대 사회악 각각의 중요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 식품구입 및 먹을 경우 불안요소 -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 요소 - 식품 원료 생산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 식품 제조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 식품 유통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 식품 소비(판매)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 수입식품의 안전인식 정도 -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 - 과거대비 현재 식품안전수준 인식정도 - 미래의 식품안전수준 인식정도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만족도	-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인지여부 -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성 동의정도 -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신뢰성 동의정도 -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인식	- 위해식품사범 현황에 대한 개선 인지정도 - 위해식품사범 단속의 적절한 수행 인지정도 -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체계성 인식정도 -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효과성 인식정도 -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신뢰성 인식정도 -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이행의 적절성 -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형사처벌 이행의 적절성 -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문제가 되는 것 -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효과적인 것 - 위해식품 경험여부 및 신고처 - 위해식품사범 경험여부 및 신고처 -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 신고처

다. 표본 설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4년 8월 기준)을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맞게 표본을 설계하였다. <표 4-3>은 일반국민 인식조사 표본을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연령별·성별 인구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4-3〉 일반국민 인식조사 표본 설계

행정 구역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서울	229	22	22	27	26	27	27	24	25	14	15
2. 부산	79	7	7	8	8	9	9	9	10	6	6
3. 대구	54	5	4	6	6	7	7	6	6	3	4
4. 인천	64	6	6	7	7	8	8	8	7	3	4
5. 광주	30	3	3	3	3	4	4	3	3	2	2
6. 대전	32	3	3	4	4	4	4	3	3	2	2
7. 울산	26	3	2	3	3	3	3	3	3	2	1
8. 경기	265	25	23	31	30	36	35	29	28	14	14
9. 강원	32	3	3	3	3	4	4	4	4	2	2
10. 충북	33	3	3	4	3	4	4	4	4	2	2
11. 충남	42	4	3	5	4	5	5	5	5	3	3
12. 전북	38	4	3	4	4	5	4	4	4	3	3
13. 전남	38	4	3	4	3	5	4	5	4	3	3
14. 경북	56	5	4	6	5	7	7	7	7	4	4
15. 경남	70	7	5	8	7	9	9	8	8	4	5
16. 제주	12	1	1	1	1	2	2	1	1	1	1
총합	1,100	105	95	124	117	139	136	123	122	68	71

라. 응답자 특성

이번 조사의 응답자 특성은 <표 4-4>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응답자 특성별로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근소한 차이로 높으며, 40대, 50대, 30대, 20대, 6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비율이 가장 높으며, 미혼 비율이 기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같이 동거하는 가족수는 4명, 직업은 화이트칼라, 학력은 대졸 이상, 소득은 200~400만원미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4〉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자	559	50.8
	여자	541	49.2
연령	20대	200	18.2
	30대	241	21.9
	40대	275	25.0
	50대	245	22.3
	60대	139	12.6
지역	서울	229	20.8
	부산	79	7.2
	대구	54	4.9
	인천	64	5.8
	광주	30	2.7
	대전	32	2.9
	경기	265	24.1
	강원	32	2.9
	충청도	75	6.8
	전라도	76	6.9
	경상도	126	11.5
	기타(울산, 제주 포함)	38	3.5
결혼 여부	기혼	342	31.1
	미혼	758	68.9
가족수	1명	78	7.1
	2명	175	15.9
	3명	295	26.8
	4명	435	39.5
12세미만 자녀수	5명이상	117	10.6
	없음	813	73.9
	1명	166	15.1
직업	2명이상	121	11.0
	화이트칼라	486	44.2
	블루칼라	106	9.6
	자영업	132	12.0
	학생	85	7.7
	주부	208	18.9
	무직/퇴직	68	6.2
	기타	15	1.4
학력	고졸이하	263	23.9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7.0
	전문대졸	115	10.5
	대졸이상	645	58.6
소득	200만원미만	144	13.1
	200~400만원미만	408	37.1
	400~600만원미만	355	32.3
	600만원이상	193	17.5
전체		1,100	100.0

2. 4대 사회악에서 불량식품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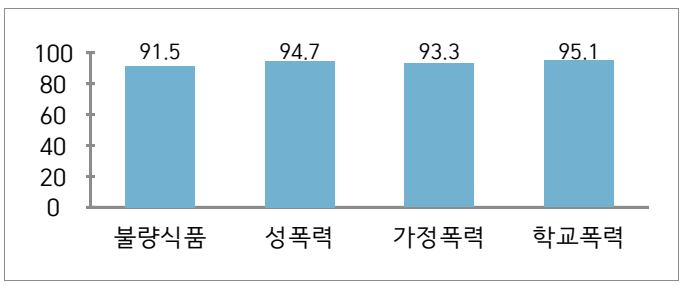
가. 4대 사회악 인지

일반국민들은 4대 사회악 중에서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사회악 중에서 불량식품에 대한 인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는 4대 사회악 인지여부에 대해 나타낸 것이며, [그림 4-1]은 4대 사회악에 대해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4대 사회악 인지여부는 '알고 있다'와 '모른다'로 조사하였다.

〈표 4-5〉 4대 사회악 인지여부

사례수: 1,100명, 단위: %

4대 악	알고 있다	모른다
불량식품	91.5	8.5
성폭력	94.7	5.3
가정폭력	93.3	6.7
학교폭력	95.1	4.9



[그림 4-1] 4대 사회악 인지여부에서 '알고 있다' 응답비율

나.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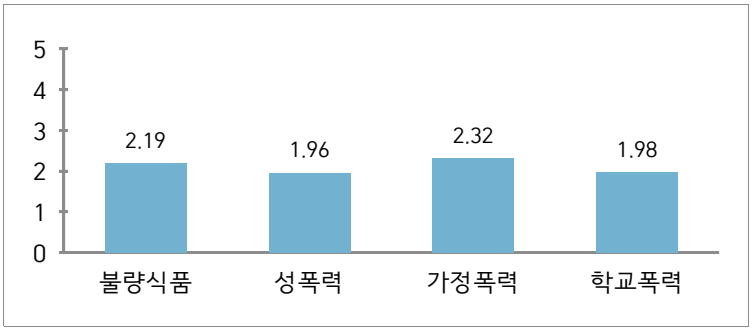
<표 4-6>은 일반국민들의 불량식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를 나타낸 것이다.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에서 '매우 안전하다'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4대 사회악 중에서 가정폭력이 가장 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4-2]는 4대 사회악 안

전체감도의 5점 평균값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 4-6〉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

사례수: 1,100명, 단위: %

4대 사회악	전혀 안전하지 않다 ①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안전한 편이다 ④	매우 안전하다 ⑤	불안 ①+②	보통 ③	안전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불량 식품	21.2	47.6	23.0	7.5	.6	68.8	23.0	8.2	2.19	29.70
성 폭력	30.4	50.3	13.9	4.3	1.2	80.6	13.9	5.5	1.96	23.91
가정 폭력	17.7	45.6	25.5	9.3	1.8	63.4	25.5	11.1	2.32	32.95
학교 폭력	30.4	49.5	13.8	5.0	1.4	79.8	13.8	6.4	1.98	24.39



[그림 4-2]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에서 '5점 평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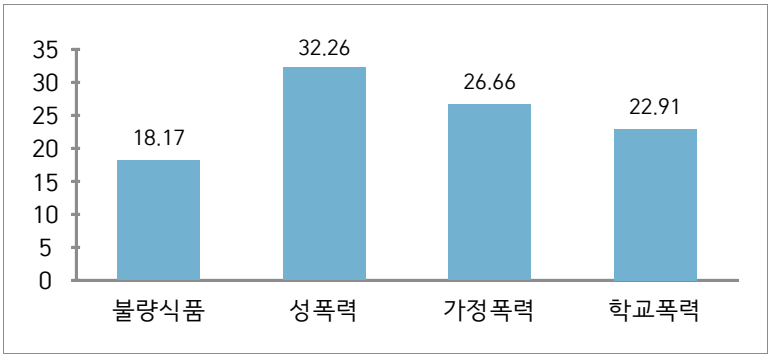
다. 4대 사회악의 중요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량식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4대 사회악 중요도의 합이 100%가 되도록 각각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4대 사회악 중요도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이 인식하는 4대 사회악 중요도는 [그림 4-3]에서 나타낸 바와 같다.

〈표 4-7〉 4대 사회악의 중요도

사례수: 1,100명, 단위: %

4대 사회악	중요도 평균
불량식품	18.17
성폭력	32.26
가정폭력	26.66
학교폭력	22.91



[그림 4-3] 4대 사회악의 중요도 평균분

3. 식품안전 정보의 인지경로와 불안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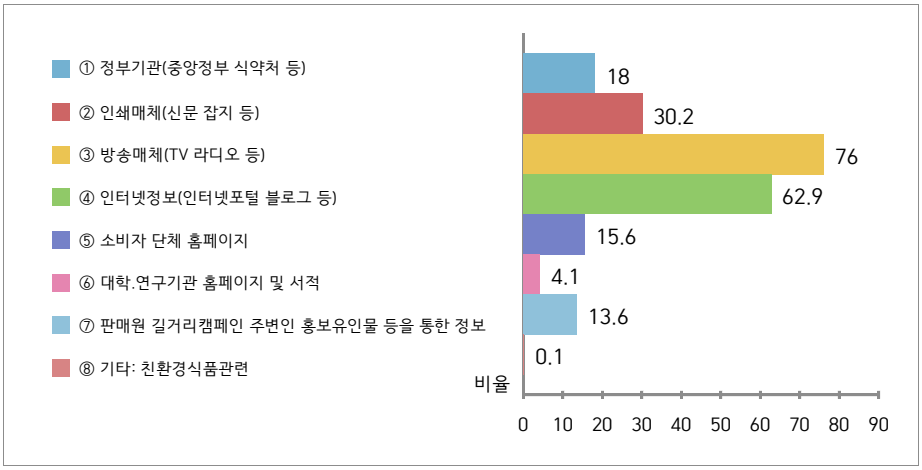
가.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표 4-8>은 일반국민들의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은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국민들은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와 정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을 통해서 식품안전 정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비율
①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8.0
②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30.2
③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76.0
④ 인터넷정보(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62.9
⑤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5.6
⑥ 대학·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1
⑦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3.6
⑧ 기타: 친환경식품관련	0.1



[그림 4-4]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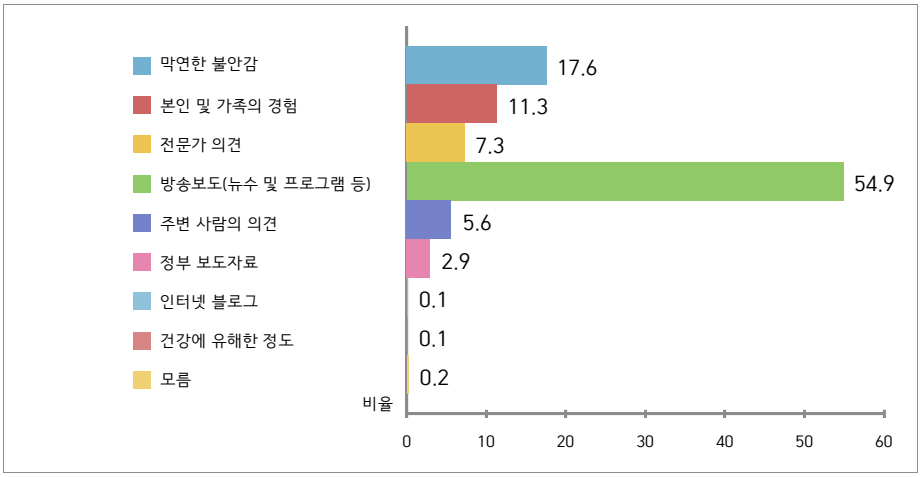
나.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 요소

일반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뉴스, 프로그램 등 방송보도(54.9%)로 나타났다. <표 4-9>는 식품안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방송보도 다음으로 막연한 불안감(17.6%), 본인 및 가족의 경험(11.3%)이 식품안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요소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비율
막연한 불안감	17.6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1.3
전문가 의견	7.3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54.9
주변 사람의 의견	5.6
정부 보도자료	2.9
인터넷 블로그	0.1
건강에 유해한 정도	0.1
모름	0.2
합계	100.0



[그림 4-5]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요소 응답분포

다. 식품구입 및 먹을 경우 불안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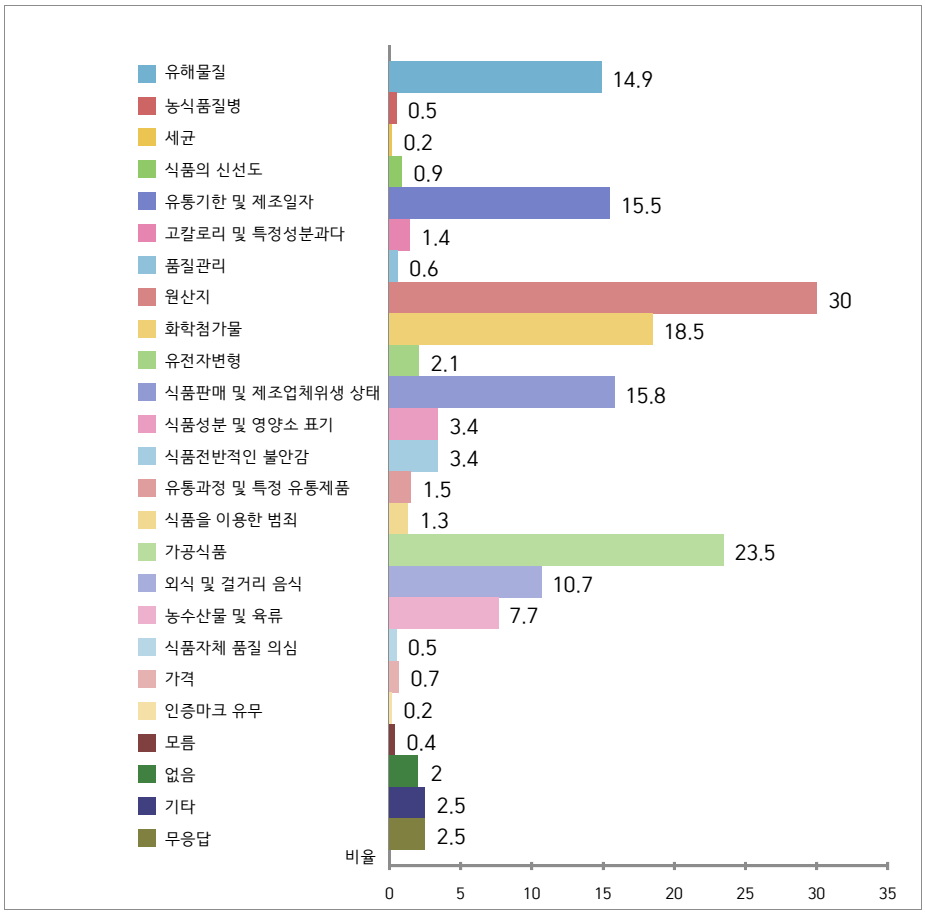
<표 4-10>은 일반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요소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들이 평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식품을 구입하거나 먹을 때,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관식으로 모두 기입한 결과이다. 일반국민들이 평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불안요소는 원산지(30.0%), 가공식품(23.5%), 화학첨가물(18.5%), 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위생상태(15.8%),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15.5%), 유해물질

(14.9%), 외식 및 길거리 음식(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은 응답결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4-10〉 식품에 대한 불안요소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비율
유해물질	14.9
농식품질병	0.5
세균	0.2
식품의 신선도	0.9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15.5
고칼로리 및 특정성분과다	1.4
품질관리	0.6
원산지	30.0
화학첨가물	18.5
유전자변형	2.1
식품판매 및 제조업체위생 상태	15.8
식품성분 및 영양소 표기	3.4
식품전반적인 불안감	3.4
유통과정 및 특정 유통제품	1.5
식품을 이용한 범죄	1.3
가공식품	23.5
외식 및 걸거리 음식	10.7
농수산물 및 육류	7.7
식품자체 품질 의심	0.5
가격	0.7
인증마크 유무	0.2
모름	0.4
없음	2.0
기타	2.5
무응답	2.5



[그림 4-6] 식품에 대한 불안요소 응답분포

4.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가. 식품 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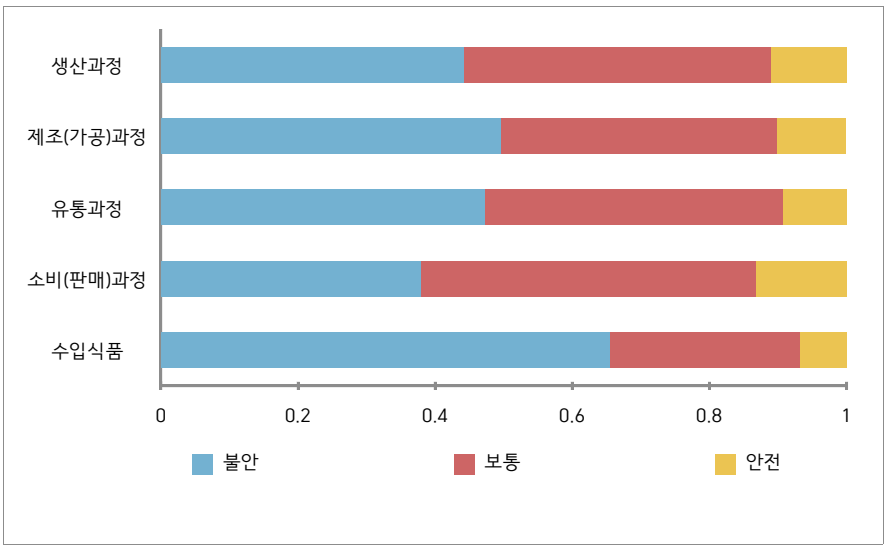
<표 4-11>은 식품의 생산과정, 제조(가공)과정, 유통과정, 소비(판매)과정, 수입 등 식품과정의 안전인식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국민들은 식품의 생산과정, 제조(가공)과정, 유통과정, 소비(판매)과정, 수입 등 전반적인 식품과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불안의 비율이 안전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일반국민들은 수입식품에 대해서 가장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들은 소비(판매), 생산, 제조(가공), 유통 과정 순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4-7]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개 응답문항을 불안, 보통, 안전으로 재분류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4-11〉 식품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불안 ①+②	보통 ③	안전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생산과정	7.3	36.8	44.8	9.9	1.2	44.1	44.8	11.1	2.61	40.23
제조(가공)과정	9.0	40.6	40.2	9.3	.9	49.6	40.2	10.2	2.52	38.11
유통과정	7.7	39.5	43.5	8.5	.8	47.2	43.5	9.3	2.55	38.80
소비(판매)과정	6.1	31.8	48.8	11.6	1.6	37.9	48.8	13.3	2.71	42.73
수입식품	15.8	49.6	27.6	5.8	1.1	65.5	27.6	6.9	2.27	31.68



[그림 4-7] 식품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분포(불안, 보통, 안전)

나.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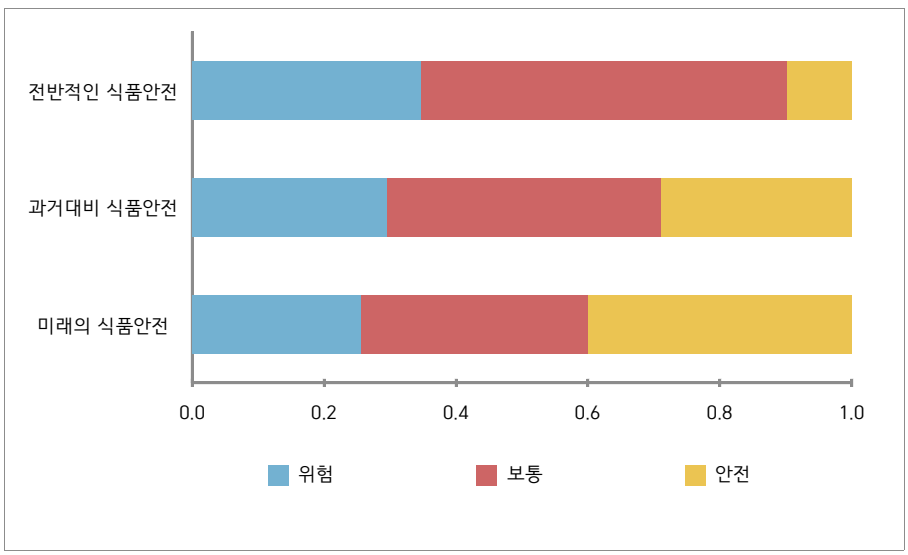
일반국민들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의 평가는 긍정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거에 비해 현재의 식품안전도 근소한 차이로 안전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미래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현재의 전반적인 식품

안전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일반국민들은 과거에 비해 식품은 안전하고 미래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표 4-12>는 전반적인 식품안전, 과거대비 식품안전, 미래의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국민들은 현재의 전반적인 식품안전 평가에 대해 9.9%가 안전하다고 평가하였고, 과거에 비해 현재 식품안전은 안전하다고 28.9%가 평가하였다. 일반국민들 40.1%는 미래의 식품안전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표 4-12〉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위험 ①+②	보통 ③	안전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반적인 식품안전	3.7	30.9	55.5	9.7	.2	34.6	55.5	9.9	2.72	42.93
과거대비 식품안전	4.4	25.1	41.6	28.2	.7	29.5	41.6	28.9	2.96	48.95
미래의 식품안전	3.5	22.0	34.5	38.4	1.7	25.5	34.5	40.1	3.13	53.23



[그림 4-8]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응답분포(위험, 보통,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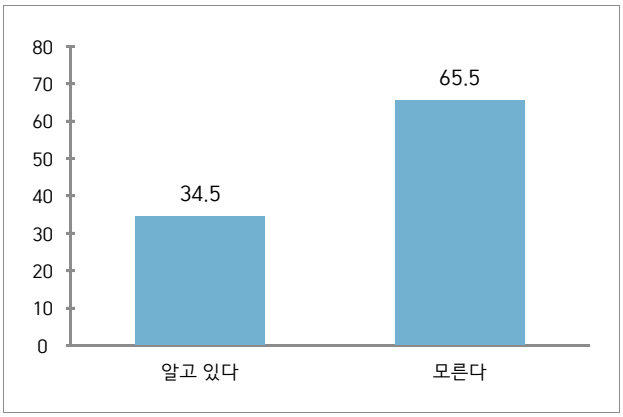
5. 식품안전정책의 만족도

일반국민들의 65.5%는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은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인지여부 조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13〉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인지여부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인지여부	34.5	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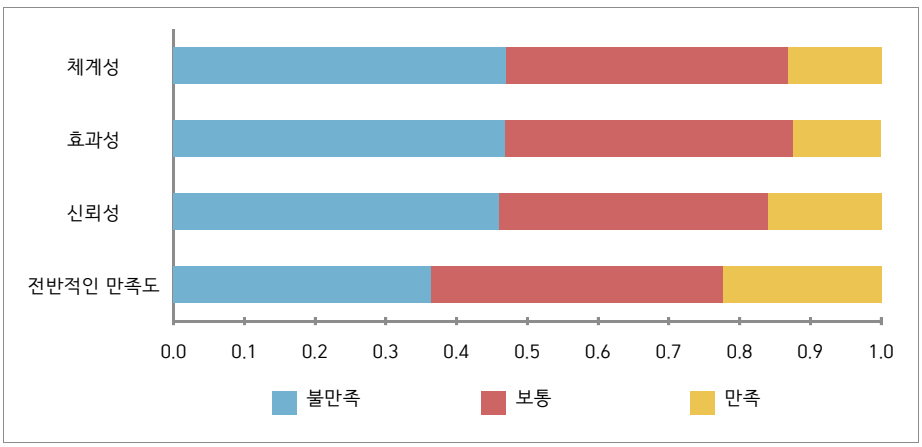
[그림 4-9]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인지분포

<표 4-14>는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만족도를 나타낸 것이다. 식품안전정책의 만족도는 체계성, 효과성, 신뢰성,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체계성, 효과성, 신뢰성, 전반적인 만족도 등 모든 문항에서 불만족의 비율이 만족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국민들의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체계성, 효과성, 신뢰성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 4-14〉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만족도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체계성	9.1	37.9	39.8	12.2	1.0	47.0	39.8	13.2	2.58	39.52
효과성	8.9	37.9	40.6	11.4	1.2	46.8	40.6	12.5	2.58	39.50
신뢰성	13.1	32.9	38.0	14.8	1.2	46.0	38.0	16.0	2.58	39.52
전반적인 만족도	8.1	28.3	41.2	21.0	1.5	36.4	41.2	22.5	2.79	44.86



[그림 4-10]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만족도 응답분포(불만족, 보통, 만족)

6.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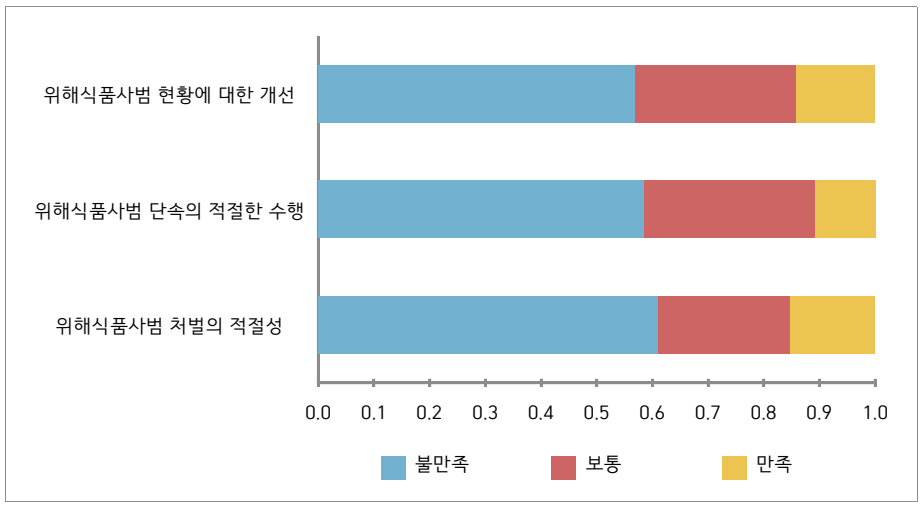
가.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평가

<표 4-15>는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에 해당하는 제조 및 판매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56.9%), 위해식품사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58.4%),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처벌도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0.9%). 특히,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의 현황이나 단속에 비해 처벌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4-15〉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위해식품사범 현황에 대한 개선	14.0	42.9	28.8	13.6	.6	56.9	28.8	14.3	2.44	36.00
위해식품사범 단속의 적절한 수행	14.6	43.7	30.8	9.6	1.2	58.4	30.8	10.8	2.39	34.75
위해식품사범 처벌의 적절성	23.5	37.4	23.7	12.5	2.9	60.9	23.7	15.4	2.34	33.45



[그림 4-11]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 응답분포(불만족, 보통,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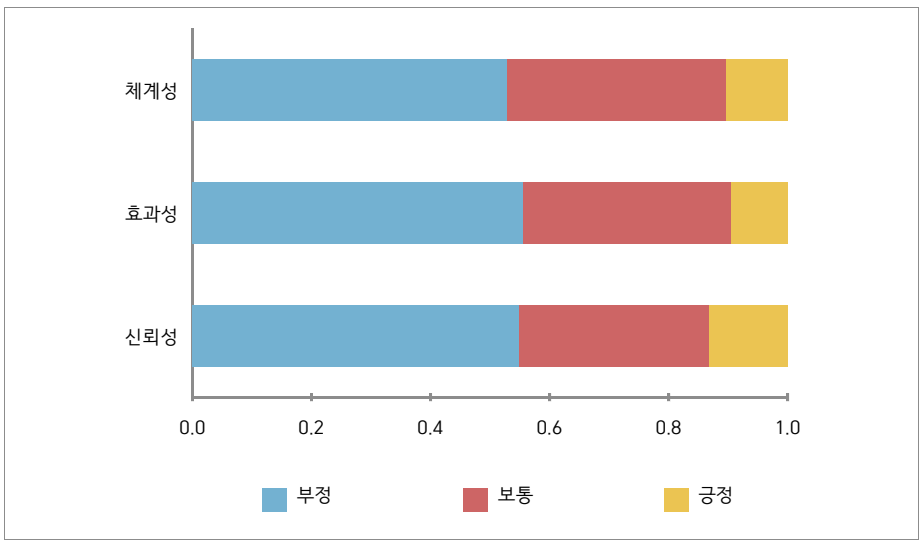
나. 위해식품사범 형사정책 만족도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은 정부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체계성, 효과성, 신뢰성 등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신뢰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정부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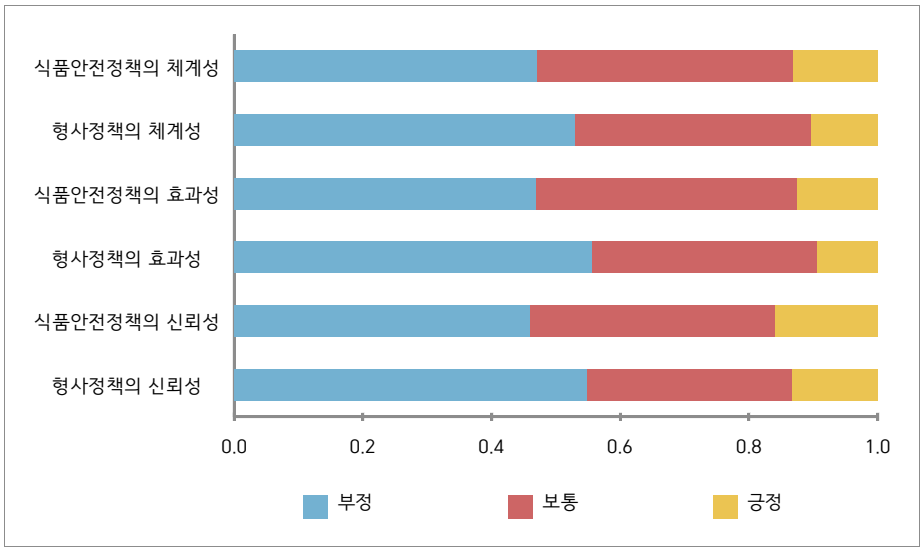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체계성	14.4	38.5	36.7	9.5	.9	52.9	36.7	10.4	2.44	36.00
효과성	14.0	41.5	35.0	8.5	1.1	55.5	35.0	9.5	2.41	35.30
신뢰성	16.0	38.8	31.9	11.9	1.4	54.8	31.9	13.3	2.44	35.95



[그림 4-12] 정부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만족도 응답분포(불만족, 보통, 만족)

[그림 4-13]은 일반국민들의 식품안전정책과 위해식품사범 형사정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이다.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식품안전정책과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 모든 분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식품안전정책과 위해식품사범 형사정책을 비교하면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3]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및 형사정책 만족도 비교

7. 위해식품사범 처벌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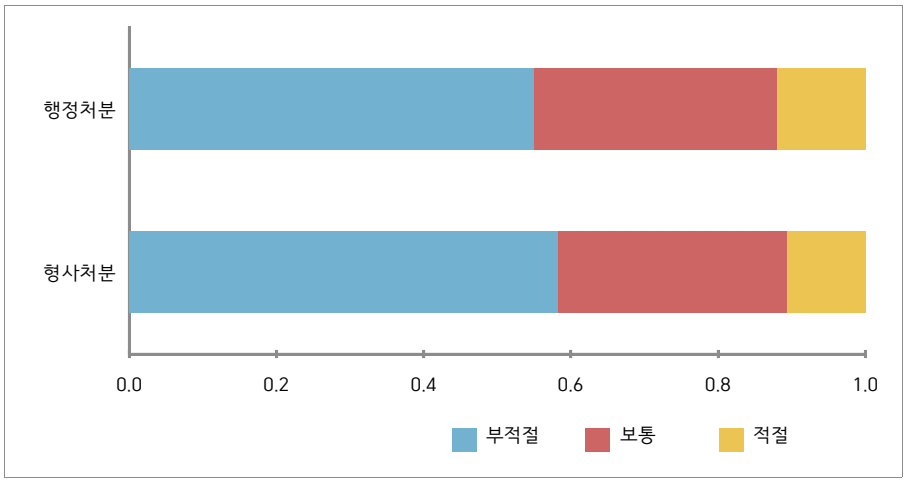
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형사 처분 이행의 적절성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4-17>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이행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형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일반국민들이 적절하다고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행정처분에 비해 더욱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형사 처분 이행의 적절성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그렇지 않다 ②	보통이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부적절 ①+②	보통 ③	적절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행정처분	16.0	38.9	33.1	10.8	1.2	54.9	33.1	12.0	2.42	35.57
형사처분	15.3	42.9	31.2	10.1	.5	58.2	31.2	10.6	2.38	34.43



[그림 4-14]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형사 처분 이행의 적절성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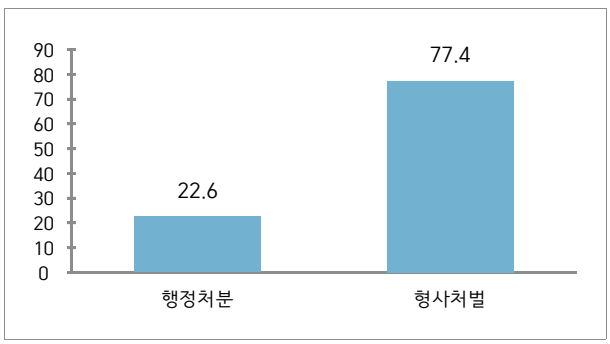
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효과성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이 행정처분보다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4-18>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선호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 4-18〉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선호도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행정처분	형사처벌
선호도	22.6	77.4



[그림 4-15]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효과도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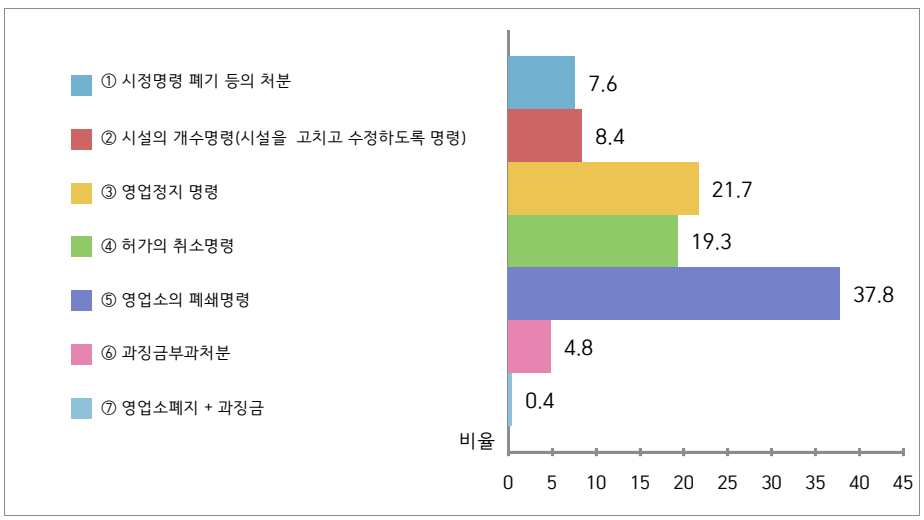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조사대상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조사한 결과가 <표 4-19>이다. 일반국민들이

인식하는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행정처분은 영업소의 폐쇄명령(37.8%), 영업정지 명령(21.7%), 허가의 취소명령(19.3%)순으로 나타났다. 즉,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일반국민들은 영업소의 폐쇄, 정지, 취소 명령이 행정처분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4-19〉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행정처분 종류

사례수: 249명, 단위: %

구분	비율
① 시정명령, 폐기 등의 처분	7.6
② 시설의 개수명령(시설을 고치고 수정하도록 명령)	8.4
③ 영업정지 명령	21.7
④ 허가의 취소명령	19.3
⑤ 영업소의 폐쇄명령	37.8
⑥ 과징금부과처분	4.8
⑦ 영업소폐지 + 과징금	0.4



[그림 4-16]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행정처분 종류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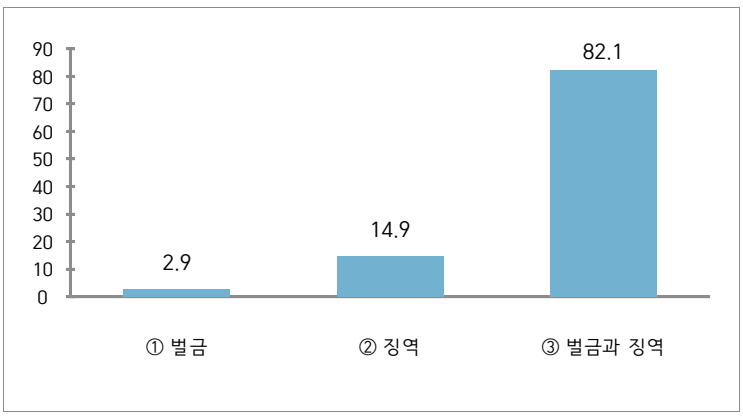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일반국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형사처벌에 대한 조사한 결과가 <표 4-20>이다.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형사처벌로 벌금과 징역을 병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벌금과 징역을 병과하는 형사처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4-20〉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형사처벌 종류

사례수: 851명, 단위: %

구분	비율
① 벌금	2.9
② 징역	14.9
③ 벌금과 징역	82.1



[그림 4-17]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형사처벌 종류 응답분포

8.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효과적인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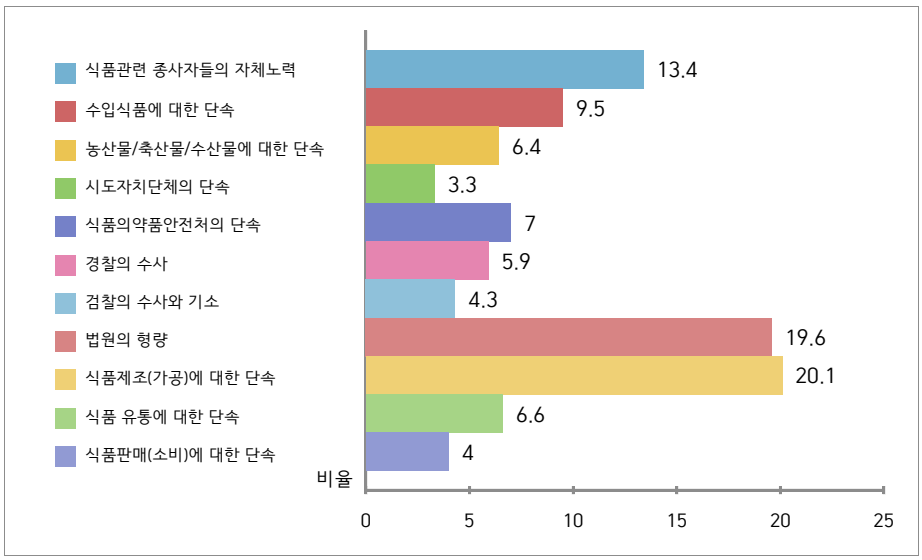
가. 위해식품사범 근절 노력의 문제점

<표 4-21>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20.1%), 법원의 형량(19.6%),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13.4%) 등이 가장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문제점(1순위)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비율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13.4
수입식품에 대한 단속	9.5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단속	6.4
시도자치단체의 단속	3.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	7.0
경찰의 수사	5.9
검찰의 수사와 기소	4.3
법원의 형량	19.6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20.1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	6.6
식품판매(소비)에 대한 단속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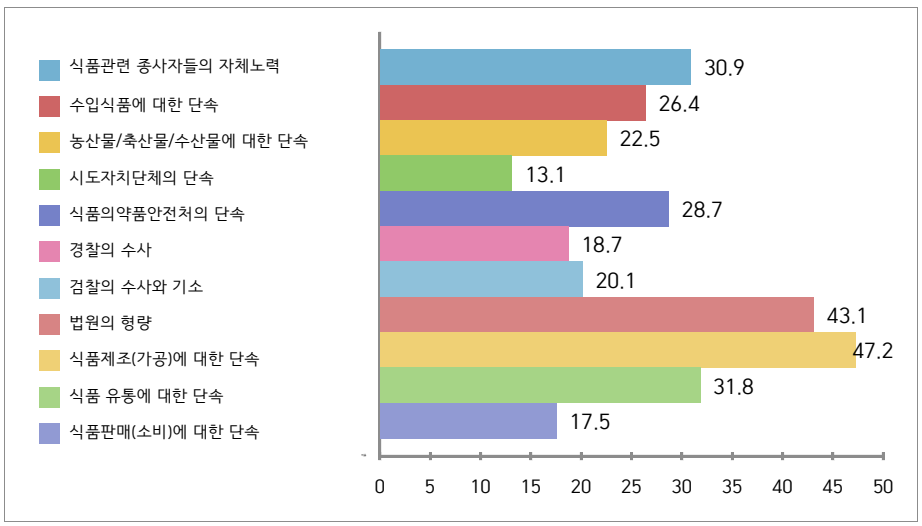
[그림 4-18]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문제점(1순위) 응답분포

<표 4-22>는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에서 문제가 되는 순서대로 1, 2, 3 순위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해서 나타낸 것이다.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47.2%), 법원의 형량(43.1%),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31.8%),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30.9%) 등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문제점(1+2+3순위)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비율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30.9
수입식품에 대한 단속	26.4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단속	22.5
시도자치단체의 단속	13.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	28.7
경찰의 수사	18.7
검찰의 수사와 기소	20.1
법원의 형량	43.1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47.2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	31.8
식품판매(소비)에 대한 단속	17.5



[그림 4-19]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문제점(1+2+3순위)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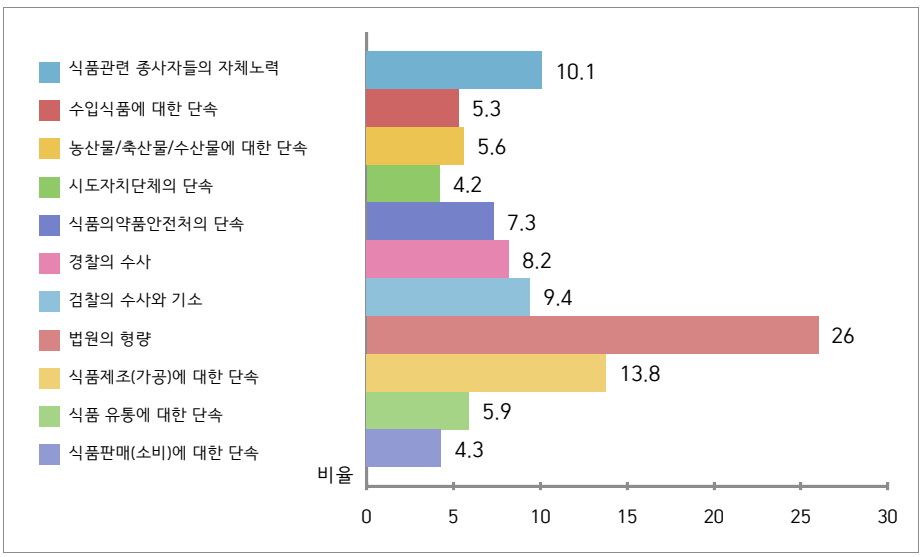
나.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표 4-23>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법원의 형량(26.0%),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13.8%),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10.1%) 등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4-23〉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1순위)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비율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10.1
수입식품에 대한 단속	5.3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단속	5.6
시도자치단체의 단속	4.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	7.3
경찰의 수사	8.2
검찰의 수사와 기소	9.4
법원의 형량	26.0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13.8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	5.9
식품판매(소비)에 대한 단속	4.3



[그림 4-20]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1순위)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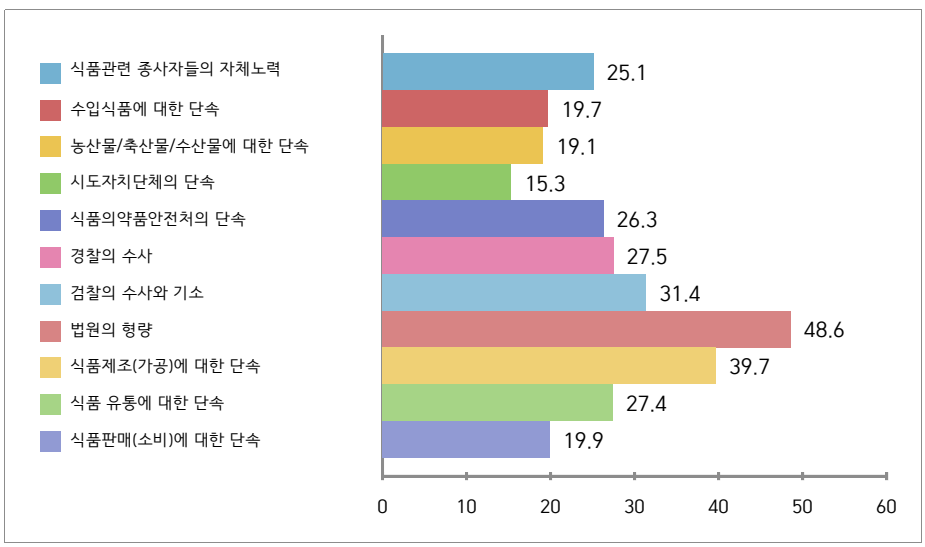
<표 4-24>는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에서 효과적인 방안 1, 2, 3 순위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해서 나타낸 것이다.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법원의 형량(48.6%),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39.7%), 경찰의 수사(27.5%),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27.4%).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25.1%) 등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1+2+3순위)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비율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25.1
수입식품에 대한 단속	19.7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단속	19.1
시도자치단체의 단속	15.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	26.3
경찰의 수사	27.5
검찰의 수사와 기소	31.4
법원의 형량	48.6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39.7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	27.4
식품판매(소비)에 대한 단속	19.9

[그림 4-21]
위해



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1+2+3순위) 응답분포

9. 위해식품 경험과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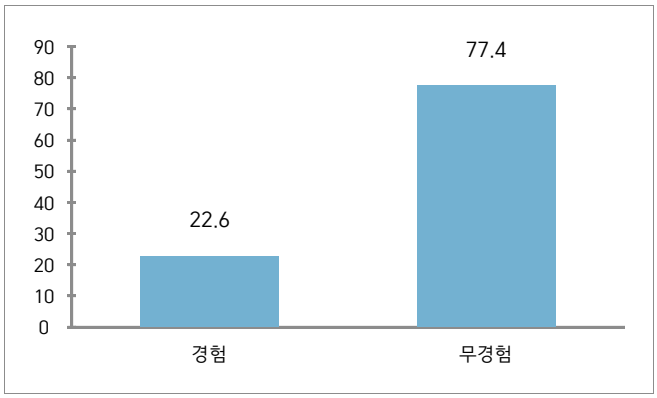
가. 위해식품 경험과 신고

일반국민들 중 22.6%가 위해식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는 위해식품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25〉 위해식품 경험여부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경험	무경험
위해식품 경험여부	22.6	77.4



[그림 4-22] 위해식품 경험여부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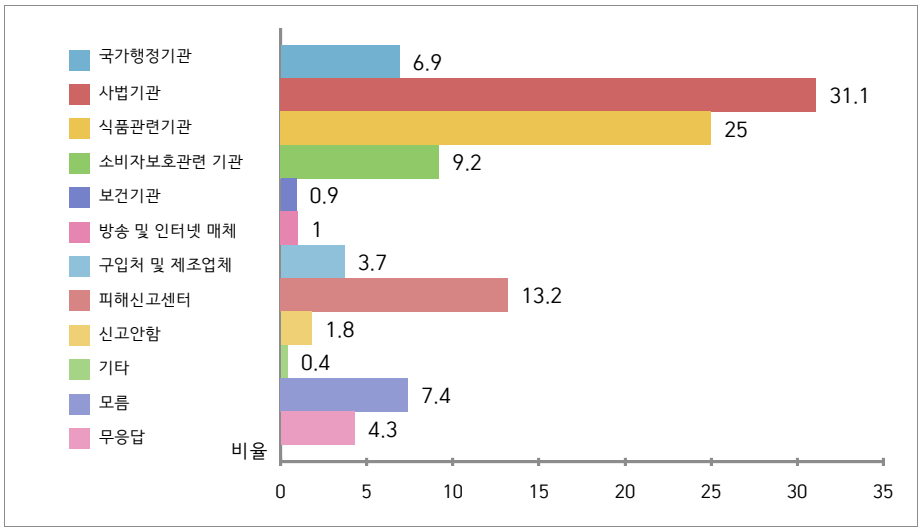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을 발견하거나 경험할 경우 사법기관(31.1%)과 식품관련기관(25.0%)에 가장 많이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식품 신고처는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식으로 직접 기입한 결과이다. 응답한 내용 중에서 경찰청, 112, 경찰, 검찰청, 법원, 사법기관 등은 사법기관, 식품안전위원회, 식품관리위원회, 식약청, 식약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안전부, 식품안전관리공단, 식품제조검수원,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농수산물관리공단, 농식품품질관리원, 위해식품관리위원회, 국립농산물검사소, 위생과, 식품관련기관, 관련기관, 해당부서 등은 식품관련기관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는 피해신고센터 응답결과로 재분류하였다.

구청·군청, 시청, 구청 민원실, 구청 위생과, 시청위생과, 시청 식품안전과, 시청 민원과, 도청 등은 국가행정기관, 소비자고발원, 소비자협회,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 등은 소비자보호관련기관, 보건기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센터, 보건소 등은 보건기관, 언론, 방송국, KBS소비자고발, 신문고, 온라인, 인터넷, 아고라, SNS 등은 방송 및 인터넷매체, 구입처, 제조사 등은 구입처 및 제조업체, 소비자신고센터, 소비자피해센터, 소비자고발센터, 불량식품신고센터, 고객센터, 마약신고센터, 부정부패 신고전화, 113, 119, 120 다산콜센터, 139, 182, 1113, 1336, 1339, 1399, 114, 132, 122 등은 피해신고센터로 재분류하였다.

〈표 4-26〉 위해식품 경험시 신고처 종류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비율
국가행정기관	구청·군청, 시청, 구청 민원실, 구청 위생과, 시청위생과, 시청 식품안전과, 시청민원과, 도청	6.9
사법기관	경찰청, 112, 경찰, 검찰청, 법원, 사법기관	31.1
식품관련기관	식품안전위원회, 식품관리위원회, 식약청, 식약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안전부, 식품안전관리공단, 식품제조검수원,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농수산물관리공단, 농식품품질관리원, 위해식품관리위원회, 국립농산물검사소, 위생과, 식품관련기관, 관련기관, 해당부서	25.0
소비자보호관련기관	소비자고발원, 소비자협회,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	9.2
보건기관	보건기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센터, 보건소	0.9
방송 및 인터넷 매체	언론, 방송국, KBS소비자고발, 신문고, 온라인, 인터넷, 아고라, SNS	1.0
구입처 및 제조업체	구입처, 제조사	3.7
피해신고센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 소비자신고센터, 소비자피해센터, 소비자고발센터, 불량식품신고센터, 고객센터, 마약신고센터, 부정부패 신고전화, 113, 119, 120 다산콜센터, 139, 182, 1113, 1336, 1339, 1399, 114, 132, 122	13.2
신고안함		1.8
기타		0.4
모름		7.4
무응답		4.3



[그림 4-23] 위해식품 경험시 신고처 종류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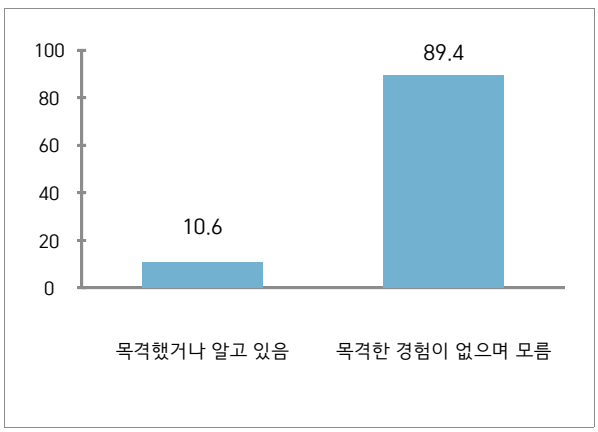
나. 위해식품사범 경험과 신고

일반국민들 중 10.6%가 위해식품사범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은 위해식품사범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27〉 위해식품사범 경험여부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목격했거나 알고 있음	목격한 경험이 없으며 모름
위해식품사범	10.6	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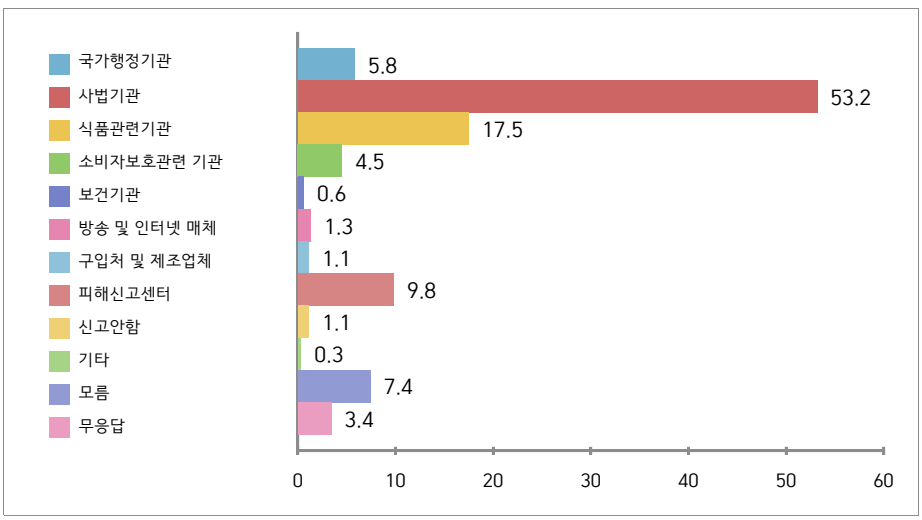
[그림 4-24] 위해식품사범 경험여부 응답분포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을 발견하거나 경험할 경우 사법기관(56.2%)과 식품관련기관(17.5%)에 가장 많이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식품사범 신고처는 위해식품 신고처와 동일하게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결과를 재분류한 것이다.

〈표 4-28〉 위해식품사범 경험시 신고처 종류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비율
국가행정기관	구청·군청, 시청, 구청 민원실, 구청 위생과, 시청위생과, 시청 식품안전과, 시청민원과, 도청	5.8
사법기관	경찰청, 112, 경찰, 검찰청, 법원, 사법기관	53.2
식품관련기관	식품안전위원회, 식품관리위원회, 식약청, 식약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안전부, 식품안전관리공단, 식품제조검수원,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농수산물관리공단, 농식품품질관리원, 위해식품관리위원회, 국립농산물검사소, 위생과, 식품관련기관, 관련기관, 해당부서	17.5
소비자보호관련 기관	소비자고발원, 소비자협회,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	4.5
보건기관	보건기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센터, 보건소	0.6
방송 및 인터넷 매체	언론, 방송국, KBS소비자고발, 신문고, 온라인, 인터넷, 아고라, SNS	1.3
구입처 및 제조업체	구입처, 제조사	1.1
피해신고센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 소비자신고센터, 소비자피해센터, 소비자고발센터, 불량식품신고센터, 고객센터, 마약신고센터, 부정부패신고전화, 113, 119, 120 다산콜센터, 139, 182, 1113, 1336, 1339, 1399, 114, 132, 122	9.8
신고안함		1.1
기타		0.3
모름		7.4
무응답		3.4



[그림 4-25] 위해식품사범 경험시 신고처 종류 응답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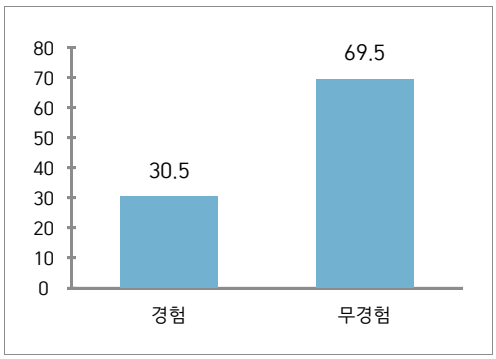
다.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과 신고

일반국민들 중 30.6%가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9>는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여부 응답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4-29〉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여부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경험	무경험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30.5	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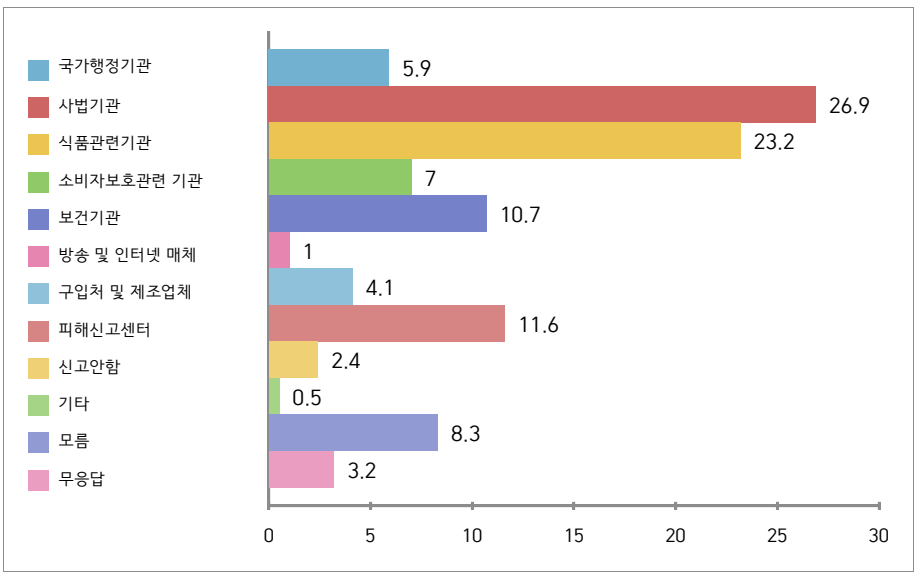
[그림 4-26]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여부 응답분포

일반국민들은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을 경험할 경우 사법기관(26.9%)과 식품관련기관(23.2%)에 가장 많이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을 경험할 경우 신고처는 위해식품 및 위해식품사범 신고처와 동일하게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식으로 응답한 결과를 재분류한 것이다.

〈표 4-30〉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시 신고처 종류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비율
국가행정기관	구청·군청, 시청, 구청 민원실, 구청 위생과, 시청위생과, 시청 식품안전과, 시청민원과, 도청	5.9
사법기관	경찰청, 112, 경찰, 검찰청, 법원, 사법기관	26.9
식품관련기관	식품안전위원회, 식품관리위원회, 식약청, 식약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안전부, 식품안전관리공단, 식품제조검수원, 식품안전소비자센터, 농수산물관리공단, 농식품품질관리원, 위해식품관리위원회, 국립농산물검사소, 위생과, 식품관련기관, 관련기관, 해당부서	23.2
소비자보호관련 기관	소비자고발원, 소비자협회,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	7.0
보건기관	보건기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센터, 보건소	10.7
방송 및 인터넷 매체	언론, 방송국, KBS소비자고발, 신문고, 온라인, 인터넷, 아고라, SNS	1.0
구입처 및 제조업체	구입처, 제조사	4.1
피해신고센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 소비자신고센터, 소비자피해센터, 소비자고발센터, 불량식품신고센터, 고객센터, 마약신고센터, 부정부패신고전화, 113, 119, 120 다산콜센터, 139, 182, 1113, 1336, 1339, 1399, 114, 132, 122	11.6
신고안함		2.4
기타		0.5
모름		8.3
무응답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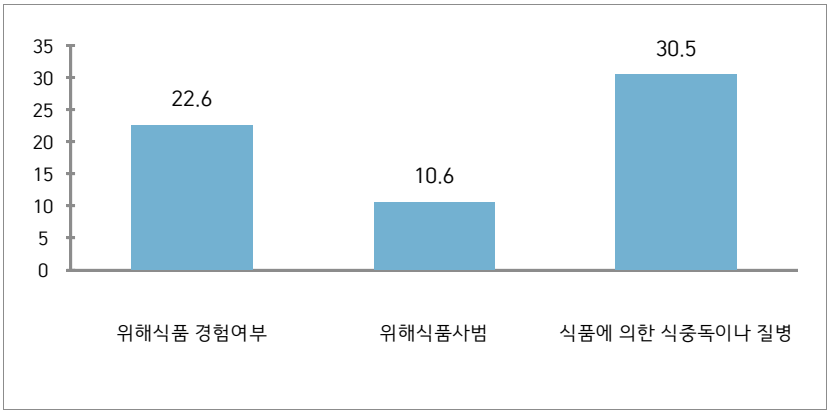
[그림 4-27]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시 신고처 종류 응답분포

앞에서 각각 논의한 위해식품, 위해식품사범,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등을 종합하면 일반국민들은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1〉 식품에 의한 경험여부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경험	무경험
위해식품 경험여부	22.6	77.4
위해식품사범	10.6	89.4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30.5	69.5



[그림 4-28] 식품에 의한 경험여부 응답분포

앞에서 논의한 위해식품, 위해식품사범,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을 경험할 경우 신고처와 종류를 종합하면 일반국민들은 사법기관과 식품관련기관에 가장 많이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의 식품관련 신고처에 대해 종합한 결과는 <표 4-3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32〉 식품에 의한 경험별 신고처 종류

사례수: 1,100명, 단위: %

구분		비율
국가행정기관	위해식품	6.9
	위해식품사범	5.8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5.9
사법기관	위해식품	31.1
	위해식품사범	53.2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26.9
식품관련기관	위해식품	25.0
	위해식품사범	17.5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23.2
소비자보호관련 기관	위해식품	9.2
	위해식품사범	4.5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7.0
보건기관	위해식품	0.9
	위해식품사범	0.6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10.7
방송 및 인터넷 매체	위해식품	1.0
	위해식품사범	1.3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1.0
구입처 및 제조업체	위해식품	3.7
	위해식품사범	1.1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4.1
피해신고센터	위해식품	13.2
	위해식품사범	9.8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11.6
신고안함	위해식품	1.8
	위해식품사범	1.1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2.4
기타	위해식품	0.4
	위해식품사범	0.3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0.5
모름	위해식품	7.4
	위해식품사범	7.4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8.3
무응답	위해식품	4.3
	위해식품사범	3.4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3.2

제2절 전문가 조사

1. 조사 설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과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적 평가를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 검찰, 학자 및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현황은 <표 4-33>과 같다.

〈표 4-33〉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현황

구 분	부서	날짜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식품관리총괄과	2014.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2014.
경찰	서울지역 5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2014.
검찰	대검찰청 형사2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	2014. 2014.
학자 및 연구자	대학교, 식품안전정보원, 변호사	2014.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조사는 1차와 2차 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1차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 검찰, 학자 및 연구자 50명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설문문항은 식품안전과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개방형 설문지로 진행되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식품안전 6개 분야와 위해식품사범 4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분야별로 분류한 전문가 의견들에 대해 2014년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일간 1차 조사와 동일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4-34〉 전문가조사 방법

구 분	내용	조사기간
1차 조사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의견(개방형)	2014.9. 1. ~ 2014.9.14.
2차 조사	1차 설문지에서 도출된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폐쇄형)	2014.9.15. ~ 2014.9.30.

전문가조사 응답률은 1차 조사 38%, 2차 조사 44%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응답률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가장 높았으며, 검찰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전문가조사 응답률은 <표 4-3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4-35〉 전문가조사 응답률

명(%)

구 분		전체	1차 조사 응답자	2차 조사 응답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식품관리총괄과	10 (100.0)	1 (10.0)	5 (50.0)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10 (100.0)	8 (80.0)	7 (70.0)
경찰	서울지역 5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10 (100.0)	3 (30.0)	3 (30.0)
검찰	대검찰청 서부지검 부정식품합동수사단	10 (100.0)	1 (10.0)	1 (10.0)
학자 및 연구자	대학교, 식품안전정보원, 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0 (100.0)	6 (60.0)	6 (60.0)
합 계		50 (100.0)	19 (38.0)	22 (44.0)

2. 1차 조사결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의견은 크게 식품안전과 위해식품사범 2가지로 분류하였다.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견은 1)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2) 불량식품의 심각성, 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4)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 5) 식품안전정책의 평가, 6)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전문가들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의견은 1) 위해식품사범의 심각성, 2)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 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4)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개선방안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가.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1)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안전하다'와 '안전하지 않다'로 분류되었다. 먹을거리가 안전한 이유와 의견은 '생산자 및 소비자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과거에 비해 향상', '국내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은 선진국인 미국, 일본, EU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 '전반적인 식품안전 수준은 높은 편',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공급사슬 단계별 위해분석을 실시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등이다.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낮은 이유와 의견은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로 인해 비위생적인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미흡한 실정',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에 따른 방사능에 오염된 농축산물 등이 원산지가 허위 표시되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이 대체로 비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떨어져 있다', '식품이 자급자족의 형태를 넘어 상품이 상거래 되었을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유통 및 접객업소에서의 식품안전의 문제보다는 제조업에서 식품안전문제가 심각하다', '농축수산물의 증산을 위한 농약 및 항생물질 등 인체 위해가능물질의 의도적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침해되고 있다', '신소재 식품의 생산, 신종 유해물질의 검출에 따른 신규 업무, 수입식품 증가 등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먹을거리 안전성이 침해도 빈번해지고 있다', '식품안전의 가장 심각한 영역은 제조 유통 분야이다', '대형업체나 마트가 아닌 소규모 영세 시장의 경우 식품 안전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가 일반식품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위법적 공급이 만연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취약한 편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과 다른 나라와 상이한 식생활 문화 및 섭취량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먹을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여전히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등이다.

〈표 4-36〉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내 용
1-1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높은 편이다.**
1-1-1	생산자 및 소비자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1-1-2	현재 국내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은 선진국인 미국, 일본, EU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1-1-3	전반적인 식품안전 수준은 높은 편이다.
1-1-4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공급사슬 단계별 위해분석을 실시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1-1-5	식품안전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심각성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이다.
1-2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낮은 편이다.**
1-2-1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로 인해 비위생적인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1-2-2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에 따른 방사능에 오염된 농축산물 등이 원산지가 허위 표시되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2-3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이 대체로 비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떨어져 있다.
1-2-4	식품안전은 식품분야에만 국한된 지엽적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안전, 나아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1-2-5	식품이 자급자족의 형태를 넘어 상품이 상거래 되었을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1-2-6	국내유통 및 접객업소에서의 식품안전의 문제보다는 제조업에서 식품안전문제가 심각하다.
1-2-7	농축수산물의 증산을 위한 농약 및 항생물질 등 인체 위해가능물질의 의도적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침해되고 있다.
1-2-8	신소재 식품의 생산, 신종 유해물질의 검출에 따른 신규 업무, 수입식품 증가 등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먹을거리 안전성이 침해도 빈번해지고 있다.
1-2-9	식품안전의 가장 심각한 영역은 제조 유통 분야이다.
1-2-10	대형업체나 마트가 아닌 소규모 영세 시장의 경우 식품 안전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2-11	건강기능식품의 경우가 일반식품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위법적 공급이 만연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취약한 편이다.
1-2-12	정부에 대한 불신과 다른 나라와 상이한 식생활 문화 및 섭취량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먹을거리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1-2-13	여전히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2) 불량식품의 심각성

불량식품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로 분류되었다. 불량식품이 심각한 이유와 관련 의견은 '비위생적 생산시설, 식용불가 식품첨가제 사용 제품 등 여전히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재한 편이다', '먹거리 불안 중 가장 큰 부분은 학

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은 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이다', '위해식품사범에 의한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가 문제이다', '악덕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들의 의도적인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요소와 실제 위해요소는 차이가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학적 사실보다는 경험 등 감성적 판단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와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 '불량식품 자체의 의미와 대상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등이다.

전문가들은 불량식품이 심각한 이유로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일부 동남아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저렴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도권 외의 식품이라도 위해성을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범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 '식량자급률 저하로 인한 수입량 증가가 식품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보다는 국제기구 및 국제시장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교역이 활발한 곳에서 식품 상행위 관련 부정행위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산 식품에 의한 먹을거리 안전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산 식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례가 많다', '중국 내에서 제조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해성 판단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등이다.

〈표 4-37〉 불량식품의 심각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내 용
2-1	**불량식품의 심각성이 심각한 편이다.**
2-1-1	비위생적 생산시설, 식용불가 식품첨가제 사용 제품 등 여전히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2-1-2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재한 편이다.
2-1-3	먹거리 불안 중 가장 큰 부분은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은 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이다.
2-1-4	위해식품사범에 의한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가 문제이다.
2-1-5	특히 악덕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들의 의도적인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
2-1-6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요소와 실제 위해요소는 차이가 있다.
2-1-7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학적 사실보다는 경험 등 감성적 판단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구분	내 용
2-1-8	소비자와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
2-1-9	불량식품 자체의 의미와 대상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2-2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2-1	일부 동남아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저렴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2-2	제도권 외의 식품이라도 위해성을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범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
2-2-3	식량자급률 저하로 인한 수입량 증가가 식품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2-2-4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보다는 국제기구 및 국제시장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5	식품 교역이 활발한 곳에서 식품 상행위 관련 부정행위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2-2-6	중국산 식품에 의한 먹거리 안전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2-2-7	중국산 식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례가 많다.
2-2-8	중국 내에서 제조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2-9	유해성 판단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2-3	**불량식품의 심각성이 낮은 편이다.**
2-3-1	관련 제도와 사후관리,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불량식품의 심각성은 양호한 편이다.

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높다'와 '낮다'로 분류되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이유와 관련 의견은 '대기업 생산 제품 중심의 식품 선호도 집중으로 식품 안전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요소도 많아지고 있다',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수입 농산품(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의 발달(유전자재조합식품, 신소재 식품, 식품첨가물 등)은 불량식품의 심각성을 증대시켰다', '급속한 자본주의 유입으로 저가의 식품 및 인스턴트의 대량 유통이 가능해져 식품안전의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인체위해 물질의 지속적인 검출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모호한 정의,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식품안전기준에 대해 영업자, 정부관리자는 안

심수준으로 인식하지만, 소비자는 불안 상태로 인식하여 사회적 불신감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한다' 등이다.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이유로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의견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언론보도에 기인한다', '식품의 비위생적 처리 및 유통사례가 언론에 보도시 국민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다',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등이다.

〈표 4-38〉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내 용
3-1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편이다.**
3-1-1	대기업 생산 제품 중심의 식품 선호도 집중으로 식품 안전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도 많아지고 있다.
3-1-2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3-1-3	수입 농산품(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3-1-4	산업의 발달(유전자 재조합식품, 신소재 식품, 식품첨가물 등)은 불량식품의 심각성을 증대시켰다.
3-1-5	급속한 자본주의 유입으로 저가의 식품 및 인스턴트의 대량 유통이 가능해져 식품안전의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3-1-6	인체위해 물질의 지속적인 검출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3-1-7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모호한 정의,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3-1-8	똑같은 식품안전기준에 대해 영업자, 정부관리자는 안심수준으로 인식하지만, 소비자는 불안 상태로 인식하여 사회적 불신감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한다.
3-2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언론보도에 기인한다.**
3-2-1	식품의 비위생적 처리 및 유통사례가 언론에 보도시 국민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다.
3-2-2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3-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낮은 편이다.**
3-3-1	일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식품안심도가 낮은 편이다.

4)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도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학교 앞 문구점의 경우 소비대상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학교 앞 판매식품의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 '학교 앞 불량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대부분 국내영세업체이거나 중국에서 수입된 가공품을 소포장하여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길거리 음식,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비추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주무부처가 단속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최대 사각지대라고 보아야 한다', '무허가 불법 식품제조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등은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이다', '무허가 불법 식품제조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등은 식품의 안전성 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수확 후 농산물 생산지 집하장부터 가공라인에 들어오기까지의 단계는 식품안전 관리 사각지대로 안전에 취약한 편이다', '식품공급사슬단계를 연결하는 운송, 원료보관 등의 단계가 원료품질저하, 원료변패, 이물질오염 등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에 취약한 편이다', '식품안전 사각지대는 GM 식품, 위협요소는 악덕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의 고의적 위반행위이다', '식품안전 사각지대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다원화에서도 비롯된다', '식약처에서 유통과정을 통제하고 싶어도 공정위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단속 및 감시영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전문병원, 복지원 등 복지시설분야는 사각지대로서 식품위생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등이다.

〈표 4-39〉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내 용
4-1	학교 앞 문구점의 경우 소비대상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4-2	학교 앞 판매식품의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
4-3	학교 앞 불량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대부분 국내영세업체이거나 중국에서 수입된 가공품을 소포장하여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4-4	길거리 음식,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비추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주무부처가 단속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최대 사각지대라고 보아야 한다.
4-5	무허가 불법 식품제조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등은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이다.
4-6	무허가 불법 식품제조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등은 식품의 안전성 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4-7	수확 후 농산물 생산지 집하장부터 가공라인에 들어오기까지의 단계는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안전에 취약한 편이다.
4-8	식품공급사슬단계를 연결하는 운송, 원료보관 등의 단계가 원료품질저하, 원료변패, 이물질 오염 등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에 취약한 편이다.
4-9	식품안전 사각지대는 GM 식품, 위협요소는 악덕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의 고의적 위반행위이다.
4-10	식품안전 사각지대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다원화에서도 비롯된다.
4-11	식약처에서 유통과정을 통제하고 싶어도 공정위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단속 및 감시영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4-12	특히 노인전문병원, 복지원 등 복지시설분야는 사각지대로서 식품위생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5) 식품안전정책의 평가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잘되고 있다', '문제가 많다'로 분류되었다. 식품안전정책의 문제가 많은 이유와 관련 의견은 '식품안전정책과 관련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속기관이 너무 산재해 있어 비효율성을 가중하고 있다', '단속기관의 다원화 경향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단속기관의 다원화는 책임행정 수행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 빠른 대응도 어렵게 한다', '여러 정부부처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분산 관리하기 때문에,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정책의 집행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는데 포용력이 넓지 않은 편이다', '창업한 가공업체의 경우 식품 안전에 대한 통합된 교육을 받지 못

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기준과 각자 해당되는 부분만 교육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번 신고하면 더 이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 '식약처의 출범으로 식품안전의 콘트롤 타워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식약처의 기능과 역할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 기준 규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정보전달매체의 발달은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실제 소비자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언론,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발생하는 주 요인 중의 하나가 인터넷 및 정보습득 매체 증가 및 다양화이다',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론에 의한 보도 및 기사를 자제하여야 한다', '일부 농가나 일부 가공업체 등에서 안전성 기준을 위반하여 처벌하는 것을 모든 업체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언론이 심각한 문제이다', '허가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식품업계의 영세성,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공존으로 인한 정책 수립, 집행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한 식자재 유통이 난무하고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원료의 허용기준치 초과로 인한 원료건전성 문제나 카제인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커피믹스와 같이 업체간 비방광고 등에 기인한 경우들이 다수이다',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상의 식품거래가 증가하나 안전대책은 미흡하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여전히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미흡한 편이다', '외식과 단체급식이 급증하고 있다', '외식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적 대응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식품안전 입장에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위해성 확인이 중요하다', '지자체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가치가 비교적 열세하고 집중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식품안전정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등이다.

〈표 4-40〉 식품안전정책의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내 용
구분	**내 용**
5-1	**식품안전정책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
5-1-1	식품안전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반적으로 구비된 편이다.
5-2	**식품안전정책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5-2-1	식품안전정책과 관련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5-2-2	단속기관이 너무 산재해 있어 비효율성을 가중하고 있다.
5-2-3	단속기관의 다원화 경향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5-2-4	단속기관의 다원화는 책임행정 수행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 빠른 대응도 어렵게 한다.
5-2-5	여러 정부부처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분산 관리하기 때문에,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5-2-6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정책의 집행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5-2-7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는데 포용력이 넓지 않은 편이다.
5-2-8	창업한 가공업체의 경우 식품 안전에 대한 통합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기준과 각자 해당되는 부분만 교육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5-2-9	제조업체의 경우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번 신고하면 더 이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
5-2-10	식약처의 출범으로 식품안전의 콘트롤 타워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식약처의 기능과 역할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5-2-11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 기준 규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5-2-12	정보전달매체의 발달은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5-2-13	실제 소비자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언론,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5-2-14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발생하는 주 요인 중의 하나가 인터넷 및 정보습득 매체 증가 및 다양화이다.
5-2-15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론에 의한 보도 및 기사를 자제하여야 한다.
5-2-16	일부 농가나 일부 가공업체 등에서 안전성 기준을 위반하여 처벌하는 것을 모든 업체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언론이 심각한 문제이다.
5-2-17	허가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5-2-18	식품업계의 영세성,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공존으로 인한 정책 수립, 집행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5-2-19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한 식자재 유통이 난무하고 있다.
5-2-20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원료의 허용기준치 초과로 인한 원료건전성 문제나 카제인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커피믹스와 같이 업체간 비방광고 등에 기인한 경우들이 다수이다.
5-2-21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상의 식품거래가 증가하나 안전대책은 미흡하다.
5-2-22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여전히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미흡한 편이다.
5-2-23	외식과 단체급식이 급증하고 있다.
5-2-24	외식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적 대응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5-2-25	식품안전 입장에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위해성 확인이 중요하다.
5-2-26	지자체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가치가 비교적 열세하고 집중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식품안전정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6)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조직의 일원화, 업무분위기 등 조직문화', '유관기관의 협업', '프로그램', '강력한 법과 효율적인 정부의 안전관리체계', '언론의 통제', '특별한 관리' 등으로 분류되었다. 식품안전정책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은 '식품관련 점검 및 단속 기관을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식품관련 one-stop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식품안전 관련법과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모두 일관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 관련 유관 부서 및 국과의 단절 및 불필요한 경계심, 조직에 대한 애사심 부족, 경직되고 억압적인 업무 분위기 등은 식품안전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즐겁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단속 및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등이다.

식품안전정책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업에 대한 의견은 '식품안전단속에 대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TF팀을 꾸려 계절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 분야에 따른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주들에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업소에 맞게 갖추어야 할 부분이 정리된 안내지를 배부함으로써 처음부터 규정에 맞는 식품관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과의 수사공조 등 사법공조 강화 필요하다' 등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1년에 1번 이상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변경된 기준을 알려주고 안전한 식품을 만들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심각한 여론몰이식 불안감 조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방법 교육 등이 필요하다', '식품안전 관리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현재의 식품안전 수준 등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내분기장애물질,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장기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 전담 강사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강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등이다.

〈표 4-41〉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내 용
6-1	**식품안전정책을 위해서는 조직의 일원화, 업무분위기 등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6-1-1	식품관련 점검 및 단속 기관을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식품관련 one-stop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 농산물 및 축산물 원산지표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해양수산부), 축산물 등급 등 정육점 표시(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등 식품업체 위생(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관세청) 기능별로 통합이 필요함
6-1-2	식품안전 관련법과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모두 일관 관리하여야 한다.
6-1-3	식품 관련 유관 부서 및 국과의 단절 및 불필요한 경계심, 조직에 대한 애사심 부족, 경직되고 억압적인 업무 분위기 등은 식품안전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즐겁고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6-1-4	단속 및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6-2	**식품안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6-2-1	식품안전단속에 대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TF팀을 꾸려 계절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 분야에 따른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6-2-2	정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주들에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업소에 맞게 갖추어야 할 부분이 정리된 안내지를 배부함으로써 처음부터 규정에 맞는 식품관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2-3	중국과의 수사공조 등 사법공조 강화 필요하다. 예) 중국 원산지, 제조공장에 대한 수사공조를 통하여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규명, 외교채널 동원 등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추진이 필요하다.
6-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3-1	식품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1년에 1번 이상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변경된 기준을 알려주고 안전한 식품을 만들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6-3-2	심각한 여론몰이식 불안감 조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방법 교육 등이 필요하다.
6-3-3	식품안전 관리 우선 순위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6-3-4	국민들에게 현재의 식품안전 수준 등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
6-3-5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6-3-6	내분기장애물질,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장기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6-3-7	식품안전 전담 강사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강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4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과 효율적인 정부의 안전관리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6-4-1	이물 등 가공과정 중 100%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의 허용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6-4-2	정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식품산업과 국민안전의 안정적 조절측면에 입각하여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6-4-3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과 무관하거나 통제 및 관리감독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집중 단속화 할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분	내 용
6-4-4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령에 있어, 인체 유해성 관련 부분은 철저하게 강화하도록 개정하되,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6-4-5	식품안전 및 안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관리 및 위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
6-4-6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위생과 안전, 규정 준수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강화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6-4-7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차별화된 적정한 판별법 마련 등이 필요하다.
6-4-8	식품에 대한 성분검정 대상 및 물량을 확대하여 위해 물질이나 배합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6-4-9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제품의 소비를 포괄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6-4-10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유통업체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매입(유통업체에서 매출량 만큼 이를 매입량으로 잡는 것)과 같은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6-4-11	공공기관를 통한 식품 위생등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4-12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6-5	**식품안전정책을 바람직한 운용을 위해서는 언론의 통제가 필요하다.**
6-5-1	식품 안전성에 대한 철저하고 신중한 검증 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6-6	**식품안전에 있어 식품제조업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6-6-1	음식점을 포함한 식품취급업소는 조건부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
6-6-2	개고기와 같은 식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력관리 또는 위생적인 곳에서 도살되어 유통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6-6-3	도축장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6-6-4	식중독 등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6-6-5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기준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평가

1) 위해식품사범의 심각성

위해식품사범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심각하지 않다'와 '심각하다'로 분류되었다. 위해식품사범이 심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견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과거에 비해 위해식품사범 감소하였다', '원산지표시의 경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후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정착단계에 있다' 등이다.

위해식품사범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모호한 정의,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식품위생사범은 서울 경기 등에 비해 지방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 '식품안전사범은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식품산업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사업체를 설립 및 폐업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해식품사범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고의적 식품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위해식품사범 중 특히 원산지 위반 사범의 경우는 죄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해 더 심각하다', '위해식품은 단순한 품질기만이 아니라,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범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수반하고 있다', '위해식품사범은 피해자가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다양한 지능범죄수사 업무 중 식품사범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심각성이 높다' 등이다.

〈표 4-42〉 위해식품사범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내 용
1-1	**위해식품사범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1-1-1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과거에 비해 위해식품사범 감소하였다.
1-1-2	원산지표시의 경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후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정착단계에 있다.
1-2	**위해식품사범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
1-2-1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모호한 정의,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2-2	식품위생사범은 서울 경기 등에 비해 지방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
1-2-3	식품안전사범은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1-2-4	식품산업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1-2-5	간단한 신고만으로 사업체를 설립 및 폐업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해식품사범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1-2-6	고의적 식품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1-2-7	위해식품사범 중 특히 원산지 위반 사범의 경우는 죄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해 더 심각하다.
1-2-8	위해식품은 단순한 품질기만이 아니라,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범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수반하고 있다.
1-2-9	위해식품사범은 피해자가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1-2-10	다양한 지능범죄수사 업무 중 식품사범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심각성이 높다.

2)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적절하다'와 '적절하지 않다'로 분류되었다.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이 적절하다는 전문가 의견은 '단속 및 처벌, 재판 형량 등은 현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 위해사범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상당부분 먹거리 안전이 정화되어 단속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원산지관리와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등이다.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이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은 '법률상 법정되어 있는 형량은 높은 편이나, 실제로 처분 받는 형량은 낮아 위반자가 줄지 않고 있다', '위해식품사범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문제이나, 이에 비해 처벌수준은 가볍다', '위해식품사범은 고의로 추가 이윤을 취하려고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양형에 대한 법원 기준은 경미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처분이 매우 약한 편이다', '공평하지 않은 처벌 사례가 왕왕 있다', '대부분이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다',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정형은 약하지 않지만 실제 선고되는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등이다.

전문가들은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이 '예방적 효과'에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관한 의견으로는 '위해식품사범의 처벌수준을 무겁게 하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대책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식품사범은 적극적이고 엄격한 처벌이 해결책이 아니라, 평소 관리와 감독을 통한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효과적인 식품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지도감독과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장 중요하다' 등이 있다.

〈표 4-4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내 용
2-1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은 적절한 편이다.**
2-1-1	단속 및 처벌, 재판 형량 등은 현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1-2	단순 위해사범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2-1-3	현재 상당부분 먹거리 안전이 정화되어 단속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2-1-4	원산지관리와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2-2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
2-2-1	법률상 법정되어 있는 형량은 높은 편이나, 실제로 처분 받는 형량은 낮아 위반자가 줄지 않고 있다.
2-2-2	위해식품사범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문제이나, 이에 비해 처벌수준은 가볍다.
2-2-3	위해식품사범은 고의로 추가 이윤을 취하려고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2-2-4	양형에 대한 법원 기준은 경미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2-2-5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처분이 매우 약한 편이다.
2-2-6	공평하지 않은 처벌 사례가 왕왕 있다.
2-2-7	대부분이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다.
2-2-8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정형은 약하지 않지만 실제 선고되는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2-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와 감독이란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다.**
2-3-1	위해식품사범의 처벌수준을 무겁게 하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3-2	대책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3-3	식품사범은 적극적이고 엄격한 처벌이 해결책이 아니라, 평소 관리와 감독을 통한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2-3-4	효과적인 식품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지도감독과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장 중요하다.

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 '단속과 수사에 문제가 있다', '재판과 형량이 문제가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문제' 등으로 분류되었다. 위해식품사범 형사정책의 문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에는 '행정기관 소속 행정공무원의 잦은 업무변동과 전보 등으로 형사사법절차 관련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 '단속공무원은 수사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나 증거법에 의한 증명력 확보가 어렵다', '고의 입증상의 문제 때문에, 식품안전 사건의 실행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통상적인 지시 감독임무가 있는 운영주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등이다.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및 수사의 문제점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합동단속을 했을 때의 효율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어, 경찰업무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부정불량식품은 대부분 음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위해식품사범 중 원산지 위반 사범의 경우는 대포폰 이용, 조직화, 대형화 추세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등이다. 위해식품사범의 재판 및 형량의 문제점에 관한 전문가 의견에는 '위해식품사범은 처벌에 비해 부당이득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계속적으로 위반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담당검사의 스타일에 따라 비슷한 일반사건일 경우라도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가 차이가 나기도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운영하면서 2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있고,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2~3명씩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며, 각 시도에도 수십명씩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 일반경찰, 해양경찰 등도 식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중복수사 및 실적을 위한 과잉수사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부실수사나 과잉수사로 무죄를 받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실제 재판과정에서 적용되는 2012년 기준 대법원 양형기준조차 적용할 수 없는 것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이 문제이다' 등이다.

〈표 4-44〉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내 용
3-1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편이다.**
3-1-1	기존의 농관원 자체 단속업무수행보다 경찰의 내사 및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때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크다.
3-2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3-2-1	행정기관 소속 행정공무원의 잦은 업무변동과 전보 등으로 형사사법절차 관련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
3-2-2	단속공무원은 수사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나 증거법에 의한 증명력 확보가 어렵다.
3-2-3	고의 입증상의 문제 때문에, 식품안전 사건의 실행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통상적인 지시 감독임무가 있는 운영주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3-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및 수사에 있어 형사정책적 문제점이 있다.**
3-3-1	합동단속을 했을 때의 효율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3-2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어, 경찰업무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3-3-3	부정불량식품은 대부분 음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3-3-4	위해식품사범 중 원산지 위반 사범의 경우는 대포폰 이용, 조직화, 대형화 추세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3-3-5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3-4	**위해식품사범의 재판 및 형량에 문제가 있다.**
3-4-1	위해식품사범은 처벌에 비해 부당이득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계속적으로 위반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3-4-2	담당검사의 스타일에 따라 비슷한 일반사건일 경우라도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가 차이가 나기도 한다.
3-4-3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운영하면서 2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있고,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2~3명씩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며, 각 시도에도 수십명씩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 일반경찰, 해양경찰 등도 식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중복수사 및 실적을 위한 과잉수사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3-4-4	부실수사나 과잉수사로 무죄를 받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3-4-5	실제 재판과정에서 적용되는 2012년 기준 대법원 양형기준조차 적용할 수 없는 것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이 문제이다.
3-5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적 애로사항은 언론보도에 의한 것이 많은 편이다.**
3-5-1	위해식품사범과 관련된 지나친 언론보도는 식품안전관련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는 경향이 많다.
3-5-2	위해식품사범과 관련된 지나친 언론보도로 식품업체의 도산 및 관련식품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3-5-3	위해식품사범에 있어 형사정책의 문제점은 지나친 언론보도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3-5-4	식품사범의 인허가 관련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 정도를 넘어서 인체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수사 및 공표는 식품 관련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민감한 부분이다.
3-5-5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비방, 실적 챙기기에 충분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조사결과 발표가 문제이다.

4)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 개선방안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전문성', '실효성', '법 정비' 등으로 분류하였다. 전문성과 관련된 형사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식품에 대한 단속, 수사, 재판 등에 있어 식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단속부터 사법절차가 진행되도록 식약처 뿐 아니라 경찰, 검찰, 지자체 등도 이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검찰에서 형사부 전담업무별로 전문검사를 대검에서 인증하고, 인증된 검사를 지역이동이 있더라도 식품 전담업무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경찰, 지자체에서도 식품 관련 전담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식품 전문가를 수사기관에서 적극 양성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한 증거수집 및 최종적인 처벌까지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식약처, 검찰, 경찰뿐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안전성 담보가 필요하다',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부처간 협력의 상설적인 채널을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범행 수법, 이슈화 현안에 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정책 및 형량 등의 형사정책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위해식품사범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회를 운영하여 불량식품의 위해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농링수산부, 자치단체 등 전문지식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이 단속, 수사 등을 하고 제조, 유통,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에 한하여만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위해식품사범의 단속을 폭넓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각 기관별 담당분야가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단속업무 등 사후관리를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위해식품사범 단속을 위해서는 차량위치추적, 차량소유자 확인 등 경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식약처, 지자체 특사경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식약처 지역본부에서도 본부에 버금가는 수사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 '지역 식품관련 단속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각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식품 관련 단속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 지자체 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및 단속관련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

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 특사경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 단속 인력 등과 같은 식품안전 관련 인프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자체에 위해사범 처벌권이 있어 단속과 처벌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위해식품사범과 관련하여서는 식품학 쪽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의 논의과정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식품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감시체계 및 단속은 주무 부처에서, 고소 및 고발사건은 경찰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가 바람직하다', '식품담당 특사경의 전문성 키우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경찰과 특사경의 병행이 필요하다', '수사기관보다 식약처의 단속권한이 오히려 범죄억제력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식약처 등은 수사기관과 달리 행정처분 권한으로 영장없이 현장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속하다', '식품사범의 경우는 전문성을 지난 주무 부처, 즉 식약처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사범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기관은 주무 부처로 하고, 식약처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이 경찰청으로 파견근무하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수사기관보다 식약처의 단속권한이 오히려 범죄억제력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식품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집행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 간의 괴리감을 극복해야만 한다', '식품안전범과 관련하여서는 일선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필요하다', '사기관과 공기관의 합동을 통한 위생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등이다.

실효성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으로는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 합리적인 계획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위해식품사범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영세업체나 자영업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법원과 검찰 처리절차 전부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일부 관심사건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실정인데, 모두 공개로 바뀌어야 한다', '시장기능에 맡기는 위해업소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 환수제의 운영성과를 발표하는 등 제도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내부 고발자에게 면책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 독려가 필요하다',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자들에게도 일반사경과 같이 수사수당 지급, 특진, 근평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단속부터 형량 집행에 이르는 과정

을 추적조사를 통해서 효율성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인이나 영세업체보다 대기업이나 대다수가 참여한 식품사범에서의 단속과 처벌이 중요하다' 등이다.

법 정비와 관련된 형사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불량식품 제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한 것에 대한 형량 집행으로 재발 가능성 최소화하여야 한다', '벌금의 필요적 병과, 범죄수익 환수 등을 적절하게 법률상 선택적으로 부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사범의 수익까지 철저하게 박탈할 필요가 있다', '위해식품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경우의 확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사회 및 경제적 이윤 수준과 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기준을 상향 설정하여 위해식품사범은 엄단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야 한다', '법원의 일관적 처벌을 확인할 수 있는 양형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현재 양형기준에서의 "유해한 식품"과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을 정확히 구분해 주는 과학적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공평하지 않은 처벌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형기준도 처벌 전 미리 구체적 기준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경미한 범죄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돌리고, 반복되거나 악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식품사범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수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평한 처벌이 더욱 중요하다', '원산지 단속은 식당, 정육점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리기구(칼 등)등으로 인한 신변 위협 등을 받는 경우도 있어, 신변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 강력한 처벌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일반사범과 식품위해사범과의 차별화된 형량 구형이 가능해야 한다', '위해식품사범의 형량과 벌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의적, 지능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단속과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의적 식품안전과 관련되어서는 강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 '과대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를 넣은 식품제도 등으로 유형화하여 집중 단속 또는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식품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이 중요하다' 등이다.

〈표 4-45〉 위해식품사범 형사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내 용
4-1	**식품에 대한 단속, 수사, 재판 등에 있어 식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단속부터 사법절차가 진행되도록 식약처 뿐 아니라 경찰, 검찰, 지자체 등도 이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4-1-1	검찰에서 형사부 전담업무별로 전문검사를 대검에서 인증하고, 인증된 검사를 지역이동이 있더라도 식품 전담업무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경찰, 지자체에서도 식품 관련 전담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식품 전문가를 수사기관에서 적극 양성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한 증거수집 및 최종적인 처벌까지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1-2	기존 식약처, 검찰, 경찰뿐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안전성 담보가 필요하다.
4-1-3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부처간 협력의 상설적인 채널을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범행 수법, 이슈화 현안에 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1-4	안전관리정책 및 형량 등의 형사정책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4-1-5	위해식품사범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회를 운영하여 불량식품의 위해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1-6	식약처, 농링수산부, 자치단체 등 전문지식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이 단속, 수사 등을 하고 제조, 유통,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에 한하여만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위해식품사범의 단속을 폭넓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4-1-7	각 기관별 담당분야가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단속 업무 등 사후관리를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1-8	위해식품사범 단속을 위해서는 차량위치추적, 차량소유자 확인 등 경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4-1-9	식약처, 지자체 특사경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4-1-10	식약처 지역본부에서도 본부에 버금가는 수사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
4-1-11	지역 식품관련 단속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각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식품 관련 단속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1-12	식약처, 지자체 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및 단속관련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4-1-13	지자체 특사경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1-14	지자체 단속 인력 등과 같은 식품안전 관련 인프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4-1-15	현재 지자체에 위해사범 처벌권이 있어 단속과 처벌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4-1-16	위해식품사범과 관련하여서는 식품학 쪽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의 논의과정이 중요하다.
4-1-17	효과적인 식품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감시체계 및 단속은 주무 부처에서, 고소 및 고발사건은 경찰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가 바람직하다.
4-1-18	식품담당 특사경의 전문성 키우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1-19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경찰과 특사경의 병행이 필요하다.
4-1-20	수사기관보다 식약처의 단속권한이 오히려 범죄억제력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구분	내 용
4-1-21	식약처 등은 수사기관과 달리 행정처분 권한으로 영장없이 현장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속하다.
4-1-22	식품사범의 경우는 전문성을 지난 주무 부처, 즉 식약처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23	식품사범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기관은 주무 부처로 하고, 식약처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이 경찰청으로 파견근무하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4-1-24	수사기관보다 식약처의 단속권한이 오히려 범죄억제력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4-1-25	식품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집행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 간의 괴리감을 극복해야만 한다.
4-1-26	식품안전범과 관련하여서는 일선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필요하다.
4-1-27	사기관과 공기관의 합동을 통한 위생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4-2	**합리적인 계획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4-2-1	위해식품사범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영세업체나 자영업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4-2-2	법원과 검찰 처리절차 전부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일부 관심사건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실정인데, 모두 공개로 바뀌어야 한다.
4-2-3	시장기능에 맡기는 위해업소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2-4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 환수제의 운영성과를 발표하는 등 제도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4-2-5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4-2-6	내부 고발자에게 면책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 독려가 필요하다.
4-2-7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자들에게도 일반사경과 같이 수사수당 지급, 특진, 근평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4-2-8	단속부터 형량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조사를 통해서 효율성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2-9	개인이나 영세업체보다 대기업이나 대다수가 참여한 식품사범에서의 단속과 처벌이 중요하다.
4-3	**위해식품사범과 관련한 적정한 형량 제정 및 개정과 같은 법 정비, 집행이 필요하다.**
4-3-1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4-3-2	불량식품 제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한 것에 대한 형량 집행으로 재발 가능성 최소화하여야 한다.
4-3-3	벌금의 필요적 병과, 범죄수익 환수 등을 적절하게 법률상 선택적으로 부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사범의 수익까지 철저하게 박탈할 필요가 있다.
4-3-4	위해식품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경우의 확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사회 및 경제적 이윤 수준과 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4-3-5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기준을 상향 설정하여 위해식품사범은 엄단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야 한다.
4-3-6	법원의 일관적 처벌을 확인할 수 있는 양형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4-3-7	현재 양형기준에서의 “유해한 식품”과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을 정확히 구분해 주는 과학적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4-3-8	공평하지 않은 처벌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형기준도 처벌 전 미리 구체적 기준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구분	내 용
4-3-9	경미한 범죄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돌리고, 반복되거나 악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3-10	식품사범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수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평한 처벌이 더욱 중요하다.
4-3-11	원산지 단속은 식당, 정육점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리기구(칼 등)등으로 인한 신변 위협 등을 받는 경우도 있어, 신변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 강력한 처벌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4-3-12	일반사범과 식품위해사범과의 차별화된 형량 구형이 가능해야 한다.
4-3-13	위해식품사범의 형량과 벌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4-3-14	고의적, 지능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4-3-15	지속적인 단속과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3-16	고의적 식품안전과 관련되어서는 강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
4-3-17	과대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를 넣은 식품제도 등으로 유형화하여 집중 단속 또는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4-3-18	식품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이 중요하다.

3. 2차 조사결과

가.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1)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우리나라 먹을거리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결과는 <표 4-46>과 같다. 먹을거리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식품안전 수준이 높은 편(15명 동의)'이 '식품안전 수준이 낮은 편(6명 동의)'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식품 등 식품안전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높은 편' 14명 동의).

응답결과에 의하면 '생산자 및 소비자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이 대체로 비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떨어져 있다', '대형업체나 마트가 아닌 소규모 영세 시장의 경우 식품 안전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로 인해 비위생적인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신소재 식품의 생산, 신종 유해물질의 검출에 따른 신규 업무, 수입식품 증가 등에 따라 식품안전

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먹을거리 안전성이 침해도 빈번해지고 있다', '식품안전은 식품분야에만 국한된 지엽적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안전, 나아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의 의견 순으로 응답자 70%(15.4 이상)이상 동의하였다.

〈표 4-46〉 우리나라 먹을거리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사례수: 22명, 단위: 명)

구분	내 용	동의
1-1-1	**생산자 및 소비자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22**
1-2-3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이 대체로 비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떨어져 있다.**	**21**
1-2-10	**대형업체나 마트가 아닌 소규모 영세 시장의 경우 식품 안전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21**
1-2-1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로 인해 비위생적인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20**
1-2-8	**신소재 식품의 생산, 신종 유해물질의 검출에 따른 신규 업무, 수입식품 증가 등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먹을거리 안전성이 침해도 빈번해지고 있다.**	**18**
1-2-4	**식품안전은 식품분야에만 국한된 지엽적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안전, 나아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16**
1-1-3	전반적인 식품안전 수준은 높은 편이다.	15
1-1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높은 편이다.	14
1-1-5	식품안전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심각성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이다.	13
1-2-2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에 따른 방사능에 오염된 농축산물 등이 원산지가 허위 표시되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3
1-2-5	식품이 자급자족의 형태를 넘어 상품이 상거래 되었을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13
1-2-11	건강기능식품의 경우가 일반식품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위법적 공급이 만연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취약한 편이다.	13
1-2-7	농축수산물의 증산을 위한 농약 및 항생물질 등 인체 위해가능물질의 의도적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침해되고 있다.	12
1-2-13	여전히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12
1-2-9	식품안전의 가장 심각한 영역은 제조 유통 분야이다.	11
1-2-12	정부에 대한 불신과 다른 나라와 상이한 식생활 문화 및 섭취량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먹을거리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10
1-2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낮은 편이다.	6
1-2-6	국내유통 및 접객업소에서의 식품안전의 문제보다는 제조업에서 식품안전문제가 심각하다.	6
1-1-2	현재 국내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은 선진국인 미국, 일본, EU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5
1-1-4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공급사슬 단계별 위해분석을 실시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5

2) 불량식품의 심각성

불량식품의 심각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는 <표 4-47>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불량식품의 심각성 여부에 대해서 '불량식품의 심각하다(8명 동의)'이 '불량식품의 심각성이 낮은 편이다(2명 동의)'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은 불량식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악덕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들의 의도적인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 '중국산 식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례가 많다', '비위생적 생산시설, 식용불가 식품첨가제 사용 제품 등 여전히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재한 편이다', '위해식품사범에 의한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가 문제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학적 사실보다는 경험 등 감성적 판단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와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 '불량식품 자체의 의미와 대상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요소와 실제 위해요소는 차이가 있다', '제도권 외의 식품이라도 위해성을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범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 제도와 사후관리,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불량식품의 심각성은 양호한 편이다', '중국산 식품에 의한 먹거리 안전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등의 순으로 응답자 70%(15.4 이상)이상 동의하였다.

〈표 4-47〉 불량식품의 심각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사례수: 22명, 단위: 명)

구분	내 용	동의
2-1-5	악덕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들의 의도적인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	20
2-2-7	중국산 식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례가 많다.	20
2-1-1	비위생적 생산시설, 식용불가 식품첨가제 사용 제품 등 여전히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20
2-1-2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재한 편이다.	19
2-1-4	위해식품사범에 의한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가 문제이다.	18
2-1-7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학적 사실보다는 경험 등 감성적 판단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18
2-1-8	소비자와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	18
2-1-9	불량식품 자체의 의미와 대상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17

구분	내 용	동의
2-1-6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요소와 실제 위해요소는 차이가 있다.**	**17**
2-2-2	**제도권 외의 식품이라도 위해성을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범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	**17**
2-3-1	**관련 제도와 사후관리,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불량식품의 심각성은 양호한 편이다.**	**17**
2-2-6	**중국산 식품에 의한 먹거리 안전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16**
2-2-1	일부 동남아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저렴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4
2-2-8	중국 내에서 제조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3
2-2-9	유해성 판단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13
2-2-3	식량자급률 저하로 인한 수입량 증가가 식품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12
2-2-5	식품 교역이 활발한 곳에서 식품 상행위 관련 부정행위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11
2-1	불량식품의 심각성이 심각한 편이다.	8
2-1-3	먹거리 불안 중 가장 큰 부분은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은 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이다.	8
2-2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8
2-2-4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보다는 국제기구 및 국제시장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2-3	불량식품의 심각성이 낮은 편이다.	2

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표 4-48>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편이다(15명 동의)', '일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식품안심도가 낮은 편이다(16명 동의)' 등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낮은 편이다. (1명 동의)'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똑같은 식품안전기준에 대해 영업자, 정부관리자는 안심수준으로 인식하지만, 소비자는 불안 상태로 인식하여 사회적 불신감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한다', '식품의 비위생적 처리 및 유통사례가 언론에 보도시 국민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다',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수입 농

산품(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식품안심도가 낮은 편이다' 등의 순으로 응답자 70%(15.4 이상)이상 동의하였다.

〈표 4-48〉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사례수: 22명, 단위: 명)

구분	내 용	동의
3-1-2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21
3-1-8	**똑같은 식품안전기준에 대해 영업자, 정부관리자는 안심수준으로 인식하지만, 소비자는 불안 상태로 인식하여 사회적 불신감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한다.**	20
3-2-1	**식품의 비위생적 처리 및 유통사례가 언론에 보도시 국민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다.**	20
3-2-2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19
3-1-3	**수입 농산품(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19
3-3-1	**일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식품안심도가 낮은 편이다.**	16
3-1-4	산업의 발달(유전자 재조합식품, 신소재 식품, 식품첨가물 등)은 불량식품의 심각성을 증대시켰다.	15
3-1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편이다.	15
3-2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언론보도에 기인한다.	15
3-1-1	대기업 생산 제품 중심의 식품 선호도 집중으로 식품 안전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요소도 많아지고 있다.	14
3-1-6	인체위해 물질의 지속적인 검출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14
3-1-7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모호한 정의,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12
3-1-5	급속한 자본주의 유입으로 저가의 식품 및 인스턴트의 대량 유통이 가능해져 식품안전의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12
3-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낮은 편이다.	1

4)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

<표 4-49>는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 70%(15.4 이상)이상은 '무허가 불법 식품제조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등은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이다', '무허가 불법 식품제조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등은 식품의 안전성 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 앞 불량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대부분 국내영세업체이거나 중국에서 수입된 가공품을 소포장하여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앞 문구점의 경우 소비대상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등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표 4-49〉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에 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사례수: 22명, 단위: 명)

구분	내 용	동의
4-5	**무허가 불법 식품제조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등은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이다.**	20
4-6	**무허가 불법 식품제조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등은 식품의 안전성 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20
4-3	**학교 앞 불량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대부분 국내영세업체이거나 중국에서 수입된 가공품을 소포장하여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16
4-1	**특히 학교 앞 문구점의 경우 소비대상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16
4-2	학교 앞 판매식품의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	13
4-9	식품안전 사각지대는 GM 식품, 위협요소는 악덕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의 고의적 위반행위이다.	12
4-10	식품안전 사각지대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다원화에서도 비롯된다.	11
4-12	특히 노인전문병원, 복지원 등 복지시설분야는 사각지대로서 식품위생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11
4-7	수확 후 농산물 생산지 집하장부터 가공라인에 들어오기까지의 단계는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안전에 취약한 편이다.	11
4-8	식품공급사슬단계를 연결하는 운송, 원료보관 등의 단계가 원료품질저하, 원료변패, 이물질오염 등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에 취약한 편이다.	10
4-4	길거리 음식,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비추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주무부처가 단속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최대 사각지대라고 보아야 한다.	10
4-11	식약처에서 유통과정을 통제하고 싶어도 공정위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단속 및 감시영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8

5) 식품안전정책 평가

<표 4-50>은 식품안전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식품안전정책 동의정도에서 '식품안전정책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12명 동의)'보다 식품안전정책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발생하는 주 요인 중의 하나가 인터넷 및 정보습득 매체 증가 및 다양화

이다', '실제 소비자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언론,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외식과 단체급식이 급증하고 있다', '식품업계의 영세성,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공존으로 인한 정책 수립, 집행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등의 순으로 70% (15.4 이상) 이상 동의하였다.

〈표 4-50〉 식품안전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사례수: 22명, 단위: 명)

구분	내 용	동의
5-2-14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발생하는 주 요인 중의 하나가 인터넷 및 정보습득 매체 증가 및 다양화이다.**	**18**
5-2-13	**실제 소비자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언론,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18**
5-2-23	**외식과 단체급식이 급증하고 있다.**	**17**
5-2-18	**식품업계의 영세성,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공존으로 인한 정책 수립, 집행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16**
5-2-12	정보전달매체의 발달은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15
5-2-16	일부 농가나 일부 가공업체 등에서 안전성 기준을 위반하여 처벌하는 것을 모든 업체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언론이 심각한 문제이다.	15
5-1-1	식품안전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반적으로 구비된 편이다.	15
5-2-1	식품안전정책과 관련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15
5-2-2	단속기관이 너무 산재해 있어 비효율성을 가중하고 있다.	14
5-2-3	단속기관의 다원화 경향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14
5-2-4	단속기관의 다원화는 책임행정 수행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 빠른 대응도 어렵게 한다.	14
5-2-5	여러 정부부처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분산 관리하기 때문에,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14
5-2-26	지자체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가치가 비교적 열세하고 집중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식품안전정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14
5-2-8	창업한 가공업체의 경우 식품 안전에 대한 통합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기준과 각자 해당되는 부분만 교육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13
5-2-15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론에 의한 보도 및 기사를 자제하여야 한다.	13
5-2-21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상의 식품거래가 증가하나 안전대책은 미흡하다.	12
5-2-17	허가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12
5-2-10	식약처의 출범으로 식품안전의 콘트롤 타워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식약처의 기능과 역할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12
5-2-25	식품안전 입장에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위해성 확인이 중요하다.	12
5-1	식품안전정책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	12
5-2-24	외식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적 대응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11
5-2-6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정책의 집행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10

구분	내 용	동의
5-2-9	제조업체의 경우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번 신고하면 더 이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	10
5-2-20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원료의 허용기준치 초과로 인한 원료건전성 문제나 카제인산나트륨이 들어있는 커피믹스와 같이 업체간 비방광고 등에 기인한 경우들이 다수이다.	9
5-2-7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는데 포용력이 넓지 않은 편이다.	7
5-2-11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 기준 규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7
5-2	식품안전정책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7
5-2-19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한 식자재 유통이 난무하고 있다.	6
5-2-22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여전히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미흡한 편이다.	5

6)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

<표 4-51>은 식품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 70%(15.4 이상)이상은 '단속 및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식품안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차별화된 적정한 판별법 마련 등이 필요하다', '식품안전 및 안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관리 및 위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주들에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업소에 맞게 갖추어야 할 부분이 정리된 안내지를 배부함으로써 처음부터 규정에 맞는 식품관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각한 여론몰이식 불안감 조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방법 교육 등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현재의 식품안전 수준 등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과 효율적인 정부의 안전관리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개고기와 같은 식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력관리 또는 위생적인 곳에서 도살되어 유통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령에 있어, 인체 유해성 관련 부분은 철저하게 강화하도록 개정하되,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표 4-51〉 식품안전정책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사례수: 22명, 단위: 명)

구분	내 용	동의
6-1-4	**단속 및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20
6-2	**식품안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20
6-4-7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차별화된 적정한 판별법 마련 등이 필요하다.**	18
6-4-5	**식품안전 및 안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관리 및 위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	17
6-2-2	**정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주들에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업소에 맞게 갖추어야 할 부분이 정리된 안내지를 배부함으로써 처음부터 규정에 맞는 식품관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6-3-2	**심각한 여론몰이식 불안감 조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방법 교육 등이 필요하다.**	17
6-3-4	**국민들에게 현재의 식품안전 수준 등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	17
6-4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과 효율적인 정부의 안전관리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17
6-6-2	**개고기와 같은 식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력관리 또는 위생적인 곳에서 도살되어 유통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17
6-4-4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령에 있어, 인체 유해성 관련 부분은 철저하게 강화하도록 개정하되,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16
6-5-1	식품 안전성에 대한 철저하고 신중한 검증 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15
6-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5
6-1-1	식품관련 점검 및 단속 기관을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식품관련 one-stop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 농산물 및 축산물 원산지표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해양수산부), 축산물 등급 등 정육점 표시(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등 식품업체 위생(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관세청) 기능별로 통합이 필요함	15
6-6-3	도축장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14
6-1	식품안전정책을 위해서는 조직의 일원화, 업무분위기 등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14
6-4-1	이물 등 가공과정 중 100%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의 허용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13
6-1-2	식품안전 관련법과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모두 일관 관리하여야 한다.	12
6-1-3	식품 관련 유관 부서 및 국과의 단절 및 불필요한 경계심, 조직에 대한 애사심 부족, 경직되고 억압적인 업무 분위기 등은 식품안전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즐겁고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12
6-2-3	중국과의 수사공조 등 사법공조 강화 필요하다. 예) 중국 원산지, 제조공장에 대한 수사공조를 통하여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규명, 외교채널 동원 등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추진이 필요하다.	12
6-3-1	식품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1년에 1번 이상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변경된 기준을 알려주고 안전한 식품을 만들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12

구분	내 용	동의
6-3-5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12
6-3-6	내분기장애물질,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장기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12
6-4-3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과 무관하거나 통제 및 관리감독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집중 단속화 할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6-4-9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제품의 소비를 포괄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12
6-4-10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유통업체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매입(유통업체에서 매출량 만큼 이를 매입량으로 잡는 것)과 같은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12
6-6-4	식중독 등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12
6-6-5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기준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12
6-4-6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위생과 안전, 규정 준수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강화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12
6-2-1	식품안전단속에 대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TF팀을 꾸려 계절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 분야에 따른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11
6-4-8	식품에 대한 성분검정 대상 및 물량을 확대하여 위해 물질이나 배합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11
6-6	식품안전에 있어 식품제조업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10
6-6-1	음식점을 포함한 식품취급업소는 조건부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	10
6-4-11	공공기관를 통한 식품 위생등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9
6-3-3	식품안전 관리 우선 순위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9
6-4-2	정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식품산업과 국민안전의 안정적 조절측면에 입각하여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8
6-3-7	식품안전 전담 강사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강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6-5	식품안전정책을 바람직한 운용을 위해서는 언론의 통제가 필요하다.	7
6-4-12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5

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평가

1) 위해식품사범의 심각성

위해식품사범 심각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결과는 <표 4-52>와 같다. 위해식품사범 심각성 여부에 대해서 '위해식품사범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11명 동의)'이 '위해식품사범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5명 동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해식품사범 심각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에 높은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전문가들은 위해식품사범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위해식품사범은 피해자가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위해식품사범 중 특히 원산지 위반 사범의 경우는 죄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해 더 심각하다', '위해식품은 단순한 품질기만이 아니라,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범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수반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고의적 식품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등의 순으로 응답자 70%(15.4 이상)이상 동의하였다.

〈표 4-52〉 위해식품사범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사례수: 22명, 단위: 명)

구분	내 용	동의
1-2-9	**위해식품사범은 피해자가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19**
1-2-7	**위해식품사범 중 특히 원산지 위반 사범의 경우는 죄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해 더 심각하다.**	**19**
1-2-8	**위해식품은 단순한 품질기만이 아니라,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범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수반하고 있다.**	**18**
1-2-4	**식품산업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16**
1-2-6	**고의적 식품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16**
1-2-1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모호한 정의,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5
1-2-3	식품안전사범은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15
1-2-5	간단한 신고만으로 사업체를 설립 및 폐업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해식품사범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14
1-1-1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과거에 비해 위해식품사범 감소하였다.	12
1-2-10	다양한 지능범죄수사 업무 중 식품사범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심각성이 높다.	12
1-2	위해식품사범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	11
1-1-2	특히 원산지표시의 경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후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정착단계에 있다.	10
1-2-2	식품위생사범은 서울 경기 등에 비해 지방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	8
1-1	위해식품사범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5

2)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

<표 4-53>은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 동의정도에서 '단순 위해사범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6명 동의)',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은 적절한 편이다(5명 동의)', '원산지관리와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4명 동의)', '단속 및 처벌, 재판 형량 등은 현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명 동의)' 등 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전문가들은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정도에서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와 감독이란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다', '식품사범은 적극적이고 엄격한 처벌이 해결책이 아니라, 평소 관리와 감독을 통한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대책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대부분이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다',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정형은 약하지 않지만 실제 선고되는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위해식품사범은 고의로 추가 이윤을 취하려고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법률상 법정되어 있는 형량은 높은 편이나, 실제로 처분 받는 형량은 낮아 위반자가 줄지 않고 있다' 등의 순으로 응답자 70%(15.4 이상) 이상 동의하였다.

〈표 4-5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사례수: 22명, 단위: 명)

구분	내 용	동의
2-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와 감독이란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다.**	18
2-3-3	**식품사범은 적극적이고 엄격한 처벌이 해결책이 아니라, 평소 관리와 감독을 통한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18
2-3-2	**대책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7
2-2-7	**대부분이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다.**	16
2-2-8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정형은 약하지 않지만 실제 선고되는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16
2-2-3	**위해식품사범은 고의로 추가 이윤을 취하려고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16
2-2-1	**법률상 법정되어 있는 형량은 높은 편이나, 실제로 처분 받는 형량은 낮아 위반자가 줄지 않고 있다.**	16
2-2-5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처분이 매우 약한 편이다.	14
2-3-1	위해식품사범의 처벌수준을 무겁게 하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13
2-3-4	효과적인 식품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지도감독과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장 중요하다.	12
2-2-2	위해식품사범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문제이나, 이에 비해 처벌수준은 가볍다.	12
2-2-4	양형에 대한 법원 기준은 경미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11
2-2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	11
2-1-3	현재 상당부분 먹거리 안전이 정화되어 단속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8
2-2-6	공평하지 않은 처벌 사례가 왕왕 있다.	7
2-1-2	단순 위해사범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6
2-1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은 적절한 편이다.	5
2-1-4	원산지관리와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4
2-1-1	단속 및 처벌, 재판 형량 등은 현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표 4-54>는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 70%(15.4 이상)이상은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어, 경찰업무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부정불량식품은 대부분 음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단속공무원은 수사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나 증거법에 의한 증명력 확보가 어렵다' 등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표 4-54〉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

(사례수: 22명, 단위: 명)

구분	내 용	동의
3-3-2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어, 경찰업무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18**
3-3-3	**부정불량식품은 대부분 음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16**
3-2-2	**단속공무원은 수사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나 증거법에 의한 증명력 확보가 어렵다.**	**16**
3-3-4	위해식품사범 중 원산지 위반 사범의 경우는 대포폰 이용, 조직화, 대형화 추세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15
3-4-1	위해식품사범은 처벌에 비해 부당이득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계속적으로 위반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15
3-2-1	행정기관 소속 행정공무원의 잦은 업무변동과 전보 등으로 형사사법절차 관련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	15
3-5-4	식품사범의 인허가 관련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 정도를 넘어서 인체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수사 및 공표는 식품 관련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민감한 부분이다.	15
3-5-1	위해식품사범과 관련된 지나친 언론보도는 식품안전관련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는 경향이 많다.	14
3-5-2	위해식품사범과 관련된 지나친 언론보도로 식품업체의 도산 및 관련식품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14
3-5-3	위해식품사범에 있어 형사정책의 문제점은 지나친 언론보도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13
3-2-3	고의 입증상의 문제 때문에, 식품안전 사건의 실행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통상적인 지시 감독임무가 있는 운영주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12
3-3-1	합동단속을 했을 때의 효율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12
3-4-2	담당검사의 스타일에 따라 비슷한 일반사건일 경우라도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가 차이가 나기도 한다.	11
3-4	위해식품사범의 재판 및 형량에 문제가 있다.	10
3-1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편이다.	9
3-2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8
3-4-4	부실수사나 과잉수사로 무죄를 받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8
3-5-5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비방, 실적 챙기기에 충분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조사결과 발표가 문제이다.	8
3-1-1	기존의 농관원 자체 단속업무수행보다 경찰의 내사 및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때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크다.	7
3-4-3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운영하면서 2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있고,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2-3명씩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며, 각 시도에도 수십명씩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 일반경찰, 해양경찰 등도 식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중복수사 및 실적을 위한 과잉수사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6
3-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및 수사에 있어 형사정책적 문제점이 있다.	5
3-3-5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4
3-4-5	실제 재판과정에서 적용되는 2012년 기준 대법원 양형기준조차 적용할 수 없는 것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이 문제이다.	4
3-5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적 애로사항은 언론보도에 의한 것이 많은 편이다.	4

4)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 개선방안

<표 4-55>는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동의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응답결과에 의하면 전문가들 70%(15.4 이상)이상은 '고의적 식품안전과 관련되어서는 강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 '과대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를 넣은 식품제도 등으로 유형화하여 집중 단속 또는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 식약처, 검찰, 경찰뿐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안전성 담보가 필요하다', '식품안전범과 관련하여서는 일선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필요하다', '식품담당 특사경의 전문성 키우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이 중요하다', '원산지 단속은 식당, 정육점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리기구(칼 등)등으로 인한 신변 위협 등을 받는 경우도 있어, 신변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 강력한 처벌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고의적, 지능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단속과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해식품사범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영세업체나 자영업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일관적 처벌을 확인할 수 있는 양형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정책 및 형량 등의 형사정책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식품에 대한 단속, 수사, 재판 등에 있어 식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단속부터 사법절차가 진행되도록 식약처 뿐 아니라 경찰, 검찰, 지자체 등도 이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표 4-55〉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 개선방안

(사례수: 22명, 단위: 명)

구분	내 용	동의
4-3-16	**고의적 식품안전과 관련되어서는 강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	20
4-3-17	**과대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를 넣은 식품제도 등으로 유형화하여 집중 단속 또는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19
4-1-2	**기존 식약처, 검찰, 경찰뿐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안전성 담보가 필요하다.**	19
4-1-26	**식품안전범과 관련하여서는 일선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필요하다.**	18
4-1-18	**식품담당 특사경의 전문성 키우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8
4-3-1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18
4-3-18	**식품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이 중요하다.**	17
4-3-11	**원산지 단속은 식당, 정육점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리기구(칼 등)등으로 인한 신변 위협 등을 받는 경우도 있어, 신변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 강력한 처벌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17
4-3-14	**고의적, 지능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17
4-3-15	**지속적인 단속과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4-2-1	**위해식품사범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영세업체나 자영업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17
4-3-6	**법원의 일관적 처벌을 확인할 수 있는 양형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7
4-1-4	**안전관리정책 및 형량 등의 형사정책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16
4-1	**식품에 대한 단속, 수사, 재판 등에 있어 식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단속부터 사법절차가 진행되도록 식약처 뿐 아니라 경찰, 검찰, 지자체 등도 이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16
4-1-7	각 기관별 담당분야가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단속업무 등 사후관리를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6
4-1-21	식약처 등은 수사기관과 달리 행정처분 권한으로 영장없이 현장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속하다.	15
4-2-6	내부 고발자에게 면책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 독려가 필요하다.	15
4-3-4	위해식품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경우의 확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사회 및 경제적 이윤 수준과 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5
4-1-8	위해식품사범 단속을 위해서는 차량위치추적, 차량소유자 확인 등 경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15
4-3-8	공평하지 않은 처벌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형기준도 처벌 전 미리 구체적 기준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15
4-1-9	식약처, 지자체 특사경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14
4-3-10	식품사범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수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평한 처벌이 더욱 중요하다.	14
4-3-2	불량식품 제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한 것에 대한 형량 집행으로 재발 가능성 최소화하여야 한다.	14

구분	내 용	동의
4-1-1	검찰에서 형사부 전담업무별로 전문검사를 대검에서 인증하고, 인증된 검사를 지역이동이 있더라도 식품 전담업무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경찰, 지자체에서도 식품 관련 전담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식품 전문가를 수사기관에서 적극 양성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한 증거수집 및 최종적인 처벌까지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4-1-3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부처간 협력의 상설적인 채널을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범행 수법, 이슈화 현안에 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4
4-1-12	식약처, 지자체 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및 단속관련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14
4-3-3	벌금의 필요적 병과, 범죄수익 환수 등을 적절하게 법률상 선택적으로 부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사범의 수익까지 철저하게 박탈할 필요가 있다.	13
4-3-9	경미한 범죄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돌리고, 반복되거나 악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3
4-2-4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 환수제의 운영성과를 발표하는 등 제도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13
4-1-17	효과적인 식품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감시체계 및 단속은 주무 부처에서, 고소 및 고발사건은 경찰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가 바람직하다.	13
4-3-5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기준을 상향 설정하여 위해식품사범은 엄단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야 한다.	12
4-3-7	현재 양형기준에서의 “유해한 식품”과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을 정확히 구분해 주는 과학적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12
4-3-12	일반사범과 식품위해사범과의 차별화된 형량 구형이 가능해야 한다.	12
4-2-5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12
4-1-10	식약처 지역본부에서도 본부에 버금가는 수사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	12
4-1-11	지역 식품관련 단속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각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식품 관련 단속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2
4-1-14	지자체 단속 인력 등과 같은 식품안전 관련 인프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12
4-1-16	위해식품사범과 관련하여서는 식품학 쪽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의 논의과정이 중요하다.	12
4-1-5	위해식품사범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회를 운영하여 불량식품의 위해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4-2-7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자들에게도 일반사경과 같이 수사수당 지급, 특진, 근평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12
4-1-25	식품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집행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 간의 괴리감을 극복해야만 한다.	12
4-2-8	단속부터 형량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조사를 통해서 효율성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1
4-3	위해식품사범과 관련한 적정한 형량 제정 및 개정과 같은 법 정비, 집행이 필요하다.	11
4-2	합리적인 단속계획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11
4-3-13	위해식품사범의 형량과 벌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10
4-1-13	지자체 특사경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0

구분	내 용	동의
4-1-15	현재 지자체에 위해사범 처벌권이 있어 단속과 처벌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10
4-1-20	수사기관보다 식약처의 단속권한이 오히려 범죄억제력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9
4-1-24	수사기관보다 식약처의 단속권한이 오히려 범죄억제력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9
4-1-19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경찰과 특사경의 병행이 필요하다.	8
4-1-22	식품사범의 경우는 전문성을 지난 주무 부처, 즉 식약처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4-1-23	식품사범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기관은 주무 부처로 하고, 식약처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이 경찰청으로 파견근무하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7
4-1-6	식약처, 농링수산부, 자치단체 등 전문지식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이 단속, 수사 등을 하고 제조, 유통,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에 한하여만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위해식품사범의 단속을 폭넓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7
4-2-3	시장기능에 맡기는 위해업소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4-2-9	개인이나 영세업체보다 대기업이나 대다수가 참여한 식품사범에서의 단속과 처벌이 중요하다.	6
4-1-27	사기관과 공기관의 합동을 통한 위생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4
4-2-2	법원과 검찰 처리절차 전부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일부 관심사건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실정인데, 모두 공개로 바뀌어야 한다.	3

제3절 조사결과의 요약

1. 일반국민 인식

일반국민의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인식조사는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대에서 60대까지 성인 남녀 1,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2.95%이다.

일반국민조사에서 나타난 식품안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국민들은 4대 사회악 중에서 불량식품을 가장 모르고 있으며, 중요도는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의 4대 사회악 인지조사에서 학교폭력('알고 있다' 응답비율 95.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식품('알고 있다' 응답비율 91.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국민들의 4대 사회악 안전체감도 5점 평균에서 가정폭력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불량식품이 2.19로 높

게 나타났다. 4대 사회악의 중요도 조사에서는 성폭력이 3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량식품이 18.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일반국민은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76.0%), 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62.9%),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30.2%), 중앙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18.0%) 순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국민들이 식품안전에서 불안해하는 요소는 원산지, 가공식품, 화학첨가물, 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위생상태,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유해물질, 외식 및 길거리 음식 등이다. 주관식으로 직접 기입한 일반국민들의 식품에 대한 불안요소는 원산지 30.0%, 가공식품 23.5%, 화학첨가물 18.5%, 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위생상태 15.8%,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15.5%, 유해물질 14.9%, 외식 및 길거리 음식 10.7% 등이다.

넷째, 일반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뉴스, 프로그램 등 방송보도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방송보도 54.9%, 막연한 불안감 17.6%,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1.3% 순으로 일반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반국민들은 식품의 생산과정, 제조(가공)과정, 유통과정, 소비(판매)과정, 수입 등 전반적인 식품과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불안'과 '안전'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생산과정 불안 44.1% 안전 11.1%, 제조(가공)과정 불안 49.6% 안전 10.2%, 유통과정 불안 47.2% 안전 9.3%, 소비(판매)과정 불안 37.9% 안전 13.3%, 수입 불안 65.5% 안전 6.9% 등 전반적인 식품과정의 안전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일반국민들의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일반국민들은 현재의 식품안전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위험'과 '안전'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식품안전 위험 34.6% 안전 9.9%, 과거대비 식품안전 위험 29.5% 안전 28.9%, 미래의 식품안전 위험 25.5% 안전 40.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절반 이상의 일반국민은 식품안전정책을 모르고 있으며,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성, 효과성, 신뢰성, 전반적인 만족도는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이다.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5%로 나타났다. 또한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불만족'과 '만족'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체계성 불만족 47.0% 만족 13.2%, 효과성 불만족 46.8% 만족 12.5%, 신뢰성 불만족 46.0% 만족 16.0%, 전반적인 만족도 불만족 36.4% 만족 22.5% 등 전반적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위해식품사범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처벌도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부정'과 '긍정'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위해식품사범 현황에 대한 개선 부정 56.9% 긍정 14.3%, 위해식품사범 단속의 적절한 수행 부정 58.4% 긍정 10.8%, 위해식품사범 처벌의 적절성 부정 60.9% 긍정 15.4% 등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국민들은 정부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이다. 정부의 식품안전정책보다 형사정책이 더욱 부정적이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를 '불만족'과 '만족'으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체계성 불만족 52.9% 만족 10.4%, 효과성 불만족 55.5% 만족 9.5%, 신뢰성 불만족 54.8% 만족 13.3% 등 전반적인 정부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

셋째,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이 행정처분보다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선호도 조사에 의하면 형사처벌 77.4%, 행정처분 22.6%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처벌보다 행정처분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일반국민들은 영업소의 폐쇄(37.8%), 정지(21.7%), 취소(19.3%) 명령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형사처벌이 벌금과 징역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형사처벌은 벌금 2.9%, 징역 14.9%, 벌금과 징역 82.1%로 나타났다

넷째, 일반국민들은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법원의 형량,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등이 위해식품사절 근절의 문제라고 인식하

고 있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법원의 형량,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 경찰의 수사, 식품유통에 대한 단속,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등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일반국민들은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20.1%, 법원의 형량 19.6%,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13.4% 등이 가장 문제이며, 법원의 형량 26.0%,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13.8%,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10.1% 등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 위해식품사범,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등에서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이 가장 많으며, 위해식품사범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위해식품, 위해식품사범,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을 경험할 경우 경찰, 검철, 법원 등 사법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식품관련기관에 가장 많이 신고하고 있다.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반국민들 22.6% 위해식품, 10.6% 위해식품사범, 30.5%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들이 위해식품, 위해식품사범,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을 경험한 경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로 신고하다는 응답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2. 전문가 평가

전문가들의 식품안전과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조사는 2014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 검찰, 학자 및 연구자 등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조사는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를 바탕으로 1차 조사(오픈형)와 2차 조사(폐쇄형)로 실시되었다. 전문가조사 응답률은 1차 조사 38%, 2차 조사 44%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전문가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견은 1)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2) 불량식품의 심각성, 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4)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 5) 식품안전정책의 평가, 6)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 등 크게 6가지로 분류되었다.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안전하다’와 ‘안전하지 않다’로 대립되었다. 둘째, 불량식품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크게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로 대립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불량식품이 심각한 이유로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였다. 셋째,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높다’와 ‘낮다’로 대립되었다.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이유로 ‘언론보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도 제시되었다. 다섯째,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잘되고 있다’, ‘문제가 많다’로 대립되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조직의 일원화, 업무분위기 등 조직문화’, ‘유관기관의 협업’, ‘프로그램’, ‘강력한 법과 효율적인 정부의 안전관리체계’, ‘언론의 통제’, ‘특별한 관리’ 등으로 분류되었다.

1차 조사에서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1) 위해식품사범의 심각성, 2)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 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4)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개선방안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었다.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해식품사범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심각하지 않다’와 ‘심각하다’로 대립되었다. 둘째,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적절하다’와 ‘적절하지 않다’로 대립되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이 ‘예방적 효과’에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 ‘단속과 수사에 문제가 있다’, ‘재판과 형량이 문제가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문제’ 등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으로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크게 ‘전문성’, ‘실효성’, ‘법 정비’ 등으로 분류되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하였다. 2차 조사에서 나타난 식품안전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불량식품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불량식품의 심각성 여

부에 대해서 '불량식품의 심각하다(8명 동의)'이 '불량식품의 심각성이 낮은 편이다(2명 동의)'보다 전문가 동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중국산 식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 유통, 비위생적 생산시설, 식용불가 식품첨가제 사용 제품 등의 위험성,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 부재, 위해식품사범에 의한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 과학적 사실보다는 경험 등 감성적 판단에 의존, 소비자와 관리자의 시각의 차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요소와 실제 위해요소의 차이, 제도권 외의 식품, 중국산 식품의 위험성 증대 등이 불량식품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둘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먹을거리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식품안전 수준이 높은 편(15명 동의)'이 '식품안전 수준이 낮은 편(6명 동의)'보다 전문가들의 동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식품안전 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 소규모 영세 시장,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 신소재 식품의 생산, 신종 유해물질의 검출에 따른 신규 업무, 수입식품 증가 등이 식품안전 수준에 위협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

셋째,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편이다(15명 동의)', '일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식품안심도가 낮은 편이다(16명 동의)' 등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낮은 편이다(1명 동의)'보다 전문가들의 동의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 욕구 증대, 영업자와 정부관리자와 달리 소비자의 주간적인 불안 상태, 언론보도로 인한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가중, 수입 농산품(가공품)의 안전성, 일부 사건 발생 등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전문가들은 '무허가 불법 식품제조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학교 앞 불량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대부분 국내영세업체이거나 중국에서 수입된 가공품을 소포장하여 납품하는 업체)', '학교 앞 문구점', '학교 앞 판매식품', 'GM 식품, 악덕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다원화', '노인전문병원, 복지원 등 복지시설', '수확 후 농산물 생산지 집하장부터 가공라인에 들어오기까지의 단계', '식품공급사슬단계를 연결하는 운송, 원료보관 등의 단계', '길거리 음식, 고속

도로 휴게소 등’을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로 지적하였다.

다섯째,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식품안전정책 동의정도에서 ‘식품안전정책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12명 동의)’보다 식품안전정책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동의가 높은 의견에 의하면 인터넷 및 정보습득 매체 증가 및 다양화, 소비자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언론, 외식과 단체급식의 급증, 식품업계의 영세성,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공존으로 인한 정책 수립, 집행의 어려움 등이 식품안전정책에 문제를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으로 단속 및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유관기관과의 협업,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차별화된 적정한 판별법 마련, 식품안전 및 안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방법 교육, 현재의 식품안전 수준 등에 대한 소통, 강력한 법과 효율적인 정부의 안전관리체계, 개고기와 같은 식품에 대해서 법적으로 도살되어 유통될 수 있는 법적인 보완, 인체유해성 관련 강화,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제 대폭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차 조사에서 나타난 전문가들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위해식품사범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해식품사범 심각성 여부에 대해서 ‘위해식품사범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11명 동의)’이 ‘위해식품사범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5명 동의)’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은 ‘위해식품사범은 피해자가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위해식품사범 중 특히 원산지 위반 사범의 경우는 죄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해 더 심각하다’, ‘위해식품은 단순한 품질기만이 아니라,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범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수반하고 있다’, ‘고의적 식품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등이다.

둘째, 전문가들은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 동의정도에서 ‘단순 위해사범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6명 동의)’,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은 적절한 편이다(5명 동의)’, ‘원산지관리와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4명 동

의)', '단속 및 처벌, 재판 형량 등은 현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명 동의)' 등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이 적절하다는 의견의 동의보다 '대부분이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다(16명 동의)', '법정형은 약하지 않지만 실제 선고되는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16명 동의)', '법률상 법정되어 있는 형량은 높은 편이나, 실제로 처분 받는 형량은 낮아 위반자가 줄지 않고 있다(16명 동의)', '위해식품사범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문제이나, 이에 비해 처벌수준은 가볍다(12명 동의)', '양형에 대한 법원 기준은 경미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11명 동의)',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11명 동의)' 등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문가들은 위해식품사범 단속과 처벌의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요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에서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와 감독이란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다', '식품사범은 적극적이고 엄격한 처벌이 해결책이 아니라, 평소 관리와 감독을 통한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대책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의견에 전문가들의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전문가들은 형사정책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이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의 포함, 경찰업무의 풍선효과, 비전문가인 일반공무원의 수사, 증명력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 개선방안으로 '고의적 식품안전과 관련되어서는 강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 '과대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를 넣은 식품제도 등으로 유형화하여 집중 단속 또는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기존 식약처, 검찰, 경찰뿐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안전성 담보가 필요하다', '식품안전범과 관련하여서는 일선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필요하다', '식품담당 특사경의 전문성 키우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식품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이 중요하다', '원산지 단속은 식당, 정육점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리기구(칼 등)등으로 인한 신변 위협 등을 받는 경우도 있어, 신변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 등 강력한 처벌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고의적, 지능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지속적인 단속과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해식품사범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영세업체나 자영업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일관적 처벌을 확인할 수 있는 양형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정책 및 형량 등의 형사정책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식품에 대한 단속, 수사, 재판 등에 있어 식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단속부터 사법절차가 진행되도록 식약처 뿐 아니라 경찰, 검찰, 지자체 등도 이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박 미 숙

제5장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불량식품 및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초

부정불량식품의 역사는 인간 탐욕의 증빙이요 역사이다. 식품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이 이들을 막을 수도 있다. 다만 눈속임을 조장하는 동기와 기회가 시대마다 다를 뿐이다. 무가공, 무첨가라 하지만 사실 첨가물 범벅인 쥬스, 과자, 빵을 사먹는 일도 흔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정직하고도 적정한 품질과 가격으로 만족해본 적은 없을 것이다. 식품사기의 역사는 그만큼 유구하다 식품사기는 바로 이 복잡한 근대사의 한 자락이다.

따라서 부정불량식품 문제를 단순히 탐욕스러운 한 개인이 대중을 속여 이들을 취하려는 충동적 소산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194] 제대로 확립된 정치·경제정책이 있다면 부정불량식품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그리 엉뚱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한편으로 오늘날 순수식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순수식품만을 찾다보면 일반 소비자로부터 멀어지고 감각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따라서 첨가물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며, 또한 필수불가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식품표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이로써 위해식품을 어느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다. 다만 식품표시만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 또한 이에 기대어 좋은 식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식품사기·위해식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감식안을 갖추는 것일 것이다.

194) 비윌슨/김수진, 앞의 책, 449면.

식품사기에 맞서는 진짜지식을 갖추어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구분하게 되면 식품사기를 통해 부당한 이윤을 챙기는 행위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식품을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을 모두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설사 어느 정도 갖춘다 하더라도 갈수록 발전해가는 사기꾼들의 눈속임을 모두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이들을 한발 앞서 단속하려면 정부는 철저히 최신과학에 근거하여 식품관련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한다.[195] 위해식품을 근절하는데 있어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서는 식품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이며,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규제 및 처벌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은 식품의 세계화와 가격전쟁 속에서 경제적 문제로 품질확보를 포기한 댓가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196]

제2절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토대로서 위해성평가시스템 확립

식품안전은 국가의 책무이다.[197] 새 정부 출범 이후 불량식품 근절이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식품안전사고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산업계의 대응방안, 관련법의 재정비 문제, 불량식품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거시적으로는 정부정책의 방향설정이 명확해야 한다.

앞에서 각국의 경우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도 2000년 말 세계적으로 확산된 광우병 파동으로 유럽의 기존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커 이에 따라 제안된 유럽공동체의 식품안전 백서를 토대로 하여 국가의 식품안전관련법률, 즉 식품 및 사료법(LFGB)을 재정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식품법에서는 식품안전담당조직과 위해평가조직을 별도로 두어 식품위해평가와 위해관리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른다.[198] 이는 유럽의 식품행

195) 비윌슨/김수진, 앞의 책, 454-455면.
196) 10년 Foodsafety, 독일식품안전전략, 2010.3.
197)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의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98) 김형섭, 독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안전을 위한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정체계가 위해평가와 위해관리 기구로 분리되어 있는 점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고, 위해평가는 엄격히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궁극적인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199]또한 각국의 식품안전을 위한 규제대상으로서 식품첨가물 및 포장재, 동물목지, 생물학적 위해, 오염물질, 유전자변형생물, 영양, 식물보호, 식물건강 등의 주요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동시에 식품당국 및 식품과학자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식품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엄격히 평가한다.[200]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식품안전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은 식품의 안전관리의 효율화와 규제합리화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방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201] 식품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식품위해평가, 위해관리, 그리고 의사소통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은 특히 국민들이 갖는 식품에 대한 불안감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202]

제3절 식품안전관련 법제도 및 조직 정비

1. 법제도 및 조직 정비방향

식품관련법제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과 관리기관이 달라 규제가 중복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

19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외출장결과보고서, 2008.5, 2면.

200) 이는 유럽식품안전청의 주요역할이기도 하지만, 각국의 식품안전관련 동향은 이러한 각국가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외출장결과보고서, 2008.5, 2면 참조.

201) 유럽식품안전청의 규정(EC 170/2002)에 의하면 식품안전의 일반원칙으로서 제시된 것은 다음과 같다.
- 통합적이고 일관된 접근법
- 이력추적
- 제조업자의 책임
- 공공적인 조언과 정보
- 예방적 원칙
- 위해 분석 등이 제시되고 있다.

202) 뉴데일리경제, 식품안전에 소비자는 웃고 운다, 정부 소비자 불통 탓..., 2014.1.4.; 정기혜, 식품안전분야 위해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13.2, 73면 이하 참조.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규제의 중복은 거꾸로 미규제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오고 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식품사법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무엇보다 식품안전관련 규제기간 및 관계법령 등이 식품안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기 보다는 각 기관별 식품행정 목표달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규정되다보니 관리 및 규제가 중복되어 업무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관청이 중복된 상태에서 위생기준도 담당부처에 따라 차이가 있어, 검사업무의 중복에 따른 식품규제의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 농·축·수산물 등 1차 산물의 안전관리 미흡, 정보공유체계 미흡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 기능 취약, 신종 위해물질 관리대책 및 조사·연구 미흡, 중복규제, 개별기관별 검사장비 구비에 따른 고가장비 이용률 저하,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비상조치 및 대책마련에 대한 혼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203]

식품안전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식품관련법제가 갖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고, 불확정 용어의 사용으로 또 다른 개념상의 혼란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4] 무엇보다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서도 식품위해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여러 부처 부속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형태로 존재하는 등 식품안전 규제기관과 평가기관이 통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기관과 평가기관이 통합된 형태는 양 기관이 독립된 경우 보다 식품위기상황에서 긴급히 대응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은 있다. 즉 규제와 평가가 통합된 형태에서는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 등에 대한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추적조사 또는 검사명령을 통해 보다 긴밀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205] 반면 위해성 평가기관이 규제기관과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평가전문가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그 결과 정부의 식품안전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음도 부인하지 못한다.[206]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식품안전평

203) 박균성, 앞의 글, 110면.
204) 이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문상덕, 앞의 글, 244면 이하.
205) 박균성, 앞의 글, 110면.
206) 박균성, 앞의 글, 110면.

가기관을 기능별로 위해성 평가·분석 업무를 독립시키고 규제업무는 기존의 기구들에서 분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되, 일부 기구를 기능중복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만 부분적으로 통합하거나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부처로 관리업무를 이관함으로써 부처별로 업무가 중복되거나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207] 이런 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독립기구로서의 설립은 의미를 갖는다.

다만 식품안전담당조직과 식품위해평가조직을 별도로 두어 식품위해평가와 위해관리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해평가제도는 오늘날 식품안전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유해물질 이외에 앞으로도 계속하여 유해물질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식품안전논란도 계속될 것이다. 유해물질 내지 그 위해성은 불량식품 발생원인에 속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섣불리 위해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이 식품안전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감만 더해질 뿐이다.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한 근거 없는 판단과 전문가마다 다른 판단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과 관련산업체에게 돌아간다.[208] 따라서 식품의 위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도 독립한 기구에 의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식약처 등 관계당국이 위해성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품위해관리와 위해평가가 통합되어 있어 효율적인 위해평가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위해성 여부에 대하여 혼란이 초래되기도 한다. 또한 위해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의 취지에 비추어보아도 전문 감정기관과의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위해성평가는 현재 활용가능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도 공정·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하고[209] 이를 위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위에서 각국의 제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위해관리와 평가시스템은 분리되

207) 박균성, 앞의 글, 111면.
208) 문은숙, 국정과제 실현방안 전문가 간담회, 2014.5.7., 56-57면.
209) 식품안전기본법 제20조 제3항

어 있고, 또한 위해성 평가는 객관적·독립적이고도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품위해평가는 독립적이고도 객관적인 과학적 분석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위해성 평가의 객관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식품위해성 평가기관과 식품안전관리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분리·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210]은 참고할만하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확보를 위한 체계화방안에서 위해관리, 위해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즉 국민과 식품안전관련당국의 정책수립 및 시행 그리고 성과, 위해식품 문제 등에 대한 판단여부 등이 상호간 지속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국민들도 식품안전 내지 불량식품 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식품안전관련 체감도는 부분적으로는 국민과의 불통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순히 소통위원회를 둘 것인가,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도 소통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게끔 하는 제도로 정비되지 않으면 진정한 소통은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211]

2. 규제대상의 명확화 및 규제의 효율화 방안

가. 규제대상으로서 불량식품, 위해식품과 허위과장광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독일의 식품법을 보면 식품법의 목적을 소비자 보호로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 대상으로 부정불량(Adulteration) 식품과 허위표시(Misbranding) 식품을 구분해 정의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이와 같은 국제적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규제대상으로서 위해식품 내지 불량식품의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식품법의 규제대상으로서 위해식품 내지 불량식품의 경우 그 개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유해의 양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도 식품위생법 제4조 2항의 예를 보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유독·유해물질'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다. 유독·유해 물질의 존재 유무

210) 김준/배민식,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마련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5호, 2008.12.12.
211) 문은숙, 앞의 글, 57면.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유해 물질의 '양'이 존재할 때에 한해 규제를 하는 규정이다.

4대악으로서의 불량식품 근절은 그 개념과 범위 속에만 함몰되지 말고 보다 먹거리 전체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보다 포괄적이고도 근본적인 문제지점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향후 정책과제로서의 지표 및 방향설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회자되는 용어로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시행방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기를 기대해본다. 굳이 공정하고도 엄정한 법집행 및 법적용을 위한 용어 통일을 시도해본다면 식품위생에 대한 기본법규라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으로 통일하여 정의해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212]

나. 고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엄중처벌

우리나라의 식품산업 실태를 보면 종업원 50인 이하 사업체가 전체의 97%에 달하는 영세한 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다.[213] 이는 소수의 대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들 영세업장에서 고의적인 식품위해보다는 비고의적 우연적 위반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그런데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이들 경미한 행위들에게까지 법위반으로 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점이 정책방향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214]

이런 점에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순한 비고의적 행위와 고의적이고도 악질적인 행위,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 일어나는 식품안전 기준위반 사범 등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과도한 처벌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

212) 같은 취지, 이재삼/박문선, 앞의 글, 149면. 이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으로 '불량식품범죄'로 개념정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견해는 박찬걸,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2013/여름호, 125면 참조. 한편 불량식품 규제를 위한 통합법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무영, 앞의 글 32면.

213)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보도자료, 2013.8.8, 3면.

214) 이러한 취지에 대하여는 하상도, 식품범죄 양형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언, 식품음료신문, 2010.10.20.

왜냐하면 이들 불량식품의 정의에 의할 경우 단순실수로 인한 표시사항 오기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 등도 포함되는바 이는 과도한 규제[215]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제조업체들로부터 무분별한 단속 등으로 인한 영세 영업자의 성장성 저하와 소비자 선택권 저하 우려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규제관련 용어정리, 과도한 개입 자제, 벌칙 정비 등을 통해 적정한 식품규제와 식품산업진흥을 아울러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식품사범처리에 대한 통계분석에 의하여 식품사범처리의 일반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된다. 즉 단순약식기소 사건만으로 이를 비고의적 사고로 분류할 수 있을까, 현행 통계로 사건유형 분류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의식이다. 과도한 규제로 비치는 그 근저에는 규제대상인 식품위해사범의 정의가 광범위하고도 불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불량식품의 정의는 식품관련 모든 법 위반제품으로, 단순 실수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 등도 포함된다. 당연히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상 처벌대상인 위해식품의 유형가운데에는 위해뿐만 아니라 단순히 인·허가 관련 행정단속위반사항도 포함되어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형사범으로 처벌하면서 동시에 그 형량도 가볍지 않아 과연 적정한가 하는데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위해식품 정도가 아니라 보건범죄단속법상의 부정식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또 중대범죄유형에 대하여는 이 가중처벌규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16] 문제는 이 경우에도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에 버금가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근거한 적정한 형벌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15)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보도자료, 2면.

216) 이미 대검찰청은 2004.6.21. '전국부정식품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회의'에서 부정식품 사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특히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부정식품 제조 재범자에 대하여는 보건범죄단속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중대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이라는 점에서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그 외 부정식품 제조등에 사용된 기계류 몰수, 사업장 폐쇄 등의 불법이익몰수제도 활용, 벌금형병과 활용 등의 조치를 통해 위해식품제조 및 판매 등으로 얻은 불법수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였다.

다. 단속공무원 등의 신고의무 인정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위해식품 제조·판매의 특성상 일반인의 경우보다 전문적인 단속기관 예컨대 공무원 등에 의해 업무수행중 적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문제는 식품사범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해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후술하겠지만,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사상 전문성 부족으로 실제 위반행위의 인지, 입건, 수사, 및 검찰송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그리하여 이들 단속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있다.[217] 물론 수사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수사보다는 행정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고로 귀속되는 벌금보다는 자체수입 내지 세외수입으로 편입되는 과태료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보다는 당해기관에서 행정처분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218]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들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사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무리이다. 오히려 식품사범의 특성상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 이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육 및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의 제도적 개선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사건에게 도입되어 있는 아동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 복지시석 종사자의 신고의무를 식품사범의 일선 공무원에게 부과하자는 논의는 우선 가정폭력사범의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맥락에서 식품관련 행정공무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자는 논의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라. 식품관련 담당공무원의 공무원 의제

2013.7.30. 개정전 구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위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상 수뢰 및 알선수뢰죄 등(형법 제129조~132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보았다(식품위

217) 강석구외, 앞의 글, 141면.
218) 강석구외, 앞의 글, 82-83면.

생법 제99조). 그런데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이 규정은 삭제되어 식품위생기관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수뢰 및 알선수뢰 등의 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개정전 식품위생법상 동 규정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평가나 검사, 심의를 하는 기관이나 기구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 및 향응제공을 방지하고 평가 등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 규정상의 식품위생기관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위해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공무원 의제를 함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다.[219]

그런데 이런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 규정은 삭제되어 현행법하에서는 식품위생검사 관련 기구나 기관조차도 관련 임직원이 알선 및 수뢰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한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현행법 태도가 적정한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물론이지만, 관피아척결 등의 국가적 과제라는 사명에 비추어서도 이러한 개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식품분야는 그 단속 및 검사 등과 관련하여 부패가 구조화되어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220] 이런 점을 인식하여 이미 2004년 대검찰청에서는 부정식품 단속과 더불에 관계공무원의 유착·묵인·감독소홀 행위까지도 철저히 규제한다는 기본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221] 향후 개정에서는 위해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의 임직원에 대하여까지 공무원 의제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무분별한 단속 지양

국정과제 수행 초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경찰의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해 영세 사업장들로부터 과도한 단속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단속대상을 500만원 이상 제조·유통사범으로 수정한 바 있는 데에서 보는 것처럼, 무분별한 단속은 득보다는 실이 크다. 영세사업장의 성장성 문제, 식품관련제품 시장 및 제품개발 축

219) 강석구외, 앞의 글, 83-84면.
220) 국무조정실,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 대책, 1999; 부패방지위원회,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 가이드, 2004, 20면 이하 참조.
221) 법률신문, 부정식품제조 재범자 사형까지 구형, 2004.6.22.

소,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 저하 등의 문제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무분별한 단속으로 인한 득실을 가려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조단계에서부터 유통·판매 등 전단계에 이르기까지 감시제도를 확립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

4. 식품사범 대응 조직기관과의 협조 등 효율성 강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량식품 단속만큼이나 불량식품근절을 위한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균형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222] 불량식품 근절 범정부추진단은 정부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시민도 함께 참여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 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응기관간의 협조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식품사범 대응 기관과의 협조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량식품 내지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식품안전중점검찰청이 지정·운영되고 있고 또한 경찰과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조직 및 운영상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즉 수사지휘 및 감독문제, 유관기관 간 업무의 중복성 및 복잡성, 그리고 식품사범 처리 관련 기관 사이의 이해관계 복잡 등이 그 원인이다. 효율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억제를 위해서는 조직간 협조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식품사범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유관기관 행정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현행「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인정되고 있다. 식품 등의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특사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및 각 지방청 위해사범조사TF 직무를 수행한다.[223]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실상 어느 법에도 명문의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 특별

222) 유무영, 앞의 글, 35면.
223)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50호.

사법경찰관리란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수한 사건 또는 특수한 장소 등에 제한하여, 구체적으로는 지역적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한이 미치기 어려운 경우, 사항적으로 매우 전문적이어서 그 본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인정된다.[224] 이처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존재이유는 사건의 처리사항의 전문성·지역성에 근거하며 종국적으로 사건조사 내지 처리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다.[225]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는 범죄의 성질상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어서 그 직무를 취급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 수사를 맡기는 경우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기본적으로 장부 서류열람권, 출입·검사·수거권 등을 가지며, 벌금 및 과태료 등을 기본적인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한다. 또한 사법수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시·군·구의 단속업무 공무원이 행하며, 사법경찰관에 의한 운영은 미미하여 주로 각 지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226]

오늘날 행정의 전문성이 보다 강하게 요청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정 행정영역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전문적인 통제 및 관리가 필요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처벌대상자 역시 일반사법경찰(수사경찰)에 의한 단속과 조사보다는 특별사법경찰(일반 행정청)에 의한 단속과 처벌에 대한 위하력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식품영역에서의 특사경제도는 의의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식품사범의 경우 기소율이나 공판청구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 약식명령에 그치고 있다(보건범죄 전체를 보더라도 검찰 기소율은 63.7%에 이르고 있고 공판청구는 3%, 나머지는 약식명령에 그치고 있다).

다만 특사경제도의 경우 그 집행상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관에 비하여 수사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탓으로 수사미숙, 수사권 남용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특정사안의 범위내에서 1차적인 수사권한을 갖고 있고, 일반사법경찰

224) 박미숙/이권철,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2009, 35면.
225) 서울고등법원, 수사지휘론, 1998, 135면; 박미숙/이권철, 앞의 글, 35면.
226) 심희기/하홍준, 산업재산권침해에 대한 형사소추요건완화와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 1999; 박미숙/이권철, 앞의 글, 37면.

의 경우에는 수사권한은 사항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통상 양자의 수사권이 경합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사경 제도 본래의 의의를 살리면서 동시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일반사법경찰과 수사권이 경합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각자 수사할 경우 상호 협조하여 수사하도록 철저한 지휘가 필요하다.[227] 그런데 이러한 전문성 살리기라는 특사경 본래의 제도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실무운영상 이러한 강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에 의해서도 특사경은 본래 업무가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잘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수사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방법이나 수사기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특사경의 사법상 권한은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비하여 일부 제한된다. 수사장구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가 조사에 의해서도 식품관련 수사영역에 있어서 수사경찰은 특사경에, 특사경은 수사경찰에 서로 그 업무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은 미국 FDA 소속 범죄수사단(OCI)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수사단 설립 초기에는 전문성이 중심이 된 연방식약청 소속 소비자 안전담당관을 중심으로 전직이 이루어졌지만 범죄수사영역에는 익숙하지가 않아 위반자의 수사 및 단속에는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228] 이후 범죄수사단 요원들은 일반적인 범죄수사업무에 능통한 요원들 위주로 채용정책이 바뀌면서 운영상의 효율성 측면이 보강되기에 이르렀다.

식품위해사범의 단속 및 처리과정에서도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그 소속이 행정공무원이다 보니 형사고소보다는 행정처분인 과태료처분을 선호한다는 것이다.[229] 이 점은 식품사범 처리가 주로 행정범 내지 과태료처분으로 다루어지는 중요 이유로 부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사범에 대한 특사경제도는 각 영역의 업무범위와 책임이 명확해지는 장점은 있지만, 실적이 분산되기 때문에 성과 내지 실적위주의 경찰실무현실에서 과연 이 방법이 잘 적용 운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인식도 고려해야

227) 박미숙/이권철, 앞의 글, 40면.
228) 박미숙/이권철, 앞의 글, 14면.
229) 이점은 강석구외, 앞의 글, 79면 참조.

할 것이다. 교과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양 조직의 협조, 정보공유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역할 분담은 그 빛을 발할 수 있을지 모르나, 현행과 같은 실적위주의 체계하에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수사단 속을 위한 인력보충, 위해식품에 대한 검사나 분석 수행을 위한 기술 장비지원 그리고 교육, 전문수사기법 교육, 정보공유 등도 절실히 요구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FDA 소속 범죄수사단 요원의 활동성과는 괄목할만하다. 그리고 범죄수사단 요원의 활동경력은 평균 12년 6개월 정도이며, 수사요원의 관리책임자는 평균 22년에 달하며, 매우 경험있는 수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230]이들 수사요원의 교육은 연방법집행기관 훈련센터(Federal Law Enforcement Training Center)이 담당하며 일반적인 경찰업무관련 훈련프로그램 및 범죄수사단 요원대상 특별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하며, 동시에 식품의약청에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231] 이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5. 적정한 처벌 및 양형

가. 양형기준의 준수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양형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엄중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식품사범 1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10% 남짓이며,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0.1%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식품사범이 벌금형으로 처리되고 있다.

식품사범은 특히 재범율이 높다고 한다. 다른 범죄의 재범율보다 2배 정도에 이른다.[232] 예컨대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팔다 적발된 식육 도매업소의 경우 같은 혐의로 두 차례나 적발됐지만 처벌은 벌금 3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전국법관회의에서 그동안 식품범죄에 있어 형량 범위인 양형기준을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한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인정하고, 식품범죄에 대한 양형을 보다 엄격하

230) 박미숙/이권철, 앞의 글, 15면.
231) 박미숙/이권철, 앞의 글, 19면.
232) 경남일보, 2014.11.3.

게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233]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사고에 대하여 처벌강화는 바람직한 대응방안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처벌강화는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단괴리를 넓힐 뿐이다.

양형조사에 의하면 전체 입건 수 대비 '구공판' 기소율이 불과 1%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실형선고 또한 한해 평균 5.3건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부분의 식품위해사범은 벌금형으로 처리되며, 평균 벌금형이 599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처벌조항과 실제 판결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사대상 판결문의 위반조항을 보면 단순 영업자 허가 등에 대한 사항과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등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행정 위반사항이 많다. 그런데 이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외에 관행적으로 형사고발조치를 병행하여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검찰입장에는 약식기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등록 및 신고 내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것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만으로 처벌하거나 기존 처벌조항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식품법상 관련처벌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면 위해식품에 대한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93조와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인 제10조 및 제13조에 대한 선고형에 대한 기준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자 등록 및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대법원 양형기준에 영업자 등록 및 준수사항 등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식품위생사범 재범방지 대책으로서의 범죄수익몰수제도 활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의 경우 특히 재범율이 높은데, 식품사범의 재범방지대책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범죄수익몰수제도이다.

식품위생법상 제4조의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범죄수익몰수가 인정된다. 즉「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233) 뉴시스, 2014.7.25.

법률」(범죄수익규제법)상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인정되는 특정범죄(범죄수익규제법 제2조 제1호)에는 식품위생법 제94조도 포함된다(범죄수익규제법 별표 제23호). 즉 식품사범의 경우 범죄수익규제법에 따라 제조 및 판매등에 이용된 기구, 원료 등의 몰수가 가능하다. 이로써 식품사범의 경우에도 범죄원인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범죄수익몰수제도를 활용하여 범죄수익의 원천을 철저히 제거하여 식품위해사범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다. 부당이득환수제도 및 최저형량제의 재고

2013.7.30.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하여 부당이득환수제와 최저형량제도를 도입하였다. 부당이득환수란 위해식품 제조·판매행위를 범하고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행위로 재범을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최저형량제),[234] 위해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부당이득환수제도).[235]

식품위생법상 일부 특정위해사범의 행위가 중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위해사범의 처벌을 살인 및 강도 등의 일부 중범죄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최저형량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236]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과연 현행법상 식품사범에 대하여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고, 또한 벌금형으로 선고되고 있는 양형현실이 현행 법정형이 낮은 때문인가? 식품사범의 재범율이 높은 이유가 낮은 법정형 때문인가는 의문이며, 형량상향조정, 가중처벌이 식품사범 재범방지 및 불량식품 근절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237]

또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리가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 과연 처벌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행위의 특성인가 하는 점 등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약식명령으로 대부분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식품사범의 경우 대부분 영세, 소규모 영업이라는 특성, 그리고 비고의적 행위라는 특성,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234)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235)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236) 농민신문, 2014.11.7.
237) 같은 취지 : 박찬걸, 앞의 글, 134면.

보다는 행위특성, 규모, 고의여하 등을 철저히 가릴 수 있는 수사상 기법이 더욱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행위유형 차등화, 엄정한 처벌로 다루겠다는 법집행·법적용기관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제출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형량을 가중하는 형태의 개정안 및 논의[238]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과 보건범죄단속법 등에 의하면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고 있고, 특히 보건범죄단속법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의 무신고 및 비허가 식품제조가공하여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동법 동조 동항 제1호)하고 있어[239] 그 처벌수위가 결코 낮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240]

한편으로는 식품사범에 대한 실제 처벌이 상당히 미약한 것도 사실이다. 이는 오히려 현행 식품사범 대부분이 생계형 수준 즉 동네 문방구 수준의 식품사범이 대부분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불량식품사범이 생계형이다보니 실질적인 처벌이 약하고, 생계형으로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241]

6. 기타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방안 활용

가.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제도의 활성화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내용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줄 수 있다.[242] 위해식품의 경우 그 제조 판매과정상 은밀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식품의 위해성 여부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인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4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제도는 수사기관 등에 의해서만

238) 연합뉴스, 2013.6.5.
239) 보건범죄단속법 제2조 제1항 참조.
240) 같은 취지 : 박찬걸, 앞의 글, 134면.
241) 유무영, 앞의 글, 33면.
242) 식품위생법 제90조 제1항.
243) 통상 일반인이 위해식품 신고를 할 경우에는 동업자 또는 경쟁업자의 신고일 경우가 많다고

단속 및 적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식품위생 관련 감시를 다양화하고 사전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제도적 의의는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244] 다만 아래 <표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처리 건수에 의하면 허위신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부정·불량식품(1399) 등 신고처리 건수

단위: 건

년도	신고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허위신고	고발
		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품목정지	시정명령등		
2005	8,505	4,887	68	579	89	4,151	2,272	1,228
2006	924	488	2	65	17	404	244	151
2007	885	338	2	70	16	250	372	148
2008	2,967	1,289	13	136	17	1,123	630	283
2009	4,538	1,256	3	209	70	974	2,618	323
2010	8,050	2,061	99	133	26	1,803	3,299	1,487
2011	8,411	1,927	37	193	55	1,642	5,036	1,448
2012	8,815	1,724	35	221	21	1,447	5,424	1,667
2013	5,275	1,469	30	153	16	1,255	-	898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6호」, 2014.10: 172면.

〈표 5-2〉 부정·불량식품(1399) 등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

금액단위: 천원

년도	신고	포상금지급	미지급	
		건수	금액	
2005	8,505	3,780	146,855	4,725
2006	924	205	12,420	719
2007	885	152	10,386	733
2008	2,967	392	23,320	2,575
2009	4,538	480	45,190	4,058
2010	8,050	2,004	191,270	6,046
2011	8,411	1,614	159,408	6,797
2012	8,810	1,685	172,850	7,125
2013	5,275	953	49,020	4,322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16호」, 2014.10: 173면.

한다. 강석구외, 앞의 글, 82면.

244) 박찬걸, 앞의 글, 136면.

허위신고방지를 위해서는 허위신고방지는 포상금 액수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책보다는 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식품이력추적제도 구체화

식품안전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정부는 식품이력추적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3만4597건에 달했다.[245] 건강식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1만3094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37.8%에 달했다. 특히 식품위해사례 가운데 이물혼입, 알레르기, 부패변질, 식중독, 화학적 부작용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이는 각국의 위해사례와 거의 유사하다.[246]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기준 위해식품 전체 회수율은 30% 수준이고, 특히 어린이 기호식품은 10% 내외에 불과해 어린이의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부지검의 식품의약품중점검찰청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도 “유통되는 불량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의무화와 리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낮은 회수율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247]

7. 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정보공개

식품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고, 안전관련정보를 공유하며, 식품등 안전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제정할 때, 그리고 식품안전법령위반 사건 수사시 해당사건의 공표 문제 등을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48]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자,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에

245)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보도자료, 6면.
246)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보도자료, 6면.
247) 경남일보, 2014.11.3.
248) 식품안전기본법 제26조.

게 해당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249]

유럽의 경우 유럽 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교류와 식품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신속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EFSA는 신속한 경보체계로서 위기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위해평가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특히 이 기구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식품안전 정책이나 법률제정에 과학기술적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며, 공개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정보제공, 위해 의사소통, 공조체제 구축 등을 그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250] 위해평가한 결과는 의뢰한 기관에 의견으로 제출하고 소비자, 대중매체, 산업계, 전문가 집단에게도 공개한다.[251] 이미 2008년도 중국의 멜라민 파동을 겪으면서 광우병 사태를 거울삼아 새로운 체제를 정비 발동하였으며, 특히 신속경보시스템은 유럽 회원국들 사이에 협력과 통제를 통한 철저한 위기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며, 이 덕분에 조기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252] 이제 식품사고는 더 이상 한나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식품사고에 대한 국제적 위기대응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식품거래의 국제화속에서 중국 및 일본 등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식품안정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으로 사람의 안전을 위한 행정 및 제도 네트워크 형성, 감독할 필요성이 크다.[253]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연합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광우병방지를 위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뼈의 단백질 성분 분석을 위한 과학적 방법에 대하여 서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254]

---

249) 식품안전기본법 제24조 제2항.
25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외출장결과보고서, 2008.5, 6면.
25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외출장결과보고서, 2008.5, 6면.
252) 김형섭, 최신외국법제정보, 39면.
253) 김형섭, 최신외국법제정보, 39면.
2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외출장결과보고서, 2008.5, 3면.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6장

결 론

박 미 숙

제6장

결 론

본 연구는 새정부 출범 이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선정된 불량식품과 그 근절을 통해 식품안전강국을 실현하려는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적 성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식품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 시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법제도적인 변화도 적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국정과제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전문가의 평가 등은 어떤 변화를 겪어왔으며, 식품안전확보 내지 불량식품근절이라는 국정과제 평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하는 점은 향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토대로서 활용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여 법제도적 측면, 국민 및 전문가 인식측면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원칙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토대로서의 개념 확정 필요

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부정식품 및 첨가물 등의 제조 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한다. 그런데 동법 또한 부정식품의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해 등의 기준에 대하여 단순히 '유해'해서는 안 되고, '현저히 유해'하다는 것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 부정식품의 '현저히 유해의 기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보건범죄단속법상 부정식품이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관련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동법상 인·허

가를 받지 않은 식품은 위해식품이 아니라 부정식품이며, 이에 대하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그 형이 가중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으로 위해식품이 아니라, 단순히 인·허가 관련 행정단속 위반사항까지 형사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량도 가볍지 않다는 점은 문제이다. 단순한 위해식품 정도가 아니라 보건범죄단속법상의 부정식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또 중대범죄유형에 대하여는 이 가중처벌규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다만 문제는 이 경우에도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에 버금가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형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현행법상 불량식품 개념은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개념과 내용 범위에 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불량식품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의하면 불량식품은 일반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식품으로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모든 식품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비위생적인 식품을 불량식품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협의로서는 예컨대 부패·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되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 광의로서는 허위과대광고, 가짜식품 등 소비자를 속이는 모든 식품 등이 이에 포함된다. 즉 원산지를 속인다든가 과대광고 그리고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을 속여 파는 행위 등도 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불량식품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불량식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량식품 정의에서 그 유형으로서 '사회적인 통념상 위생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식품을 고의적으로 생산·제조·유통·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불량식품의 정의를 제시함에 있어서 '사회통념, 위생적, 부적절한' 등의 용어는 소위 근절대상으로 포섭하기에는 매우 불명확하고도 애매한 개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부합하는 위해식품 개념 통일과 그 범위 확정 필요

식품위생법상 식품위해사범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식품관련 인·허가 제도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로써 바로 '위해하다'는 판단대상으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 제도를 강화해야 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은 바로 위해하다는 결론으로 이르는 것은 위해식품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판단의 대상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결국 이는 처벌의 확대를 가져오며,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

식품법의 규제대상으로서 위해식품 내지 불량식품의 경우 그 개념확정만이 아니라, 유해물질의 독성이나 유해의 양이 중요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도 식품위생법 제4조 2항의 예를 보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유독·유해 물질'로 건강에 해를 끼치는 물질로 한정하고 있다. 유독·유해 물질의 존재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독·유해 물질의 '양'이 존재할 때에 한해 규제를 하는 규정이다. 향후 정책과제로서의 지표 및 방향설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회자되는 용어로서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전략과 시행방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기를 기대해본다. 굳이 공정하고도 엄정한 법집행 및 법적용을 위한 용어 통일을 시도해본다면 식품위생에 대한 기본법규라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상의 '위해식품'으로 통일하여 정의해보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식품위해사범은 위험범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으나,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분에 따른 처벌의 차등화가 적정한가 하는 점이 문제된다. 결국 식품사범의 특성상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식품법상으로 고의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식품사범의 특성에 비추어보아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과실범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입법적 논의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절차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경미한 행위들에게까지 법위반으로 강한 처벌규정을 두는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점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단순한 비고의적 행위와 고의적이고도 악질적인 행위, 특히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식품안전 기준위반 사범 등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하여 보다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추진전략으로서 과도한 처벌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불량식품의 정의에 의할 경우 단순실수로 인한 표시사항 오기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미생물 기준규격 위반 등도 포함되는바 이는 과도한 규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국정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관련 제조업체들로부터 무분별한 단속 등으로 인한 영세 영업자의 성장성 저하

와 소비자 선택권 저하 우려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규제 관련 용어정리, 과도한 개입 자제, 벌칙 정비 등을 통해 적정한 식품규제와 식품산업진흥을 아울러 도모할 필요가 있다.

3. 식품위해사범관리 체계정비와 높은 재범률 억지방안 필요

공식통계에서 나타난 식품사범 관리 기관별 문제점을 살펴보면, 경찰의 경우 식품사범 전반에 대해 구속수사가 적게 나타나 범죄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세업체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지만, 식품사범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 검찰단계에서도 대부분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이나 구약식 사건으로 처리되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가 있다. 식품사범의 경우 재범률도 높게 나타난 바,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가. 적정한 양형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은 현행 양형기준에 의하면 위해식품에 대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에 대한 선고형에 대한 기준만이 명시되어 있으며, 식품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자 등록 및 준수사항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대법원 양형기준에 영업자 등록 및 준수사항 등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범죄수익몰수제도 활용을 통한 재범방지

식품위생법상 제4조의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범죄수익몰수가 인정된다.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인정되는 특정범죄에는 식품위생법 제94조도 포함된다(범죄수익규제법 별표 제23호). 즉, 식품사범의 경우 범죄수익규제법에 따라 제조 및 판매등에 이용된 기구, 원료 등의 몰수가 가능하다. 이로써 식품사범의 경

우에도 범죄원인을 철저히 제거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범죄수익몰수제도를 활용하여 범죄수익의 원천을 철저히 제거하여 식품위해사범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다. 위해식품사범 특성에 따른 행위유형 차등화, 처벌 기준 이원화 필요

2013년 7월 도입된 부당이득환수제도와 최저형량제도는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리가 대부분 약식명령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 과연 처벌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행위의 특성인가 하는 점 등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약식명령으로 대부분 처리되고 있다는 것은 식품사범의 경우 대부분 영세, 소규모 영업이라는 특성, 그리고 비고의적 행위라는 특성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행위특성, 규모, 고의여하 등을 철저히 가릴 수 있는 수사상 기법이 더욱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행위유형 차등화, 엄정한 처벌로 다루겠다는 법집행·법적용기관의 인식이 더욱 중요하다.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일반국민들은 식품위해사범 근절을 위해 형사처벌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적정한 제재와 형벌이 위해식품사범 규제를 위해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부정불량식품 허위신고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도입 검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처리 건수에 의하면 허위신고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신고방지를 위해서는 허위신고방지는 포상금 액수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개선책보다는 범죄처벌법상의 허위신고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4. 식품위해사범 단속 및 처벌의 효율성 제고

가. 엄격한 법집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이 접근할 경우에는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의해 영장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므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사전정보와 범죄혐의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재원의 뒷받침 없이 실시되는 단속과 수사가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은 각 해당영역에서 업무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한 전문수사관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소속 행정청 조직의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수사지원활동비용 등)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를 실시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중앙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사법경찰들은 검사의 일괄적인 지휘를 받고 활동하는 경우와 조직의 자체 업무 수행만으로도 모든 재원을 투입시켜서 활동하고 있는바, 전문적인 단속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찰의 합동단속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유관기관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유이기도 하다.

비교법적 검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 식품위생법 위반사범에 대한 기업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 또 손해배상액이나 민사금전벌 등도 상당한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점, 무엇보다 식약청 범죄수사단 전문조사관의 전문성 확보와 이들 수사시스템의 합목적적 운영 등은 우리나라의 제도운영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여 진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에도 식품안전을 위한 당국의 관리 감시 체제가 매우 철저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이미 위해성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해평가와 위해관리 시스템이 철저히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써 식품안전법규 제·개정, 식품안전 조치수행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적지 않다. 향후 식품안전기본법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효율적 활용 필요

식품위해사범 척결이라는 국정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식품안전중점검찰청 지정을 시작으로 경찰과 행정기관의 특별사법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지휘 및 감독문제, 유관기관 간 업무의 중복성 및 복잡성, 그리고 식품안전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인식과 억제를 위한 위하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조직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식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를 위한 처벌의 신속성과 엄격성 그리고 확실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유관기관 행정청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식품위해사범 관련 유관기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은 특별형법범상 식품범죄를 중심으로 단속과 행정처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 행정청이 접근하는 경우 범죄현장 단속에서 시작하여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현장에서 수집가능하고 증명력 있는 증거물 채택에 있어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셋째, 식품위해사범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더해진 사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는 실제 공판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능력 확보를 중심으로 검사의 공소유지를 위한 일련의 형사소송절차 등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지식까지 구비된다면 단순한 고발이나 송치업무가 아닌 전문수사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일반적인 범죄수사는 수사기관의 인지 또는 고소 및 고발을 시작으로 일선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다보니 수사기관은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범죄를 임의적으로 수사하고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다. 이는 대부분의 식품범죄에 대한 증거채증 활동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에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형사절차보다는 행정절차에 의한 증거채증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법률전문가인 검찰과 수사전문가인 경찰과는 달리 식품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며, 이러한 별도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식품사범을 집중적으로 통제가 가능하기에 궁극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조직이 운영될 것이다.

5. 국민의 식품안전 불안감에 대한 효율적 대응

식품안전 여하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조사결과에 의하면 특히 4대악에 대한 인식이나 식품불안감 등은 그다지 높지 않으나, 단속과 처벌의 적정성여하에 대하여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로 식품안전 관련 형사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식품위해사범의 규제대상 명확화, 단속과 처벌의 적정성, 유관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 등의 형사정책적 방안이 함께 적절히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전문가 인식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만족도평가는 높은 한편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식품위해사범에 대하여는 사전적 억제 내지 예방적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정책 및 관련 형사정책으로서, 단속 및 조사공무원의 전문성확보, 유관기관과의 협업,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차별화된 적정한 판단기준 및 범위 확정 등이 요구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국내자료

강석구·하상도·송봉규, "위해식품의 제조·유통과정상 불법유형 및 실효적 단속 방안", 연구총서 09-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경찰청, 2014년 상반기 내부자료, 2014.

곽노성·정지원·이종경, 최근 3년(2008-2010)간 식품안전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현황 분석, 식품영양 및 안전 제28권 제2호, 20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외출장결과보고서, 2008.5.

국무조정실,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 대책, 1999; 부패방지위원회, 식품위생분야 부패방지 가이드, 2004.

권대영, 국민먹거리 사각지대, 여연시선 Vol.1, 2014.

권수진,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0) 보건·의료·마약·생명·윤리 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김준·배민식,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마련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제15호, 2008.12.12.

김형섭, 독일의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의 안전을 위한 제도, 한국법제연구원,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식품리콜 현황, 2012.

대검찰청, 범죄분석 2011년-2013년.

문상덕, 식품안전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정법연구 제37호, 2013.

문은숙, 국정과제 실현방안 전문가 간담회, 2014.5.7.

박강우,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저스티스 통권 제114호 2009. 12.

박균성·정관선, 한국프랑스 식품안전법비교, 경희법학 제47권 제3호, 2012.

박미숙·이권철, 외국의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용실태에 관한 연구, 2009.

박창석, 식품안전을 위한 식품위생법상 규제, 법학논총 제24집 제4호, 2007.

비윌슨·김수진, 공포의 식탁 – 식품사기의 역사, 2008.

사법연수원, 보건환경범죄론 2012.

서울고등법원, 수사지휘론, 1998.
식품안전정보원, 제외국 식품위생감시 규정 및 제도 등 현황, 2012.
식품안전정보원, 제외국의 식품관련 정부조직 및 영업 인허가 제도 조사, 201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통계연보,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2013.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보원, 2013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 2014.
식품저널,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불량식품의 정의와 유형, 2013.3.23.
심희기·하홍준, 산업재산권침해에 대한 형사소추요건완화와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 1999.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12. 7.
유무영, 국정과제 실현방안 전문가 간담회, 2014.5.7.
이세정, 식품·의약품 안전관련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9.
이재삼·박문선,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 방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4집, 2014.6.
이정민, "협동적 양형판단을 준비하는 일본의 양형논의 및 양형정책",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2009.
이종영, 개정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성 확보제도, 중앙법학 제7집 제2호, 2005.8.
이현규, 식품안전R&D 과학기술정책 제23권 제1호, 2013.
전재경, 위해성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법학논문집 제27집 제1호, 2003.8.
田村善弘·이병오, "일본 나가사키현의 식품안전 정책과 시사점", 「식품유통연구」 제22권 제4호, 2005.
정기혜, 식품안전분야 위해소통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2013.2
통계청, 2010 사회조사보고서 Ⅳ통계표 7-1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하상도, 식품범죄 양형기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언, 식품음료신문, 2010.10.20.
한국법제연구원, 주요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II).
한국법제연구원, 최신외국법제정보.
홍순욱, 양형기준의 제정과 한계, 저스티스 통권 제139호 2013. 12.
홍순욱, 우리나라 양형위원회 양형기준모델의 타당성 평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논문, 2009.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보도자료, 2013.8.8.
10년 Foodsafety, 독일식품안전전략, 2010.3.

MBC 시사매거진 2580 "우리가 불량식품"(제856회), 2013.5.26.에서 드러난 바 있다.

경남일보, 2014.11.3.
경찰청 국회제출자료(http://www.police.go.kr/assembly/main.do).
농민신문, 2014.11.7.
뉴데일리경제, 식품안전에 소비자는 웃고 운다, 정부 소비자 불통 탓.., 2014.1.4.
뉴시스, 2014.7.25.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년-2013년 재구성.
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도4633판결 ; 헌법재판소 2000.3.30. 선고 97헌마108 결정 참조.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9171 판결.
법률신문, 부정식품제조 재범자 사형까지 구형, 2004.6.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연합뉴스, 2013.6.5.
코덱스위원회 지침(http://www.codexalimentarius.org/codex-home/en/)
통계청 고시 제2014-175호. http://kostat.go.kr
푸드투데이, 식약처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기능 마비, 2013.5.25.

국외자료

Adam Stirrup, "A Cautionary Tale about Agroterrorism and the Safety of Imported Produce", 16 San Joaquin Agric. L. Rev. 171, San Joaquin College of Law, 2007.
Eric M. Goldstein, "Inspecting the Hands that Feed US: Requiring U.S. Quality for All Imported Foods", 7 Wash. U. Global Stud. L. Rev. 137, Washington University Global Studies Law Review, 2008.
FDA, "Biennial Report to Congress on the Food Emergency Response Network", Report Congress, 4-5면.
FDA, Background on the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2014. 8. 5)
FDA, Consumer Health Information, "What OCI Investigates", 2011. (http://www.

fda.gov/downloads/ForConsumers/ConsumerUpdates/UCM048718.pdf).

FD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Facts, Food Safety Legislation Key Facts, 2011. 7. 12.

FDA,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Chapter 2 (FDA Authority), 2011.

FERN(https://www.fernlab.org/structure/, 2014. 10. 8. 검색);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FERN consists of the National Program Office (NPO) with personnel located in Athens, Georgia and Rockville, Maryland. Additionally, there are Regional Coordination Centers, (RCCs), located in each of the (5) FDA reg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Neal D. Fortin, Food Regulation: Law, Science, Policy and Practice, A John Wiley & Sons, Inc., Publication, 2009.

Public Health Service Act (42 USC 243). Section 311(a).

Trent R. Taylor, "United States: 2014 Food Industry Outlook-Criminal Investigations"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285864/food+drugs+law/Criminal+Investigation, 2014. 10. 11. 검색).

Trent R. Taylor, "United States: 2014 Food Industry Outlook-Criminal Investigations"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285864/food+drugs+law/Criminal+Investigation, 2014. 10. 11. 검색).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2012. 4. 24.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Glaxo Smith Kline to Plead Guilty and Pay $3 Billion to Resolve Fraud Allegations and Failure to Report Safety Data, 2012. 7. 2.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at Section 6-5-3. 3.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2012. 4. 24.

US GAO, Improved Monitoring and Development of Performance Measures Needed to Strengthen Oversight of Criminal and Misconduct Investigations, GAO-10-221, 2010, 1면.

US GAO, Improved Monitoring and Development of Performance Measures Needed to Strengthen Oversight of Criminal and Misconduct Investigations, GAO-10-221, 2010, 3쪽; FDA OCI field offices are located in Chicago(IL), Kansas City(MO), Los Angeles(CA), Miami(FL), New York(NY), Washington,

D.C.

USA Today, “Colo. Farmers arrested in listeria outbreak that killed 3,” September 26, 2013.

WHO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Volume 92, Number 4, April 2014, 229-308면.

GPO(http://www.ussc.gov/guidelines)

United States v. Park, 421 U.S. 658 (1975).

APHIS(http://www.aphis.usda.gov/about_aphis/ 2014. 10. 12. 검색).

CDC(http://www.cdc.gov/foodsafety/fsma.html 2014. 10. 8. 검색).

DoH(http://www.hhs.gov/about/ 2014. 10. 5. 검색).

EPA(http://www.epa.gov/lawsregs/laws/ffdca.html 2014. 10. 11. 검색).

FAO(http://www.fao.org/news/story/en/item/219025/icode/, 2014. 7. 1. 검색).

FDA Regulatory Procedures Manual, Chapter 2 (FDA Authority), 2012. 7.

FDA(http://www.fda.gov/)

FDA(http://www.fda.gov/AboutFDA/CentersOffices/OfficeofGlobalRegulatoryOperationsandPolicy/ORA/default.htm, 2014. 10. 15. 검색).

FSIS(http://www.fsis.usda.gov/About_FSIS/index.asp 2014. 10. 10. 검색).

NOAA(http://www.seafood.nmfs.noaa.gov/ 2014. 10. 11. 검색).

TTB(http://www.ttb.gov/trade_practices/federal_admin_act.shtml 2014. 10. 11. 검색).

US GAO, Improved Monitoring and Development of Performance Measures Needed to Strengthen Oversight of Criminal and Misconduct Investigations, GAO-10-221, 2010.

www.bfr.bund.de

www.bvl.bund.de

www.juris.de

警察廳 生活安全局, 生活經濟事犯 檢擧現況, 2013.

警察庁生活安全局 生活経済対策管理官, 平成24年中における 生活経済事犯の検挙状況等について, 平成25年2月

警察庁生活安全局 生活安全確保犯罪捜査活動 평성22년.

内閣府, 國·地方公共團體等の推進體制, 平成18年版「食育白書」, 2006.

東京都, 東京都食品安全推進計画, 平成22年度-平成26年度..

澁谷 樹, 食品僞装表示にあける行政調査と犯罪捜査との競合,「社會技術研究論文集」Vol. 9, 2012.

石川一洋 による解説 「食の安全·ベラルーシから学ぶこと」2011年11月7日,「スタジオパークからこんにちは」の枠内で放送, 概要は解説委員室解説アーカイブスでも検証可能..

食品安全基本政策研究會,「食品安全基本法解說 逐條解說」, 大成出版社, 2005.

原田男, 量刑判の際, 立花書房, 2003.

中島 貴子, 食品安全をめぐるイ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 : 食品安全委員會への提言,「社會技術研究論文集」, Vol. 2, 2004, 321면.

總務省 報道資料, 食品表示に関する行政評価·監視 監視業務の適正化を中心として, 平成22年9月3日.

厚生労働省 食安発0317第3号 厚生労働省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長 放射能汚染された食品の取り扱いについて, 2011年3月17日.

厚生労働省 医薬食品局 食品安全部 監視安全課, 消費生活侵害事犯対策ワーキングチームの検討結果について, 平成21年 7月 7日.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告示 第129号, 2012年3月15日.

厚生労働省 医薬食品局食品安全部, 食品中の放射性物質の新たな基準値, 2014.

外務省(http://www.mofa.go.jp)

日本 水産廳(http://www.jfa.maff.go.jp)

Abstract

Policy Measures for Food Safety in the Aspect of Criminal Policy

Park, Mi Suk*

1.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With the promotion of food safety, one of the major government projects, put in place for over two years, a wide range of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secure food safety. Against this backdrop, examining performance results of food safety strategies of systems or organizations that were newly introduced in early days of the Park administration is both timely and politically significant. It seems vital to ask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paths we have followed for food safety? What did we do to secure food safety? Has anxiety over food safety relieved? Has harmful or adulterated food been reduced?

After food safety was selected as one of national projects,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as promoted to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s Safety under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therefore it is now equipped with a government structure and conditions needed to be responsible for the ministry's functions and offer technical knowhow. However, the definition and scope of harmful food which can be subject to legal punishment is unclear and extensive. Furthermore, when it comes to food safety as a government project, the definition and scope of harmful food is still more uncertain and broader. In order to witness effectiveness in the national project of the elimination of adulterated food, it is vital to take into

* Senior Researcher

consideration the criticism that the target to fight against should be clear. Above all things, there should be serious discussion over whether the basic regulation frame of the current Food Sanitation Act is appropriate, as it was designed to secure food safety by regulating food business operators, and whether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kept intact just because the justification of the act lies in the public benefit of protecting the health of food consumers.

The Food Sanitation Act offers the legal basis for the obligation to protect the rights to life and health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rough a range of food-related legislation. However, it is also called into question that whether the current system and policies are offering the environment optimal to secure food safety. In fact, food safety is as much a matter of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the food industry as safety—lying in the systematic loop whose bilateral axes include the cultivation of the food industry and the protection of general consumers. However, substandard food can cause tremendous harm to life, the human body, and health, and the damage occurs at a fast rate, thereby requiring thorough and prompt crackdown and post-management.

In Korea, the food industry, by nature, is based on small-scale businessmen and has a possible risk of huge safety acci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policy, it is a matter of concern that reckless crackdown on manufacturers has led to declined growth of small enterprises in the food industry and limited options for consumers. Therefore, it is of high significance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awareness over food safety and suggest a reasonable criminal policy.

2. Content and Method of the Research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18th government's project of eliminating adulterated food, make the correct assessment, and suggest improvements related with criminal policy.

First, based on the legislation and system concerning unsanitary food crime, this paper will inspect problems related with criminal policy (Chapter 2). Considering that food safety is not limited to a domestic issue but has arisen as a global concern that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ponse, it will examin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ies to figure out policy implications (Chapter 3). While implementing food safety policies, the public's anxiety over food sanitation is growing, and the reason seems to be partly attributed to lenient punishment of food adulteration. Thus,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current status of punishment and examine whether the standard of substandard food punishment is appropriate, as well as investigate problems and improvements (Chapter 4). As the promotion of food safety is a vital government project, inspecting the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is considered to serve as an important data for research to explore practical plans to eradicate substandard food crime (Chapter 5). Last, based on the research in the previous chapters, this paper will delve into countermeasures and improvements (Chapter 6).

To do this, this paper will conduct literature research to figure out food safety system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related legislation, as well as carrying out awareness investigat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to probe a change in their awareness over food hygiene offences. Based on this, it will examine the overall legislation and policies with regard to food safety before proposing policy directions relating to food safety.

3.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Research

A. Need for Legal Definition and Regulation of Adulterated Food

Under the current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the manufacture of illegal food and harmful additives is subject to additional punishment. However, the Act does not stipulate the definition of illegal food, and when it comes to the standard of harm, it simply stipulates that food must not be "harmful" and makes it the standard not to be "seriously harmful" which is stipulated under the Article 4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Act.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Act, illegal food refers to manufacture or process of foods or additives without permission from or report to the authorities. Therefore, food manufactured or

processed without permission from the authorities is not adulterated food but illegal food, which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is does not refer to adulterated food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and furthermore, administrative violations relating to permission or license can be punished as a criminal offense and the sentence is not light. Illegal food, not just harmful food, under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Control of Public Health Crimes, can be subject to additional punishment, and as for a grave crime, the additional punishment regulation can be fully utilized. Still, a problem arises that whether the sentence of more than five years in prison, equivalent to that of murder under the criminal act, is appropriate—it is inevitable to receive criticism that the criminal law is excessive according to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the principle of legality).

Against this background, substandard food is not legally defined under the current law, causing controversy over the concept and range.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ver the definition and scope, substandard food refers to all kinds of low-quality food that creates public anxiety.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sees substandard food as unsanitary. Specifically, substandard food in a narrow sense refers to rotten or decayed food or carcinogen-containing food that is harmful to the human body; in a broad sense, it includes all food that is sold by deceiving consumers, such as counterfeited food and food sold through false and exaggerative advertisement. According to the definition, false information on place of origin, price, and quality of food and exaggerative food advertisement can be subject to punishment, so even though some food is not referred to as substandard food, it is considered to be included in the range of substandard food. The definition of substandard food reads "those who are intentionally engaged in production,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ale of food that is unsanitary or inappropriate according to social conventions." But in offering the definition of substandard food, the use of "unsanitary or inappropriate according to social conventions" is highly unclear and vague to be used in an effort to eradicate an undesirable evil.

B. Food Safety Crime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Under the Food Sanitation Act, food safety crime refers to cases that could endanger the public's life and health, including ones that do not receive permission or license from the authorities—which serves as the standard for being "harmful." It is understandable to strengthen the permission and licensing system for food safety, but directly considering food manufactured or processed without permission or license as harmful is to extend the scope of harmful food. It is called into question that the standard for being hazardous i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egality. This definition can bring about the expansion of punishment, which can be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In addition, food safety crime involves those who violate the related law,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unishment is distinguished according to deliberate offense or criminal negligence. Most of food sanitation crime, by nature, seems to be conducted negligently, rather than intentionally, and under the current Food Sanitation Act, it is supposed to be found innocent if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violator's intention. This is not desirable even whe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nature of food safety crime. Therefore, it is needed to improve regulation relating to criminal negligence.

C. Current Status of the Food Safety Crime Response Team

1) Problems with Food Safety Crime Control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al data on organizations dealing with food safety crime, it is vital to arrange terms of food sanitation crime, along with the related legislation.

As for problems by food crime management organization pointed out in the data, police conducted low rate of custody investigation, showing the crime was not relatively serious. Also, they cracked down taking into account economic conditions and other circumstances of small-scale businessmen but did not take seriously the risk of food safety crime. At the prosecution level, most cases were dropped or let to a

summary indictment, highlighting the need for discussion over the seriousness of food safety crime. Food crime has high recidivism rate, so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over the issue.

Also, when investigation agencies—the prosecution and police—deal with food safety crime, warrant requirement under the principle of compulsory investigation is strictly applied. Therefore, if they approach only with prior information over food safety offences and criminal charges, crackdown and investigation without the support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equipment, and finances are less likely to lead to criminal punishment. In additi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supposed to conduct its job as a professional investigation agency based on expertise for each field, but the limit of manpower, equipment, and finances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each special judicial police is affiliated hinders it from conducting an active task. Considering tha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ffiliated in the central administrative authority or local governments take orders from the prosecution and its all finances are used for each organization's own tasks, it should also demand reconsideration that whether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operate with joint control of the police that has in short of professional manpower. Such a structural problem is one of the contributing factors to undermining active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2) Food Safety Crime Control and Response

In an effort to realize the eradication of food safety crime, one of major government projects, police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special judicial police are aggressively responding to related crime, starting with the designation of public prosecutors' office for food safety. However, taking into account issues such as investigation direction and supervision, overlapping and complicated tasks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nd the awareness of those with interests in food safety crime, as well as threat for crime control, necessary structural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rol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ffiliated to related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offices, as well as that of investigation agencies, is vital in order to give more prompt, thorough, and correct punishment for effective control of food crime.

Second, it is desirable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ffiliated to food crime-related organizations to focus on cracking down and administrative punishment. When related administrative offices approach, they can have broader access to many things spanning from crime scene crackdown, collecting evidence from the crime scene in order to prove criminal charges, to selecting evidence with probative power.

Third, it is vital to secure expertise of criminal investigation in order to professionally respond to a serious food safety accident. If the expertise includes ability to secure evidence to prove criminal charges in the process of a trial, along with overall knowledge of law on criminal procedure for the prosecutor to institute and support a public actio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will perform a role as a professional investigation agency, instead of dealing with simple tasks, such as charging and forwarding a case.

Fourth, general criminal investigations are conducted by an investigation authority after the agency's recognition or the public's accusation. The investigation agency can arbitrarily investigate and compulsorily research to a limited scale while following criminal procedures. In most cases, evidence for food safety crime is collected from the crime scene, so if warrant requirement is strictly applied, collecting evidence through administrative procedures, rather than criminal ones, is more effective.

Lastly, unlike the prosecution as legal experts and police as investigation experts, the food safety response team should be equipped with expertise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rime occurring in the food industry. If this additional condition is met, an effective organization will be operated to achieve the major administrative goal, and ultimately food safety crime can be intensively controlled.

D. Foreign Cases of Food Safety Crime Policy

1)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for food safety are put in place to aggressively respond to related crime, as food safety is taken so seriously that it is considered not just an issue that can violate the rights to health but as food terror.

Food safety crime has long been defined in a large number of legislation, which has also constantly been revised. Also, related organizations are in active cooperation to prevent recurrence of accidents, and officials responsible for food sanitation crime are also equipped with expertise.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an investigation agency's response ability to food safety offences, most investigators at the Office of Criminal Investigations of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ere previously engaged in crime-related tasks, such as criminal investigation or secret service—a guarantee of expertise in terms of food criminal investigation, which clearly sets the U.S. apart from Korea. Of course, the Anglo-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in particular the investigation system,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in principle, but since they both have a shared administrative goal of preventing and controlling food safety crime, there is a need to examine Korea's current methods of controlling food sanitation offences again.

As for punishment of food safety violators, U.S. legislation does not stipulate the offense type and punishment as much in detail as Korea's Food Sanitation Act does. But companies that violate food safety are subject to severe punishment, along with a huge amount of compensation for damage and civil money penalties.

2) Germany

Germany has theoretical and juridical basis for the country's obligation to prevent danger, whose foundation lies in the Constitution. In the wake of BSE that hit across the European continent, Germany has seen a fundamental change in food-related legislation and organizations. The food safety crisis has created the public's distrust, highlighting the need to reform regulations and structures concerning food safety. Above all, as German's most legislation is based on European Union law, collecting information related food safety is vital. Based on the collected data, Germany establishes laws and legislation to control food safety and conducts a wide range of measures.

The aim of the food and feed act (Lebensmittel und Futtermittelgesetzbuch), the fundamental law of food safety control regulations, is to protect consumers by

preventing possible risks against the health of humans, prevent counterfeited products in the distribution of food, feed, cosmetics, and other daily essentials, and offer related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thos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The Act has resolved the difficulty of applying the previous food-related European law to the domestic law and established new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finition of food stipulated in European Union law, thereby improving difficulty of application the laws concerning food safety that had been used without distinction.

Also, the authorities' management and supervisory system with regard to food safety is assessed to be more thorough and effective compared with other fields. In particular, following the BSE crisis, the country's food safety control system has divided into the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BVL, management agency) and the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BfR, assessment agency) in order to guarantee independence of risk assessment. In other words, Germany has a two-track approach to food safety of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and the Federal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Consumer (BMELV) is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and revising food safety regulations and implementing related measures. These are all related with risk management, and the two agencies conduct all the measures that can minimize or prevent risks. The BMELV consigns the BVL to manage certain risks, and the BVL has authority over risk management. Also, food and feed monitoring results from a host of local governments are collected and analyzed to be used as data for reports, which are also utilized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make new monitoring plans.

3) Japan

After a food scare occurred in Japan in the 2000s, the country established a national response model and policies, which have been put in place up to this day. With the Minister of State for Food Safety as the center, the Consumer Affairs Agency and the Food Safety Commission are operated, and experts of each organization are engaged in directing and supervising respective ministries and agencies in tandem with the Consumer Commission.

In cooperation with the Consumer Commission and the Food Safety Commission, the Consumer Affairs Agency recommends measures and requirements regarding food safety policies and systems to the food safety-related cabinet office, exchanging necessary information in real time. Also, the Consumer Commission is also engaged in making recommendation, order, and supervision for food business operators and public announcement, calling attention, recommendation for consumers. While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s responsible for food sanitation administration as a food safet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is in charge of food administration only from food production to shipment, with clear division of responsibility but at the same time in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ministries.

As for food safety control in Japan, most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establish basic guidelines and detailed promotion plans or set up ordinances, and they are in cooperation with other local government for exchange of information and opinions, building cooperation systems.

4. Research Results

A. Research Results of Food Safety Crime Related Sentencing in the Written Judgment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s Safety responded to a recent food safety accident in which E. coli was detected from a cereal product, by resorting to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failing to observe the self quality control testing system stipulated in the Food Sanitation Act. A series of food scares have been constantly occurring, creating public demand for severe punishment for such a food crime. Against this backdrop, the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strengthen punishment while coming up with a countermeasure.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growing gap between the public's expectations for sentencing and the judiciary's judgments. The prosecution rate compared with the entire charged cases stands at a mere one percent, and only an

average of 5.3 cases per year are given an actual prison sentence. Most cases end up with monetary penalties, and the average amount of fines is only 5.99 million won—demonstrating a tremendous gap between actual sentencing and the punishment regulation that stipulates up to 100 million won in monetary penalty.

Also, according to the written rulings this paper researched, most administrative violations of general and rest-area restaurants (including the violation of business license and other business requirements) were conventionally dealt with as a criminal charge, aside from receiv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a result, the prosecution in charge of actual investigation is believed to be forced to summarily indict the cases. Therefore, violations of business operator report/license or other terms of obedience should be punished with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penalty surcharge or fines, while existing punishment regulations should be subdivided. As the charge is so trivial that the prosecution ends up with making a summary indictment without feeling the need to hold a court,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s Safety responsible for revising related legislation should work on amending overall punishment articles by reflecting real conditions.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of the Supreme Court stipulate sentencing for harmful food offences in Articles 4, 7, and 93 and for false indication and exaggerative advertisement in Articles 10 and 13. As for the violation of business license or other terms of obedience, however, there is no standard even though such a case constitutes the highest rate of the entire substandard food offence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riticize the judiciary for its summary indictment of a charge whose sentencing standard cannot be found in the court rulings. Furthermore, it is impossible to asses if the sentencing is appropriate, because the sentencing can vary according to conditions and individual judgments. Considering that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work on amending punishment articles right away, it would be a good option to add sentencing standards of the administrative violations to the Supreme Court's sentencing standards.

Also, it is vital to make a strong recommendation that the judge specify in the ruling whether the sentencing standard has been applied, making sure each court's

observance can be checked out. As this paper researched, 93 cases out of 300 had sentencing standards, but only eight cases demonstrated in their rulings that the sentencing standards had been applied. Of course, the judiciary take pains to make a ruling by referring to sentencing standards and prior rulings. But for the sake of the judiciary's convenience and the defendant's rights, it would not be difficult for the judge to indicate the application in the ruling. Therefore, it is vital to make a strong recommendation for respective justice departments of courts of various levels.

Lastly,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secured basic data, but in the future, if a complete enumeration survey of substandard food offenses is conducted by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in cooperation with courts of various levels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t will be possible to collect actual data on more accurate and real sentencing standards. Based on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result, it will be also possible to make a comprehensive research on punishment articles of the current legislation—and such research must be conducted.

B. Survey Results of Public Awareness

The survey of public awareness over food safety and criminal policies for substandard food offences was conducted online using online panels in a total of 16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Jeju Island across the country. The survey was carried out for the 22th-24th of September, 2014 among 1,100 adult males and females in their twenties through sixties, with the number of respondents allocated proportional to region, gender, and age. The survey has a 95 percent confidence level and a sampling error of plus or minus 2.95 percent.

1) Awareness over Food Safety

First, the general public has the least awareness of substandard food among the Four Social Evils and considers it least important. In the survey of public awareness of the Four Social Evils, school violence has the highest awareness rate (response ratio of "aware" 95.1 percent), while substandard food has the least awareness result

(response ratio of "aware" 91.5 percent). Also, in the survey of the public's feeling safe, domestic violence has the highest result of 2.43 on a five-point scale, followed by substandard food with 2.19. In a survey of the priority among the Four Social Evils, sexual abuse has the highest rate of 32.26 percent, with unsanitary food accounting for the least percent of 18.17.

Second, the general public collect information on food safety mostly from media outlets such as TV and radio and the Internet portals and blog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ublic received data on food safety from media including TV and radio (76.0%), Internet portals and blogs (62.9%), printed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magazines (30.2%), and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s Safety (18.0%).

Third, the public's fear factors over food safety include place of origin, processed food, chemical additives, sanitary conditions of food sellers and manufacturers, shelf life and date of manufacture, harmful substances, and eating out and street food. In response to an open-ended question asking fear factors, place of origin was the most fearful factor among the public with 30.0 percent, followed by processed food (23.5%), chemical additives (18.5%), sanitary conditions of food sellers and manufacturers (15.8%), shelf life and date of manufacture (15.5%), harmful substances (14.9%), and eating out and street food (10.7%).

Fourth, the public's awareness over food safety is most influenced by media coverage such as TV news and other programs. According to the survey, media coverage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54.9%) over how the public thinks about food safety, followed by groundless anxiety (17.6%) and one's own or family's experiences (11.3%).

Fifth, it turns out that the public has anxiety over the general food chain spanning from food production, manufacturing (processing), distribution, sale, to import. In particular, they have the highest anxiety over imported food. According to a survey that was conducted to find out how the public feels concerned over food on a five-point scale and classified into "unsafe" and "safe," food production has 44.1 percent for being unsafe and 11.1 percent for being safe, with manufacturing

(processing) (49.6%, 10.2%), distribution (47.2%, 9.3%), sale (37.9%, 13.3%), and import (65.5%, 6.9%), with overall negative awareness over safety in the food chain.

Sixth, the public at large has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overall food safety. According to the survey, they rated that food safety has improved compared with the past and will greatly enhanced in the future. According to a survey result that was measured on a five-point scale and classified into "unsafe" and "safe," the general food safety risk has 34.6 percent for being unsafe and 9.9 percent for being safe, food safety risk compared with the past (29.5% for being unsafe, 28.9% for being safe), and future food safety risk (25.5% for being unsafe, 40.1% for being safe).

Lastly, over a half of the public does not know about food safety policy, and among respondents who answered to be aware of the food safety policy (34.5%), they showed negative responses over the policy's systemic approach, effectiveness, reliability, and overall satisfaction. Also, according to a survey result that was measured on a five-point scale and classified into "satisfactory" and "unsatisfactory," systematicity has 47.0 percent for being unsatisfactory and 13.2 percent for being satisfactory, effectiveness (46.8%, 12.5%), reliability (46.0%, 16.0%), and overall satisfaction (36.4%, 22.5%), demonstrating the overall unsatisfactory responses over the government's food safety policy.

2) Awareness of Food Safety Crime

First, according to the survey on public awareness of food safety crime, it is considered that food safety crime has not been reduced, the crackdown is not properly conducted, and punishment is not appropriate. According to a survey result that was measured on a five-point scale and classified into "negative" and "positive," improvement of the current status of food safety crime accounted for a negative response of 56.9 percent and a positive response of 14.3 percent, with appropriate crackdown on food safety offences (58.4%, 10.8%) and appropriate punishment (60.9%, 15.4%), revealing overall negative public awareness of criminal policy related with food sanitation offences.

Second, the public has negative awareness of criminal policy governing unsanitary

food offences, with more negative response than that of the government's food safety policy. According to a survey result that was measured on a five-point scale and classified into "satisfactory" and "unsatisfactory," systematicity accounted for 52.9 percent for being unsatisfactory and 10.4 percent for being satisfactory, effectiveness (55.5%, 9.5%), and reliability (54.8%, 13.3%), demonstrating the overall unsatisfactory responses of criminal policy of substandard food offences.

Third, the survey found that criminal punishment is considered to be more effective to eradicate substandard food offences than administrative measures. According to a preference survey, criminal punishment accounted for 77.4 percent, with administrative measures constituting 22.6 percent. Also, among the respondents who preferred administrative measures over criminal punishment, business shutdown was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measure to eliminate food safety offences (37.8%), followed by suspension of business (21.7%) and cancellation of business (19.3%). As for criminal punishment, a combination of imprisonment and fines was considered to be the most effective measure to root out related offences. The survey found that a mix of imprisonment and penalties accounted for 82.1 percent for the most effective method, followed by imprisonment (14.9%) and fines (2.9%).

Fourth, obstacles to eradicating substandard food offences, according to the survey, were considered to include crackdown on food manufacture (processing), the judiciary's sentencing, crackdown on food distribution, endeavor of those engaged in the food industry. Also, effective efforts to root out such offences, the respondents said, include the judiciary's sentencing, crackdown on food distribution, police investigation, and endeavor of those engaged in the food industry. According to the survey, crackdown on food distribution was considered to be the largest obstacle to stamping out substandard food offences (20.1%), followed by the judiciary's sentencing (19.6%), endeavor of those engaged in the food industry (13.4%), while the judiciary's sentencing was considered to be the most effective (26.0%), with crackdown on food distribution (13.8%) and endeavor of those engaged in the food industry (10.1%).

Lastly, the survey found that food poisoning or other food-related diseases were

the most common experience for those surveyed, with the lowest rate of witnessing or experiencing substandard food offences. Also, when they experienced harmful food, substandard food offences, or food poisoning or other food-related diseases, they reported to judicial authorities (including police and the prosecution) and food-related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s Safet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most common experience related with substandard food was food poisoning and other diseases (30.5%), followed by harmful food (22.6%) and unsanitary food offences (10.6%). The response that they reported to 1399, the substandard food integrated report center, accounted for extremely low rate.

C. Research Results of Expert Awareness

1) Research Subjects and Methods

An advisory conference was held in order to assess food safety and criminal policy of substandard food offences by inviting experts, including police, the prosecution, scholars, researchers, and officials at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s Safety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dvisory conference, expert investigations were conducted divided into primary and secondary ones. The primary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e-mail for two weeks (from September 1, 2014 to September 14, 2014) with 50 experts, including police, the prosecution, scholars, researchers, and officials at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s Safety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Questionnaires were composed of open-ended questions to make sure that respondents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The secondary investigation compiled opinions from the primary research and divided the results into six fields of food safety and four fields of substandard food offences. An additional survey was carried out for two weeks (from September 15, 2014 to September 30, 2014) to check out

whether the same pool of experts would agree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field. Response rates stood at 38 percent for the primary investigation and 44 percent for the secondary one. By group,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showed the highest rate, compared with the prosecution accounting for the least response rate.

2) Research Subjects

The investigation results were roughly divided into opinions of food safety and opinions of substandard food offences. In the primary research, experts' opinions on food safety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s: 1) safety of domestically-produced food; 2) seriousness of substandard food; 3) public anxiety over food safety; 4) blind spots of food safety and threatening factors; 5) assessment of food safety policy; and 6) improvement related with food safety policy. As for their opinions on substandard food offences, they were classified with the followings: 1) seriousness of substandard food offences; 2) crackdown on unsanitary food offences and properness of sentencing; 3) problems and struggles of criminal policy related with crackdown, investigation, trial, and sentencing; and 4) improvement of criminal policy related with crackdown, investigation, trial, and sentencing.

3) Results of the Primary Investigation

a) Awareness of Food Safety

First, safety of domestically-produced food was largely divided into "safe" and "unsafe" among the experts surveyed. Second, on the seriousness of substandard food, the expert respondents were opposed with answers "serious" or "not serious." Also, the respondents attributed the serious problem of substandard food to inappropriate management of imported food. Third, there were two opposing groups who responded that public anxiety over food safety was "high" or "low." The contributing factor to high anxiety over food safety was considered to be media coverage among the respondents. Fifth, the experts surveyed had mixed responses on

the assessment of food safety policy by saying "well operated" or "badly operated." Lastly, those who were surveyed expressed a range of opinions on the improvement related with food safety policy, such as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tegration,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strict laws and an effective safety control system at the government level.

b) Awareness of Harmful Food Offences

First, those surveyed were opposed on the seriousness of substandard food offences with answers of "serious" or "not serious." Second, on crackdown on unsanitary food offences and properness of sentencing, they showed mixed responses of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Also, the respondents gave a range of opinions on problems and struggles of criminal policy related with crackdown, investigation, trial, and sentencing, such as "improving," "badly operated," "crackdown and investigation are badly conducted," "trial and sentencing are badly carried out," and "badly operated due to media coverage." Lastly, for improvement of criminal policy related with crackdown, investigation, trial, and sentencing, their responses were largely divided into "expertise," "effectiveness," and "legal reform."

4) Secondary Investigation

a) Assessment of Food Safety

First, most experts rated that substandard food is serious. On the seriousness of substandard food, those who said "unsanitary food problem is serious" (8 agreed) outweighed those who said "its seriousness is low" (2 agreed). According to their opinions, contributing factors to aggravating seriousness of substandard food include the distribution of made-in-China food products with false labeling of domestic production, unsanitary production facilities, use of inedible additives, lack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street vendors, intentional manufacture of substandard food, reliance on individual experience over scientific facts, perception gaps between consumers and managers,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s food fear factors and real threatening ones, unauthorized food products, and increasing dangers

of food products imported from China.

Second, according to the survey, the food safety level in Korea is high. On the safety of food products those who said "the level of food safety is high" (15 agreed) outweighed those who said "the level of food safety is low" (6 agreed). Also, they rated the level of food safety has greatly improved compared with that of the past. According to the survey, threatening factors against the level of food safety include the production and sale of food products by unlicensed production facilities, small-scale food markets, unscrupulous businessmen, the production of advanced-material food products, new tasks following the detection of new kinds of harmful substances, and the increase in imported food products.

Third, the public is considered to have high level of anxiety over food safety, according to the experts surveyed. Most experts agreed that the level of food anxiety is high: "public anxiety over food safety is high," (15 agreed) "public reliability over food, due to food scares, is low," (16 agreed) and "public anxiety over food safety is low" (1 agreed). According to the expert research, contributing factors to increase public uneasiness over food safety include growing consumer desire for safe food thanks to improved economic conditions and standard of living, consumers' subjective fear regardless of operators' actual business status and government officials' announcement, media coverage expanding uneasiness of food among the public, growing distrust of the government, safety issues of imported produce (processed products), and food safety accidents.

Fourth, according to the survey, blind spots of food safety and threatening factors included the followings, respectively: unlicensed, illegal food manufacturers, small-scale food businesses; subcontractors engaged in the supply of substandard food being sold in front of schools (most of them are small-scale, domestic businesses or enterprises packaging and supplying products imported from China); food products being sold in front of schools; GM food, corrupt food manufacturers and distributers; diversification of government departments relating to food safety; senior specialized hospitals, welfare facilities; food supply chains after harvest from collection place of loads to the processing line; transportation connecting the food

supply chains, storage of materials; and street food, expressway rest areas.

Fifth, food safety policies were rated to have problems. On food safety policies, negative responses outweighed positive ones that answered "the overall food safety policies are well arranged (12 agreed)." Obstacles to food safety policies, according to most experts' opinions, include the followings: increased and diversified media to gather related information (including the Internet); the press directly influencing consumer perception; a surge in dining out and group meals; the food industry's being small in scale; the difficulty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due to the coexistence of large and small companies in the food industry.

Lastly, the experts suggested, according to the survey, a wide range of options in order to improve food safety policies: securing expertise of officials engaged in crackdown and investigation; cooperation 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specified and appropriate methods to distinguish violators to eradicate unsanitary food offences; correct diagnosis and assessment of factors that contribute to food safety and reliability; fundamental education of food safety and home education on sanitary management of food; communication of food safety including the current level of food safety; strict laws and the government's effective safety control systems; institutional supplement for legal butchery and distribution of food including dog meat; strengthening regulations governing substances harmful to the human body; and the easing of ineffective, unrealistic regulations.

b) Assessment of Harmful Food Offences

First, most experts surveyed considered food safety offences serious. On the seriousness of food sanitation offences, those who answered "serious" (11 agreed) outnumbered those who responded "not serious" (5 agreed). They expressed a host of opinions: "Substandard food offences are a serious issue in that anyone could be the victim, creating social turmoil," "Of substandard food offences, false information of place of origin, in particular, is being done without guilty, which makes the problem more serious," "Harmful food is not just deception of quality, but an unlawful act that seeks benefit in an illegal way, resulting in harming public health,"

and "Intentional food offences show no sign of abating."

Second, according to the survey, most expert respondents assessed that crackdown and investigation related with substandard food offences are not appropriate. When asked whether the crackdown and investigation is proper, the result of positive responses showed that "Crackdown is well conducted on simple food sanitation offences" (6 agreed), "Crackdown and investigation on harmful food offences are appropriate" (5 agreed), "Management and control of place of origin and food sanitation are well implemented" (4 agreed), "Crackdown, punishment, and sentencing is well implemented" (3 agreed). In contrast, more experts demonstrated negative responses on the questionnaire item: "Most cases just end up with fines" (16 agreed); "Statutory punishment is not lenient, but the problem is that actual sentencing is lenient," (16 agreed); "Statutory punishment is heavy, but actual sentencing is so lenient that the number of violators are not going down" (16 agreed); "Substandard food offences are a grave issue that could leave serious aftereffects to the victim, bu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the level of punishment is too light" (12 agreed); "the judiciary tends to rule down lenient punishment" (11 agreed); and "Crackdown and punishment of substandard food offences are not appropriate" (11 agreed).

Third, the survey found that the experts prioritize preventive effects of crackdown and punishment of substandard food offences. On the questionnaire item of the properness of crackdown and punishment of substandard food major offences, the experts showed high level of positive responses to the followings: "Not only crackdown and investigation but also management and control are important"; "Aggressive and strict punishment is not the answer to substandard food offences, and regular management and control is more vital"; and "Prevention should be prioritized over countermeasure."

Fourth, the experts surveyed considered that criminology related with food sanitation offences (including crackdown, investigation, trial, and sentencing) is not appropriate. They attributed the reasons to the inclusion of substandard food in the Four Social Evils, the balloon effect of police tasks, investigation by general,

non-professional government officials, and difficulty of securing the probative force of evidence.

Lastly, those surveyed as experts suggested a wide range of improvement plans: "Heavy punishment and crackdown are needed to deal with intentional food offences"; "By classifying into exaggerative advertisement, false labeling of place of origin, and use of inedible additives, there is a need to intensify crackdown and strengthen punishment"; "In order to secure food safety, active cooperation is required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not only existing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s Safety, police, and the prosecution but also new ones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ggressive, active, professional investigation capability is required when it comes to food safety offences"; "There is a need to nurture expertise of the special police in charge of substandard food offences"; "Constant, thorough post-management is needed"; "Strict punishment should be prioritized in order to reduce food safety offences"; "As crackdown on place of origin is mostly conducted on the spot (restaurants and butcher shops),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official is life-threatening with cookware such as a knife, highlighting the need for protective gear against life threatening and severe punishment such as obstruction of justice"; "Intentional, intellectual violators should be severely punished, arousing attention to those within the same business"; "It is vital to make sure that people cannot even think about making money with substandard food by constantly cracking down and imposing heavy legal responsibility"; "As food safety offences are negligently committed, there is a need to constantly offer education and training to small businessmen and the self-employed"; "The guideline for sentencing is needed to confirm the judiciary's consistent rulings";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criminal policies regarding issues including food safety control and sentencing"; and "Experts should be fostered not only for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s Safety but also police, the prosecution, and local governments to make sure that judicial procedures, from the stage of crackdown to investigation and trial, can be conducted with expertise."

5. Policy Proposal

A. Establishing a Hazard Evaluation System as the Foundation for the Efficiency of Food Safety Control

Food safety being one of the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he new government pronounced unsanitary food one of the Four Social Evils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This fact serves as an indication of the growing insecurity that people have towards food safety formed by continuous incidents of food safety violation. While it is important to come up with proper countermeasure at the industry level, reorganize related laws, and investigate into the actual situation and search for ways for improvement, it is also crucial in the macroscopic context that the government establish a specific direction for its policy implement.

For this purpose, the food safety policy needs to be basically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of food hazard evaluation, hazard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so that each category could be assessed in terms of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 Communication, particularly, is regarded highly important for it is an effective way to address people's insecurity toward food safety.

B. Organizing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Food Safety

Currently, the legislation of food-related laws straddles multiple legal areas, which has caused redundant regulations on certain items by different laws and governing bodies, and this has long been regarded a problem. Such redundant regulation ironically leaves other items that go unregulated and undermines the practicality of regulations, and as the result, it amplifies the public distrust of judicial systems related to food safety. The institutions in charge of assessing food safety often come under multiple affiliated organizations or government-funded organizations, where they perform both as a regulatory and evaluation institution. Such integration of regulatory and evaluation bodies has an advantage in that they can respond to food safety crisis more promptly than when they stand as separated entities. That is, when the health of

the whole nation is threatened or is likely to be threatened by violation of food safety, the integrated body can deal with the issue more closely by temporarily banning the sales of the food in question or tracking down and ordering examination of the food. The body, however, needs to be divided into food safety and food hazard evaluation, so they can separately conduct food crisis evaluation and food crisis management.

Finally, in reorganizing the food safety security system, the important elements are hazard management, hazard evaluation, and most of all, communication. In other words, people and the authorities in charge of food safety need to be constantly involved in communication regarding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 of policies, their achievements, and decisions on hazard food issues.

C. Clarifying the Target of Regulation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egulation

First, in regulating hazard and unsanitary food, the important part to consider is the type of toxicity and the degree of hazard, rather than the toxicity itself. According to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4 of the U.S. and EU Food and Drug Act, the regulation applies to toxic and hazard substances that can be detrimental. In other words, the focus of the regulation is not on whether it contains toxic or hazard substance, but it is on whether it contains health hazard substance that needs to be controlled. In establishing the objective and direction for policies in the future, it would be desirable to set a term that would clearly suggest specific strategies and directions for policy implementation, rather than merely used for citing. If we were to try unifying the terminology that could be used for strict and precise execu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perhaps it is worth considering to choose the term "hazard food" defined in the Food Sanitation Law, which is considered the basic law related to food sanitation.

Second, it is important to discuss and consider whether the punishment regulations implemented by the current Food Sanitation Act are too excessive even on minor violations. The authorities must be able to judge on the basis of criminal policies whether the food safety violation was a minor offence and committed unintentionally or a serious violation committed intentionally with a vicious will—particularly illegal

acts of food safety violation committed by large businesses—and respond strictly to the latter cases. Excessive punishment policies are not the most appropriate solution for eradicating unsanitary food because there are some minor violations including marking mistakes or violation of microorganism standards caused by negligence. In fact, as the governing bodies have been conducting reckless crackdown on manufacturers, under the pretext of substandard food eradication, they have been facing with criticism for disturbing the growth of small businesses and undermining the consumer's right of choic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m to reestablish the food regulation terminology, refrain from excessive intervention, and reorganize punishment policies to ultimately promote proper regulations and advancement of food industry.

D. Responsibility of the Regulators

Firs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and sales of hazardous food, food safety violations are more likely to be uncovered by professional regulators, for example, by public official on duty, rather than by general public, and the crackdown of food safety offenders is conducted by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Howeve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system's lack of investigation expertise has been raising doubts whether the whole process including recognition of actual violation, indictment, investigation, and transfer to the prosecution is properly carried out. This has prompted a discussion on making it an obligation for the crackdown official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to report any violation. But of course,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due to the lack of investigation expertise, they are likely to rely on administrative means rather than investigation; that in the case of local public officials, they are likely to impose penalty that would be transferred to the local government or non-tax revenue rather than to the state coffers; and that they are likely to handle it by their own administrative means rather than report it to an investigating body.

Second, it is a well-known fact that in the food industry, there is a structuralized

corruption in the process of crackdown and inspection. With this in mi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announced its keynote in 2004 that it would also strictly regulate corrupt relationships, connivance, and inspection negligence. In the future amendment, it is desirable that this regulation policy on officials be expanded and applied to organizations and bodies in charge of hazard evaluation.

Third,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reckless crackdown will disturb the growth of small businesses, scale down the food product market and development of products, and undermine the consumer's right of choic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epare measures at the institutional level, such as minimizing the damage caused by reckless crackdown and establishing an inspection system that encompasses all stages from production to distribution and sales.

E. Optimum Level of Punishment and Sentencing Guidelines

1) Review of Sentencing Guidelines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for food safety violation, which has a high repeat offence rates, only state those for false indication and exaggerative advertisement, and do not include issues related to business registration and compliance details which account for substantial part of food safety violation. It is a matter to discuss and review whether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 Supreme Court should include regulations related to business registration and compliance details.

2) Preventing Second Convictions by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According to the Article 4 of the Food Sanitation Act, production and sales of hazard food are subject to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as well as criminal punishment. Also, according to the Article 94, certain crimes may be punished by confiscation and penalty, and this is also backed by the Act on Regulation of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Addenda No. 23). In other words, food safety violations are subject to confiscation of equipment and raw materials used

in production and sales, based on the Act on Regulation of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This will allow the authorities to completely eliminate the cause of crime. In the future, the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need to be used to eradicate the source of criminal proceeds and prevent the offenders from recommitting crime.

3) Reconsideration on Redemption of Unjust Enrichment and Minimum Sentencing

In terms of redemption of unjust enrichment and minimum sentencing, the settlement for food safety offenders are mostly decided by summary orders, and it must be carefully reviewed whether this is a matter of punishment 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olation. The reason that settlements are mostly decided by summary orders could be due to the fact that most violation cases are committed by small businesses unintentionally. Therefore, rather than reinforcing the overall punishment level for all food safety offenders, it is more important to establish an investigation method that can decide the characteristics, scale, and intention of the illegal act. It is important that the law enforcement and applying organizations consider these factors as they differentiate the degree of violation and decide just punishment.

F. Other Plans for Eradicating Food Safety Violations

First, among reports of illegal unsanitary food under the report reward system, there have been quite a number of false reports. In order to prevent false reports,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sanctions against false reporters based on criminal punishment law, rather than decreasing the amount of reward. This would help prevent the waste of administrative resources while still maintaining the report reward system.

Second, according to the Article 18 of the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to trace the history of production and sales of food. But in order to protect the consumers from unsanitary food in distribution,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mandatory tracing system, and improve

recall system while coming up with institutional measures to complement current low rate of recovery.

Third,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food safety policies, relevant bodies must closely collaborate and share information related to safety. And the government must engage in close consultation with relevant bodies when deciding the criteria and standards related to food safety and making public certain investigations on food safety violations. Moreover,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s food safety policies, it must provide the businesses, consumers, and involved parties with the information on the policy.

부 록

부록 1. 일반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량식품 인지여부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1100	91.5	8.5
성별	남자	559	91.6	8.4
	여자	541	91.3	8.7
연령	20대	200	89.0	11.0
	30대	241	88.4	11.6
	40대	275	88.4	11.6
	50대	245	96.3	3.7
	60대	139	97.8	2.2
거주지역	서울	229	91.3	8.7
	부산	79	93.7	6.3
	대구	54	88.9	11.1
	인천	64	93.8	6.3
	광주	30	100.0	0.0
	대전	32	93.8	6.3
	경기	265	90.6	9.4
	강원	32	93.8	6.3
	충청도	75	89.3	10.7
	전라도	76	86.8	13.2
	경상도	126	92.1	7.9
	기타	38	94.7	5.3
결혼여부	미혼	342	89.2	10.8
	기혼	758	92.5	7.5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88.5	11.5
	2명	175	93.1	6.9
	3명	295	92.5	7.5
	4명	435	89.7	10.3
	5명이상	117	94.9	5.1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92.1	7.9
	1명	166	87.3	12.7
	2명이상	121	92.6	7.4
직업	화이트 칼라	486	91.2	8.8
	블루 칼라	106	93.4	6.6
	자영업	132	90.2	9.8
	학생	85	85.9	14.1
	주부	208	94.2	5.8
	무직/퇴직	68	92.6	7.4
	기타	15	86.7	13.3
학력	고졸이하	263	93.2	6.8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89.6	10.4
	전문대졸	115	92.2	7.8
	대졸이상	645	90.9	9.1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89.6	10.4
	200~400만원 미만	408	91.7	8.3
	400~600만원 미만	355	91.8	8.2
	600만원 이상	193	91.7	8.3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인지여부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1100	94.7	5.3
성별	남자	559	93.9	6.1
	여자	541	95.6	4.4
연령	20대	200	92.5	7.5
	30대	241	94.6	5.4
	40대	275	94.2	5.8
	50대	245	95.5	4.5
	60대	139	97.8	2.2
거주지역	서울	229	94.3	5.7
	부산	79	96.2	3.8
	대구	54	92.6	7.4
	인천	64	96.9	3.1
	광주	30	100.0	0.0
	대전	32	90.6	9.4
	경기	265	94.7	5.3
	강원	32	96.9	3.1
	충청도	75	93.3	6.7
	전라도	76	92.1	7.9
	경상도	126	96.0	4.0
	기타	38	94.7	5.3
결혼여부	미혼	342	93.6	6.4
	기혼	758	95.3	4.7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91.0	9.0
	2명	175	96.0	4.0
	3명	295	95.3	4.7
	4명	435	94.7	5.3
	5명이상	117	94.0	6.0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94.2	5.8
	1명	166	95.8	4.2
	2명이상	121	96.7	3.3
직업	화이트 칼라	486	95.3	4.7
	블루 칼라	106	93.4	6.6
	자영업	132	97.7	2.3
	학생	85	89.4	10.6
	주부	208	96.6	3.4
	무직/퇴직	68	88.2	11.8
	기타	15	93.3	6.7
학력	고졸이하	263	97.0	3.0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88.3	11.7
	전문대졸	115	97.4	2.6
	대졸이상	645	94.1	5.9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92.4	7.6
	200~400만원 미만	408	95.1	4.9
	400~600만원 미만	355	96.1	3.9
	600만원 이상	193	93.3	6.7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 인지여부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1100	93.3	6.7
성별	남자	559	91.8	8.2
	여자	541	94.8	5.2
연령	20대	200	89.0	11.0
	30대	241	93.8	6.2
	40대	275	93.8	6.2
	50대	245	93.5	6.5
	60대	139	97.1	2.9
거주지역	서울	229	94.8	5.2
	부산	79	93.7	6.3
	대구	54	88.9	11.1
	인천	64	93.8	6.3
	광주	30	100.0	0.0
	대전	32	84.4	15.6
	경기	265	93.2	6.8
	강원	32	100.0	0.0
	충청도	75	92.0	8.0
	전라도	76	89.5	10.5
	경상도	126	94.4	5.6
	기타	38	92.1	7.9
결혼여부	미혼	342	91.2	8.8
	기혼	758	94.2	5.8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88.5	11.5
	2명	175	94.3	5.7
	3명	295	93.2	6.8
	4명	435	93.6	6.4
	5명이상	117	94.0	6.0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92.7	7.3
	1명	166	94.6	5.4
	2명이상	121	95.0	5.0
직업	화이트 칼라	486	93.4	6.6
	블루 칼라	106	93.4	6.6
	자영업	132	96.2	3.8
	학생	85	87.1	12.9
	주부	208	96.6	3.4
	무직/퇴직	68	85.3	14.7
	기타	15	86.7	13.3
학력	고졸이하	263	95.1	4.9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87.0	13.0
	전문대졸	115	94.8	5.2
	대졸이상	645	93.0	7.0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91.0	9.0
	200~400만원 미만	408	92.9	7.1
	400~600만원 미만	355	94.4	5.6
	600만원 이상	193	93.8	6.2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인지여부

		사례수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1100	95.1	4.9
성별	남자	559	95.3	4.7
	여자	541	94.8	5.2
연령	20대	200	94.0	6.0
	30대	241	94.6	5.4
	40대	275	94.9	5.1
	50대	245	95.5	4.5
	60대	139	97.1	2.9
거주지역	서울	229	96.5	3.5
	부산	79	96.2	3.8
	대구	54	94.4	5.6
	인천	64	96.9	3.1
	광주	30	100.0	0.0
	대전	32	84.4	15.6
	경기	265	94.7	5.3
	강원	32	96.9	3.1
	충청도	75	90.7	9.3
	전라도	76	93.4	6.6
	경상도	126	96.8	3.2
	기타	38	94.7	5.3
결혼여부	미혼	342	95.3	4.7
	기혼	758	95.0	5.0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92.3	7.7
	2명	175	94.9	5.1
	3명	295	95.6	4.4
	4명	435	95.2	4.8
	5명이상	117	95.7	4.3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94.8	5.2
	1명	166	95.2	4.8
	2명이상	121	96.7	3.3
직업	화이트 칼라	486	95.7	4.3
	블루 칼라	106	93.4	6.6
	자영업	132	97.7	2.3
	학생	85	95.3	4.7
	주부	208	95.7	4.3
	무직/퇴직	68	88.2	11.8
	기타	15	86.7	13.3
학력	고졸이하	263	95.8	4.2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94.8	5.2
	전문대졸	115	95.7	4.3
	대졸이상	645	94.7	5.3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93.8	6.3
	200~400만원 미만	408	95.1	4.9
	400~00만원 미만	355	95.8	4.2
	600만원 이상	193	94.8	5.2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량식품 안전체감도

		사례수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21.2	47.6	23.0	7.5	.6	68.8	23.0	8.2	2.19	29.70
성별	남자	559	21.1	47.0	23.1	8.1	.7	68.2	23.1	8.8	2.20	30.05
	여자	541	21.3	48.2	22.9	7.0	.6	69.5	22.9	7.6	2.17	29.34
연령	20대	200	18.0	40.5	29.0	10.0	2.5	58.5	29.0	12.5	2.39	34.63
	30대	241	16.2	51.0	27.4	5.4	0.0	67.2	27.4	5.4	2.22	30.50
	40대	275	18.9	50.5	24.4	6.2	0.0	69.5	24.4	6.2	2.18	29.45
	50대	245	30.2	51.4	12.7	4.9	.8	81.6	12.7	5.7	1.95	23.67
	60대	139	23.0	39.6	22.3	15.1	0.0	62.6	22.3	15.1	2.29	32.37
거주 지역	서울	229	18.3	49.3	24.9	6.1	1.3	67.7	24.9	7.4	2.23	30.68
	부산	79	19.0	45.6	31.6	3.8	0.0	64.6	31.6	3.8	2.20	30.06
	대구	54	16.7	40.7	31.5	11.1	0.0	57.4	31.5	11.1	2.37	34.26
	인천	64	25.0	45.3	26.6	3.1	0.0	70.3	26.6	3.1	2.08	26.95
	광주	30	36.7	26.7	33.3	3.3	0.0	63.3	33.3	3.3	2.03	25.83
	대전	32	31.3	40.6	12.5	12.5	3.1	71.9	12.5	15.6	2.16	28.91
	경기	265	17.7	54.0	20.0	8.3	0.0	71.7	20.0	8.3	2.19	29.72
	강원	32	28.1	50.0	15.6	6.3	0.0	78.1	15.6	6.3	2.00	25.00
	충청도	75	25.3	48.0	14.7	10.7	1.3	73.3	14.7	12.0	2.15	28.67
	전라도	76	23.7	43.4	26.3	6.6	0.0	67.1	26.3	6.6	2.16	28.95
	경상도	126	23.8	46.0	20.6	8.7	.8	69.8	20.6	9.5	2.17	29.17
	기타	38	18.4	44.7	21.1	13.2	2.6	63.2	21.1	15.8	2.37	34.21
결혼여부	미혼	342	17.5	45.0	29.2	7.0	1.2	62.6	29.2	8.2	2.29	32.31
	기혼	758	22.8	48.8	20.2	7.8	.4	71.6	20.2	8.2	2.14	28.53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25.6	50.0	17.9	6.4	0.0	75.6	17.9	6.4	2.05	26.28
	2명	175	17.7	49.1	23.4	9.7	0.0	66.9	23.4	9.7	2.25	31.29
	3명	295	20.0	49.5	22.4	7.8	.3	69.5	22.4	8.1	2.19	29.75
	4명	435	21.6	44.4	26.0	7.4	.7	66.0	26.0	8.0	2.21	30.29
	5명이상	117	24.8	51.3	16.2	5.1	2.6	76.1	16.2	7.7	2.09	27.35

		사례수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21.6	47.5	22.6	7.6	.6	69.1	22.6	8.2	2.18	29.52
	1명	166	17.5	48.8	27.7	6.0	0.0	66.3	27.7	6.0	2.22	30.57
	2명이상	121	23.1	47.1	19.0	9.1	1.7	70.2	19.0	10.7	2.19	29.75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9.1	49.6	24.7	6.2	.4	68.7	24.7	6.6	2.19	29.78
	블루 칼라	106	23.6	44.3	17.0	14.2	.9	67.9	17.0	15.1	2.25	31.13
	자영업	132	26.5	43.9	20.5	9.1	0.0	70.5	20.5	9.1	2.12	28.03
	학생	85	17.6	37.6	31.8	9.4	3.5	55.3	31.8	12.9	2.44	35.88
	주부	208	23.1	49.0	20.2	7.2	.5	72.1	20.2	7.7	2.13	28.25
	무직/퇴직	68	22.1	52.9	20.6	4.4	0.0	75.0	20.6	4.4	2.07	26.84
	기타	15	13.3	53.3	33.3	0.0	0.0	66.7	33.3	0.0	2.20	30.00
학력	고졸이하	263	25.5	46.4	19.0	8.7	.4	71.9	19.0	9.1	2.12	28.04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9.5	35.1	31.2	10.4	3.9	54.5	31.2	14.3	2.44	36.04
	전문대졸	115	21.7	56.5	12.2	9.6	0.0	78.3	12.2	9.6	2.10	27.39
	대졸이상	645	19.5	48.1	25.6	6.4	.5	67.6	25.6	6.8	2.20	30.04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27.1	53.5	16.7	2.8	0.0	80.6	16.7	2.8	1.95	23.78
	200~400 만원미만	408	22.3	45.8	23.8	7.4	.7	68.1	23.8	8.1	2.18	29.60
	400~600 만원미만	355	19.2	44.8	26.2	9.6	.3	63.9	26.2	9.9	2.27	31.76
	600만원 이상	193	18.1	52.3	20.2	7.8	1.6	70.5	20.2	9.3	2.22	30.57

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안전체감도

		사례수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30.4	50.3	13.9	4.3	1.2	80.6	13.9	5.5	1.96	23.91
성별	남자	559	25.6	51.7	16.1	5.0	1.6	77.3	16.1	6.6	2.05	26.34
	여자	541	35.3	48.8	11.6	3.5	.7	84.1	11.6	4.3	1.86	21.40
연령	20대	200	34.0	45.0	14.0	4.0	3.0	79.0	14.0	7.0	1.97	24.25
	30대	241	29.5	50.2	15.4	3.7	1.2	79.7	15.4	5.0	1.97	24.27
	40대	275	32.7	51.3	11.6	3.6	.7	84.0	11.6	4.4	1.88	22.09
	50대	245	28.2	53.5	13.5	4.9	0.0	81.6	13.5	4.9	1.95	23.78
	60대	139	25.9	50.4	16.5	5.8	1.4	76.3	16.5	7.2	2.06	26.62
거주 지역	서울	229	24.0	56.8	15.3	3.5	.4	80.8	15.3	3.9	2.00	24.89
	부산	79	30.4	50.6	15.2	3.8	0.0	81.0	15.2	3.8	1.92	23.10
	대구	54	20.4	61.1	13.0	3.7	1.9	81.5	13.0	5.6	2.06	26.39
	인천	64	32.8	43.8	18.8	4.7	0.0	76.6	18.8	4.7	1.95	23.83
	광주	30	46.7	23.3	13.3	16.7	0.0	70.0	13.3	16.7	2.00	25.00
	대전	32	46.9	43.8	3.1	3.1	3.1	90.6	3.1	6.3	1.72	17.97
	경기	265	29.8	50.9	14.0	4.2	1.1	80.8	14.0	5.3	1.96	23.96
	강원	32	37.5	46.9	9.4	6.3	0.0	84.4	9.4	6.3	1.84	21.09
	충청도	75	41.3	38.7	13.3	4.0	2.7	80.0	13.3	6.7	1.88	22.00
	전라도	76	34.2	48.7	17.1	0.0	0.0	82.9	17.1	0.0	1.83	20.72
	경상도	126	31.7	48.4	11.9	5.6	2.4	80.2	11.9	7.9	1.98	24.60
	기타	38	15.8	63.2	10.5	5.3	5.3	78.9	10.5	10.5	2.21	30.26
결혼 여부	미혼	342	32.5	47.7	13.7	4.1	2.0	80.1	13.7	6.1	1.96	23.90
	기혼	758	29.4	51.5	14.0	4.4	.8	80.9	14.0	5.1	1.96	23.91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38.5	41.0	16.7	3.8	0.0	79.5	16.7	3.8	1.86	21.47
	2명	175	25.1	55.4	13.1	5.1	1.1	80.6	13.1	6.3	2.02	25.43
	3명	295	31.9	47.5	16.3	3.1	1.4	79.3	16.3	4.4	1.95	23.64
	4명	435	28.3	52.0	13.8	5.1	.9	80.2	13.8	6.0	1.98	24.60
	5명이상	117	36.8	49.6	7.7	3.4	2.6	86.3	7.7	6.0	1.85	21.37

		사례수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12세 미만 자녀수	없음	813	30.9	50.7	13.4	4.1	1.0	81.5	13.4	5.0	1.94	23.40
	1명	166	27.7	48.8	18.7	3.6	1.2	76.5	18.7	4.8	2.02	25.45
	2명이상	121	30.6	49.6	10.7	6.6	2.5	80.2	10.7	9.1	2.01	25.21
직업	화이트 칼라	486	29.4	53.1	14.4	2.9	.2	82.5	14.4	3.1	1.91	22.84
	블루 칼라	106	42.5	37.7	10.4	7.5	1.9	80.2	10.4	9.4	1.89	22.17
	자영업	132	22.0	55.3	16.7	4.5	1.5	77.3	16.7	6.1	2.08	27.08
	학생	85	27.1	45.9	16.5	4.7	5.9	72.9	16.5	10.6	2.16	29.12
	주부	208	31.7	51.4	10.6	5.3	1.0	83.2	10.6	6.3	1.92	23.08
	무직/퇴직	68	27.9	48.5	17.6	4.4	1.5	76.5	17.6	5.9	2.03	25.74
	기타	15	60.0	20.0	13.3	6.7	0.0	80.0	13.3	6.7	1.67	16.67
학력	고졸이하	263	37.6	43.0	13.7	4.6	1.1	80.6	13.7	5.7	1.89	22.15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27.3	45.5	15.6	5.2	6.5	72.7	15.6	11.7	2.18	29.55
	전문대졸	115	34.8	49.6	9.6	5.2	.9	84.3	9.6	6.1	1.88	21.96
	대졸이상	645	27.0	54.0	14.6	3.9	.6	80.9	14.6	4.5	1.97	24.30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42.4	42.4	13.2	.7	1.4	84.7	13.2	2.1	1.76	19.10
	200~400만원 미만	408	32.6	48.5	11.8	5.4	1.7	81.1	11.8	7.1	1.95	23.77
	400~600만원 미만	355	26.5	53.0	15.8	4.2	.6	79.4	15.8	4.8	1.99	24.86
	600만원 이상	193	23.8	54.9	15.5	4.7	1.0	78.8	15.5	5.7	2.04	26.04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 안전체감도

		사례수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17.7	45.6	25.5	9.3	1.8	63.4	25.5	11.1	2.32	32.95
성별	남자	559	15.2	46.7	27.5	8.8	1.8	61.9	27.5	10.6	2.35	33.81
	여자	541	20.3	44.5	23.5	9.8	1.8	64.9	23.5	11.6	2.28	32.07
연령	20대	200	21.5	39.0	25.0	11.0	3.5	60.5	25.0	14.5	2.36	34.00
	30대	241	17.8	46.9	26.6	7.9	.8	64.7	26.6	8.7	2.27	31.74
	40대	275	16.0	48.4	25.8	7.6	2.2	64.4	25.8	9.8	2.32	32.91
	50대	245	15.1	49.4	25.3	9.0	1.2	64.5	25.3	10.2	2.32	32.96
	60대	139	20.1	41.0	24.5	12.9	1.4	61.2	24.5	14.4	2.35	33.63
거주 지역	서울	229	16.2	44.1	27.5	10.5	1.7	60.3	27.5	12.2	2.38	34.39
	부산	79	15.2	43.0	27.8	11.4	2.5	58.2	27.8	13.9	2.43	35.76
	대구	54	14.8	48.1	33.3	3.7	0.0	63.0	33.3	3.7	2.26	31.48
	인천	64	21.9	45.3	21.9	10.9	0.0	67.2	21.9	10.9	2.22	30.47
	광주	30	20.0	40.0	26.7	13.3	0.0	60.0	26.7	13.3	2.33	33.33
	대전	32	28.1	21.9	31.3	15.6	3.1	50.0	31.3	18.8	2.44	35.94
	경기	265	16.2	50.9	23.8	7.2	1.9	67.2	23.8	9.1	2.28	31.89
	강원	32	18.8	71.9	0.0	9.4	0.0	90.6	0.0	9.4	2.00	25.00
	충청도	75	16.0	45.3	28.0	6.7	4.0	61.3	28.0	10.7	2.37	34.33
	전라도	76	23.7	40.8	28.9	6.6	0.0	64.5	28.9	6.6	2.18	29.61
	경상도	126	18.3	46.0	20.6	11.1	4.0	64.3	20.6	15.1	2.37	34.13
	기타	38	18.4	31.6	36.8	13.2	0.0	50.0	36.8	13.2	2.45	36.18
결혼 여부	미혼	342	18.7	45.3	24.6	9.1	2.3	64.0	24.6	11.4	2.31	32.75
	기혼	758	17.3	45.8	26.0	9.4	1.6	63.1	26.0	10.9	2.32	33.05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20.5	50.0	24.4	5.1	0.0	70.5	24.4	5.1	2.14	28.53
	2명	175	20.0	44.6	22.3	10.9	2.3	64.6	22.3	13.1	2.31	32.71
	3명	295	16.6	48.8	25.4	6.4	2.7	65.4	25.4	9.2	2.30	32.46
	4명	435	15.9	43.9	28.5	10.6	1.1	59.8	28.5	11.7	2.37	34.31
	5명이상	117	22.2	42.7	20.5	12.0	2.6	65.0	20.5	14.5	2.30	32.48

		사례수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7.6	45.4	25.3	9.8	1.8	63.0	25.3	11.7	2.33	33.24
	1명	166	13.9	52.4	26.5	6.0	1.2	66.3	26.5	7.2	2.28	32.08
	2명이상	121	24.0	38.0	25.6	9.9	2.5	62.0	25.6	12.4	2.29	32.23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5.6	47.9	26.5	8.8	1.0	63.6	26.5	9.9	2.32	32.92
	블루 칼라	106	25.5	40.6	22.6	9.4	1.9	66.0	22.6	11.3	2.22	30.42
	자영업	132	14.4	47.7	25.8	10.6	1.5	62.1	25.8	12.1	2.37	34.28
	학생	85	21.2	41.2	23.5	8.2	5.9	62.4	23.5	14.1	2.36	34.12
	주부	208	17.8	44.7	25.5	9.6	2.4	62.5	25.5	12.0	2.34	33.53
	무직/퇴직	68	19.1	44.1	26.5	8.8	1.5	63.2	26.5	10.3	2.29	32.35
	기타	15	33.3	33.3	20.0	13.3	0.0	66.7	20.0	13.3	2.13	28.33
학력	고졸이하	263	26.2	40.7	22.8	8.7	1.5	66.9	22.8	10.3	2.19	29.66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4.3	46.8	23.4	9.1	6.5	61.0	23.4	15.6	2.47	36.69
	전문대졸	115	19.1	41.7	30.4	7.8	.9	60.9	30.4	8.7	2.30	32.39
	대졸이상	645	14.4	48.2	26.0	9.8	1.6	62.6	26.0	11.3	2.36	33.95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31.3	42.4	24.3	2.1	0.0	73.6	24.3	2.1	1.97	24.31
	200~400 만원 미만	408	18.6	46.1	22.8	10.5	2.0	64.7	22.8	12.5	2.31	32.78
	400~600 만원 미만	355	13.8	46.8	28.2	9.3	2.0	60.6	28.2	11.3	2.39	34.72
	600만원 이상	193	13.0	45.1	27.5	11.9	2.6	58.0	27.5	14.5	2.46	36.53

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안전체감도

		사례수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30.4	49.5	13.8	5.0	1.4	79.8	13.8	6.4	1.98	24.39
성별	남자	559	32.6	47.2	14.5	4.7	1.1	79.8	14.5	5.7	1.94	23.61
	여자	541	28.1	51.8	13.1	5.4	1.7	79.9	13.1	7.0	2.01	25.18
연령	20대	200	35.0	42.5	14.5	4.0	4.0	77.5	14.5	8.0	2.00	24.88
	30대	241	32.0	47.7	13.7	4.6	2.1	79.7	13.7	6.6	1.97	24.27
	40대	275	28.0	53.8	13.8	4.0	.4	81.8	13.8	4.4	1.95	23.73
	50대	245	29.0	51.4	12.7	6.5	.4	80.4	12.7	6.9	1.98	24.49
	60대	139	28.1	50.4	15.1	6.5	0.0	78.4	15.1	6.5	2.00	25.00
거주 지역	서울	229	25.8	50.2	17.0	5.7	1.3	76.0	17.0	7.0	2.07	26.64
	부산	79	22.8	48.1	25.3	2.5	1.3	70.9	25.3	3.8	2.11	27.85
	대구	54	24.1	53.7	16.7	5.6	0.0	77.8	16.7	5.6	2.04	25.93
	인천	64	39.1	42.2	12.5	6.3	0.0	81.3	12.5	6.3	1.86	21.48
	광주	30	30.0	50.0	6.7	10.0	3.3	80.0	6.7	13.3	2.07	26.67
	대전	32	43.8	34.4	12.5	6.3	3.1	78.1	12.5	9.4	1.91	22.66
	경기	265	31.7	53.2	9.4	3.8	1.9	84.9	9.4	5.7	1.91	22.74
	강원	32	31.3	53.1	9.4	6.3	0.0	84.4	9.4	6.3	1.91	22.66
	충청도	75	34.7	49.3	12.0	1.3	2.7	84.0	12.0	4.0	1.88	22.00
	전라도	76	40.8	46.1	10.5	2.6	0.0	86.8	10.5	2.6	1.75	18.75
	경상도	126	31.0	45.2	15.9	6.3	1.6	76.2	15.9	7.9	2.02	25.60
	기타	38	15.8	57.9	13.2	13.2	0.0	73.7	13.2	13.2	2.24	30.92
결혼 여부	미혼	342	33.9	46.2	12.3	4.4	3.2	80.1	12.3	7.6	1.97	24.20
	기혼	758	28.8	50.9	14.5	5.3	.5	79.7	14.5	5.8	1.98	24.47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34.6	46.2	15.4	2.6	1.3	80.8	15.4	3.8	1.90	22.44
	2명	175	29.7	48.0	15.4	5.1	1.7	77.7	15.4	6.9	2.01	25.29
	3명	295	31.9	48.8	14.2	4.1	1.0	80.7	14.2	5.1	1.94	23.39
	4명	435	28.7	51.7	13.1	5.3	1.1	80.5	13.1	6.4	1.98	24.60
	5명이상	117	30.8	47.0	12.0	7.7	2.6	77.8	12.0	10.3	2.04	26.07

		사례수	전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안전한 편이다	매우 안전하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12세 미만 자녀수	없음	813	30.9	49.6	13.2	4.9	1.5	80.4	13.2	6.4	1.97	24.14
	1명	166	25.9	51.8	16.3	5.4	.6	77.7	16.3	6.0	2.03	25.75
	2명이상	121	33.1	45.5	14.9	5.0	1.7	78.5	14.9	6.6	1.97	24.17
직업	화이트 칼라	486	29.4	50.8	15.0	3.7	1.0	80.2	15.0	4.7	1.96	24.02
	블루 칼라	106	39.6	38.7	13.2	5.7	2.8	78.3	13.2	8.5	1.93	23.35
	자영업	132	30.3	47.0	15.2	7.6	0.0	77.3	15.2	7.6	2.00	25.00
	학생	85	36.5	40.0	14.1	3.5	5.9	76.5	14.1	9.4	2.02	25.59
	주부	208	26.4	54.8	11.5	6.7	.5	81.3	11.5	7.2	2.00	25.00
	무직/퇴직	68	25.0	55.9	13.2	4.4	1.5	80.9	13.2	5.9	2.01	25.37
	기타	15	40.0	53.3	0.0	6.7	0.0	93.3	0.0	6.7	1.73	18.33
학력	고졸이하	263	35.0	44.1	15.2	4.2	1.5	79.1	15.2	5.7	1.93	23.29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36.4	37.7	15.6	3.9	6.5	74.0	15.6	10.4	2.06	26.62
	전문대졸	115	30.4	53.9	10.4	4.3	.9	84.3	10.4	5.2	1.91	22.83
	대졸이상	645	27.8	52.2	13.6	5.6	.8	80.0	13.6	6.4	1.99	24.84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44.4	44.4	9.7	1.4	0.0	88.9	9.7	1.4	1.68	17.01
	200~400 만원 미만	408	31.6	49.0	12.5	4.7	2.2	80.6	12.5	6.9	1.97	24.20
	400~600 만원 미만	355	25.6	51.3	16.6	5.9	.6	76.9	16.6	6.5	2.05	26.13
	600만원 이상	193	25.9	50.8	14.5	6.7	2.1	76.7	14.5	8.8	2.08	27.07

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불량식품 중요도

		사례수	.0	1.0	2.0	3.0	5.0	7.0	8.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평균]
[전체]		1100	2.5	.7	.2	.3	6.4	.1	.1	36.2	3.6	22.9	7.7	11.3	.5	3.0	.1	3.5	.6	.4	18.17
성별	남자	559	2.5	.9	.2	0.0	6.6	.2	.2	32.9	3.9	21.3	8.9	12.5	.4	4.5	0.0	4.3	.5	.2	19.01
	여자	541	2.6	.6	.2	.6	6.1	0.0	0.0	39.6	3.3	24.6	6.5	10.0	.6	1.5	.2	2.6	.7	.6	17.31
연령	20대	200	6.5	2.5	1.0	.5	6.0	0.0	.5	44.5	5.0	19.0	9.5	3.5	0.0	.5	0.0	1.0	0.0	0.0	13.53
	30대	241	2.9	.4	0.0	.4	8.7	.4	0.0	37.8	4.6	24.1	6.6	11.6	.4	1.2	0.0	.8	0.0	0.0	15.96
	40대	275	2.2	.4	0.0	0.0	8.0	0.0	0.0	43.3	2.9	24.7	4.4	8.4	0.0	2.9	.4	2.2	.4	0.0	16.35
	50대	245	.4	0.0	0.0	0.0	2.9	0.0	0.0	24.5	2.9	24.1	10.2	19.6	.8	5.7	0.0	7.8	.8	.4	23.49
	60대	139	.7	.7	0.0	.7	5.8	0.0	0.0	28.1	2.9	20.9	9.4	12.9	1.4	5.0	0.0	6.5	2.9	2.2	22.94
거주지역	서울	229	1.3	2.2	0.0	.9	4.8	0.0	0.0	35.4	2.6	23.1	9.6	13.1	.4	1.7	.4	3.5	.9	0.0	18.50
	부산	79	2.5	1.3	0.0	0.0	3.8	0.0	0.0	31.6	1.3	25.3	13.9	12.7	0.0	3.8	0.0	3.8	0.0	0.0	19.32
	대구	54	3.7	0.0	1.9	0.0	9.3	0.0	0.0	27.8	9.3	27.8	1.9	14.8	0.0	1.9	0.0	1.9	0.0	0.0	16.80
	인천	64	3.1	0.0	0.0	0.0	7.8	0.0	0.0	28.1	9.4	20.3	6.3	18.8	0.0	4.7	0.0	1.6	0.0	0.0	18.52
	광주	30	6.7	0.0	0.0	0.0	10.0	0.0	3.3	23.3	6.7	23.3	6.7	6.7	0.0	10.0	0.0	3.3	0.0	0.0	18.10
	대전	32	0.0	0.0	0.0	0.0	12.5	0.0	0.0	25.0	0.0	28.1	6.3	15.6	0.0	0.0	0.0	12.5	0.0	0.0	21.25
	경기	265	3.0	.4	.4	.4	6.8	0.0	0.0	43.8	1.9	21.9	5.7	9.1	.8	3.0	0.0	1.9	.8	.4	16.66
	강원	32	9.4	0.0	0.0	0.0	6.3	3.1	0.0	25.0	0.0	21.9	12.5	9.4	0.0	6.3	0.0	3.1	3.1	0.0	19.28
	충청도	75	0.0	1.3	0.0	0.0	10.7	0.0	0.0	37.3	5.3	14.7	8.0	10.7	0.0	4.0	0.0	5.3	0.0	2.7	19.35
	전라도	76	2.6	0.0	0.0	0.0	5.3	0.0	0.0	50.0	0.0	23.7	5.3	3.9	1.3	2.6	0.0	2.6	1.3	1.3	17.04
	경상도	126	2.4	0.0	0.0	0.0	5.6	0.0	0.0	34.9	8.7	20.6	7.9	9.5	.8	2.4	0.0	6.3	.8	0.0	18.93
	기타	38	2.6	0.0	0.0	0.0	0.0	0.0	0.0	26.3	0.0	39.5	10.5	18.4	0.0	2.6	0.0	0.0	0.0	0.0	19.74
결혼여부	미혼	342	5.6	1.5	.6	.3	7.0	.3	.3	43.0	3.8	19.3	9.4	6.1	0.0	.6	0.0	2.0	0.0	.3	14.80
	기혼	758	1.2	.4	0.0	.3	6.1	0.0	0.0	33.1	3.6	24.5	7.0	13.6	.7	4.1	.1	4.1	.9	.4	19.70
가족구성원수	1명	78	3.8	1.3	0.0	1.3	1.3	0.0	0.0	38.5	5.1	21.8	10.3	9.0	0.0	3.8	0.0	2.6	0.0	1.3	18.06
	2명	175	1.7	.6	.6	0.0	6.9	0.0	.6	37.1	2.9	23.4	12.0	5.7	.6	3.4	0.0	2.9	1.1	.6	18.03
	3명	295	2.7	1.0	0.0	0.0	6.1	0.0	0.0	36.6	3.4	21.7	6.4	14.2	.7	3.4	0.0	2.7	1.0	0.0	18.26
	4명	435	2.3	.7	.2	.5	7.8	.2	0.0	34.3	3.0	23.4	7.4	12.2	.2	3.0	.2	4.1	.5	0.0	18.21
	5명이상	117	3.4	0.0	0.0	0.0	4.3	0.0	0.0	39.3	6.8	23.9	4.3	10.3	.9	.9	0.0	4.3	0.0	1.7	18.08
12세미만자녀수	없음	813	2.6	.9	.2	.2	6.2	.1	.1	34.2	3.4	22.6	8.4	12.4	.4	3.0	.1	4.1	.6	.5	18.74
	1명	166	2.4	.6	0.0	.6	7.2	0.0	0.0	44.6	4.2	21.1	6.0	7.8	.6	2.4	0.0	1.8	.6	0.0	15.99
	2명이상	121	2.5	0.0	0.0	0.0	6.6	0.0	0.0	38.0	4.1	27.3	5.8	8.3	.8	4.1	0.0	1.7	.8	0.0	17.40
직업	화이트 칼라	486	2.3	1.0	.2	0.0	6.6	0.0	0.0	38.5	4.5	22.4	6.4	10.7	.2	3.1	0.0	3.7	.2	.2	17.59
	블루 칼라	106	1.9	0.0	0.0	0.0	6.6	0.0	.9	29.2	4.7	21.7	9.4	16.0	0.0	1.9	0.0	5.7	.9	.9	20.36
	자영업	132	1.5	.8	0.0	0.0	5.3	0.0	0.0	30.3	3.8	22.0	10.6	12.9	1.5	3.0	0.0	6.1	1.5	.8	20.99
	학생	85	7.1	2.4	1.2	2.4	8.2	0.0	0.0	42.4	5.9	15.3	9.4	4.7	0.0	1.2	0.0	0.0	0.0	0.0	12.94
	주부	208	1.4	0.0	0.0	.5	4.8	0.0	0.0	34.6	1.4	28.4	7.7	12.5	1.0	3.4	.5	2.4	1.0	.5	19.29
	무직/퇴직	68	5.9	0.0	0.0	0.0	7.4	1.5	0.0	32.4	0.0	23.5	8.8	11.8	0.0	5.9	0.0	1.5	1.5	0.0	18.12
	기타	15	0.0	0.0	0.0	0.0	13.3	0.0	0.0	66.7	0.0	20.0	0.0	0.0	0.0	0.0	0.0	0.0	0.0	0.0	11.33
학력	고졸이하	263	2.3	0.0	0.0	.4	5.7	0.0	0.0	33.1	3.8	26.6	5.7	14.8	.4	2.7	0.0	3.0	.4	1.1	19.12
	전문대/대학교(원)재학	77	6.5	2.6	1.3	1.3	3.9	0.0	0.0	45.5	6.5	18.2	9.1	2.6	1.3	1.3	0.0	0.0	0.0	0.0	13.47
	전문대졸	115	1.7	1.7	.9	0.0	6.1	0.0	.9	37.4	4.3	20.0	11.3	6.1	0.0	.9	0.0	7.8	0.0	.9	18.32
	대졸이상	645	2.3	.6	0.0	.2	7.0	.2	0.0	36.1	3.1	22.5	7.8	11.8	.5	3.7	.2	3.3	.9	0.0	18.32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4.2	.7	0.0	0.0	9.7	0.0	0.0	37.5	1.4	22.2	7.6	9.7	.7	2.8	0.0	2.8	.7	0.0	16.88
	200~400만원 미만	408	2.2	.2	.5	.5	4.7	.2	.2	39.7	4.2	22.1	6.4	10.8	.2	2.2	0.0	4.2	1.0	.7	18.29
	400~600만원 미만	355	2.5	1.4	0.0	0.0	6.8	0.0	0.0	33.5	3.7	25.1	9.0	9.6	.6	5.1	.3	2.0	.3	.3	18.10
	600만원 이상	193	2.1	.5	0.0	.5	6.7	0.0	0.0	32.6	4.1	21.2	8.3	16.6	.5	1.0	0.0	5.2	.5	0.0	19.04

1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중요도

		사례수	.0	5.0	10.0	15.0	20.0	25.0	30.0	31.0	32.0	33.0	34.0	35.0	40.0	45.0	47.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100.0	[평균]
[전체]		1100	.1	.3	4.6	1.1	12.7	10.4	36.5	.1	.2	.3	.1	2.3	16.9	.3	.1	10.8	.2	1.4	.2	1.1	.2	.1	.1	.1	32.26
성별	남자	559	.2	.4	4.3	1.4	12.2	12.0	36.9	.2	.2	.5	.2	2.7	16.8	.2	.2	8.9	0.0	1.6	.2	.5	.2	0.0	.2	.2	31.72
	여자	541	0.0	.2	5.0	.7	13.3	8.7	36.2	0.0	.2	0.0	0.0	1.8	17.0	.4	0.0	12.8	.4	1.1	.2	1.7	.2	.2	0.0	0.0	32.81
연령	20대	200	.5	0.0	2.5	0.0	5.0	14.5	32.5	0.0	.5	.5	.5	4.5	16.5	.5	.5	17.0	0.0	3.0	.5	0.0	.5	0.0	.5	0.0	35.18
	30대	241	0.0	0.0	2.1	.8	10.8	6.6	35.7	.4	.4	.4	0.0	1.7	24.5	.4	0.0	11.2	.4	1.7	0.0	2.9	0.0	0.0	0.0	0.0	34.67
	40대	275	0.0	.7	3.6	.4	12.4	6.2	44.4	0.0	0.0	.4	0.0	1.8	17.1	0.0	0.0	10.9	.4	.7	0.0	.7	0.0	0.0	0.0	.4	32.34
	50대	245	0.0	0.0	6.9	2.0	20.4	14.3	33.1	0.0	0.0	0.0	0.0	1.2	13.1	0.0	0.0	6.5	0.0	.8	0.0	1.2	.4	0.0	0.0	0.0	29.14
	60대	139	0.0	.7	10.1	2.9	14.4	12.2	34.5	0.0	0.0	0.0	0.0	2.9	10.8	.7	0.0	8.6	0.0	.7	.7	0.0	0.0	.7	0.0	0.0	29.21
거주지역	서울	229	0.0	0.0	4.4	.4	14.0	9.6	37.1	0.0	0.0	.9	.4	.9	17.9	.4	0.0	12.2	.4	.4	0.0	.9	0.0	0.0	0.0	0.0	32.16
	부산	79	0.0	0.0	1.3	0.0	13.9	21.5	34.2	0.0	0.0	0.0	0.0	2.5	13.9	1.3	1.3	10.1	0.0	0.0	0.0	0.0	0.0	0.0	0.0	0.0	31.23
	대구	54	0.0	0.0	3.7	1.9	13.0	9.3	38.9	0.0	0.0	0.0	0.0	5.6	20.4	0.0	0.0	3.7	0.0	1.9	0.0	1.9	0.0	0.0	0.0	0.0	31.57
	인천	64	0.0	0.0	3.1	1.6	12.5	10.9	39.1	0.0	0.0	0.0	0.0	0.0	18.8	0.0	0.0	9.4	1.6	1.6	0.0	0.0	1.6	0.0	0.0	0.0	32.66
	광주	30	0.0	0.0	0.0	0.0	33.3	6.7	33.3	0.0	3.3	0.0	0.0	0.0	6.7	0.0	0.0	10.0	0.0	3.3	3.3	0.0	0.0	0.0	0.0	0.0	31.23
	대전	32	0.0	0.0	12.5	0.0	12.5	9.4	31.3	0.0	0.0	0.0	0.0	0.0	21.9	0.0	0.0	9.4	0.0	3.1	0.0	0.0	0.0	0.0	0.0	0.0	30.78
	경기	265	.4	1.1	6.8	1.5	11.7	6.8	38.5	0.0	.4	.4	0.0	1.9	14.3	0.0	0.0	10.9	0.0	3.0	.4	1.1	0.0	.4	0.0	.4	32.19
	강원	32	0.0	0.0	6.3	3.1	3.1	21.9	25.0	3.1	0.0	0.0	0.0	0.0	15.6	0.0	0.0	21.9	0.0	0.0	0.0	0.0	0.0	0.0	0.0	0.0	32.84
	충청도	75	0.0	0.0	5.3	4.0	10.7	10.7	34.7	0.0	0.0	0.0	0.0	2.7	17.3	0.0	0.0	10.7	0.0	0.0	0.0	1.3	1.3	0.0	1.3	0.0	32.60
	전라도	76	0.0	0.0	5.3	0.0	3.9	11.8	46.1	0.0	0.0	0.0	0.0	7.9	17.1	0.0	0.0	6.6	0.0	0.0	0.0	1.3	0.0	0.0	0.0	0.0	31.91
	경상도	126	0.0	0.0	3.2	.8	14.3	9.5	31.0	0.0	0.0	0.0	0.0	4.0	20.6	.8	0.0	13.5	0.0	.8	0.0	1.6	0.0	0.0	0.0	0.0	33.29
	기타	38	0.0	0.0	0.0	0.0	18.4	10.5	36.8	0.0	0.0	0.0	0.0	0.0	18.4	0.0	0.0	7.9	0.0	2.6	0.0	5.3	0.0	0.0	0.0	0.0	33.95
결혼여부	미혼	342	0.0	0.0	2.9	.3	9.1	11.4	32.2	.3	.3	.9	.3	3.2	19.9	.3	0.0	14.6	.3	2.3	.3	.6	.3	0.0	.3	.3	34.67
	기혼	758	.1	.4	5.4	1.5	14.4	9.9	38.5	0.0	.1	0.0	0.0	1.8	15.6	.3	.1	9.1	.1	.9	.1	1.3	.1	.1	0.0	0.0	31.17
가족구성원수	1명	78	1.3	0.0	6.4	1.3	14.1	12.8	28.2	0.0	0.0	0.0	0.0	0.0	20.5	0.0	0.0	11.5	0.0	2.6	0.0	1.3	0.0	0.0	0.0	0.0	31.73
	2명	175	0.0	0.0	6.3	1.7	8.0	16.0	34.3	0.0	.6	0.0	0.0	1.1	17.7	0.0	0.0	11.4	0.0	1.1	.6	1.1	0.0	0.0	0.0	0.0	32.01
	3명	295	0.0	.3	5.4	1.4	13.6	9.2	37.3	0.0	0.0	1.0	.3	2.7	16.9	.7	0.0	8.1	0.0	1.4	.3	0.0	.7	.3	0.0	.3	31.65
	4명	435	0.0	.2	3.0	.9	14.9	9.0	38.4	.2	.2	0.0	0.0	2.5	14.5	.2	.2	12.2	.2	.9	0.0	2.1	0.0	0.0	.2	0.0	32.64
	5명 이상	117	0.0	.9	5.1	0.0	8.5	8.5	36.8	0.0	0.0	0.0	0.0	3.4	22.2	0.0	0.0	11.1	.9	2.6	0.0	0.0	0.0	0.0	0.0	0.0	33.08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0.0	.1	4.7	1.2	12.9	11.3	36.2	.1	.1	.4	.1	2.3	16.2	.2	0.0	10.9	.2	1.2	.2	.7	.2	.1	.1	.1	32.12
	1명	166	0.0	.6	5.4	0.0	10.8	7.8	37.3	0.0	.6	0.0	0.0	3.6	17.5	.6	.6	12.7	0.0	1.8	0.0	.6	0.0	0.0	0.0	0.0	32.73
	2명이상	121	.8	.8	3.3	1.7	14.0	7.4	38.0	0.0	0.0	0.0	0.0	0.0	20.7	0.0	0.0	7.4	0.0	1.7	0.0	4.1	0.0	0.0	0.0	0.0	32.56
직업	화이트칼라	486	0.0	.4	3.3	.8	12.6	8.8	34.4	0.0	0.0	.4	0.0	2.7	19.8	.4	0.0	11.9	.2	1.9	.2	1.9	.4	0.0	0.0	0.0	33.59
	블루 칼라	106	0.0	0.0	9.4	.9	9.4	11.3	31.1	0.0	.9	0.0	0.0	2.8	21.7	0.0	0.0	11.3	0.0	0.0	0.0	0.0	0.0	0.0	0.0	.9	31.72
	자영업	132	0.0	.8	7.6	2.3	12.1	12.9	38.6	0.0	0.0	0.0	0.0	1.5	12.9	0.0	.8	8.3	0.0	2.3	0.0	0.0	0.0	0.0	0.0	0.0	29.94
	학생	85	1.2	0.0	1.2	0.0	9.4	12.9	38.8	0.0	1.2	1.2	1.2	3.5	16.5	0.0	0.0	10.6	0.0	1.2	0.0	0.0	0.0	0.0	1.2	0.0	32.87
	주부	208	0.0	0.0	5.3	1.4	18.8	8.2	42.3	0.0	0.0	0.0	0.0	1.0	12.0	0.0	0.0	9.1	0.0	0.0	.5	1.0	0.0	.5	0.0	0.0	30.31
	무직/퇴직	68	0.0	0.0	4.4	1.5	8.8	20.6	30.9	1.5	0.0	0.0	0.0	1.5	11.8	1.5	0.0	13.2	0.0	2.9	0.0	1.5	0.0	0.0	0.0	0.0	32.59
	기타	15	0.0	0.0	0.0	0.0	0.0	0.0	60.0	0.0	0.0	0.0	0.0	6.7	20.0	0.0	0.0	6.7	6.7	0.0	0.0	0.0	0.0	0.0	0.0	0.0	35.33
학력	고졸이하	263	.4	.4	5.7	1.5	12.2	10.6	38.0	0.0	.4	0.0	0.0	1.5	15.6	.4	0.0	9.1	0.0	1.9	.4	1.1	0.0	.4	0.0	.4	31.81
	전문대/대학교(원)재학	77	0.0	0.0	1.3	0.0	11.7	14.3	35.1	0.0	0.0	1.3	1.3	3.9	19.5	0.0	0.0	9.1	0.0	1.3	0.0	0.0	0.0	0.0	1.3	0.0	33.01
	전문대졸	115	0.0	0.0	4.3	0.0	13.9	10.4	29.6	0.0	.9	0.0	0.0	5.2	16.5	0.0	0.0	12.2	0.0	4.3	0.0	2.6	0.0	0.0	0.0	0.0	33.93
	대졸이상	645	0.0	.3	4.7	1.2	12.9	9.8	37.4	.2	0.0	.3	0.0	1.9	17.2	.3	.2	11.5	.3	.6	.2	.9	.3	0.0	0.0	0.0	32.05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7	0.0	4.9	0.0	8.3	15.3	34.7	0.0	0.0	.7	0.0	2.1	12.5	.7	0.0	13.9	0.0	2.8	0.0	.7	.7	.7	.7	.7	34.12
	200~400만원 미만	408	0.0	.2	4.9	.7	12.5	10.0	38.7	.2	.5	.2	0.0	2.5	17.2	0.0	0.0	9.1	.2	1.2	.2	1.5	0.0	0.0	0.0	0.0	31.87
	400~600만원 미만	355	0.0	.3	3.9	1.7	14.1	8.7	38.0	0.0	0.0	.3	.3	2.0	15.5	.3	.3	12.7	0.0	1.1	0.0	.6	.3	0.0	0.0	0.0	32.03
	600만원 이상	193	0.0	.5	5.2	1.6	14.0	10.4	30.6	0.0	0.0	0.0	0.0	2.6	22.3	.5	0.0	8.8	.5	1.0	.5	1.6	0.0	0.0	0.0	0.0	32.12

1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중요도

		사례수	.0	2.0	5.0	7.0	8.0	10.0	15.0	18.0	20.0	25.0	27.0	28.0	29.0	30.0	31.0	33.0	35.0	38.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평균]
[전체]		1100	.6	.1	.6	.1	.1	7.0	3.5	.1	26.2	11.8	.2	.1	.1	33.1	.1	.4	2.5	.1	7.8	.5	3.7	.8	.4	.1	.1	26.66
성별	남자	559	.5	.2	.5	0.0	0.0	7.0	4.1	0.0	25.0	11.4	0.0	.2	0.0	34.0	.2	.7	1.8	0.0	8.8	.2	3.9	1.1	0.0	.2	.2	26.90
	여자	541	.7	0.0	.7	.2	.2	7.0	3.0	.2	27.4	12.2	.4	0.0	.2	32.2	0.0	0.0	3.1	.2	6.8	.7	3.5	.6	.7	0.0	0.0	26.41
연령	20대	200	1.5	.5	1.5	0.0	0.0	4.5	4.5	.5	23.0	15.0	1.0	.5	.5	35.0	0.0	1.0	2.0	0.0	6.5	0.0	1.5	.5	0.0	0.0	.5	25.89
	30대	241	.4	0.0	.8	0.0	0.0	6.6	3.3	0.0	29.5	11.6	0.0	0.0	0.0	34.4	.4	.4	1.7	0.0	6.6	.4	3.7	0.0	0.0	0.0	0.0	25.89
	40대	275	.7	0.0	.4	0.0	0.0	5.1	3.3	0.0	27.3	8.7	0.0	0.0	0.0	31.6	0.0	.4	1.5	0.0	12.7	.4	5.5	1.8	.4	.4	0.0	28.39
	50대	245	0.0	0.0	.4	0.0	.4	7.8	4.1	0.0	27.8	12.7	0.0	0.0	0.0	33.9	0.0	0.0	3.3	0.0	5.3	.8	3.3	0.0	.4	0.0	0.0	25.87
	60대	139	.7	0.0	0.0	.7	0.0	13.7	2.2	0.0	20.1	12.2	0.0	0.0	0.0	29.5	0.0	0.0	5.0	.7	6.5	.7	4.3	2.2	1.4	0.0	0.0	27.09
거주지역	서울	229	.4	0.0	0.0	.4	0.0	7.4	2.6	0.0	23.1	14.0	.4	0.0	.4	36.7	0.0	1.3	2.2	0.0	7.0	0.0	2.6	1.3	0.0	0.0	0.0	26.62
	부산	79	1.3	1.3	1.3	0.0	0.0	3.8	3.8	0.0	29.1	16.5	0.0	0.0	0.0	25.3	0.0	0.0	3.8	0.0	8.9	0.0	5.1	0.0	0.0	0.0	0.0	25.97
	대구	54	0.0	0.0	1.9	0.0	0.0	3.7	1.9	0.0	27.8	3.7	0.0	1.9	0.0	40.7	0.0	0.0	5.6	0.0	7.4	0.0	5.6	0.0	0.0	0.0	0.0	27.65
	인천	64	0.0	0.0	0.0	0.0	0.0	9.4	3.1	0.0	32.8	12.5	0.0	0.0	0.0	34.4	0.0	0.0	0.0	0.0	4.7	0.0	1.6	1.6	0.0	0.0	0.0	25.00
	광주	30	0.0	0.0	3.3	0.0	0.0	0.0	3.3	0.0	33.3	6.7	0.0	0.0	0.0	30.0	0.0	0.0	0.0	0.0	6.7	3.3	10.0	0.0	3.3	0.0	0.0	29.50
	대전	32	0.0	0.0	0.0	0.0	0.0	9.4	6.3	0.0	15.6	12.5	0.0	0.0	0.0	37.5	0.0	0.0	0.0	0.0	15.6	0.0	3.1	0.0	0.0	0.0	0.0	27.19
	경기	265	1.1	0.0	0.0	0.0	0.0	6.0	4.2	.4	26.4	7.9	0.0	0.0	0.0	34.0	0.0	.4	2.6	.4	9.1	.4	5.3	.8	.8	0.0	.4	27.73
	강원	32	0.0	0.0	0.0	0.0	0.0	6.3	9.4	0.0	34.4	18.8	0.0	0.0	0.0	18.8	3.1	0.0	3.1	0.0	6.3	0.0	0.0	0.0	0.0	0.0	0.0	23.78
	충청도	75	1.3	0.0	1.3	0.0	1.3	9.3	5.3	0.0	24.0	13.3	0.0	0.0	0.0	24.0	0.0	0.0	2.7	0.0	6.7	1.3	5.3	2.7	0.0	1.3	0.0	26.77
	전라도	76	0.0	0.0	1.3	0.0	0.0	7.9	2.6	0.0	19.7	14.5	0.0	0.0	0.0	35.5	0.0	0.0	2.6	0.0	10.5	1.3	2.6	0.0	1.3	0.0	0.0	27.43
	경상도	126	.8	0.0	1.6	0.0	0.0	10.3	2.4	0.0	26.2	13.5	.8	0.0	0.0	33.3	0.0	0.0	2.4	0.0	5.6	.8	2.4	0.0	0.0	0.0	0.0	24.90
	기타	38	0.0	0.0	0.0	0.0	0.0	5.3	2.6	0.0	36.8	10.5	0.0	0.0	0.0	31.6	0.0	0.0	2.6	0.0	7.9	0.0	0.0	2.6	0.0	0.0	0.0	26.05
결혼여부	미혼	342	1.2	0.0	1.2	0.0	0.0	6.7	3.8	.3	23.1	14.9	.3	.3	0.0	34.2	.3	1.2	1.8	0.0	8.5	.3	1.8	.3	0.0	0.0	0.0	25.79
	기혼	758	.4	.1	.4	.1	.1	7.1	3.4	0.0	27.6	10.4	.1	0.0	.1	32.6	0.0	0.0	2.8	.1	7.5	.5	4.6	1.1	.5	.1	.1	27.05
가족구성원수	1명	78	1.3	0.0	1.3	0.0	0.0	9.0	2.6	0.0	20.5	15.4	1.3	0.0	0.0	42.3	0.0	0.0	2.6	0.0	2.6	0.0	0.0	0.0	0.0	0.0	1.3	25.54
	2명	175	0.0	0.0	1.1	0.0	0.0	7.4	3.4	.6	24.0	16.0	.6	0.0	.6	34.3	0.0	0.0	2.9	0.0	4.6	0.0	2.9	.6	1.1	0.0	0.0	26.22
	3명	295	.3	0.0	0.0	0.0	.3	8.1	1.7	0.0	27.5	10.2	0.0	0.0	0.0	29.2	0.0	1.4	2.4	0.0	11.2	.7	5.1	1.4	.7	0.0	0.0	27.76
	4명	435	0.0	.2	.9	.2	0.0	5.3	4.4	0.0	27.6	10.6	0.0	.2	0.0	33.1	.2	0.0	2.8	.2	8.5	.7	4.4	.5	0.0	.2	0.0	26.89
	5명 이상	117	4.3	0.0	0.0	0.0	0.0	8.5	6.0	0.0	24.8	12.0	0.0	0.0	0.0	35.0	0.0	0.0	.9	0.0	5.1	0.0	1.7	1.7	0.0	0.0	0.0	24.44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5	0.0	.7	.1	.1	7.6	3.4	.1	25.6	12.3	.2	.1	.1	33.9	.1	.5	3.0	.1	6.5	.5	3.2	.7	.4	0.0	0.0	26.28
	1명	166	.6	.6	0.0	0.0	0.0	5.4	4.2	0.0	28.3	10.8	0.0	0.0	0.0	27.7	0.0	0.0	1.8	0.0	13.3	.6	4.8	1.2	.6	0.0	0.0	27.63
	2명 이상	121	1.7	0.0	.8	0.0	0.0	5.0	3.3	0.0	27.3	9.9	0.0	0.0	0.0	34.7	0.0	0.0	0.0	0.0	9.1	0.0	5.8	.8	0.0	.8	.8	27.89
직업	화이트 칼라	486	.4	0.0	.6	0.0	.2	7.8	4.3	.2	27.4	9.9	.2	0.0	.2	32.3	0.0	.4	2.5	.2	8.2	.6	3.7	.4	.2	.2	0.0	26.32
	블루 칼라	106	3.8	0.0	.9	0.0	0.0	8.5	3.8	0.0	28.3	11.3	0.0	0.0	0.0	30.2	0.0	0.0	1.9	0.0	4.7	0.0	5.7	.9	0.0	0.0	0.0	24.95
	자영업	132	0.0	.8	0.0	0.0	0.0	5.3	4.5	0.0	23.5	15.2	0.0	0.0	0.0	32.6	0.0	0.0	2.3	0.0	9.8	0.0	3.8	1.5	.8	0.0	0.0	27.55
	학생	85	0.0	0.0	1.2	0.0	0.0	1.2	1.2	0.0	21.2	15.3	1.2	1.2	0.0	41.2	0.0	2.4	2.4	0.0	8.2	0.0	2.4	0.0	0.0	0.0	1.2	28.66
	주부	208	.5	0.0	.5	.5	0.0	5.8	1.4	0.0	26.0	12.0	0.0	0.0	0.0	37.5	0.0	0.0	2.4	0.0	7.2	1.0	3.4	1.0	1.0	0.0	0.0	27.39
	무직/퇴직	68	0.0	0.0	1.5	0.0	0.0	13.2	4.4	0.0	27.9	14.7	0.0	0.0	0.0	20.6	1.5	0.0	2.9	0.0	7.4	0.0	2.9	2.9	0.0	0.0	0.0	25.16
	기타	15	0.0	0.0	0.0	0.0	0.0	6.7	6.7	0.0	20.0	13.3	0.0	0.0	0.0	33.3	0.0	0.0	6.7	0.0	6.7	0.0	6.7	0.0	0.0	0.0	0.0	27.33
학력	고졸이하	263	1.1	0.0	.8	0.0	0.0	8.4	3.0	0.0	25.1	11.0	0.0	0.0	0.0	34.6	0.0	0.0	3.0	0.0	7.6	0.0	3.4	.8	.8	0.0	.4	26.67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0.0	0.0	1.3	0.0	0.0	1.3	0.0	0.0	27.3	14.3	1.3	1.3	0.0	37.7	0.0	2.6	1.3	0.0	9.1	0.0	2.6	0.0	0.0	0.0	0.0	27.48
	전문대졸	115	0.0	0.0	0.0	0.0	0.0	6.1	7.8	.9	27.8	16.5	0.0	0.0	.9	28.7	0.0	0.0	1.7	.9	4.3	0.0	3.5	.9	0.0	0.0	0.0	25.43
	대졸이상	645	.6	.2	.6	.2	.2	7.3	3.4	0.0	26.2	11.0	.2	0.0	0.0	32.7	.2	.3	2.5	0.0	8.4	.8	4.0	.9	.3	.2	0.0	26.78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1.4	0.0	1.4	0.0	0.0	8.3	2.8	0.0	23.6	16.0	0.0	0.0	0.0	31.3	0.0	.7	2.1	0.0	8.3	0.0	2.1	.7	.7	0.0	.7	26.34
	200~400만원 미만	408	.2	0.0	.5	.2	0.0	8.1	3.2	.2	26.2	11.5	.2	.2	0.0	34.1	.2	.2	2.9	0.0	7.6	.2	3.4	.2	.2	0.0	0.0	26.22
	400~600만원 미만	355	.6	.3	.3	0.0	.3	4.2	3.7	0.0	27.6	10.4	0.0	0.0	.3	33.5	0.0	.6	2.0	.3	8.2	1.1	4.2	1.7	.6	.3	0.0	27.78
	600만원 이상	193	1.0	0.0	1.0	0.0	0.0	8.8	4.7	0.0	25.4	11.9	.5	0.0	0.0	31.6	0.0	0.0	2.6	0.0	7.3	0.0	4.7	.5	0.0	0.0	0.0	25.76

1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폭력 중요도

		사례수	.0	1.0	5.0	7.0	10.0	15.0	19.0	20.0	25.0	28.0	29.0	30.0	31.0	33.0	34.0	35.0	40.0	50.0	[평균]
[전체]		1100	.4	.1	1.8	.1	16.4	4.1	.2	29.0	11.7	.1	.1	27.7	.1	.3	.1	1.3	4.9	1.7	22.91
성별	남자	559	.5	0.0	2.1	0.0	17.0	4.5	.2	30.6	11.3	0.0	.2	26.5	.2	.5	.2	1.4	2.9	2.0	22.36
	여자	541	.2	.2	1.5	.2	15.7	3.7	.2	27.4	12.2	.2	0.0	29.0	0.0	0.0	0.0	1.1	7.0	1.5	23.47
연령	20대	200	1.0	0.0	1.0	0.0	8.5	4.5	1.0	22.0	13.5	.5	.5	34.5	0.0	.5	.5	3.0	6.5	2.5	25.41
	30대	241	0.0	0.0	0.0	0.0	17.8	2.5	0.0	30.3	12.4	0.0	0.0	28.2	.4	.4	0.0	1.2	3.3	3.3	23.48
	40대	275	.4	0.0	2.9	0.0	14.5	2.9	0.0	30.5	8.7	0.0	0.0	33.8	0.0	.4	0.0	.7	4.7	.4	22.92
	50대	245	0.0	0.0	2.0	.4	21.6	4.5	0.0	31.0	13.1	0.0	0.0	20.4	0.0	0.0	0.0	.8	4.1	2.0	21.50
	60대	139	.7	.7	3.6	0.0	19.4	7.9	0.0	30.2	11.5	0.0	0.0	18.0	0.0	0.0	0.0	.7	7.2	0.0	20.76
거주지역	서울	229	.4	0.0	2.2	0.0	16.2	2.6	.9	29.3	11.8	0.0	0.0	29.3	0.0	1.3	0.0	.4	5.7	0.0	22.72
	부산	79	1.3	0.0	0.0	0.0	15.2	3.8	0.0	32.9	15.2	0.0	0.0	20.3	0.0	0.0	0.0	0.0	7.6	3.8	23.48
	대구	54	0.0	0.0	0.0	0.0	16.7	0.0	0.0	40.7	7.4	0.0	0.0	22.2	0.0	0.0	0.0	1.9	5.6	5.6	23.98
	인천	64	0.0	0.0	0.0	0.0	10.9	6.3	0.0	31.3	12.5	0.0	0.0	31.3	0.0	0.0	0.0	1.6	6.3	0.0	23.83
	광주	30	0.0	0.0	3.3	0.0	23.3	0.0	0.0	30.0	13.3	0.0	0.0	26.7	0.0	0.0	0.0	0.0	3.3	0.0	21.17
	대전	32	0.0	0.0	0.0	0.0	28.1	6.3	0.0	25.0	15.6	0.0	0.0	18.8	0.0	0.0	0.0	0.0	6.3	0.0	20.78
	경기	265	.8	.4	1.5	0.0	15.5	4.2	0.0	28.3	9.4	0.0	0.0	30.6	0.0	0.0	.4	1.5	4.5	3.0	23.42
	강원	32	0.0	0.0	3.1	0.0	6.3	9.4	0.0	25.0	18.8	0.0	0.0	28.1	3.1	0.0	0.0	0.0	3.1	3.1	24.09
	충청도	75	0.0	0.0	8.0	1.3	20.0	5.3	0.0	20.0	13.3	0.0	1.3	22.7	0.0	0.0	0.0	0.0	5.3	2.7	21.28
	전라도	76	0.0	0.0	1.3	0.0	14.5	6.6	0.0	22.4	15.8	0.0	0.0	32.9	0.0	0.0	0.0	1.3	2.6	2.6	23.62
	경상도	126	0.0	0.0	1.6	0.0	17.5	4.8	0.0	27.0	9.5	.8	0.0	30.2	0.0	0.0	0.0	4.0	4.8	0.0	22.88
	기타	38	0.0	0.0	0.0	0.0	21.1	2.6	0.0	47.4	10.5	0.0	0.0	15.8	0.0	0.0	0.0	2.6	0.0	0.0	20.26
결혼여부	미혼	342	.6	0.0	.9	0.0	13.5	3.2	.6	22.5	12.9	0.0	.3	33.9	.3	.9	.3	2.3	4.7	3.2	24.74
	기혼	758	.3	.1	2.2	.1	17.7	4.5	0.0	31.9	11.2	.1	0.0	24.9	0.0	0.0	0.0	.8	5.0	1.1	22.08
가족구성원수	1명	78	1.3	0.0	1.3	0.0	10.3	3.8	0.0	28.2	10.3	0.0	1.3	35.9	0.0	0.0	0.0	1.3	0.0	6.4	24.67
	2명	175	0.0	0.0	1.1	0.0	19.4	1.1	0.0	24.6	17.7	.6	0.0	22.9	0.0	0.0	0.0	1.1	9.1	2.3	23.73
	3명	295	.3	0.0	1.0	.3	16.9	4.4	.3	33.2	12.5	0.0	0.0	22.7	0.0	1.0	.3	.7	5.1	1.0	22.32
	4명	435	.2	.2	2.8	0.0	16.6	5.7	.2	28.7	9.2	0.0	0.0	30.1	.2	0.0	0.0	1.6	3.4	.9	22.26
	5명이상	117	.9	0.0	1.7	0.0	13.7	1.7	0.0	26.5	11.1	0.0	0.0	33.3	0.0	0.0	0.0	1.7	6.8	2.6	24.40
12세미만자녀수	없음	813	.4	.1	2.0	.1	16.7	4.1	.2	28.3	11.8	.1	.1	27.3	.1	.4	.1	1.5	4.8	1.8	22.87
	1명	166	0.0	0.0	1.2	0.0	14.5	3.0	0.0	28.9	13.3	0.0	0.0	30.7	0.0	0.0	0.0	1.2	6.6	.6	23.64
	2명이상	121	.8	0.0	1.7	0.0	16.5	5.8	0.0	33.9	9.1	0.0	0.0	26.4	0.0	0.0	0.0	0.0	3.3	2.5	22.15
직업	화이트 칼라	486	.2	.2	1.2	.2	16.3	4.9	.2	32.9	9.3	.2	0.0	27.8	0.0	.4	0.0	.8	3.7	1.6	22.50
	블루 칼라	106	1.9	0.0	0.0	0.0	17.9	2.8	0.0	26.4	16.0	0.0	0.0	26.4	0.0	0.0	0.0	.9	5.7	1.9	22.97
	자영업	132	0.0	0.0	3.0	0.0	22.7	5.3	0.0	25.0	12.1	0.0	0.0	25.8	0.0	0.0	0.0	.8	3.8	1.5	21.52
	학생	85	1.2	0.0	2.4	0.0	7.1	3.5	1.2	17.6	15.3	0.0	1.2	37.6	0.0	1.2	1.2	5.9	2.4	2.4	25.53
	주부	208	0.0	0.0	2.9	0.0	16.3	2.9	0.0	29.8	12.5	0.0	0.0	26.4	0.0	0.0	0.0	.5	7.2	1.4	23.00
	무직/퇴직	68	0.0	0.0	1.5	0.0	16.2	2.9	0.0	26.5	14.7	0.0	0.0	23.5	1.5	0.0	0.0	1.5	8.8	2.9	24.13
	기타	15	0.0	0.0	6.7	0.0	6.7	0.0	0.0	20.0	13.3	0.0	0.0	33.3	0.0	0.0	0.0	6.7	13.3	0.0	26.00
학력	고졸이하	263	1.1	0.0	1.9	0.0	19.8	4.2	0.0	27.8	11.8	0.0	0.0	23.2	0.0	0.0	0.0	1.1	7.2	1.9	22.40
	전문대/대학교(원)재학	77	0.0	0.0	1.3	0.0	7.8	3.9	1.3	18.2	15.6	0.0	1.3	36.4	0.0	1.3	1.3	5.2	3.9	2.6	26.04
	전문대졸	115	0.0	.9	1.7	0.0	16.5	4.3	0.0	31.3	13.0	0.0	0.0	23.5	0.0	0.0	0.0	2.6	6.1	0.0	22.31
	대졸이상	645	.2	0.0	1.9	.2	16.0	4.0	.2	30.4	11.0	.2	0.0	29.3	.2	.3	0.0	.6	3.9	1.9	22.85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1.4	0.0	1.4	0.0	20.1	3.5	0.0	25.0	18.1	0.0	0.0	18.1	0.0	.7	0.0	3.5	4.9	3.5	22.66
	200~400 만원미만	408	.2	0.0	2.0	0.0	14.0	3.2	.2	28.2	11.5	.2	0.0	31.9	.2	0.0	.2	1.7	4.9	1.5	23.62
	400~600 만원 미만	355	.3	.3	2.3	.3	17.5	5.6	0.0	30.1	10.1	0.0	.3	26.5	0.0	.6	0.0	.6	4.2	1.4	22.09
	600만원 이상	193	0.0	0.0	1.0	0.0	16.6	3.6	.5	31.6	10.4	0.0	0.0	28.5	0.0	0.0	0.0	0.0	6.2	1.6	23.08

1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안전 정보 인지경로

		사례수	정부기관 (중앙정부, 식약처 등)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대학,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친환경식품 관련	없다
[전체]		1100	18.0	30.2	76.0	62.9	15.6	4.1	13.6	.1	.1
성별	남자	559	20.4	29.2	75.3	63.7	14.0	4.1	11.6	0.0	0.0
	여자	541	15.5	31.2	76.7	62.1	17.4	4.1	15.7	.2	.2
연령	20대	200	10.5	27.0	72.0	65.5	11.0	7.5	18.0	0.0	.5
	30대	241	14.1	24.5	69.3	63.1	14.1	4.1	10.0	0.0	0.0
	40대	275	20.0	32.4	76.7	65.8	16.0	2.5	15.3	0.0	0.0
	50대	245	23.7	32.2	78.8	61.2	20.8	3.7	13.5	.4	0.0
	60대	139	21.6	36.7	87.1	56.1	15.1	2.9	10.8	0.0	0.0
거주지역	서울	229	20.1	39.3	79.0	62.4	16.2	6.1	16.2	0.0	0.0
	부산	79	20.3	32.9	73.4	59.5	19.0	2.5	13.9	0.0	0.0
	대구	54	13.0	25.9	77.8	63.0	11.1	3.7	14.8	0.0	0.0
	인천	64	21.9	23.4	79.7	64.1	7.8	0.0	7.8	0.0	0.0
	광주	30	20.0	16.7	70.0	63.3	30.0	6.7	20.0	0.0	0.0
	대전	32	21.9	9.4	68.8	62.5	21.9	6.3	25.0	0.0	0.0
	경기	265	12.5	31.3	77.0	62.3	15.1	3.4	14.7	.4	0.0
	강원	32	21.9	31.3	71.9	81.3	9.4	0.0	6.3	0.0	0.0
	충청도	75	17.3	20.0	76.0	54.7	10.7	5.3	6.7	0.0	0.0
	전라도	76	23.7	30.3	73.7	63.2	18.4	6.6	3.9	0.0	0.0
	경상도	126	18.3	27.0	74.6	64.3	16.7	1.6	14.3	0.0	.8
	기타	38	21.1	36.8	71.1	71.1	18.4	7.9	21.1	0.0	0.0
결혼여부	미혼	342	11.7	24.6	73.1	65.8	10.2	5.0	13.2	.3	.3
	기혼	758	20.8	32.7	77.3	61.6	18.1	3.7	13.9	0.0	0.0
가족구성원수	1명	78	17.9	16.7	71.8	64.1	9.0	2.6	10.3	1.3	0.0
	2명	175	21.7	26.3	76.6	60.0	16.0	2.3	12.6	0.0	0.0
	3명	295	17.6	30.2	74.6	64.1	15.6	4.4	11.5	0.0	0.0
	4명	435	17.7	33.3	76.8	64.1	15.4	3.9	16.6	0.0	.2
	5명이상	117	14.5	33.3	78.6	59.0	20.5	7.7	12.0	0.0	0.0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8.7	29.3	77.9	62.5	14.9	3.6	13.0	.1	.1
	1명	166	17.5	30.1	68.7	65.7	17.5	6.0	13.9	0.0	0.0
	2명이상	121	14.0	36.4	73.6	62.0	18.2	5.0	17.4	0.0	0.0

		사례수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인터넷정보(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대학,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친환경식품 관련	없다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9.1	28.6	72.4	64.0	17.1	3.5	13.4	0.0	.2
	블루 칼라	106	19.8	31.1	72.6	63.2	18.9	4.7	17.0	0.0	0.0
	자영업	132	18.9	34.1	81.1	58.3	13.6	3.8	12.9	0.0	0.0
	학생	85	7.1	25.9	71.8	65.9	5.9	9.4	14.1	0.0	0.0
	주부	208	16.3	35.6	85.6	59.1	15.9	3.4	14.9	.5	0.0
	무직/퇴직	68	20.6	25.0	73.5	66.2	14.7	4.4	7.4	0.0	0.0
	기타	15	33.3	13.3	73.3	86.7	20.0	0.0	13.3	0.0	0.0
학력	고졸이하	263	14.1	24.7	79.5	56.7	15.2	3.8	13.3	.4	0.0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0.4	23.4	71.4	63.6	5.2	9.1	14.3	0.0	0.0
	전문대졸	115	19.1	32.2	78.3	62.6	12.2	1.7	22.6	0.0	0.0
	대졸이상	645	20.3	32.9	74.7	65.4	17.7	4.0	12.1	0.0	.2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15.3	17.4	71.5	61.1	13.9	2.1	10.4	.7	0.0
	200~400만원 미만	408	16.7	27.2	75.7	60.3	10.8	2.9	11.5	0.0	0.0
	400~600만원 미만	355	18.9	34.4	77.5	65.1	18.0	6.2	16.9	0.0	.3
	600만원 이상	193	21.2	38.3	77.2	65.8	22.8	4.1	14.5	0.0	0.0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16.0	22.7	70.1	59.3	14.9	4.1	17.0	0.0	0.0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21.0	36.3	63.7	59.7	20.2	8.1	13.7	0.0	0.0
	전문가 의견	80	17.5	30.0	61.3	56.3	17.5	7.5	10.0	1.3	0.0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17.4	31.1	82.8	65.9	14.9	2.5	13.2	0.0	.2
	주변 사람의 의견	62	19.4	33.9	72.6	56.5	11.3	8.1	16.1	0.0	0.0
	정부 보도 자료	32	28.1	28.1	78.1	68.8	21.9	3.1	6.3	0.0	0.0
	기타 (구체적으로)	4	25.0	25.0	50.0	75.0	0.0	0.0	0.0	0.0	0.0

1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구입 및 먹을 경우 불안요소(open)

		사례 수	유해 물질	농식품 질병	세균	식품의 신선도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과학적 및 특정성분과 다	불결한 관리	원산지	화학첨가물	유전자 변형	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위생상태	식품 성분 및 영양소 표기	식품 전반적인 불안감	유통과정 및 특정유통제품	식품을 이용한 범죄	가공식품	외식 및 길거리 음식	농수산물 및 육류	식품자체 품질의 심	가격	인체유해 미생물	미흡	기타	없음	무응답
[전체]		1100	14.9	.5	.2	.9	15.5	1.4	.6	30.0	18.5	2.1	15.8	3.4	3.4	1.5	1.3	23.5	10.7	7.7	.5	.7	.2	.4	2.5	2.0	2.5
성별	남자	559	9.3	.5	.2	1.1	16.8	1.8	.5	33.5	11.3	2.3	13.1	3.2	4.1	1.6	1.4	21.8	12.3	8.6	.2	.9	.2	.4	2.7	2.7	3.6
	여자	541	20.7	.6	.2	.7	14.0	.9	.7	26.4	26.1	1.8	18.7	3.5	2.6	1.3	1.1	25.3	9.1	6.8	.7	.6	.2	.4	2.4	1.3	1.3
연령	20대	200	7.5	.5	0.0	0.0	10.5	2.5	.5	32.5	17.0	0.0	18.5	3.0	4.0	.5	1.0	28.0	10.0	7.5	0.0	0.0	.5	1.5	1.5	1.5	3.0
	30대	241	11.2	0.0	0.0	1.2	14.5	.8	.8	31.1	19.9	1.7	17.0	5.4	3.3	2.1	1.7	17.0	11.6	5.8	.4	1.7	.4	0.0	.8	2.1	2.5
	40대	275	14.5	1.1	.4	1.1	14.9	1.8	.7	29.1	21.8	2.9	15.6	3.6	2.5	2.2	1.1	20.4	16.4	4.4	.4	.7	0.0	0.0	2.2	2.2	.7
	50대	245	20.8	0.0	.4	.8	20.8	.8	.8	33.1	15.5	3.7	9.8	2.0	4.9	.8	1.2	32.2	7.3	11.0	.8	.8	0.0	0.0	4.9	.4	2.9
	60대	139	22.3	1.4	0.0	1.4	15.8	.7	0.0	20.9	17.3	1.4	20.9	2.2	1.4	1.4	1.4	19.4	5.0	12.2	.7	0.0	0.0	.7	3.6	5.0	4.3
거주 지역	서울	229	12.2	.9	0.0	1.3	18.3	3.1	0.0	33.2	16.2	2.2	14.8	3.1	3.5	1.3	2.2	23.6	12.7	5.7	.4	.4	.4	0.0	3.1	.4	2.6
	부산	79	22.8	3.8	0.0	2.5	13.9	1.3	1.3	21.5	20.3	1.3	20.3	2.5	2.5	2.5	1.3	29.1	7.6	5.1	0.0	1.3	0.0	0.0	0.0	0.0	0.0
	대구	54	20.4	0.0	0.0	0.0	9.3	1.9	0.0	31.5	11.1	1.9	20.4	0.0	0.0	1.9	0.0	16.7	9.3	1.9	0.0	0.0	0.0	0.0	3.7	3.7	1.9
	인천	64	7.8	0.0	0.0	0.0	18.8	3.1	1.6	34.4	18.8	3.1	20.3	3.1	3.1	1.6	0.0	20.3	3.1	10.9	0.0	0.0	0.0	0.0	6.3	0.0	3.1
	광주	30	23.3	0.0	0.0	0.0	20.0	3.3	0.0	26.7	16.7	3.3	13.3	3.3	0.0	0.0	0.0	23.3	10.0	13.3	0.0	3.3	0.0	0.0	0.0	3.3	0.0
	대전	32	15.6	0.0	0.0	0.0	12.5	0.0	0.0	40.6	25.0	3.1	21.9	0.0	3.1	0.0	0.0	31.3	12.5	21.9	0.0	0.0	0.0	0.0	0.0	3.1	0.0
	경기	265	14.7	.4	.8	0.0	17.7	0.0	.8	29.4	18.5	1.1	13.2	4.5	3.8	1.1	.4	22.3	11.3	9.4	.8	.4	0.0	.8	2.6	2.6	1.9
	강원	32	12.5	0.0	0.0	0.0	12.5	0.0	0.0	40.6	18.8	3.1	25.0	6.3	0.0	6.3	3.1	31.3	9.4	6.3	0.0	0.0	0.0	0.0	0.0	6.3	0.0
	충청도	75	17.3	0.0	0.0	2.7	8.0	0.0	0.0	25.3	21.3	1.3	12.0	2.7	5.3	0.0	4.0	28.0	8.0	8.0	1.3	4.0	0.0	0.0	4.0	4.0	4.0
	전라도	76	13.2	0.0	0.0	0.0	18.4	0.0	2.6	38.2	23.7	6.6	19.7	2.6	5.3	1.3	0.0	11.8	10.5	2.6	0.0	0.0	1.3	0.0	2.6	1.3	2.6
	경상도	126	15.1	0.0	0.0	1.6	12.7	2.4	.8	22.2	20.6	.8	13.5	4.8	4.0	2.4	2.4	30.2	11.9	7.9	.8	.8	0.0	1.6	1.6	.8	3.2
	기타	38	13.2	0.0	0.0	2.6	7.9	0.0	0.0	26.3	13.2	2.6	13.2	2.6	2.6	0.0	0.0	15.8	18.4	10.5	0.0	0.0	0.0	0.0	2.6	7.9	10.5
결혼 여부	미혼	342	10.8	.3	0.0	0.0	12.6	1.5	.3	35.1	17.0	.9	17.3	3.5	3.2	1.5	1.8	23.4	9.1	6.7	.3	0.0	.3	.9	1.5	2.9	2.6
	기혼	758	16.8	.7	.3	1.3	16.8	1.3	.8	27.7	19.3	2.6	15.2	3.3	3.4	1.5	1.1	23.6	11.5	8.2	.5	1.1	.1	.1	3.0	1.6	2.4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15.4	0.0	0.0	0.0	14.1	0.0	0.0	37.2	19.2	0.0	21.8	3.8	2.6	1.3	1.3	17.9	9.0	9.0	0.0	0.0	0.0	1.3	1.3	3.8	1.3
	2명	175	17.1	.6	0.0	.6	14.9	.6	.6	27.4	18.9	3.4	18.9	2.9	1.7	1.1	.6	18.9	12.0	6.3	.6	0.0	0.0	.6	1.1	4.6	3.4
	3명	295	13.2	.7	0.0	.7	19.3	1.4	.7	31.2	19.7	1.4	13.2	3.7	3.7	1.4	.7	23.4	10.2	8.1	.7	1.4	.3	0.0	3.4	1.7	1.4
	4명	435	15.2	.5	.5	1.4	14.5	2.3	.7	29.0	18.4	2.8	15.4	3.4	4.6	1.6	2.3	24.8	10.1	6.4	.5	.9	.2	.2	2.8	1.4	2.1
	5명이상	117	14.5	.9	0.0	.9	11.1	0.0	.9	29.9	15.4	.9	15.4	2.6	.9	1.7	0.0	29.9	13.7	12.8	0.0	0.0	0.0	.9	2.6	0.0	6.0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6.7	.6	.2	.6	15.4	1.4	.6	31.2	18.1	2.3	16.1	2.8	3.4	1.5	1.5	22.9	9.5	7.5	.5	.2	.1	.5	2.7	2.5	2.2
	1명	166	9.6	.6	0.0	1.8	16.3	1.2	1.2	27.1	20.5	1.2	12.0	5.4	3.0	1.2	0.0	21.7	13.9	6.6	.6	1.8	.6	0.0	2.4	.6	2.4
	2명이상	121	9.9	0.0	0.0	1.7	14.9	1.7	0.0	25.6	19.0	1.7	19.0	4.1	3.3	1.7	1.7	30.6	14.9	10.7	0.0	2.5	0.0	0.0	1.7	.8	4.1
직업	화이트 칼라	486	8.6	.4	.2	1.0	16.7	.8	1.0	35.0	18.5	1.9	17.5	3.1	2.5	2.3	.8	22.6	12.8	7.2	.6	1.0	.2	.4	2.7	1.2	1.6
	블루 칼라	106	21.7	0.0	0.0	2.8	18.9	.9	0.0	24.5	15.1	.9	18.9	3.8	1.9	1.9	0.0	29.2	6.6	5.7	0.0	0.0	0.0	.9	1.9	3.8	2.8
	자영업	132	18.2	0.0	0.0	0.0	14.4	.8	0.0	31.8	13.6	3.8	11.4	3.8	5.3	0.0	1.5	21.2	7.6	12.1	.8	1.5	0.0	0.0	3.8	3.0	3.8
	학생	85	7.1	1.2	0.0	0.0	7.1	5.9	0.0	27.1	12.9	0.0	16.5	3.5	4.7	0.0	2.4	22.4	11.8	7.1	0.0	0.0	1.2	0.0	2.4	1.2	3.5
	주부	208	25.0	1.4	.5	.5	15.4	1.9	1.0	24.0	26.0	2.9	13.9	3.8	4.8	1.0	1.9	22.1	9.1	6.7	.5	.5	0.0	0.0	2.9	2.4	1.4
	무직/퇴직	68	14.7	0.0	0.0	1.5	16.2	0.0	0.0	23.5	13.2	1.5	13.2	1.5	2.9	1.5	1.5	32.4	8.8	11.8	0.0	0.0	0.0	1.5	0.0	2.9	7.4
	기타	15	46.7	0.0	0.0	0.0	6.7	0.0	0.0	20.0	40.0	6.7	13.3	6.7	0.0	0.0	6.7	20.0	26.7	0.0	0.0	0.0	0.0	0.0	0.0	0.0	0.0
학력	고졸이하	263	19.8	.8	0.0	.8	18.3	1.1	.4	21.3	18.3	1.5	17.1	1.5	4.9	1.9	1.5	25.1	4.6	7.6	.4	.8	0.0	.4	2.7	3.4	4.6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7.8	1.3	0.0	0.0	5.2	6.5	0.0	26.0	7.8	0.0	18.2	5.2	2.6	0.0	2.6	26.0	13.0	7.8	0.0	0.0	1.3	0.0	1.3	1.3	3.9
	전문대졸	115	14.8	0.0	0.0	.9	16.5	.9	.9	29.6	20.9	3.5	18.3	4.3	2.6	1.7	.9	31.3	7.8	9.6	.9	2.6	0.0	0.0	1.7	2.6	2.6
	대졸이상	645	13.8	.5	.3	1.1	15.3	.9	.8	34.1	19.5	2.3	14.6	3.7	2.9	1.4	1.1	21.2	13.5	7.4	.5	.5	.2	.5	2.8	1.4	1.4

		사례 수	유통 기한	보관 방법	제품	식품의 신선도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너무 복잡하다	불필요하다	원산지	화학 첨가물	알레르기 유발	식품 관련 법률 및 제조업체	식품 성분 및 영양소 표기	식품 조리법	유통과정 및 보관방법	식품에 이상한 물질	가공식품	외식 및 집단 급식	농수산물 및 육류	식품 자체 품질의 질	가격	인증마크	디자인	기타	해당 없음	무응답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8.8	0.0	0.0	0.0	18.8	0.0	.7	17.4	12.5	.7	13.2	1.4	5.6	1.4	0.0	31.3	6.3	7.6	.7	0.0	0.0	1.4	2.1	4.9	3.5
	200~400만원 미만	408	14.0	1.0	.2	1.2	14.7	2.0	0.0	33.1	17.4	2.7	15.4	3.2	3.4	1.7	1.5	18.6	11.8	10.0	.5	1.2	.2	.5	2.7	2.5	2.2
	400~600만원 미만	355	14.4	.6	.3	.6	15.2	2.0	1.4	30.1	22.8	1.7	17.2	4.8	2.5	.8	1.7	24.2	10.7	5.1	.3	.6	0.0	0.0	2.5	1.1	2.5
	600만원 이상	193	15.0	0.0	0.0	1.6	15.0	0.0	.5	32.6	17.6	2.6	16.1	2.6	3.1	2.1	1.0	26.9	11.9	7.8	.5	.5	.5	0.0	2.6	.5	2.1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습득 방법	정부기관 (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9.7	0.0	0.0	1.0	14.1	2.0	0.0	36.4	19.7	6.1	15.7	1.0	3.5	2.0	.5	24.2	13.1	5.6	0.0	1.5	.5	0.0	3.0	0.0	2.0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15.7	.6	.3	1.2	15.7	4.2	1.2	32.5	19.3	3.0	18.7	2.7	3.3	.9	1.8	24.1	11.4	6.6	.3	.3	0.0	0.0	3.3	.6	2.4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15.9	.7	.2	1.0	15.9	1.7	.8	30.7	20.6	2.2	16.5	2.8	3.0	1.6	1.3	25.5	9.4	8.0	.5	.7	.2	.4	2.9	1.9	2.3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17.1	.9	.3	.9	16.3	1.6	.6	29.3	21.1	2.7	17.5	4.3	2.2	1.6	1.3	24.4	12.6	7.2	.4	.6	.3	.3	2.3	1.2	1.4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23.8	0.0	.6	0.0	16.9	1.2	.6	27.3	19.8	1.7	18.6	2.9	2.3	.6	.6	26.7	8.7	12.8	.6	0.0	0.0	.6	1.7	.6	2.9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4.4	0.0	0.0	0.0	6.7	2.2	0.0	33.3	26.7	4.4	11.1	4.4	2.2	0.0	0.0	6.7	8.9	0.0	0.0	0.0	0.0	0.0	0.0	4.4	15.6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10.7	0.0	0.0	.7	16.7	2.0	0.0	30.0	21.3	3.3	16.0	6.7	4.7	.7	1.3	26.0	11.3	10.0	.7	0.0	.7	0.0	3.3	1.3	2.7
	기타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10.8	.5	.5	1.0	16.5	.5	0.0	26.3	18.6	.5	15.5	4.6	4.6	1.5	.5	18.6	11.3	5.2	0.0	0.0	.5	.5	3.1	2.6	3.1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7.3	0.0	0.0	.8	16.1	2.4	.8	21.0	16.1	1.6	14.5	1.6	4.0	2.4	1.6	21.8	15.3	11.3	0.0	.8	0.0	0.0	4.0	1.6	2.4
	전문가 의견	80	18.8	0.0	1.3	2.5	8.8	3.8	0.0	22.5	18.8	2.5	6.3	2.5	1.3	0.0	1.3	25.0	11.3	5.0	0.0	0.0	1.3	0.0	2.5	2.5	5.0
	방송보도 (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17.4	.8	0.0	.8	16.7	1.2	1.0	34.3	20.7	2.6	17.9	3.8	2.5	1.7	1.3	26.7	9.9	7.3	.8	1.0	0.0	.5	2.2	1.3	1.2
	주변 사람의 의견	62	14.5	0.0	0.0	0.0	9.7	1.6	0.0	25.8	9.7	0.0	11.3	0.0	6.5	0.0	1.6	16.1	12.9	9.7	0.0	0.0	0.0	0.0	3.2	6.5	6.5
	정부 보도 자료	32	15.6	0.0	0.0	0.0	12.5	0.0	0.0	31.3	3.1	6.3	18.8	3.1	9.4	0.0	3.1	15.6	0.0	21.9	0.0	3.1	0.0	0.0	0.0	0.0	6.3
	기타 (구체적으로)	4	0.0	0.0	0.0	0.0	0.0	0.0	0.0	50.0	2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0	25.0

1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안전 인식의 영향요소

		사례수	막연한 불안감	본인 및 가족의 경험	전문가 의견	방송보도 (뉴스 및 프로그램 등)	주변 사람의 의견	정부 보도 자료	인터넷 블로그	건강에 유해한 정도	모름
[전체]		1100	17.6	11.3	7.3	54.9	5.6	2.9	.1	.1	.2
성별	남자	559	16.5	12.5	8.8	53.1	6.1	2.9	0.0	0.0	.2
	여자	541	18.9	10.0	5.7	56.7	5.2	3.0	.2	.2	.2
연령	20대	200	20.0	10.5	11.0	50.0	6.5	2.0	0.0	0.0	0.0
	30대	241	21.6	12.0	5.8	53.1	3.3	2.9	.4	.4	.4
	40대	275	19.3	11.3	4.4	57.8	4.7	2.2	0.0	0.0	.4
	50대	245	12.7	12.2	7.8	56.7	6.5	4.1	0.0	0.0	0.0
	60대	139	12.9	9.4	9.4	56.1	8.6	3.6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	229	17.5	10.9	5.7	56.3	7.4	2.2	0.0	0.0	0.0
	부산	79	19.0	6.3	11.4	51.9	10.1	1.3	0.0	0.0	0.0
	대구	54	16.7	11.1	9.3	57.4	3.7	1.9	0.0	0.0	0.0
	인천	64	29.7	7.8	4.7	50.0	3.1	4.7	0.0	0.0	0.0
	광주	30	26.7	16.7	6.7	43.3	6.7	0.0	0.0	0.0	0.0
	대전	32	9.4	18.8	3.1	56.3	9.4	3.1	0.0	0.0	0.0
	경기	265	16.6	11.3	8.7	56.6	4.2	2.3	0.0	0.0	.4
	강원	32	18.8	9.4	0.0	62.5	0.0	6.3	0.0	3.1	0.0
	충청도	75	12.0	10.7	5.3	64.0	4.0	2.7	0.0	0.0	1.3
	전라도	76	14.5	7.9	7.9	59.2	5.3	3.9	1.3	0.0	0.0
	경상도	126	18.3	15.1	7.1	50.8	4.0	4.8	0.0	0.0	0.0
	기타	38	18.4	15.8	13.2	34.2	13.2	5.3	0.0	0.0	0.0
결혼 여부	미혼	342	17.8	12.3	10.2	52.3	4.7	1.8	.3	0.0	.6
	기혼	758	17.5	10.8	5.9	56.1	6.1	3.4	0.0	.1	0.0
가족 구성원수	1명	78	23.1	10.3	7.7	51.3	2.6	5.1	0.0	0.0	0.0
	2명	175	13.1	10.3	8.0	60.0	4.6	3.4	0.0	0.0	.6
	3명	295	20.0	9.5	6.4	55.6	4.4	4.1	0.0	0.0	0.0
	4명	435	18.2	12.2	6.7	53.8	6.9	1.8	0.0	.2	.2
	5명 이상	117	12.8	14.5	10.3	52.1	7.7	1.7	.9	0.0	0.0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5.9	10.9	8.1	56.1	5.8	3.0	0.0	0.0	.2
	1명	166	23.5	10.8	5.4	51.2	6.0	2.4	.6	0.0	0.0
	2명이상	121	21.5	14.0	4.1	52.1	4.1	3.3	0.0	.8	0.0
직업	화이트 칼라	486	20.6	12.6	6.2	53.1	5.3	1.9	.2	0.0	.2
	블루 칼라	106	16.0	17.9	9.4	49.1	4.7	2.8	0.0	0.0	0.0
	자영업	132	12.1	10.6	6.1	60.6	7.6	3.0	0.0	0.0	0.0
	학생	85	14.1	8.2	15.3	52.9	7.1	2.4	0.0	0.0	0.0
	주부	208	16.8	7.2	4.8	60.6	4.8	5.3	0.0	.5	0.0
	무직/퇴직	68	16.2	11.8	10.3	50.0	5.9	4.4	0.0	0.0	1.5
	기타	15	20.0	0.0	13.3	60.0	6.7	0.0	0.0	0.0	0.0

		사례수	막연한 불안감	본인 및 가족의 경험	전문가 의견	방송보도 (뉴스 및 프로그램 등)	주변 사람의 의견	정부 보도 자료	인터넷 블로그	건강에 유해한 정도	모름
학력	고졸이하	263	18.6	11.4	7.2	49.8	7.2	5.3	0.0	0.0	.4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6.9	6.5	16.9	51.9	6.5	1.3	0.0	0.0	0.0
	전문대졸	115	16.5	12.2	5.2	60.9	3.5	1.7	0.0	0.0	0.0
	대졸이상	645	17.5	11.6	6.5	56.3	5.3	2.3	.2	.2	.2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21.5	11.1	7.6	49.3	4.2	5.6	0.0	0.0	.7
	200~400만원 미만	408	16.7	10.0	7.6	55.6	6.1	3.2	.2	.2	.2
	400~600만원 미만	355	18.3	10.7	7.3	57.5	3.9	2.3	0.0	0.0	0.0
	600만원 이상	193	15.5	15.0	6.2	52.8	8.8	1.6	0.0	0.0	0.0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 (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5.7	13.1	7.1	53.0	6.1	4.5	0.0	.5	0.0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13.3	13.6	7.2	56.6	6.3	2.7	0.0	.3	0.0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836	16.3	9.4	5.9	59.8	5.4	3.0	0.0	.1	.1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16.6	10.7	6.5	57.5	5.1	3.2	.1	.1	.1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16.9	14.5	8.1	52.3	4.1	4.1	0.0	0.0	0.0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17.8	22.2	13.3	33.3	11.1	2.2	0.0	0.0	0.0
	판매원, 길거리캠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22.0	11.3	5.3	53.3	6.7	1.3	0.0	0.0	0.0
	기타	2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1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 원료 생산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7.3	36.8	44.8	9.9	1.2	44.1	44.8	11.1	2.61	40.23
성별	남자	559	7.5	34.5	44.0	12.2	1.8	42.0	44.0	14.0	2.66	41.55
	여자	541	7.0	39.2	45.7	7.6	.6	46.2	45.7	8.1	2.55	38.86
연령	20대	200	9.0	28.5	45.0	15.5	2.0	37.5	45.0	17.5	2.73	43.25
	30대	241	6.6	35.3	48.5	8.7	.8	41.9	48.5	9.5	2.62	40.46
	40대	275	5.8	38.2	43.3	11.6	1.1	44.0	43.3	12.7	2.64	41.00
	50대	245	6.5	45.3	41.6	5.7	.8	51.8	41.6	6.5	2.49	37.24
	60대	139	10.1	33.8	46.8	7.9	1.4	43.9	46.8	9.4	2.57	39.21
거주 지역	서울	229	4.4	37.1	43.2	12.7	2.6	41.5	43.2	15.3	2.72	43.01
	부산	79	5.1	25.3	58.2	11.4	0.0	30.4	58.2	11.4	2.76	43.99
	대구	54	7.4	38.9	44.4	9.3	0.0	46.3	44.4	9.3	2.56	38.89
	인천	64	7.8	34.4	48.4	9.4	0.0	42.2	48.4	9.4	2.59	39.84
	광주	30	10.0	43.3	43.3	0.0	3.3	53.3	43.3	3.3	2.43	35.83
	대전	32	15.6	28.1	46.9	9.4	0.0	43.8	46.9	9.4	2.50	37.50
	경기	265	7.5	40.0	43.4	8.3	.8	47.5	43.4	9.1	2.55	38.68
	강원	32	9.4	34.4	43.8	12.5	0.0	43.8	43.8	12.5	2.59	39.84
	충청도	75	6.7	41.3	42.7	8.0	1.3	48.0	42.7	9.3	2.56	39.00
	전라도	76	13.2	32.9	38.2	15.8	0.0	46.1	38.2	15.8	2.57	39.14
	경상도	126	5.6	41.3	45.2	7.1	.8	46.8	45.2	7.9	2.56	39.09
	기타	38	10.5	26.3	47.4	10.5	5.3	36.8	47.4	15.8	2.74	43.42
결혼 여부	미혼	342	7.9	31.6	44.7	15.2	.6	39.5	44.7	15.8	2.69	42.25
	기혼	758	7.0	39.2	44.9	7.5	1.5	46.2	44.9	9.0	2.57	39.31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11.5	38.5	38.5	11.5	0.0	50.0	38.5	11.5	2.50	37.50
	2명	175	6.9	39.4	45.7	7.4	.6	46.3	45.7	8.0	2.55	38.86
	3명	295	5.4	37.3	46.8	9.8	.7	42.7	46.8	10.5	2.63	40.76
	4명	435	7.8	34.3	44.8	11.0	2.1	42.1	44.8	13.1	2.65	41.32
	5명이상	117	7.7	40.2	42.7	8.5	.9	47.9	42.7	9.4	2.55	38.68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7.1	36.2	46.4	9.7	.6	43.3	46.4	10.3	2.61	40.13
	1명	166	7.8	36.1	42.2	10.8	3.0	44.0	42.2	13.9	2.65	41.27
	2명이상	121	7.4	42.1	38.0	9.9	2.5	49.6	38.0	12.4	2.58	39.46
직업	화이트 칼라	486	7.2	38.3	42.8	10.5	1.2	45.5	42.8	11.7	2.60	40.07
	블루 칼라	106	8.5	37.7	41.5	11.3	.9	46.2	41.5	12.3	2.58	39.62
	자영업	132	3.8	30.3	56.1	8.3	1.5	34.1	56.1	9.8	2.73	43.37
	학생	85	9.4	28.2	43.5	16.5	2.4	37.6	43.5	18.8	2.74	43.53
	주부	208	7.7	42.3	42.3	6.7	1.0	50.0	42.3	7.7	2.51	37.74
	무직/퇴직	68	8.8	33.8	51.5	5.9	0.0	42.6	51.5	5.9	2.54	38.60
	기타	15	6.7	26.7	46.7	20.0	0.0	33.3	46.7	20.0	2.80	45.00
학력	고졸이하	263	9.1	35.4	46.4	8.0	1.1	44.5	46.4	9.1	2.57	39.16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6.5	24.7	49.4	16.9	2.6	31.2	49.4	19.5	2.84	46.10
	전문대졸	115	7.0	40.0	42.6	9.6	.9	47.0	42.6	10.4	2.57	39.35
	대졸이상	645	6.7	38.3	44.0	9.9	1.1	45.0	44.0	11.0	2.60	40.12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1.1	31.3	49.3	8.3	0.0	42.4	49.3	8.3	2.55	38.72
	200~400만원 미만	408	6.9	38.5	43.4	10.0	1.2	45.3	43.4	11.3	2.60	40.07
	400~600만원 미만	355	6.5	39.4	43.7	9.6	.8	45.9	43.7	10.4	2.59	39.72
	600만원 이상	193	6.7	32.6	46.6	11.4	2.6	39.4	46.6	14.0	2.70	42.62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 (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6.6	33.3	46.5	11.6	2.0	39.9	46.5	13.6	2.69	42.30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5.4	41.9	39.2	11.7	1.8	47.3	39.2	13.6	2.63	40.66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7.1	37.1	45.5	9.3	1.1	44.1	45.5	10.4	2.60	40.07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6.8	39.3	42.5	10.4	1.0	46.1	42.5	11.4	2.60	39.88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8.7	37.8	41.9	9.9	1.7	46.5	41.9	11.6	2.58	39.53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4.4	28.9	44.4	13.3	8.9	33.3	44.4	22.2	2.93	48.33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6.0	36.0	44.0	10.7	3.3	42.0	44.0	14.0	2.69	42.33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9.3	33.0	47.4	9.3	1.0	42.3	47.4	10.3	2.60	39.95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6.5	38.7	41.9	9.7	3.2	45.2	41.9	12.9	2.65	41.13
	전문가 의견	80	6.3	40.0	42.5	11.3	0.0	46.3	42.5	11.3	2.59	39.69
	방송보도 (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7.0	36.6	45.4	10.6	.5	43.5	45.4	11.1	2.61	40.27
	주변 사람의 의견	62	8.1	27.4	50.0	9.7	4.8	35.5	50.0	14.5	2.76	43.95
	정부 보도 자료	32	6.3	68.8	21.9	0.0	3.1	75.0	21.9	3.1	2.25	31.25
	기타(구체적으로)	4	0.0	25.0	75.0	0.0	0.0	25.0	75.0	0.0	2.75	43.75

1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 제조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9.0	40.6	40.2	9.3	.9	49.6	40.2	10.2	2.52	38.11
성별	남자	559	7.3	39.7	40.3	11.3	1.4	47.0	40.3	12.7	2.60	39.94
	여자	541	10.7	41.6	40.1	7.2	.4	52.3	40.1	7.6	2.45	36.23
연령	20대	200	14.0	42.0	33.0	9.0	2.0	56.0	33.0	11.0	2.43	35.75
	30대	241	7.9	38.6	42.7	10.4	.4	46.5	42.7	10.8	2.57	39.21
	40대	275	7.6	38.5	42.2	10.9	.7	46.2	42.2	11.6	2.59	39.64
	50대	245	7.8	43.7	39.6	8.2	.8	51.4	39.6	9.0	2.51	37.65
	60대	139	8.6	41.0	43.2	6.5	.7	49.6	43.2	7.2	2.50	37.41
거주 지역	서울	229	4.8	38.9	38.9	15.7	1.7	43.7	38.9	17.5	2.71	42.69
	부산	79	7.6	29.1	49.4	13.9	0.0	36.7	49.4	13.9	2.70	42.41
	대구	54	7.4	37.0	46.3	9.3	0.0	44.4	46.3	9.3	2.57	39.35
	인천	64	15.6	45.3	32.8	6.3	0.0	60.9	32.8	6.3	2.30	32.42
	광주	30	13.3	43.3	36.7	6.7	0.0	56.7	36.7	6.7	2.37	34.17
	대전	32	15.6	31.3	34.4	18.8	0.0	46.9	34.4	18.8	2.56	39.06
	경기	265	9.8	39.2	45.3	5.3	.4	49.1	45.3	5.7	2.47	36.79
	강원	32	12.5	43.8	34.4	6.3	3.1	56.3	34.4	9.4	2.44	35.94
	충청도	75	6.7	52.0	36.0	4.0	1.3	58.7	36.0	5.3	2.41	35.33
	전라도	76	13.2	38.2	39.5	7.9	1.3	51.3	39.5	9.2	2.46	36.51
	경상도	126	7.1	49.2	35.7	7.1	.8	56.3	35.7	7.9	2.45	36.31
	기타	38	13.2	39.5	34.2	10.5	2.6	52.6	34.2	13.2	2.50	37.50
결혼 여부	미혼	342	11.7	39.5	38.9	9.4	.6	51.2	38.9	9.9	2.48	36.92
	기혼	758	7.8	41.2	40.8	9.2	1.1	48.9	40.8	10.3	2.55	38.65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17.9	33.3	41.0	6.4	1.3	51.3	41.0	7.7	2.40	34.94
	2명	175	8.0	44.6	38.9	8.6	0.0	52.6	38.9	8.6	2.48	37.00
	3명	295	5.8	43.4	41.0	8.8	1.0	49.2	41.0	9.8	2.56	38.98
	4명	435	9.0	40.2	39.1	10.6	1.1	49.2	39.1	11.7	2.55	38.68
	5명이상	117	12.8	34.2	43.6	8.5	.9	47.0	43.6	9.4	2.50	37.61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9.5	41.5	40.1	8.5	.5	50.9	40.1	9.0	2.49	37.27
	1명	166	7.8	37.3	37.3	15.7	1.8	45.2	37.3	17.5	2.66	41.57
	2명이상	121	7.4	39.7	44.6	5.8	2.5	47.1	44.6	8.3	2.56	39.05
직업	화이트 칼라	486	8.4	41.2	39.7	9.7	1.0	49.6	39.7	10.7	2.54	38.43
	블루 칼라	106	11.3	38.7	38.7	10.4	.9	50.0	38.7	11.3	2.51	37.74
	자영업	132	6.1	36.4	47.0	9.1	1.5	42.4	47.0	10.6	2.64	40.91
	학생	85	10.6	43.5	34.1	10.6	1.2	54.1	34.1	11.8	2.48	37.06
	주부	208	10.6	42.8	38.0	8.2	.5	53.4	38.0	8.7	2.45	36.30
	무직/퇴직	68	8.8	44.1	39.7	7.4	0.0	52.9	39.7	7.4	2.46	36.40
	기타	15	6.7	13.3	73.3	6.7	0.0	20.0	73.3	6.7	2.80	45.00
학력	고졸이하	263	10.3	42.2	37.6	9.1	.8	52.5	37.6	9.9	2.48	36.98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1.7	39.0	36.4	11.7	1.3	50.6	36.4	13.0	2.52	37.99
	전문대졸	115	11.3	45.2	36.5	6.1	.9	56.5	36.5	7.0	2.40	35.00
	대졸이상	645	7.8	39.4	42.3	9.6	.9	47.1	42.3	10.5	2.57	39.15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3.2	44.4	38.9	2.8	.7	57.6	38.9	3.5	2.33	33.33
	200~400만원 미만	408	9.1	41.2	38.7	10.3	.7	50.2	38.7	11.0	2.52	38.11
	400~600만원 미만	355	7.9	40.0	40.3	11.3	.6	47.9	40.3	11.8	2.57	39.15
	600만원 이상	193	7.8	37.8	44.0	8.3	2.1	45.6	44.0	10.4	2.59	39.77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 (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7.6	36.9	42.9	12.1	.5	44.4	42.9	12.6	2.61	40.28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8.4	40.1	41.0	9.9	.6	48.5	41.0	10.5	2.54	38.55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9.0	41.1	40.6	8.7	.6	50.1	40.6	9.3	2.51	37.71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10.1	40.9	39.6	8.7	.7	51.0	39.6	9.4	2.49	37.25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9.3	36.6	42.4	9.9	1.7	45.9	42.4	11.6	2.58	39.53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4.4	24.4	33.3	28.9	8.9	28.9	33.3	37.8	3.13	53.33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6.0	41.3	40.0	10.7	2.0	47.3	40.0	12.7	2.61	40.33
	기타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1.00	0.0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9.3	45.4	34.0	10.8	.5	54.6	34.0	11.3	2.48	36.98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0.5	45.2	31.5	9.7	3.2	55.6	31.5	12.9	2.50	37.50
	전문가 의견	80	7.5	45.0	36.3	10.0	1.3	52.5	36.3	11.3	2.53	38.13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8.3	39.1	44.9	7.5	.3	47.4	44.9	7.8	2.52	38.12
	주변 사람의 의견	62	9.7	22.6	41.9	22.6	3.2	32.3	41.9	25.8	2.87	46.77
	정부 보도 자료	32	18.8	50.0	25.0	6.3	0.0	68.8	25.0	6.3	2.19	29.69
	기타(구체적으로)	4	0.0	25.0	75.0	0.0	0.0	25.0	75.0	0.0	2.75	43.75

1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 유통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7.7	39.5	43.5	8.5	.8	47.2	43.5	9.3	2.55	38.80
성별	남자	559	7.7	38.5	42.8	10.0	1.1	46.2	42.8	11.1	2.58	39.58
	여자	541	7.8	40.5	44.4	6.8	.6	48.2	44.4	7.4	2.52	37.99
연령	20대	200	11.0	33.0	44.0	11.0	1.0	44.0	44.0	12.0	2.58	39.50
	30대	241	6.2	37.8	48.5	7.1	.4	44.0	48.5	7.5	2.58	39.42
	40대	275	5.1	40.0	45.1	8.7	1.1	45.1	45.1	9.8	2.61	40.18
	50대	245	9.4	45.3	38.4	6.1	.8	54.7	38.4	6.9	2.44	35.92
	60대	139	7.9	40.3	40.3	10.8	.7	48.2	40.3	11.5	2.56	39.03
거주 지역	서울	229	4.4	41.9	42.4	9.6	1.7	46.3	42.4	11.4	2.62	40.61
	부산	79	2.5	32.9	55.7	8.9	0.0	35.4	55.7	8.9	2.71	42.72
	대구	54	5.6	44.4	40.7	9.3	0.0	50.0	40.7	9.3	2.54	38.43
	인천	64	12.5	32.8	50.0	4.7	0.0	45.3	50.0	4.7	2.47	36.72
	광주	30	6.7	50.0	30.0	13.3	0.0	56.7	30.0	13.3	2.50	37.50
	대전	32	15.6	28.1	50.0	6.3	0.0	43.8	50.0	6.3	2.47	36.72
	경기	265	7.5	43.0	42.3	6.0	1.1	50.6	42.3	7.2	2.50	37.55
	강원	32	6.3	43.8	43.8	6.3	0.0	50.0	43.8	6.3	2.50	37.50
	충청도	75	5.3	45.3	37.3	10.7	1.3	50.7	37.3	12.0	2.57	39.33
	전라도	76	18.4	31.6	38.2	11.8	0.0	50.0	38.2	11.8	2.43	35.86
	경상도	126	7.1	38.9	46.0	7.9	0.0	46.0	46.0	7.9	2.55	38.69
	기타	38	15.8	21.1	47.4	13.2	2.6	36.8	47.4	15.8	2.66	41.45
결혼 여부	미혼	342	7.6	35.7	47.1	9.6	0.0	43.3	47.1	9.6	2.59	39.69
	기혼	758	7.8	41.2	42.0	7.9	1.2	48.9	42.0	9.1	2.54	38.39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12.8	33.3	44.9	9.0	0.0	46.2	44.9	9.0	2.50	37.50
	2명	175	5.7	44.0	39.4	10.3	.6	49.7	39.4	10.9	2.56	39.00
	3명	295	6.1	41.7	44.7	7.1	.3	47.8	44.7	7.5	2.54	38.47
	4명	435	8.7	36.6	44.8	8.5	1.4	45.3	44.8	9.9	2.57	39.31
	5명이상	117	7.7	41.9	41.0	8.5	.9	49.6	41.0	9.4	2.53	38.25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7.7	40.3	42.9	8.9	.1	48.1	42.9	9.0	2.53	38.31
	1명	166	8.4	36.7	44.6	7.2	3.0	45.2	44.6	10.2	2.60	39.91
	2명이상	121	6.6	37.2	46.3	7.4	2.5	43.8	46.3	9.9	2.62	40.50
직업	화이트 칼라	486	7.6	43.8	39.7	8.0	.8	51.4	39.7	8.8	2.51	37.65
	블루 칼라	106	8.5	38.7	48.1	3.8	.9	47.2	48.1	4.7	2.50	37.50
	자영업	132	5.3	32.6	49.2	12.1	.8	37.9	49.2	12.9	2.70	42.61
	학생	85	8.2	36.5	44.7	10.6	0.0	44.7	44.7	10.6	2.58	39.41
	주부	208	9.1	37.5	44.2	7.7	1.4	46.6	44.2	9.1	2.55	38.70
	무직/퇴직	68	8.8	33.8	48.5	8.8	0.0	42.6	48.5	8.8	2.57	39.34
	기타	15	0.0	33.3	46.7	20.0	0.0	33.3	46.7	20.0	2.87	46.67
학력	고졸이하	263	9.9	36.5	41.4	11.0	1.1	46.4	41.4	12.2	2.57	39.26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9.1	35.1	45.5	10.4	0.0	44.2	45.5	10.4	2.57	39.29
	전문대졸	115	5.2	54.8	33.0	7.0	0.0	60.0	33.0	7.0	2.42	35.43
	대졸이상	645	7.1	38.4	46.0	7.4	.9	45.6	46.0	8.4	2.57	39.15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1.1	36.8	43.1	9.0	0.0	47.9	43.1	9.0	2.50	37.50
	200~400만원 미만	408	7.8	41.2	41.9	8.6	.5	49.0	41.9	9.1	2.53	38.17
	400~600만원 미만	355	7.3	38.0	43.9	9.9	.8	45.4	43.9	10.7	2.59	39.72
	600만원 이상	193	5.7	40.4	46.6	5.2	2.1	46.1	46.6	7.3	2.58	39.38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9.6	42.4	38.9	8.6	.5	52.0	38.9	9.1	2.48	36.99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6.9	38.9	46.1	7.2	.9	45.8	46.1	8.1	2.56	39.08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6.9	39.5	44.4	8.6	.6	46.4	44.4	9.2	2.56	39.11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8.1	39.5	43.8	8.1	.6	47.5	43.8	8.7	2.54	38.40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9.3	43.6	40.1	5.8	1.2	52.9	40.1	7.0	2.46	36.48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8.9	22.2	44.4	17.8	6.7	31.1	44.4	24.4	2.91	47.78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4.0	45.3	41.3	6.7	2.7	49.3	41.3	9.3	2.59	39.67
	기타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1.00	0.0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8.8	41.8	40.2	8.8	.5	50.5	40.2	9.3	2.51	37.63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0.5	37.9	42.7	5.6	3.2	48.4	42.7	8.9	2.53	38.31
	전문가 의견	80	7.5	42.5	41.3	8.8	0.0	50.0	41.3	8.8	2.51	37.81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6.3	39.2	45.9	8.3	.3	45.5	45.9	8.6	2.57	39.28
	주변 사람의 의견	62	8.1	29.0	43.5	16.1	3.2	37.1	43.5	19.4	2.77	44.35
	정부 보도 자료	32	18.8	50.0	25.0	6.3	0.0	68.8	25.0	6.3	2.19	29.69
	기타(구체적으로)	4	0.0	25.0	75.0	0.0	0.0	25.0	75.0	0.0	2.75	43.75

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 소비(판매)과정의 안전인식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6.1	31.8	48.8	11.6	1.6	37.9	48.8	13.3	2.71	42.73
성별	남자	559	5.5	30.1	48.7	14.0	1.8	35.6	48.7	15.7	2.76	44.10
	여자	541	6.7	33.6	49.0	9.2	1.5	40.3	49.0	10.7	2.65	41.31
연령	20대	200	11.0	25.0	46.5	15.0	2.5	36.0	46.5	17.5	2.73	43.25
	30대	241	5.0	31.5	51.9	10.8	.8	36.5	51.9	11.6	2.71	42.74
	40대	275	2.9	35.6	46.2	12.4	2.9	38.5	46.2	15.3	2.77	44.18
	50대	245	5.7	35.1	51.0	7.3	.8	40.8	51.0	8.2	2.62	40.61
	60대	139	7.9	28.8	48.2	14.4	.7	36.7	48.2	15.1	2.71	42.81
거주 지역	서울	229	3.9	33.2	42.4	16.6	3.9	37.1	42.4	20.5	2.83	45.85
	부산	79	2.5	24.1	63.3	10.1	0.0	26.6	63.3	10.1	2.81	45.25
	대구	54	7.4	40.7	40.7	9.3	1.9	48.1	40.7	11.1	2.57	39.35
	인천	64	10.9	25.0	57.8	6.3	0.0	35.9	57.8	6.3	2.59	39.84
	광주	30	3.3	40.0	33.3	20.0	3.3	43.3	33.3	23.3	2.80	45.00
	대전	32	15.6	31.3	34.4	18.8	0.0	46.9	34.4	18.8	2.56	39.06
	경기	265	6.0	33.2	52.8	6.8	1.1	39.2	52.8	7.9	2.64	40.94
	강원	32	3.1	31.3	53.1	9.4	3.1	34.4	53.1	12.5	2.78	44.53
	충청도	75	1.3	36.0	52.0	9.3	1.3	37.3	52.0	10.7	2.73	43.33
	전라도	76	13.2	30.3	46.1	10.5	0.0	43.4	46.1	10.5	2.54	38.49
	경상도	126	6.3	27.0	50.0	15.9	.8	33.3	50.0	16.7	2.78	44.44
	기타	38	7.9	34.2	42.1	13.2	2.6	42.1	42.1	15.8	2.68	42.11
결혼 여부	미혼	342	7.0	29.8	47.7	14.3	1.2	36.8	47.7	15.5	2.73	43.20
	기혼	758	5.7	32.7	49.3	10.4	1.8	38.4	49.3	12.3	2.70	42.51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9.0	28.2	48.7	14.1	0.0	37.2	48.7	14.1	2.68	41.99
	2명	175	5.1	35.4	46.9	11.4	1.1	40.6	46.9	12.6	2.68	42.00
	3명	295	4.4	32.5	49.2	12.2	1.7	36.9	49.2	13.9	2.74	43.56
	4명	435	6.7	29.7	50.6	11.5	1.6	36.3	50.6	13.1	2.72	42.93
	5명이상	117	7.7	35.0	44.4	9.4	3.4	42.7	44.4	12.8	2.66	41.45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6.4	30.4	50.4	11.8	1.0	36.8	50.4	12.8	2.71	42.65
	1명	166	6.0	33.7	43.4	13.3	3.6	39.8	43.4	16.9	2.75	43.67
	2명이상	121	4.1	38.8	45.5	8.3	3.3	43.0	45.5	11.6	2.68	41.94
직업	화이트 칼라	486	6.2	33.5	47.1	11.5	1.6	39.7	47.1	13.2	2.69	42.23
	블루 칼라	106	8.5	33.0	47.2	10.4	.9	41.5	47.2	11.3	2.62	40.57
	자영업	132	1.5	28.8	53.0	14.4	2.3	30.3	53.0	16.7	2.87	46.78
	학생	85	8.2	28.2	45.9	15.3	2.4	36.5	45.9	17.6	2.75	43.82
	주부	208	5.3	33.7	49.0	10.1	1.9	38.9	49.0	12.0	2.70	42.43
	무직/퇴직	68	11.8	25.0	54.4	8.8	0.0	36.8	54.4	8.8	2.60	40.07
	기타	15	0.0	20.0	66.7	13.3	0.0	20.0	66.7	13.3	2.93	48.33
학력	고졸이하	263	7.6	28.1	52.1	10.6	1.5	35.7	52.1	12.2	2.70	42.59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0.4	22.1	44.2	20.8	2.6	32.5	44.2	23.4	2.83	45.78
	전문대졸	115	6.1	38.3	46.1	9.6	0.0	44.3	46.1	9.6	2.59	39.78
	대졸이상	645	5.0	33.3	48.5	11.3	1.9	38.3	48.5	13.2	2.72	42.95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1.1	33.3	44.4	10.4	.7	44.4	44.4	11.1	2.56	39.06
	200~400만원 미만	408	5.9	33.8	46.8	12.7	.7	39.7	46.8	13.5	2.69	42.16
	400~600만원 미만	355	4.5	29.3	53.0	10.1	3.1	33.8	53.0	13.2	2.78	44.51
	600만원 이상	193	5.7	31.1	48.7	13.0	1.6	36.8	48.7	14.5	2.74	43.39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4.0	30.3	48.0	15.2	2.5	34.3	48.0	17.7	2.82	45.45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4.5	30.4	51.2	11.7	2.1	34.9	51.2	13.9	2.77	44.13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5.4	31.8	49.5	11.7	1.6	37.2	49.5	13.3	2.72	43.06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6.4	31.8	49.0	11.4	1.4	38.2	49.0	12.9	2.70	42.45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8.7	29.7	47.7	11.0	2.9	38.4	47.7	14.0	2.70	42.44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4.4	22.2	40.0	26.7	6.7	26.7	40.0	33.3	3.09	52.22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4.0	32.0	50.7	11.3	2.0	36.0	50.7	13.3	2.75	43.83
	기타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1.00	0.0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3.1	34.5	50.5	9.3	2.6	37.6	50.5	11.9	2.74	43.43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8.9	34.7	41.9	12.9	1.6	43.5	41.9	14.5	2.64	40.93
	전문가 의견	80	5.0	42.5	38.8	13.8	0.0	47.5	38.8	13.8	2.61	40.31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6.3	28.8	52.3	11.3	1.3	35.1	52.3	12.6	2.73	43.13
	주변 사람의 의견	62	9.7	30.6	37.1	17.7	4.8	40.3	37.1	22.6	2.77	44.35
	정부 보도 자료	32	6.3	37.5	43.8	12.5	0.0	43.8	43.8	12.5	2.63	40.63
	기타(구체적으로)	4	0.0	25.0	75.0	0.0	0.0	25.0	75.0	0.0	2.75	43.75

2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수입식품의 안전인식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15.8	49.6	27.6	5.8	1.1	65.5	27.6	6.9	2.27	31.68
성별	남자	559	14.5	49.7	26.8	7.7	1.3	64.2	26.8	8.9	2.31	32.87
	여자	541	17.2	49.5	28.5	3.9	.9	66.7	28.5	4.8	2.22	30.45
연령	20대	200	15.5	43.5	29.5	9.5	2.0	59.0	29.5	11.5	2.39	34.75
	30대	241	12.9	43.2	38.2	5.0	.8	56.0	38.2	5.8	2.38	34.44
	40대	275	14.5	53.1	24.7	6.2	1.5	67.6	24.7	7.6	2.27	31.73
	50대	245	19.6	57.1	19.6	3.7	0.0	76.7	19.6	3.7	2.07	26.84
	60대	139	17.3	49.6	26.6	5.0	1.4	66.9	26.6	6.5	2.24	30.94
거주 지역	서울	229	14.0	51.1	26.2	7.9	.9	65.1	26.2	8.7	2.31	32.64
	부산	79	11.4	45.6	38.0	5.1	0.0	57.0	38.0	5.1	2.37	34.18
	대구	54	13.0	55.6	24.1	5.6	1.9	68.5	24.1	7.4	2.28	31.94
	인천	64	15.6	48.4	28.1	4.7	3.1	64.1	28.1	7.8	2.31	32.81
	광주	30	20.0	46.7	26.7	6.7	0.0	66.7	26.7	6.7	2.20	30.00
	대전	32	18.8	34.4	28.1	15.6	3.1	53.1	28.1	18.8	2.50	37.50
	경기	265	15.1	53.6	26.4	4.2	.8	68.7	26.4	4.9	2.22	30.47
	강원	32	18.8	40.6	31.3	9.4	0.0	59.4	31.3	9.4	2.31	32.81
	충청도	75	12.0	49.3	34.7	2.7	1.3	61.3	34.7	4.0	2.32	33.00
	전라도	76	19.7	44.7	28.9	6.6	0.0	64.5	28.9	6.6	2.22	30.59
	경상도	126	23.0	49.2	21.4	4.8	1.6	72.2	21.4	6.3	2.13	28.17
	기타	38	13.2	50.0	28.9	5.3	2.6	63.2	28.9	7.9	2.34	33.55
결혼 여부	미혼	342	14.9	44.4	32.2	7.3	1.2	59.4	32.2	8.5	2.35	33.85
	기혼	758	16.2	52.0	25.6	5.1	1.1	68.2	25.6	6.2	2.23	30.71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24.4	41.0	28.2	5.1	1.3	65.4	28.2	6.4	2.18	29.49
	2명	175	13.7	50.3	27.4	7.4	1.1	64.0	27.4	8.6	2.32	33.00
	3명	295	13.6	54.9	24.7	5.8	1.0	68.5	24.7	6.8	2.26	31.44
	4명	435	15.9	47.8	29.9	5.5	.9	63.7	29.9	6.4	2.28	31.95
	5명이상	117	18.8	47.9	26.5	5.1	1.7	66.7	26.5	6.8	2.23	30.77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6.1	50.1	27.6	5.4	.9	66.2	27.6	6.3	2.25	31.21
	1명	166	12.7	52.4	25.9	7.8	1.2	65.1	25.9	9.0	2.33	33.13
	2명이상	121	18.2	43.0	30.6	5.8	2.5	61.2	30.6	8.3	2.31	32.85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3.8	51.6	28.4	5.6	.6	65.4	28.4	6.2	2.28	31.89
	블루 칼라	106	17.9	46.2	27.4	7.5	.9	64.2	27.4	8.5	2.27	31.84
	자영업	132	18.2	49.2	25.0	6.1	1.5	67.4	25.0	7.6	2.23	30.87
	학생	85	12.9	42.4	32.9	9.4	2.4	55.3	32.9	11.8	2.46	36.47
	주부	208	17.8	51.4	25.5	4.3	1.0	69.2	25.5	5.3	2.19	29.81
	무직/퇴직	68	22.1	42.6	26.5	5.9	2.9	64.7	26.5	8.8	2.25	31.25
	기타	15	6.7	60.0	33.3	0.0	0.0	66.7	33.3	0.0	2.27	31.67
학력	고졸이하	263	20.9	46.4	25.5	6.1	1.1	67.3	25.5	7.2	2.20	30.04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1.7	42.9	35.1	7.8	2.6	54.5	35.1	10.4	2.47	36.69
	전문대졸	115	16.5	52.2	27.0	4.3	0.0	68.7	27.0	4.3	2.19	29.78
	대졸이상	645	14.1	51.3	27.8	5.7	1.1	65.4	27.8	6.8	2.28	32.09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21.5	48.6	22.9	6.9	0.0	70.1	22.9	6.9	2.15	28.82
	200~400만원 미만	408	16.9	46.3	30.4	4.9	1.5	63.2	30.4	6.4	2.28	31.92
	400~600만원 미만	355	11.8	53.2	26.8	6.8	1.4	65.1	26.8	8.2	2.33	33.17
	600만원 이상	193	16.6	50.8	26.9	5.2	.5	67.4	26.9	5.7	2.22	30.57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5.2	51.5	26.3	5.6	1.5	66.7	26.3	7.1	2.27	31.69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14.8	50.9	26.5	6.9	.9	65.7	26.5	7.8	2.28	32.08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15.8	50.5	27.0	5.5	1.2	66.3	27.0	6.7	2.26	31.46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17.3	50.4	25.7	5.6	.9	67.8	25.7	6.5	2.22	30.56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20.3	44.8	26.2	8.1	.6	65.1	26.2	8.7	2.24	30.96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11.1	35.6	28.9	20.0	4.4	46.7	28.9	24.4	2.71	42.78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14.0	47.3	28.0	9.3	1.3	61.3	28.0	10.7	2.37	34.17
	기타	2	50.0	0.0	50.0	0.0	0.0	50.0	50.0	0.0	2.00	25.0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16.0	48.5	28.4	5.7	1.5	64.4	28.4	7.2	2.28	32.09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9.4	39.5	29.8	9.7	1.6	58.9	29.8	11.3	2.35	33.67
	전문가 의견	80	15.0	50.0	25.0	8.8	1.3	65.0	25.0	10.0	2.31	32.81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15.2	52.3	27.0	4.8	.7	67.5	27.0	5.5	2.23	30.84
	주변 사람의 의견	62	12.9	41.9	35.5	6.5	3.2	54.8	35.5	9.7	2.45	36.29
	정부 보도 자료	32	21.9	59.4	15.6	3.1	0.0	81.3	15.6	3.1	2.00	25.00
	기타(구체적으로)	4	0.0	50.0	50.0	0.0	0.0	50.0	50.0	0.0	2.50	37.50

2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전반적인 식품안전인식

		사례수	매우 위험하다	위험 하다	보통 이다	안전 하다	매우 안전하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3.7	30.9	55.5	9.7	.2	34.6	55.5	9.9	2.72	42.93
성별	남자	559	3.6	31.8	53.3	10.9	.4	35.4	53.3	11.3	2.73	43.16
	여자	541	3.9	29.9	57.7	8.5	0.0	33.8	57.7	8.5	2.71	42.70
연령	20대	200	6.0	32.0	53.0	8.5	.5	38.0	53.0	9.0	2.66	41.38
	30대	241	3.7	31.5	56.0	8.7	0.0	35.3	56.0	8.7	2.70	42.43
	40대	275	1.8	31.3	55.3	11.6	0.0	33.1	55.3	11.6	2.77	44.18
	50대	245	4.9	32.7	55.5	6.5	.4	37.6	55.5	6.9	2.65	41.22
	60대	139	2.2	24.5	58.3	15.1	0.0	26.6	58.3	15.1	2.86	46.58
거주 지역	서울	229	2.6	30.1	54.1	12.7	.4	32.8	54.1	13.1	2.78	44.54
	부산	79	1.3	21.5	68.4	8.9	0.0	22.8	68.4	8.9	2.85	46.20
	대구	54	1.9	37.0	50.0	11.1	0.0	38.9	50.0	11.1	2.70	42.59
	인천	64	4.7	34.4	54.7	6.3	0.0	39.1	54.7	6.3	2.63	40.63
	광주	30	10.0	40.0	33.3	16.7	0.0	50.0	33.3	16.7	2.57	39.17
	대전	32	9.4	28.1	43.8	18.8	0.0	37.5	43.8	18.8	2.72	42.97
	경기	265	2.6	32.1	59.2	6.0	0.0	34.7	59.2	6.0	2.69	42.17
	강원	32	3.1	31.3	56.3	9.4	0.0	34.4	56.3	9.4	2.72	42.97
	충청도	75	1.3	32.0	53.3	12.0	1.3	33.3	53.3	13.3	2.80	45.00
	전라도	76	7.9	31.6	56.6	3.9	0.0	39.5	56.6	3.9	2.57	39.14
	경상도	126	5.6	31.7	52.4	10.3	0.0	37.3	52.4	10.3	2.67	41.87
	기타	38	5.3	21.1	57.9	15.8	0.0	26.3	57.9	15.8	2.84	46.05
결혼 여부	미혼	342	3.8	31.0	55.8	9.4	0.0	34.8	55.8	9.4	2.71	42.69
	기혼	758	3.7	30.9	55.3	9.9	.3	34.6	55.3	10.2	2.72	43.04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7.7	33.3	51.3	7.7	0.0	41.0	51.3	7.7	2.59	39.74
	2명	175	2.9	33.7	49.1	14.3	0.0	36.6	49.1	14.3	2.75	43.71
	3명	295	1.7	30.2	59.3	8.8	0.0	31.9	59.3	8.8	2.75	43.81
	4명	435	4.6	28.5	56.8	9.9	.2	33.1	56.8	10.1	2.73	43.16
	5명이상	117	4.3	35.9	53.0	6.0	.9	40.2	53.0	6.8	2.63	40.81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3.9	29.8	57.3	9.0	0.0	33.7	57.3	9.0	2.71	42.84
	1명	166	2.4	31.3	53.0	13.3	0.0	33.7	53.0	13.3	2.77	44.28
	2명이상	121	4.1	38.0	46.3	9.9	1.7	42.1	46.3	11.6	2.67	41.74
직업	화이트 칼라	486	3.9	35.2	53.5	7.2	.2	39.1	53.5	7.4	2.65	41.15
	블루 칼라	106	5.7	29.2	49.1	15.1	.9	34.9	49.1	16.0	2.76	44.10
	자영업	132	1.5	29.5	53.8	15.2	0.0	31.1	53.8	15.2	2.83	45.64
	학생	85	3.5	29.4	55.3	11.8	0.0	32.9	55.3	11.8	2.75	43.82
	주부	208	3.4	26.0	60.1	10.6	0.0	29.3	60.1	10.6	2.78	44.47
	무직/퇴직	68	5.9	23.5	64.7	5.9	0.0	29.4	64.7	5.9	2.71	42.65
	기타	15	0.0	26.7	73.3	0.0	0.0	26.7	73.3	0.0	2.73	43.33
학력	고졸이하	263	4.9	28.1	57.0	9.9	0.0	33.1	57.0	9.9	2.72	42.97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3.9	29.9	51.9	14.3	0.0	33.8	51.9	14.3	2.77	44.16
	전문대졸	115	2.6	33.0	53.0	11.3	0.0	35.7	53.0	11.3	2.73	43.26
	대졸이상	645	3.4	31.8	55.7	8.8	.3	35.2	55.7	9.1	2.71	42.71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7.6	31.9	55.6	4.9	0.0	39.6	55.6	4.9	2.58	39.41
	200~400만원 미만	408	2.7	35.0	51.7	10.5	0.0	37.7	51.7	10.5	2.70	42.52
	400~600만원 미만	355	2.8	29.3	56.3	11.5	0.0	32.1	56.3	11.5	2.77	44.15
	600만원 이상	193	4.7	24.4	61.7	8.3	1.0	29.0	61.7	9.3	2.77	44.17

		사례수	매우 위험하다	위험 하다	보통 이다	안전 하다	매우 안전하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3.0	26.3	57.1	13.6	0.0	29.3	57.1	13.6	2.81	45.33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1.8	30.7	56.3	11.1	0.0	32.5	56.3	11.1	2.77	44.20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3.7	30.7	56.3	9.2	0.0	34.4	56.3	9.2	2.71	42.76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4.3	30.8	55.6	9.1	.1	35.1	55.6	9.2	2.70	42.49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7.0	30.2	52.9	9.9	0.0	37.2	52.9	9.9	2.66	41.42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2.2	28.9	40.0	24.4	4.4	31.1	40.0	28.9	3.00	50.00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7	30.0	56.0	12.7	.7	30.7	56.0	13.3	2.83	45.67
	기타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1.00	0.0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4.6	34.0	53.1	8.2	0.0	38.7	53.1	8.2	2.65	41.24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2.4	33.9	46.0	16.9	.8	36.3	46.0	17.7	2.80	44.96
	전문가 의견	80	1.3	33.8	55.0	10.0	0.0	35.0	55.0	10.0	2.74	43.44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3.5	29.3	58.8	8.4	0.0	32.8	58.8	8.4	2.72	43.05
	주변 사람의 의견	62	8.1	19.4	59.7	11.3	1.6	27.4	59.7	12.9	2.79	44.76
	정부 보도 자료	32	6.3	46.9	34.4	12.5	0.0	53.1	34.4	12.5	2.53	38.28
	기타(구체적으로)	4	0.0	25.0	75.0	0.0	0.0	25.0	75.0	0.0	2.75	43.75

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과거대비 현재 식품안전수준 인식정도

		사례수	매우 위험하다	위험 하다	보통 이다	안전 하다	매우 안전하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4.4	25.1	41.6	28.2	.7	29.5	41.6	28.9	2.96	48.95
성별	남자	559	3.6	24.2	40.4	30.8	1.1	27.7	40.4	31.8	3.02	50.40
	여자	541	5.2	26.1	42.9	25.5	.4	31.2	42.9	25.9	2.90	47.46
연령	20대	200	8.0	23.5	41.0	26.0	1.5	31.5	41.0	27.5	2.90	47.38
	30대	241	3.7	28.2	45.2	22.0	.8	32.0	45.2	22.8	2.88	46.99
	40대	275	2.9	28.7	37.5	30.5	.4	31.6	37.5	30.9	2.97	49.18
	50대	245	4.9	23.7	43.7	27.3	.4	28.6	43.7	27.8	2.95	48.67
	60대	139	2.2	17.3	41.0	38.8	.7	19.4	41.0	39.6	3.19	54.68
거주 지역	서울	229	3.9	25.3	37.6	31.9	1.3	29.3	37.6	33.2	3.01	50.33
	부산	79	1.3	19.0	49.4	27.8	2.5	20.3	49.4	30.4	3.11	52.85
	대구	54	5.6	24.1	48.1	22.2	0.0	29.6	48.1	22.2	2.87	46.76
	인천	64	9.4	28.1	37.5	25.0	0.0	37.5	37.5	25.0	2.78	44.53
	광주	30	3.3	33.3	40.0	23.3	0.0	36.7	40.0	23.3	2.83	45.83
	대전	32	3.1	21.9	53.1	21.9	0.0	25.0	53.1	21.9	2.94	48.44
	경기	265	4.9	24.2	46.4	23.8	.8	29.1	46.4	24.5	2.91	47.83
	강원	32	3.1	25.0	40.6	31.3	0.0	28.1	40.6	31.3	3.00	50.00
	충청도	75	4.0	26.7	37.3	30.7	1.3	30.7	37.3	32.0	2.99	49.67
	전라도	76	5.3	30.3	32.9	31.6	0.0	35.5	32.9	31.6	2.91	47.70
	경상도	126	4.0	27.0	37.3	31.7	0.0	31.0	37.3	31.7	2.97	49.21
	기타	38	2.6	15.8	47.4	34.2	0.0	18.4	47.4	34.2	3.13	53.29
결혼 여부	미혼	342	5.8	24.3	43.0	26.6	.3	30.1	43.0	26.9	2.91	47.81
	기혼	758	3.7	25.5	41.0	28.9	.9	29.2	41.0	29.8	2.98	49.47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7.7	21.8	50.0	20.5	0.0	29.5	50.0	20.5	2.83	45.83
	2명	175	4.6	24.0	47.4	23.4	.6	28.6	47.4	24.0	2.91	47.86
	3명	295	3.1	24.1	39.3	32.9	.7	27.1	39.3	33.6	3.04	51.02
	4명	435	4.6	24.6	39.3	30.6	.9	29.2	39.3	31.5	2.99	49.66
	5명이상	117	4.3	33.3	41.9	19.7	.9	37.6	41.9	20.5	2.79	44.87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4.6	22.6	43.4	29.2	.2	27.2	43.4	29.4	2.98	49.48
	1명	166	4.8	29.5	33.7	30.1	1.8	34.3	33.7	31.9	2.95	48.64
	2명이상	121	2.5	35.5	40.5	19.0	2.5	38.0	40.5	21.5	2.83	45.87
직업	화이트 칼라	486	4.7	27.2	43.2	24.1	.8	31.9	43.2	24.9	2.89	47.27
	블루 칼라	106	4.7	21.7	43.4	28.3	1.9	26.4	43.4	30.2	3.01	50.24
	자영업	132	3.8	31.8	31.8	31.8	.8	35.6	31.8	32.6	2.94	48.48
	학생	85	4.7	20.0	38.8	36.5	0.0	24.7	38.8	36.5	3.07	51.76
	주부	208	2.9	23.1	42.3	31.3	.5	26.0	42.3	31.7	3.03	50.84
	무직/퇴직	68	7.4	19.1	45.6	27.9	0.0	26.5	45.6	27.9	2.94	48.53
	기타	15	0.0	6.7	53.3	40.0	0.0	6.7	53.3	40.0	3.33	58.33
학력	고졸이하	263	5.7	23.6	39.2	31.2	.4	29.3	39.2	31.6	2.97	49.24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3.9	19.5	40.3	36.4	0.0	23.4	40.3	36.4	3.09	52.27
	전문대졸	115	2.6	26.1	42.6	27.8	.9	28.7	42.6	28.7	2.98	49.57
	대졸이상	645	4.2	26.2	42.6	26.0	.9	30.4	42.6	27.0	2.93	48.33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9.7	31.9	41.7	16.0	.7	41.7	41.7	16.7	2.66	41.49
	200~400만원 미만	408	2.9	27.9	40.9	27.9	.2	30.9	40.9	28.2	2.95	48.65
	400~600만원 미만	355	3.7	22.0	40.8	32.7	.8	25.6	40.8	33.5	3.05	51.27
	600만원 이상	193	4.7	19.7	44.6	29.5	1.6	24.4	44.6	31.1	3.04	50.91

		사례수	매우 위험하다	위험 하다	보통 이다	안전 하다	매우 안전하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3.0	23.7	38.4	32.3	2.5	26.8	38.4	34.8	3.08	51.89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3.0	23.8	39.2	33.4	.6	26.8	39.2	34.0	3.05	51.20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4.5	24.4	39.6	30.7	.7	28.9	39.6	31.5	2.99	49.67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4.5	24.0	40.8	30.1	.7	28.5	40.8	30.8	2.99	49.64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5.8	23.3	45.3	24.4	1.2	29.1	45.3	25.6	2.92	47.97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4.4	20.0	40.0	31.1	4.4	24.4	40.0	35.6	3.11	52.78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2.0	26.0	41.3	28.0	2.7	28.0	41.3	30.7	3.03	50.83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5.2	26.8	46.4	20.6	1.0	32.0	46.4	21.6	2.86	46.39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5.6	25.0	37.9	30.6	.8	30.6	37.9	31.5	2.96	48.99
	전문가 의견	80	5.0	21.3	47.5	26.3	0.0	26.3	47.5	26.3	2.95	48.75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3.3	24.3	40.9	31.0	.5	27.6	40.9	31.5	3.01	50.25
	주변 사람의 의견	62	9.7	21.0	43.5	24.2	1.6	30.6	43.5	25.8	2.87	46.77
	정부 보도 자료	32	3.1	43.8	25.0	25.0	3.1	46.9	25.0	28.1	2.81	45.31
	기타(구체적으로)	4	0.0	50.0	25.0	25.0	0.0	50.0	25.0	25.0	2.75	43.75

2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미래의 식품안전수준 인식정도

		사례수	매우 위험해질 것이다	위험 해질 것이다	보통 이다	안전해질 것이다	매우 안전해질 것이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3.5	22.0	34.5	38.4	1.7	25.5	34.5	40.1	3.13	53.23
성별	남자	559	2.9	19.9	33.3	41.7	2.3	22.7	33.3	44.0	3.21	55.19
	여자	541	4.1	24.2	35.7	34.9	1.1	28.3	35.7	36.0	3.05	51.20
연령	20대	200	6.5	20.5	42.0	30.0	1.0	27.0	42.0	31.0	2.99	49.63
	30대	241	2.5	24.1	43.6	29.0	.8	26.6	43.6	29.9	3.02	50.41
	40대	275	2.9	24.4	31.3	39.6	1.8	27.3	31.3	41.5	3.13	53.27
	50대	245	3.7	20.0	29.4	46.1	.8	23.7	29.4	46.9	3.20	55.10
	60대	139	1.4	19.4	23.0	50.4	5.8	20.9	23.0	56.1	3.40	59.89
거주 지역	서울	229	3.5	22.3	31.0	42.4	.9	25.8	31.0	43.2	3.15	53.71
	부산	79	2.5	22.8	34.2	38.0	2.5	25.3	34.2	40.5	3.15	53.80
	대구	54	5.6	22.2	38.9	31.5	1.9	27.8	38.9	33.3	3.02	50.46
	인천	64	3.1	23.4	45.3	28.1	0.0	26.6	45.3	28.1	2.98	49.61
	광주	30	0.0	36.7	20.0	40.0	3.3	36.7	20.0	43.3	3.10	52.50
	대전	32	3.1	15.6	34.4	43.8	3.1	18.8	34.4	46.9	3.28	57.03
	경기	265	3.4	24.2	36.6	35.1	.8	27.5	36.6	35.8	3.06	51.42
	강원	32	0.0	9.4	40.6	43.8	6.3	9.4	40.6	50.0	3.47	61.72
	충청도	75	2.7	24.0	26.7	41.3	5.3	26.7	26.7	46.7	3.23	55.67
	전라도	76	7.9	19.7	28.9	42.1	1.3	27.6	28.9	43.4	3.09	52.30
	경상도	126	3.2	20.6	35.7	38.9	1.6	23.8	35.7	40.5	3.15	53.77
	기타	38	2.6	10.5	44.7	39.5	2.6	13.2	44.7	42.1	3.29	57.24
결혼 여부	미혼	342	5.6	21.6	39.5	32.7	.6	27.2	39.5	33.3	3.01	50.29
	기혼	758	2.5	22.2	32.2	40.9	2.2	24.7	32.2	43.1	3.18	54.55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5.1	26.9	46.2	21.8	0.0	32.1	46.2	21.8	2.85	46.15
	2명	175	3.4	17.7	40.0	37.1	1.7	21.1	40.0	38.9	3.16	54.00
	3명	295	2.7	25.1	27.5	42.7	2.0	27.8	27.5	44.7	3.16	54.07
	4명	435	3.4	20.2	34.0	40.5	1.8	23.7	34.0	42.3	3.17	54.25
	5명이상	117	4.3	23.9	37.6	32.5	1.7	28.2	37.6	34.2	3.03	50.85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3.6	21.0	34.7	39.2	1.5	24.6	34.7	40.7	3.14	53.51
	1명	166	4.2	25.9	30.1	38.6	1.2	30.1	30.1	39.8	3.07	51.66
	2명이상	121	1.7	23.1	38.8	32.2	4.1	24.8	38.8	36.4	3.14	53.51
직업	화이트 칼라	486	2.5	24.7	33.7	37.4	1.6	27.2	33.7	39.1	3.11	52.78
	블루 칼라	106	5.7	21.7	34.0	36.8	1.9	27.4	34.0	38.7	3.08	51.89
	자영업	132	1.5	22.7	28.0	45.5	2.3	24.2	28.0	47.7	3.24	56.06
	학생	85	7.1	20.0	43.5	28.2	1.2	27.1	43.5	29.4	2.96	49.12
	주부	208	2.4	18.3	37.0	40.4	1.9	20.7	37.0	42.3	3.21	55.29
	무직/퇴직	68	8.8	17.6	33.8	38.2	1.5	26.5	33.8	39.7	3.06	51.47
	기타	15	6.7	13.3	33.3	46.7	0.0	20.0	33.3	46.7	3.20	55.00
학력	고졸이하	263	6.1	20.2	32.3	39.5	1.9	26.2	32.3	41.4	3.11	52.76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5.2	18.2	44.2	31.2	1.3	23.4	44.2	32.5	3.05	51.30
	전문대졸	115	.9	22.6	32.2	41.7	2.6	23.5	32.2	44.3	3.23	55.65
	대졸이상	645	2.6	23.1	34.6	38.1	1.6	25.7	34.6	39.7	3.13	53.22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9.7	22.9	41.7	25.0	.7	32.6	41.7	25.7	2.84	46.01
	200~400만원 미만	408	2.9	24.0	34.3	36.5	2.2	27.0	34.3	38.7	3.11	52.76
	400~600만원 미만	355	2.5	20.0	31.8	43.9	1.7	22.5	31.8	45.6	3.22	55.56
	600만원 이상	193	1.6	20.7	34.2	42.0	1.6	22.3	34.2	43.5	3.21	55.31

		사례수	매우 위험해질 것이다	위험 해질 것이다	보통 이다	안전해질 것이다	매우 안전해질 것이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2.5	19.7	29.3	44.9	3.5	22.2	29.3	48.5	3.27	56.82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1.5	19.3	32.5	45.2	1.5	20.8	32.5	46.7	3.26	56.48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3.6	20.7	32.1	41.9	1.8	24.3	32.1	43.7	3.18	54.40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4.0	21.5	32.2	39.9	2.3	25.6	32.2	42.2	3.15	53.72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2.3	25.6	33.7	37.2	1.2	27.9	33.7	38.4	3.09	52.33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2.2	28.9	35.6	26.7	6.7	31.1	35.6	33.3	3.07	51.67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1.3	20.0	37.3	40.7	.7	21.3	37.3	41.3	3.19	54.83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5.2	21.1	40.2	33.0	.5	26.3	40.2	33.5	3.03	50.64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3.2	25.8	31.5	37.1	2.4	29.0	31.5	39.5	3.10	52.42
	전문가 의견	80	3.8	23.8	40.0	31.3	1.3	27.5	40.0	32.5	3.03	50.63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2.5	20.7	32.8	42.2	1.8	23.2	32.8	44.0	3.20	55.05
	주변 사람의 의견	62	8.1	21.0	32.3	33.9	4.8	29.0	32.3	38.7	3.06	51.61
	정부 보도 자료	32	3.1	37.5	34.4	25.0	0.0	40.6	34.4	25.0	2.81	45.31
	기타(구체적으로)	4	0.0	0.0	25.0	75.0	0.0	0.0	25.0	75.0	3.75	68.75

2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 인지여부

		사례수	알고있다	모른다
[전체]		1100	34.5	65.5
성별	남자	559	35.6	64.4
	여자	541	33.5	66.5
연령	20대	200	27.0	73.0
	30대	241	29.9	70.1
	40대	275	30.5	69.5
	50대	245	45.7	54.3
	60대	139	41.7	58.3
거주지역	서울	229	34.5	65.5
	부산	79	31.6	68.4
	대구	54	27.8	72.2
	인천	64	31.3	68.8
	광주	30	16.7	83.3
	대전	32	34.4	65.6
	경기	265	34.0	66.0
	강원	32	34.4	65.6
	충청도	75	45.3	54.7
	전라도	76	40.8	59.2
	경상도	126	33.3	66.7
	기타	38	44.7	55.3
결혼여부	미혼	342	25.7	74.3
	기혼	758	38.5	61.5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21.8	78.2
	2명	175	29.1	70.9
	3명	295	38.6	61.4
	4명	435	34.5	65.5
	5명이상	117	41.0	59.0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32.5	67.5
	1명	166	42.8	57.2
	2명이상	121	37.2	62.8
직업	화이트 칼라	486	34.2	65.8
	블루 칼라	106	38.7	61.3
	자영업	132	37.1	62.9
	학생	85	27.1	72.9
	주부	208	35.6	64.4
	무직/퇴직	68	30.9	69.1
	기타	15	40.0	60.0

		사례수	알고있다	모른다
학력	고졸이하	263	35.4	64.6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27.3	72.7
	전문대졸	115	27.8	72.2
	대졸이상	645	36.3	63.7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25.7	74.3
	200~400만원 미만	408	33.1	66.9
	400~600만원 미만	355	36.1	63.9
	600만원 이상	193	41.5	58.5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49.0	51.0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332	44.9	55.1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836	34.2	65.8
	인터넷정보(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34.2	65.8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55.2	44.8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57.8	42.2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48.7	51.3
	기타	2	0.0	100.0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27.8	72.2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43.5	56.5
	전문가 의견	80	35.0	65.0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34.3	65.7
	주변 사람의 의견	62	35.5	64.5
	정부 보도 자료	32	40.6	59.4
	기타(구체적으로)	4	50.0	50.0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34.1	65.9
	보통	610	33.1	66.9
	안전	109	44.0	56.0

2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성 동의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9.1	37.9	39.8	12.2	1.0	47.0	39.8	13.2	2.58	39.52
성별	남자	559	9.3	38.3	39.7	11.6	1.1	47.6	39.7	12.7	2.57	39.22
	여자	541	8.9	37.5	39.9	12.8	.9	46.4	39.9	13.7	2.59	39.83
연령	20대	200	13.0	43.0	37.0	5.5	1.5	56.0	37.0	7.0	2.40	34.88
	30대	241	9.1	39.0	44.4	6.6	.8	48.1	44.4	7.5	2.51	37.76
	40대	275	9.8	37.8	36.4	15.3	.7	47.6	36.4	16.0	2.59	39.82
	50대	245	6.9	38.0	38.4	16.3	.4	44.9	38.4	16.7	2.65	41.33
	60대	139	5.8	28.8	45.3	18.0	2.2	34.5	45.3	20.1	2.82	45.50
거주 지역	서울	229	8.3	38.4	40.6	11.4	1.3	46.7	40.6	12.7	2.59	39.74
	부산	79	6.3	26.6	49.4	17.7	0.0	32.9	49.4	17.7	2.78	44.62
	대구	54	9.3	37.0	42.6	11.1	0.0	46.3	42.6	11.1	2.56	38.89
	인천	64	9.4	42.2	37.5	7.8	3.1	51.6	37.5	10.9	2.53	38.28
	광주	30	10.0	36.7	33.3	20.0	0.0	46.7	33.3	20.0	2.63	40.83
	대전	32	6.3	43.8	34.4	15.6	0.0	50.0	34.4	15.6	2.59	39.84
	경기	265	10.2	39.6	39.2	10.2	.8	49.8	39.2	10.9	2.52	37.92
	강원	32	9.4	43.8	31.3	15.6	0.0	53.1	31.3	15.6	2.53	38.28
	충청도	75	13.3	29.3	37.3	18.7	1.3	42.7	37.3	20.0	2.65	41.33
	전라도	76	13.2	35.5	44.7	6.6	0.0	48.7	44.7	6.6	2.45	36.18
	경상도	126	6.3	46.0	33.3	12.7	1.6	52.4	33.3	14.3	2.57	39.29
	기타	38	5.3	26.3	52.6	13.2	2.6	31.6	52.6	15.8	2.82	45.39
결혼 여부	미혼	342	11.4	43.9	38.6	5.3	.9	55.3	38.6	6.1	2.40	35.09
	기혼	758	8.0	35.2	40.4	15.3	1.1	43.3	40.4	16.4	2.66	41.52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17.9	34.6	42.3	3.8	1.3	52.6	42.3	5.1	2.36	33.97
	2명	175	8.0	43.4	36.0	12.0	.6	51.4	36.0	12.6	2.54	38.43
	3명	295	7.5	36.3	44.7	10.8	.7	43.7	44.7	11.5	2.61	40.25
	4명	435	8.7	36.8	38.4	14.7	1.4	45.5	38.4	16.1	2.63	40.80
	5명이상	117	10.3	40.2	36.8	12.0	.9	50.4	36.8	12.8	2.53	38.25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8.7	39.4	40.5	10.6	.9	48.1	40.5	11.4	2.55	38.87
	1명	166	9.6	30.7	39.8	18.7	1.2	40.4	39.8	19.9	2.71	42.77
	2명이상	121	10.7	38.0	35.5	14.0	1.7	48.8	35.5	15.7	2.58	39.46
직업	화이트 칼라	486	9.9	40.1	38.5	11.1	.4	50.0	38.5	11.5	2.52	38.01
	블루 칼라	106	10.4	40.6	34.9	13.2	.9	50.9	34.9	14.2	2.54	38.44
	자영업	132	9.1	36.4	40.9	11.4	2.3	45.5	40.9	13.6	2.61	40.34
	학생	85	11.8	42.4	37.6	7.1	1.2	54.1	37.6	8.2	2.44	35.88
	주부	208	6.3	31.3	40.9	19.7	1.9	37.5	40.9	21.6	2.80	44.95
	무직/퇴직	68	7.4	35.3	51.5	5.9	0.0	42.6	51.5	5.9	2.56	38.97
	기타	15	6.7	40.0	53.3	0.0	0.0	46.7	53.3	0.0	2.47	36.67
학력	고졸이하	263	9.9	31.6	40.3	16.7	1.5	41.4	40.3	18.3	2.68	42.11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3.0	42.9	36.4	6.5	1.3	55.8	36.4	7.8	2.40	35.06
	전문대졸	115	7.8	40.0	42.6	8.7	.9	47.8	42.6	9.6	2.55	38.70
	대졸이상	645	8.5	39.5	39.5	11.6	.8	48.1	39.5	12.4	2.57	39.15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2.5	41.7	38.9	6.3	.7	54.2	38.9	6.9	2.41	35.24
	200~400만원 미만	408	10.3	39.2	41.2	8.3	1.0	49.5	41.2	9.3	2.50	37.62
	400~600만원 미만	355	7.3	36.6	38.6	16.1	1.4	43.9	38.6	17.5	2.68	41.90
	600만원 이상	193	7.3	34.7	39.9	17.6	.5	42.0	39.9	18.1	2.69	42.36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9.6	28.3	43.9	16.2	2.0	37.9	43.9	18.2	2.73	43.18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6.0	36.7	41.0	15.4	.9	42.8	41.0	16.3	2.68	42.09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8.9	38.3	39.5	12.3	1.1	47.1	39.5	13.4	2.58	39.62
	인터넷정보 (인터넷포털, 블로그 등)	692	9.4	37.6	39.2	13.2	.7	47.0	39.2	13.9	2.58	39.56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9.9	32.6	39.5	15.7	2.3	42.4	39.5	18.0	2.68	42.01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4.4	31.1	37.8	20.0	6.7	35.6	37.8	26.7	2.93	48.33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5.3	28.0	48.0	17.3	1.3	33.3	48.0	18.7	2.81	45.33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7.7	38.7	41.2	10.8	1.5	46.4	41.2	12.4	2.60	39.95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2.1	37.1	37.9	12.1	.8	49.2	37.9	12.9	2.52	38.10
	전문가 의견	80	6.3	37.5	45.0	10.0	1.3	43.8	45.0	11.3	2.63	40.63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8.8	39.2	38.9	12.4	.7	48.0	38.9	13.1	2.57	39.24
	주변 사람의 의견	62	11.3	24.2	45.2	16.1	3.2	35.5	45.2	19.4	2.76	43.95
	정부 보도 자료	32	15.6	37.5	31.3	15.6	0.0	53.1	31.3	15.6	2.47	36.72
	기타(구체적으로)	4	0.0	50.0	50.0	0.0	0.0	50.0	50.0	0.0	2.50	37.50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21.0	54.3	21.0	3.1	.5	75.3	21.0	3.7	2.08	26.97
	보통	610	3.1	31.3	52.5	12.5	.7	34.4	52.5	13.1	2.76	44.06
	안전	109	.9	17.4	34.9	42.2	4.6	18.3	34.9	46.8	3.32	58.03

2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효과성 동의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8.9	37.9	40.6	11.4	1.2	46.8	40.6	12.5	2.58	39.50
성별	남자	559	9.7	38.6	38.3	12.0	1.4	48.3	38.3	13.4	2.57	39.22
	여자	541	8.1	37.2	43.1	10.7	.9	45.3	43.1	11.6	2.59	39.79
연령	20대	200	13.5	40.0	38.5	7.0	1.0	53.5	38.5	8.0	2.42	35.50
	30대	241	8.7	38.2	45.2	7.9	0.0	46.9	45.2	7.9	2.52	38.07
	40대	275	8.4	43.3	33.1	13.5	1.8	51.6	33.1	15.3	2.57	39.27
	50대	245	7.8	34.7	42.4	13.5	1.6	42.4	42.4	15.1	2.67	41.63
	60대	139	5.8	29.5	47.5	15.8	1.4	35.3	47.5	17.3	2.78	44.42
거주 지역	서울	229	7.0	39.7	41.9	9.6	1.7	46.7	41.9	11.4	2.59	39.85
	부산	79	3.8	31.6	44.3	20.3	0.0	35.4	44.3	20.3	2.81	45.25
	대구	54	5.6	24.1	53.7	16.7	0.0	29.6	53.7	16.7	2.81	45.37
	인천	64	9.4	37.5	45.3	6.3	1.6	46.9	45.3	7.8	2.53	38.28
	광주	30	13.3	26.7	43.3	13.3	3.3	40.0	43.3	16.7	2.67	41.67
	대전	32	9.4	40.6	31.3	18.8	0.0	50.0	31.3	18.8	2.59	39.84
	경기	265	9.4	43.8	38.5	7.2	1.1	53.2	38.5	8.3	2.47	36.70
	강원	32	12.5	34.4	34.4	18.8	0.0	46.9	34.4	18.8	2.59	39.84
	충청도	75	10.7	33.3	42.7	10.7	2.7	44.0	42.7	13.3	2.61	40.33
	전라도	76	17.1	35.5	35.5	11.8	0.0	52.6	35.5	11.8	2.42	35.53
	경상도	126	8.7	39.7	39.7	11.1	.8	48.4	39.7	11.9	2.56	38.89
	기타	38	5.3	36.8	34.2	21.1	2.6	42.1	34.2	23.7	2.79	44.74
결혼 여부	미혼	342	12.0	43.0	38.9	5.8	.3	55.0	38.9	6.1	2.39	34.87
	기혼	758	7.5	35.6	41.4	13.9	1.6	43.1	41.4	15.4	2.66	41.59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17.9	37.2	44.9	0.0	0.0	55.1	44.9	0.0	2.27	31.73
	2명	175	8.6	39.4	37.7	13.7	.6	48.0	37.7	14.3	2.58	39.57
	3명	295	7.5	36.3	41.7	14.2	.3	43.7	41.7	14.6	2.64	40.93
	4명	435	7.6	38.9	40.7	10.6	2.3	46.4	40.7	12.9	2.61	40.29
	5명이상	117	12.0	36.8	39.3	11.1	.9	48.7	39.3	12.0	2.52	38.03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8.4	39.2	40.8	10.8	.7	47.6	40.8	11.6	2.56	39.08
	1명	166	9.6	36.7	36.7	15.1	1.8	46.4	36.7	16.9	2.63	40.66
	2명이상	121	11.6	30.6	44.6	9.9	3.3	42.1	44.6	13.2	2.63	40.70
직업	화이트 칼라	486	8.8	40.3	40.3	9.7	.8	49.2	40.3	10.5	2.53	38.32
	블루 칼라	106	12.3	34.9	37.7	13.2	1.9	47.2	37.7	15.1	2.58	39.39
	자영업	132	8.3	42.4	35.6	12.1	1.5	50.8	35.6	13.6	2.56	39.02
	학생	85	10.6	50.6	30.6	8.2	0.0	61.2	30.6	8.2	2.36	34.12
	주부	208	5.8	31.7	44.2	15.9	2.4	37.5	44.2	18.3	2.77	44.35
	무직/퇴직	68	13.2	22.1	57.4	7.4	0.0	35.3	57.4	7.4	2.59	39.71
	기타	15	6.7	26.7	46.7	20.0	0.0	33.3	46.7	20.0	2.80	45.00
학력	고졸이하	263	9.5	30.8	43.0	15.2	1.5	40.3	43.0	16.7	2.68	42.11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3.0	46.8	31.2	9.1	0.0	59.7	31.2	9.1	2.36	34.09
	전문대졸	115	9.6	36.5	46.1	6.1	1.7	46.1	46.1	7.8	2.54	38.48
	대졸이상	645	8.1	40.0	39.8	11.0	1.1	48.1	39.8	12.1	2.57	39.26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7.4	36.8	38.9	6.3	.7	54.2	38.9	6.9	2.36	34.03
	200~400만원 미만	408	9.6	40.9	38.0	10.5	1.0	50.5	38.0	11.5	2.52	38.11
	400~600만원 미만	355	6.2	35.8	42.8	14.1	1.1	42.0	42.8	15.2	2.68	42.04
	600만원 이상	193	6.2	36.3	43.5	11.9	2.1	42.5	43.5	14.0	2.67	41.84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7.6	27.3	51.0	13.6	.5	34.8	51.0	14.1	2.72	43.06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5.1	39.2	41.3	12.7	1.8	44.3	41.3	14.5	2.67	41.72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9.3	38.5	40.0	11.1	1.1	47.8	40.0	12.2	2.56	39.03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9.1	38.7	39.2	12.1	.9	47.8	39.2	13.0	2.57	39.23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11.0	27.3	41.9	18.0	1.7	38.4	41.9	19.8	2.72	43.02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2.2	35.6	40.0	15.6	6.7	37.8	40.0	22.2	2.89	47.22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7.3	30.7	48.0	11.3	2.7	38.0	48.0	14.0	2.71	42.83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7.2	34.0	46.4	11.3	1.0	41.2	46.4	12.4	2.65	41.24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2.1	38.7	37.9	8.1	3.2	50.8	37.9	11.3	2.52	37.90
	전문가 의견	80	6.3	46.3	36.3	10.0	1.3	52.5	36.3	11.3	2.54	38.44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8.9	39.6	38.9	12.1	.5	48.5	38.9	12.6	2.56	38.91
	주변 사람의 의견	62	8.1	22.6	53.2	12.9	3.2	30.6	53.2	16.1	2.81	45.16
	정부 보도 자료	32	15.6	34.4	34.4	12.5	3.1	50.0	34.4	15.6	2.53	38.28
	기타(구체적으로)	4	0.0	50.0	50.0	0.0	0.0	50.0	50.0	0.0	2.50	37.50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18.1	52.8	26.0	2.6	.5	70.9	26.0	3.1	2.15	28.67
	보통	610	4.1	32.8	49.2	13.3	.7	36.9	49.2	13.9	2.74	43.40
	안전	109	3.7	14.7	44.0	31.2	6.4	18.3	44.0	37.6	3.22	55.50

2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신뢰성 동의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13.1	32.9	38.0	14.8	1.2	46.0	38.0	16.0	2.58	39.52
성별	남자	559	14.1	32.4	36.3	15.7	1.4	46.5	36.3	17.2	2.58	39.49
	여자	541	12.0	33.5	39.7	13.9	.9	45.5	39.7	14.8	2.58	39.56
연령	20대	200	17.5	41.5	28.5	11.5	1.0	59.0	28.5	12.5	2.37	34.25
	30대	241	14.9	36.1	40.7	8.3	0.0	51.0	40.7	8.3	2.42	35.58
	40대	275	14.5	29.1	39.3	14.5	2.5	43.6	39.3	17.1	2.61	40.36
	50대	245	9.8	29.8	40.4	18.8	1.2	39.6	40.4	20.0	2.72	42.96
	60대	139	6.5	28.1	40.3	24.5	.7	34.5	40.3	25.2	2.85	46.22
거주 지역	서울	229	7.9	34.5	38.0	18.3	1.3	42.4	38.0	19.7	2.71	42.69
	부산	79	11.4	30.4	34.2	24.1	0.0	41.8	34.2	24.1	2.71	42.72
	대구	54	9.3	25.9	55.6	7.4	1.9	35.2	55.6	9.3	2.67	41.67
	인천	64	14.1	31.3	42.2	10.9	1.6	45.3	42.2	12.5	2.55	38.67
	광주	30	16.7	40.0	26.7	13.3	3.3	56.7	26.7	16.7	2.47	36.67
	대전	32	12.5	28.1	46.9	12.5	0.0	40.6	46.9	12.5	2.59	39.84
	경기	265	16.2	31.3	39.2	12.1	1.1	47.5	39.2	13.2	2.51	37.64
	강원	32	12.5	31.3	34.4	18.8	3.1	43.8	34.4	21.9	2.69	42.19
	충청도	75	16.0	32.0	28.0	22.7	1.3	48.0	28.0	24.0	2.61	40.33
	전라도	76	15.8	44.7	30.3	7.9	1.3	60.5	30.3	9.2	2.34	33.55
	경상도	126	15.1	34.9	38.9	10.3	.8	50.0	38.9	11.1	2.47	36.71
	기타	38	10.5	23.7	42.1	23.7	0.0	34.2	42.1	23.7	2.79	44.74
결혼 여부	미혼	342	16.1	38.3	35.7	9.6	.3	54.4	35.7	9.9	2.40	34.94
	기혼	758	11.7	30.5	39.1	17.2	1.6	42.2	39.1	18.7	2.66	41.59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23.1	29.5	39.7	7.7	0.0	52.6	39.7	7.7	2.32	33.01
	2명	175	10.3	37.1	34.3	17.7	.6	47.4	34.3	18.3	2.61	40.29
	3명	295	12.2	30.8	41.4	14.6	1.0	43.1	41.4	15.6	2.61	40.34
	4명	435	12.0	32.9	37.2	16.1	1.8	44.8	37.2	17.9	2.63	40.75
	5명이상	117	17.1	34.2	36.8	11.1	.9	51.3	36.8	12.0	2.44	36.11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2.4	33.6	38.1	15.1	.7	46.0	38.1	15.9	2.58	39.54
	1명	166	16.3	31.3	31.9	17.5	3.0	47.6	31.9	20.5	2.60	39.91
	2명이상	121	13.2	30.6	45.5	9.1	1.7	43.8	45.5	10.7	2.55	38.84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5.4	34.8	36.2	12.1	1.4	50.2	36.2	13.6	2.49	37.35
	블루 칼라	106	15.1	35.8	33.0	15.1	.9	50.9	33.0	16.0	2.51	37.74
	자영업	132	11.4	28.0	42.4	17.4	.8	39.4	42.4	18.2	2.68	42.05
	학생	85	15.3	40.0	34.1	10.6	0.0	55.3	34.1	10.6	2.40	35.00
	주부	208	8.7	29.8	40.4	20.2	1.0	38.5	40.4	21.2	2.75	43.75
	무직/퇴직	68	8.8	23.5	48.5	16.2	2.9	32.4	48.5	19.1	2.81	45.22
	기타	15	6.7	40.0	33.3	20.0	0.0	46.7	33.3	20.0	2.67	41.67
학력	고졸이하	263	11.4	30.4	38.4	18.6	1.1	41.8	38.4	19.8	2.68	41.92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4.3	36.4	40.3	9.1	0.0	50.6	40.3	9.1	2.44	36.04
	전문대졸	115	15.7	33.9	37.4	13.0	0.0	49.6	37.4	13.0	2.48	36.96
	대졸이상	645	13.2	33.3	37.7	14.3	1.6	46.5	37.7	15.8	2.58	39.42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7.4	40.3	31.3	10.4	.7	57.6	31.3	11.1	2.37	34.20
	200~400만원 미만	408	14.2	33.8	39.7	11.3	1.0	48.0	39.7	12.3	2.51	37.75
	400~600만원 미만	355	12.1	31.3	36.6	18.9	1.1	43.4	36.6	20.0	2.66	41.41
	600만원 이상	193	9.3	28.5	42.0	18.1	2.1	37.8	42.0	20.2	2.75	43.78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1.1	24.2	37.9	25.3	1.5	35.4	37.9	26.8	2.82	45.45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9.0	31.6	41.3	16.6	1.5	40.7	41.3	18.1	2.70	42.47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13.3	32.4	38.3	14.8	1.2	45.7	38.3	16.0	2.58	39.56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13.7	32.1	36.7	16.5	1.0	45.8	36.7	17.5	2.59	39.74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15.7	26.7	33.1	22.7	1.7	42.4	33.1	24.4	2.68	42.01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6.7	28.9	31.1	31.1	2.2	35.6	31.1	33.3	2.93	48.33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10.7	24.0	46.0	18.7	.7	34.7	46.0	19.3	2.75	43.67
	기타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1.00	0.0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13.9	28.9	43.8	12.9	.5	42.8	43.8	13.4	2.57	39.30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2.9	34.7	34.7	16.9	.8	47.6	34.7	17.7	2.58	39.52
	전문가 의견	80	12.5	37.5	33.8	12.5	3.8	50.0	33.8	16.3	2.58	39.38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12.9	32.5	38.7	14.9	1.0	45.4	38.7	15.9	2.59	39.65
	주변 사람의 의견	62	11.3	33.9	35.5	17.7	1.6	45.2	35.5	19.4	2.65	41.13
	정부 보도 자료	32	18.8	40.6	18.8	18.8	3.1	59.4	18.8	21.9	2.47	36.72
	기타(구체적으로)	4	0.0	75.0	25.0	0.0	0.0	75.0	25.0	0.0	2.25	31.25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26.8	42.8	25.7	4.5	.3	69.6	25.7	4.7	2.09	27.17
	보통	610	6.2	30.5	46.6	15.9	.8	36.7	46.6	16.7	2.75	43.65
	안전	109	3.7	11.9	33.0	45.0	6.4	15.6	33.0	51.4	3.39	59.63

2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의 전반적인 만족도

		사례수	매우 불만족 스럽다	약간 불만족 스럽다	보통 이다	약간 만족 스럽다	매우 만족 스럽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8.1	28.3	41.2	21.0	1.5	36.4	41.2	22.5	2.79	44.86
성별	남자	559	9.5	28.8	39.7	20.0	2.0	38.3	39.7	22.0	2.76	44.05
	여자	541	6.7	27.7	42.7	22.0	.9	34.4	42.7	22.9	2.83	45.70
연령	20대	200	6.5	33.0	39.0	20.0	1.5	39.5	39.0	21.5	2.77	44.25
	30대	241	9.1	25.3	49.0	16.6	0.0	34.4	49.0	16.6	2.73	43.26
	40대	275	10.2	27.6	39.6	21.5	1.1	37.8	39.6	22.5	2.76	43.91
	50대	245	8.2	29.4	35.1	24.9	2.4	37.6	35.1	27.3	2.84	46.02
	60대	139	4.3	25.9	44.6	22.3	2.9	30.2	44.6	25.2	2.94	48.38
거주 지역	서울	229	7.4	29.7	39.3	21.8	1.7	37.1	39.3	23.6	2.81	45.20
	부산	79	7.6	22.8	43.0	24.1	2.5	30.4	43.0	26.6	2.91	47.78
	대구	54	3.7	18.5	61.1	16.7	0.0	22.2	61.1	16.7	2.91	47.69
	인천	64	9.4	23.4	45.3	20.3	1.6	32.8	45.3	21.9	2.81	45.31
	광주	30	13.3	23.3	36.7	26.7	0.0	36.7	36.7	26.7	2.77	44.17
	대전	32	15.6	18.8	37.5	28.1	0.0	34.4	37.5	28.1	2.78	44.53
	경기	265	8.7	29.8	43.4	17.0	1.1	38.5	43.4	18.1	2.72	43.02
	강원	32	12.5	34.4	31.3	18.8	3.1	46.9	31.3	21.9	2.66	41.41
	충청도	75	8.0	33.3	34.7	21.3	2.7	41.3	34.7	24.0	2.77	44.33
	전라도	76	9.2	28.9	40.8	21.1	0.0	38.2	40.8	21.1	2.74	43.42
	경상도	126	6.3	33.3	38.9	20.6	.8	39.7	38.9	21.4	2.76	44.05
	기타	38	2.6	21.1	34.2	36.8	5.3	23.7	34.2	42.1	3.21	55.26
결혼 여부	미혼	342	7.9	31.3	42.1	18.4	.3	39.2	42.1	18.7	2.72	42.98
	기혼	758	8.2	26.9	40.8	22.2	2.0	35.1	40.8	24.1	2.83	45.71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15.4	24.4	41.0	19.2	0.0	39.7	41.0	19.2	2.64	41.03
	2명	175	4.6	33.1	37.7	24.0	.6	37.7	37.7	24.6	2.83	45.71
	3명	295	7.1	25.8	45.8	20.7	.7	32.9	45.8	21.4	2.82	45.51
	4명	435	8.7	28.3	38.6	21.6	2.8	37.0	38.6	24.4	2.81	45.34
	5명이상	117	8.5	29.9	44.4	16.2	.9	38.5	44.4	17.1	2.71	42.74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7.6	28.5	41.2	21.2	1.5	36.2	41.2	22.6	2.80	45.08
	1명	166	6.6	27.7	40.4	24.7	.6	34.3	40.4	25.3	2.85	46.23
	2명이상	121	13.2	27.3	42.1	14.9	2.5	40.5	42.1	17.4	2.66	41.53
직업	화이트 칼라	486	9.1	31.3	41.4	16.9	1.4	40.3	41.4	18.3	2.70	42.59
	블루 칼라	106	8.5	28.3	38.7	23.6	.9	36.8	38.7	24.5	2.80	45.05
	자영업	132	9.1	28.0	37.9	23.5	1.5	37.1	37.9	25.0	2.80	45.08
	학생	85	5.9	31.8	43.5	17.6	1.2	37.6	43.5	18.8	2.76	44.12
	주부	208	4.3	24.5	40.4	28.4	2.4	28.8	40.4	30.8	3.00	50.00
	무직/퇴직	68	13.2	16.2	48.5	22.1	0.0	29.4	48.5	22.1	2.79	44.85
	기타	15	6.7	20.0	46.7	26.7	0.0	26.7	46.7	26.7	2.93	48.33
학력	고졸이하	263	6.1	28.5	37.6	25.5	2.3	34.6	37.6	27.8	2.89	47.34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6.5	29.9	40.3	22.1	1.3	36.4	40.3	23.4	2.82	45.45
	전문대졸	115	10.4	24.3	45.2	19.1	.9	34.8	45.2	20.0	2.76	43.91
	대졸이상	645	8.7	28.7	42.0	19.4	1.2	37.4	42.0	20.6	2.76	43.95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1.1	31.9	40.3	16.0	.7	43.1	40.3	16.7	2.63	40.80
	200~400만원 미만	408	7.8	31.9	39.7	19.9	.7	39.7	39.7	20.6	2.74	43.44
	400~600만원 미만	355	6.8	24.8	43.1	23.4	2.0	31.5	43.1	25.4	2.89	47.25
	600만원 이상	193	8.8	24.4	41.5	22.8	2.6	33.2	41.5	25.4	2.86	46.50

		사례수	매우 불만족 스럽다	약간 불만족 스럽다	보통 이다	약간 만족 스럽다	매우 만족 스럽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0.1	20.2	36.4	31.3	2.0	30.3	36.4	33.3	2.95	48.74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5.1	25.3	42.8	25.3	1.5	30.4	42.8	26.8	2.93	48.19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8.4	28.9	40.4	20.8	1.4	37.3	40.4	22.2	2.78	44.50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7.9	29.0	40.6	21.0	1.4	37.0	40.6	22.4	2.79	44.73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12.2	22.1	38.4	25.0	2.3	34.3	38.4	27.3	2.83	45.78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6.7	20.0	40.0	26.7	6.7	26.7	40.0	33.3	3.07	51.67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3.3	24.0	42.7	27.3	2.7	27.3	42.7	30.0	3.02	50.50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7.7	23.7	46.9	20.6	1.0	31.4	46.9	21.6	2.84	45.88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0.5	30.6	33.9	22.6	2.4	41.1	33.9	25.0	2.76	43.95
	전문가 의견	80	7.5	33.8	40.0	17.5	1.3	41.3	40.0	18.8	2.71	42.81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7.9	29.1	40.6	21.2	1.2	37.1	40.6	22.4	2.78	44.62
	주변 사람의 의견	62	3.2	22.6	46.8	24.2	3.2	25.8	46.8	27.4	3.02	50.40
	정부 보도 자료	32	15.6	21.9	40.6	18.8	3.1	37.5	40.6	21.9	2.72	42.97
	기타(구체적으로)	4	0.0	75.0	25.0	0.0	0.0	75.0	25.0	0.0	2.25	31.25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18.1	43.3	31.0	7.1	.5	61.4	31.0	7.6	2.29	32.15
	보통	610	3.0	21.8	49.7	24.6	1.0	24.8	49.7	25.6	2.99	49.71
	안전	109	1.8	11.9	29.4	49.5	7.3	13.8	29.4	56.9	3.49	62.16

2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현황에 대한 개선 인지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14.0	42.9	28.8	13.6	.6	56.9	28.8	14.3	2.44	36.00
성별	남자	559	13.2	43.6	27.2	15.4	.5	56.9	27.2	15.9	2.46	36.58
	여자	541	14.8	42.1	30.5	11.8	.7	56.9	30.5	12.6	2.42	35.40
연령	20대	200	15.5	44.0	29.0	11.0	.5	59.5	29.0	11.5	2.37	34.25
	30대	241	14.1	44.4	29.9	11.2	.4	58.5	29.9	11.6	2.39	34.85
	40대	275	16.4	41.8	26.5	14.2	1.1	58.2	26.5	15.3	2.42	35.45
	50대	245	11.8	45.7	27.8	14.7	0.0	57.6	27.8	14.7	2.45	36.33
	60대	139	10.8	36.0	33.1	18.7	1.4	46.8	33.1	20.1	2.64	41.01
거주 지역	서울	229	13.5	48.0	24.0	13.5	.9	61.6	24.0	14.4	2.40	35.04
	부산	79	8.9	39.2	29.1	22.8	0.0	48.1	29.1	22.8	2.66	41.46
	대구	54	5.6	33.3	48.1	13.0	0.0	38.9	48.1	13.0	2.69	42.13
	인천	64	23.4	31.3	31.3	14.1	0.0	54.7	31.3	14.1	2.36	33.98
	광주	30	6.7	56.7	23.3	13.3	0.0	63.3	23.3	13.3	2.43	35.83
	대전	32	18.8	46.9	21.9	12.5	0.0	65.6	21.9	12.5	2.28	32.03
	경기	265	13.6	43.0	31.3	10.9	1.1	56.6	31.3	12.1	2.43	35.75
	강원	32	28.1	31.3	21.9	15.6	3.1	59.4	21.9	18.8	2.34	33.59
	충청도	75	14.7	40.0	25.3	18.7	1.3	54.7	25.3	20.0	2.52	38.00
	전라도	76	19.7	43.4	26.3	10.5	0.0	63.2	26.3	10.5	2.28	31.91
	경상도	126	11.1	46.0	31.7	11.1	0.0	57.1	31.7	11.1	2.43	35.71
	기타	38	13.2	42.1	26.3	18.4	0.0	55.3	26.3	18.4	2.50	37.50
결혼 여부	미혼	342	14.3	46.8	28.4	10.5	0.0	61.1	28.4	10.5	2.35	33.77
	기혼	758	13.9	41.2	29.0	15.0	.9	55.0	29.0	16.0	2.48	37.01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19.2	48.7	24.4	7.7	0.0	67.9	24.4	7.7	2.21	30.13
	2명	175	12.6	40.0	31.4	16.0	0.0	52.6	31.4	16.0	2.51	37.71
	3명	295	11.9	48.1	26.4	12.2	1.4	60.0	26.4	13.6	2.43	35.76
	4명	435	15.2	38.2	30.3	15.9	.5	53.3	30.3	16.3	2.48	37.07
	5명이상	117	13.7	47.9	28.2	9.4	.9	61.5	28.2	10.3	2.36	33.97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3.3	44.9	28.2	13.3	.4	58.2	28.2	13.7	2.43	35.64
	1명	166	13.3	35.5	31.3	18.7	1.2	48.8	31.3	19.9	2.59	39.76
	2명이상	121	19.8	39.7	29.8	9.1	1.7	59.5	29.8	10.7	2.33	33.26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4.4	43.4	26.7	15.2	.2	57.8	26.7	15.4	2.43	35.85
	블루 칼라	106	11.3	47.2	28.3	12.3	.9	58.5	28.3	13.2	2.44	36.08
	자영업	132	19.7	38.6	28.8	12.1	.8	58.3	28.8	12.9	2.36	33.90
	학생	85	14.1	44.7	29.4	11.8	0.0	58.8	29.4	11.8	2.39	34.71
	주부	208	12.0	39.9	32.2	13.9	1.9	51.9	32.2	15.9	2.54	38.46
	무직/퇴직	68	11.8	44.1	35.3	8.8	0.0	55.9	35.3	8.8	2.41	35.29
	기타	15	6.7	60.0	20.0	13.3	0.0	66.7	20.0	13.3	2.40	35.00
학력	고졸이하	263	16.0	39.2	28.9	14.4	1.5	55.1	28.9	16.0	2.46	36.60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1.7	42.9	32.5	13.0	0.0	54.5	32.5	13.0	2.47	36.69
	전문대졸	115	13.9	46.1	27.8	12.2	0.0	60.0	27.8	12.2	2.38	34.57
	대졸이상	645	13.5	43.9	28.5	13.6	.5	57.4	28.5	14.1	2.44	35.93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20.1	44.4	25.7	9.0	.7	64.6	25.7	9.7	2.26	31.42
	200~400만원 미만	408	13.7	44.6	28.7	12.7	.2	58.3	28.7	13.0	2.41	35.29
	400~600만원 미만	355	13.0	42.0	27.9	16.1	1.1	54.9	27.9	17.2	2.50	37.61
	600만원 이상	193	11.9	39.9	33.2	14.5	.5	51.8	33.2	15.0	2.52	37.95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4.1	41.9	29.8	13.6	.5	56.1	29.8	14.1	2.44	36.11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13.0	41.6	28.3	16.0	1.2	54.5	28.3	17.2	2.51	37.73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13.8	43.7	28.3	13.6	.6	57.4	28.3	14.2	2.44	35.92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14.2	44.5	25.7	15.0	.6	58.7	25.7	15.6	2.43	35.84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18.0	43.6	21.5	15.7	1.2	61.6	21.5	16.9	2.38	34.59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17.8	33.3	33.3	11.1	4.4	51.1	33.3	15.6	2.51	37.78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13.3	41.3	31.3	12.0	2.0	54.7	31.3	14.0	2.48	37.00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14.9	39.7	30.4	13.9	1.0	54.6	30.4	14.9	2.46	36.60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6.1	42.7	28.2	12.1	.8	58.9	28.2	12.9	2.39	34.68
	전문가 의견	80	8.8	43.8	35.0	11.3	1.3	52.5	35.0	12.5	2.53	38.13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14.4	43.9	27.8	13.6	.3	58.3	27.8	13.9	2.42	35.39
	주변 사람의 의견	62	4.8	40.3	33.9	19.4	1.6	45.2	33.9	21.0	2.73	43.15
	정부 보도 자료	32	25.0	46.9	15.6	12.5	0.0	71.9	15.6	12.5	2.16	28.91
	기타(구체적으로)	4	0.0	50.0	25.0	25.0	0.0	50.0	25.0	25.0	2.75	43.75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27.3	52.0	16.0	4.7	0.0	79.3	16.0	4.7	1.98	24.54
	보통	610	7.5	40.5	36.4	15.2	.3	48.0	36.4	15.6	2.60	40.08
	안전	109	3.7	24.8	31.2	35.8	4.6	28.4	31.2	40.4	3.13	53.21

3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단속의 적절한 수행 인지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14.6	43.7	30.8	9.6	1.2	58.4	30.8	10.8	2.39	34.75
성별	남자	559	15.0	42.4	30.6	10.7	1.3	57.4	30.6	12.0	2.41	35.20
	여자	541	14.2	45.1	31.1	8.5	1.1	59.3	31.1	9.6	2.37	34.29
연령	20대	200	17.5	43.0	31.5	6.5	1.5	60.5	31.5	8.0	2.32	32.88
	30대	241	15.4	45.2	29.0	10.4	0.0	60.6	29.0	10.4	2.34	33.61
	40대	275	14.2	46.2	28.7	8.7	2.2	60.4	28.7	10.9	2.39	34.64
	50대	245	13.5	40.4	35.9	10.2	0.0	53.9	35.9	10.2	2.43	35.71
	60대	139	12.2	43.2	28.1	13.7	2.9	55.4	28.1	16.5	2.52	37.95
거주 지역	서울	229	14.0	48.0	28.8	8.7	.4	62.0	28.8	9.2	2.34	33.41
	부산	79	15.2	40.5	32.9	11.4	0.0	55.7	32.9	11.4	2.41	35.13
	대구	54	5.6	44.4	40.7	7.4	1.9	50.0	40.7	9.3	2.56	38.89
	인천	64	12.5	42.2	34.4	10.9	0.0	54.7	34.4	10.9	2.44	35.94
	광주	30	16.7	46.7	26.7	6.7	3.3	63.3	26.7	10.0	2.33	33.33
	대전	32	28.1	37.5	28.1	6.3	0.0	65.6	28.1	6.3	2.13	28.13
	경기	265	14.0	45.7	30.6	8.7	1.1	59.6	30.6	9.8	2.37	34.34
	강원	32	15.6	40.6	34.4	6.3	3.1	56.3	34.4	9.4	2.41	35.16
	충청도	75	16.0	38.7	33.3	8.0	4.0	54.7	33.3	12.0	2.45	36.33
	전라도	76	22.4	34.2	27.6	15.8	0.0	56.6	27.6	15.8	2.37	34.21
	경상도	126	12.7	46.8	30.2	7.9	2.4	59.5	30.2	10.3	2.40	35.12
	기타	38	13.2	36.8	26.3	23.7	0.0	50.0	26.3	23.7	2.61	40.13
결혼 여부	미혼	342	15.8	44.4	31.0	8.2	.6	60.2	31.0	8.8	2.33	33.33
	기혼	758	14.1	43.4	30.7	10.3	1.5	57.5	30.7	11.7	2.42	35.39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20.5	43.6	25.6	10.3	0.0	64.1	25.6	10.3	2.26	31.41
	2명	175	12.6	45.7	30.9	9.7	1.1	58.3	30.9	10.9	2.41	35.29
	3명	295	15.6	43.7	32.2	8.1	.3	59.3	32.2	8.5	2.34	33.47
	4명	435	13.1	42.3	32.2	10.6	1.8	55.4	32.2	12.4	2.46	36.44
	5명이상	117	17.1	46.2	25.6	9.4	1.7	63.2	25.6	11.1	2.32	33.12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4.3	44.0	31.4	9.5	.9	58.3	31.4	10.3	2.39	34.66
	1명	166	15.7	40.4	31.9	10.2	1.8	56.0	31.9	12.0	2.42	35.54
	2명이상	121	15.7	46.3	25.6	9.9	2.5	62.0	25.6	12.4	2.37	34.30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4.0	46.7	29.8	8.6	.8	60.7	29.8	9.5	2.36	33.90
	블루 칼라	106	17.0	41.5	29.2	11.3	.9	58.5	29.2	12.3	2.38	34.43
	자영업	132	15.9	38.6	32.6	11.4	1.5	54.5	32.6	12.9	2.44	35.98
	학생	85	16.5	40.0	34.1	8.2	1.2	56.5	34.1	9.4	2.38	34.41
	주부	208	13.5	40.9	32.2	11.5	1.9	54.3	32.2	13.5	2.48	36.90
	무직/퇴직	68	17.6	45.6	30.9	4.4	1.5	63.2	30.9	5.9	2.26	31.62
	기타	15	0.0	60.0	20.0	20.0	0.0	60.0	20.0	20.0	2.60	40.00
학력	고졸이하	263	15.2	41.1	30.8	10.6	2.3	56.3	30.8	12.9	2.44	35.93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5.6	33.8	39.0	10.4	1.3	49.4	39.0	11.7	2.48	37.01
	전문대졸	115	15.7	50.4	26.1	7.8	0.0	66.1	26.1	7.8	2.26	31.52
	대졸이상	645	14.1	44.8	30.7	9.5	.9	58.9	30.7	10.4	2.38	34.57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21.5	41.7	26.4	9.0	1.4	63.2	26.4	10.4	2.27	31.77
	200~400만원 미만	408	14.5	43.9	32.1	8.3	1.2	58.3	32.1	9.6	2.38	34.50
	400~600만원 미만	355	12.7	45.6	29.6	10.7	1.4	58.3	29.6	12.1	2.43	35.63
	600만원 이상	193	13.5	41.5	33.7	10.9	.5	54.9	33.7	11.4	2.44	35.88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4.1	39.4	30.8	14.1	1.5	53.5	30.8	15.7	2.49	37.37
	인쇄매체 (신문, 잡지 등)	332	12.3	46.1	30.1	10.8	.6	58.4	30.1	11.4	2.41	35.32
	방송매체 (TV, 라디오 등)	836	14.6	44.3	30.0	9.9	1.2	58.9	30.0	11.1	2.39	34.72
	인터넷정보 (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14.5	44.7	30.5	9.5	.9	59.1	30.5	10.4	2.38	34.43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16.9	37.2	30.8	13.4	1.7	54.1	30.8	15.1	2.46	36.48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8.9	35.6	33.3	15.6	6.7	44.4	33.3	22.2	2.76	43.89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10.0	43.3	34.7	11.3	.7	53.3	34.7	12.0	2.49	37.33
	기타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1.00	0.0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14.4	42.8	29.4	11.3	2.1	57.2	29.4	13.4	2.44	35.95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4.5	40.3	37.9	6.5	.8	54.8	37.9	7.3	2.39	34.68
	전문가 의견	80	11.3	47.5	26.3	15.0	0.0	58.8	26.3	15.0	2.45	36.25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15.1	44.5	30.1	9.1	1.2	59.6	30.1	10.3	2.37	34.19
	주변 사람의 의견	62	9.7	38.7	38.7	11.3	1.6	48.4	38.7	12.9	2.56	39.11
	정부 보도 자료	32	28.1	46.9	18.8	6.3	0.0	75.0	18.8	6.3	2.03	25.78
	기타(구체적으로)	4	0.0	50.0	50.0	0.0	0.0	50.0	50.0	0.0	2.50	37.50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29.1	53.8	13.6	3.1	.3	82.9	13.6	3.4	1.92	22.90
	보통	610	7.7	41.1	40.3	10.2	.7	48.9	40.3	10.8	2.55	38.73
	안전	109	2.8	22.9	37.6	29.4	7.3	25.7	37.6	36.7	3.16	53.90

3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처벌의 적절성 인지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23.5	37.4	23.7	12.5	2.9	60.9	23.7	15.4	2.34	33.45
성별	남자	559	26.8	36.9	20.9	12.2	3.2	63.7	20.9	15.4	2.28	32.02
	여자	541	20.1	37.9	26.6	12.8	2.6	58.0	26.6	15.3	2.40	34.94
연령	20대	200	19.0	34.5	28.5	15.5	2.5	53.5	28.5	18.0	2.48	37.00
	30대	241	22.8	38.6	24.9	11.2	2.5	61.4	24.9	13.7	2.32	32.99
	40대	275	26.2	35.6	22.5	12.0	3.6	61.8	22.5	15.6	2.31	32.82
	50대	245	23.3	42.9	19.2	11.4	3.3	66.1	19.2	14.7	2.29	32.14
	60대	139	26.6	33.1	25.2	12.9	2.2	59.7	25.2	15.1	2.31	32.73
거주 지역	서울	229	19.2	42.8	21.4	12.2	4.4	62.0	21.4	16.6	2.40	34.93
	부산	79	22.8	32.9	24.1	17.7	2.5	55.7	24.1	20.3	2.44	36.08
	대구	54	16.7	38.9	31.5	11.1	1.9	55.6	31.5	13.0	2.43	35.65
	인천	64	25.0	32.8	23.4	17.2	1.6	57.8	23.4	18.8	2.38	34.38
	광주	30	20.0	46.7	20.0	6.7	6.7	66.7	20.0	13.3	2.33	33.33
	대전	32	34.4	28.1	21.9	15.6	0.0	62.5	21.9	15.6	2.19	29.69
	경기	265	27.2	32.8	26.4	11.3	2.3	60.0	26.4	13.6	2.29	32.17
	강원	32	28.1	37.5	18.8	9.4	6.3	65.6	18.8	15.6	2.28	32.03
	충청도	75	21.3	34.7	26.7	9.3	8.0	56.0	26.7	17.3	2.48	37.00
	전라도	76	32.9	32.9	27.6	6.6	0.0	65.8	27.6	6.6	2.08	26.97
	경상도	126	19.8	47.6	17.5	15.1	0.0	67.5	17.5	15.1	2.28	31.94
	기타	38	21.1	31.6	23.7	18.4	5.3	52.6	23.7	23.7	2.55	38.82
결혼 여부	미혼	342	22.5	37.1	25.1	13.2	2.0	59.6	25.1	15.2	2.35	33.77
	기혼	758	24.0	37.5	23.1	12.1	3.3	61.5	23.1	15.4	2.33	33.31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28.2	37.2	26.9	5.1	2.6	65.4	26.9	7.7	2.17	29.17
	2명	175	20.0	38.3	25.7	12.0	4.0	58.3	25.7	16.0	2.42	35.43
	3명	295	25.1	38.3	22.7	12.2	1.7	63.4	22.7	13.9	2.27	31.78
	4명	435	22.8	35.2	23.2	15.2	3.7	57.9	23.2	18.9	2.42	35.46
	5명이상	117	24.8	41.9	23.1	8.5	1.7	66.7	23.1	10.3	2.21	30.13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24.2	37.1	24.2	11.9	2.5	61.4	24.2	14.4	2.31	32.81
	1명	166	19.3	41.0	21.1	13.3	5.4	60.2	21.1	18.7	2.45	36.14
	2명이상	121	24.8	33.9	24.0	14.9	2.5	58.7	24.0	17.4	2.36	34.09
직업	화이트 칼라	486	24.7	39.3	22.2	11.3	2.5	64.0	22.2	13.8	2.28	31.89
	블루 칼라	106	25.5	32.1	24.5	13.2	4.7	57.5	24.5	17.9	2.40	34.91
	자영업	132	28.0	36.4	20.5	10.6	4.5	64.4	20.5	15.2	2.27	31.82
	학생	85	16.5	30.6	35.3	16.5	1.2	47.1	35.3	17.6	2.55	38.82
	주부	208	20.2	37.5	25.5	13.9	2.9	57.7	25.5	16.8	2.42	35.46
	무직/퇴직	68	25.0	39.7	22.1	10.3	2.9	64.7	22.1	13.2	2.26	31.62
	기타	15	13.3	46.7	13.3	26.7	0.0	60.0	13.3	26.7	2.53	38.33
학력	고졸이하	263	22.8	37.6	24.7	11.0	3.8	60.5	24.7	14.8	2.35	33.84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5.6	28.6	36.4	18.2	1.3	44.2	36.4	19.5	2.61	40.26
	전문대졸	115	25.2	41.7	21.7	9.6	1.7	67.0	21.7	11.3	2.21	30.22
	대졸이상	645	24.5	37.5	22.2	12.9	2.9	62.0	22.2	15.8	2.32	33.06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24.3	38.2	23.6	11.8	2.1	62.5	23.6	13.9	2.29	32.29
	200~400만원 미만	408	24.8	38.2	24.0	10.5	2.5	63.0	24.0	13.0	2.28	31.92
	400~600만원 미만	355	22.5	36.1	25.1	13.2	3.1	58.6	25.1	16.3	2.38	34.58
	600만원 이상	193	22.3	37.3	20.7	15.5	4.1	59.6	20.7	19.7	2.42	35.49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22.2	38.9	21.7	14.6	2.5	61.1	21.7	17.2	2.36	34.09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332	23.8	38.3	22.6	12.0	3.3	62.0	22.6	15.4	2.33	33.21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836	24.2	37.8	22.7	12.3	3.0	62.0	22.7	15.3	2.32	33.04
	인터넷정보(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25.3	36.7	22.5	12.7	2.7	62.0	22.5	15.5	2.31	32.73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25.0	30.8	23.8	15.1	5.2	55.8	23.8	20.3	2.45	36.19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15.6	26.7	35.6	17.8	4.4	42.2	35.6	22.2	2.69	42.22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16.0	42.0	24.0	16.0	2.0	58.0	24.0	18.0	2.46	36.50
	기타	2	50.0	0.0	0.0	50.0	0.0	50.0	0.0	50.0	2.50	37.5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18.6	39.7	31.4	8.8	1.5	58.2	31.4	10.3	2.35	33.76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25.0	37.9	20.2	14.5	2.4	62.9	20.2	16.9	2.31	32.86
	전문가 의견	80	21.3	33.8	28.8	15.0	1.3	55.0	28.8	16.3	2.41	35.31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25.2	37.4	20.9	13.1	3.5	62.6	20.9	16.6	2.32	33.07
	주변 사람의 의견	62	16.1	32.3	29.0	17.7	4.8	48.4	29.0	22.6	2.63	40.73
	정부 보도 자료	32	40.6	37.5	18.8	0.0	3.1	78.1	18.8	3.1	1.88	21.88
	기타(구체적으로)	4	0.0	50.0	50.0	0.0	0.0	50.0	50.0	0.0	2.50	37.50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37.8	39.6	14.4	6.0	2.1	77.4	14.4	8.1	1.95	23.75
	보통	610	17.4	38.5	28.5	13.6	2.0	55.9	28.5	15.6	2.44	36.07
	안전	109	8.3	22.9	29.4	28.4	11.0	31.2	29.4	39.4	3.11	52.75

3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체계성 인식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14.4	38.5	36.7	9.5	.9	52.9	36.7	10.4	2.44	36.00
성별	남자	559	15.2	39.7	33.6	10.4	1.1	54.9	33.6	11.4	2.42	35.60
	여자	541	13.5	37.3	39.9	8.5	.7	50.8	39.9	9.2	2.46	36.41
연령	20대	200	17.0	40.0	34.5	7.5	1.0	57.0	34.5	8.5	2.36	33.88
	30대	241	15.4	39.8	37.3	7.1	.4	55.2	37.3	7.5	2.37	34.34
	40대	275	16.7	34.9	36.0	10.9	1.5	51.6	36.0	12.4	2.45	36.36
	50대	245	10.6	42.9	35.1	10.6	.8	53.5	35.1	11.4	2.48	37.04
	60대	139	10.8	33.8	43.2	11.5	.7	44.6	43.2	12.2	2.58	39.39
거주 지역	서울	229	15.3	38.0	35.4	10.0	1.3	53.3	35.4	11.4	2.44	36.03
	부산	79	10.1	27.8	45.6	15.2	1.3	38.0	45.6	16.5	2.70	42.41
	대구	54	11.1	38.9	40.7	9.3	0.0	50.0	40.7	9.3	2.48	37.04
	인천	64	12.5	37.5	42.2	4.7	3.1	50.0	42.2	7.8	2.48	37.11
	광주	30	20.0	36.7	33.3	10.0	0.0	56.7	33.3	10.0	2.33	33.33
	대전	32	25.0	31.3	31.3	12.5	0.0	56.3	31.3	12.5	2.31	32.81
	경기	265	15.1	41.5	35.8	7.5	0.0	56.6	35.8	7.5	2.36	33.96
	강원	32	9.4	50.0	31.3	9.4	0.0	59.4	31.3	9.4	2.41	35.16
	충청도	75	17.3	30.7	41.3	6.7	4.0	48.0	41.3	10.7	2.49	37.33
	전라도	76	19.7	40.8	32.9	6.6	0.0	60.5	32.9	6.6	2.26	31.58
	경상도	126	10.3	42.9	36.5	9.5	.8	53.2	36.5	10.3	2.48	36.90
	기타	38	7.9	39.5	28.9	23.7	0.0	47.4	28.9	23.7	2.68	42.11
결혼 여부	미혼	342	17.8	43.3	31.6	7.3	0.0	61.1	31.6	7.3	2.28	32.09
	기혼	758	12.8	36.4	39.1	10.4	1.3	49.2	39.1	11.7	2.51	37.76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21.8	41.0	35.9	1.3	0.0	62.8	35.9	1.3	2.17	29.17
	2명	175	13.7	40.0	36.0	9.1	1.1	53.7	36.0	10.3	2.44	36.00
	3명	295	12.5	40.0	38.3	8.8	.3	52.5	38.3	9.2	2.44	36.10
	4명	435	13.8	36.3	36.6	12.2	1.1	50.1	36.6	13.3	2.51	37.64
	5명이상	117	17.1	39.3	35.0	6.8	1.7	56.4	35.0	8.5	2.37	34.19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4.3	39.2	37.5	8.5	.5	53.5	37.5	9.0	2.42	35.42
	1명	166	13.3	34.3	34.9	15.1	2.4	47.6	34.9	17.5	2.59	39.76
	2명이상	121	16.5	39.7	33.9	8.3	1.7	56.2	33.9	9.9	2.39	34.71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5.6	39.3	35.2	9.5	.4	54.9	35.2	9.9	2.40	34.93
	블루 칼라	106	14.2	43.4	36.8	3.8	1.9	57.5	36.8	5.7	2.36	33.96
	자영업	132	15.2	37.1	35.6	10.6	1.5	52.3	35.6	12.1	2.46	36.55
	학생	85	12.9	41.2	34.1	11.8	0.0	54.1	34.1	11.8	2.45	36.18
	주부	208	10.6	34.1	42.3	11.5	1.4	44.7	42.3	13.0	2.59	39.78
	무직/퇴직	68	16.2	39.7	35.3	7.4	1.5	55.9	35.3	8.8	2.38	34.56
	기타	15	20.0	33.3	40.0	6.7	0.0	53.3	40.0	6.7	2.33	33.33
학력	고졸이하	263	12.2	38.4	37.6	9.9	1.9	50.6	37.6	11.8	2.51	37.74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3.0	36.4	39.0	11.7	0.0	49.4	39.0	11.7	2.49	37.34
	전문대졸	115	15.7	40.0	36.5	7.0	.9	55.7	36.5	7.8	2.37	34.35
	대졸이상	645	15.2	38.6	36.1	9.5	.6	53.8	36.1	10.1	2.42	35.43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21.5	44.4	25.7	7.6	.7	66.0	25.7	8.3	2.22	30.38
	200~400만원 미만	408	14.0	40.2	36.8	8.6	.5	54.2	36.8	9.1	2.41	35.36
	400~600만원 미만	355	12.4	35.2	39.7	11.3	1.4	47.6	39.7	12.7	2.54	38.52
	600만원 이상	193	13.5	36.8	39.4	9.3	1.0	50.3	39.4	10.4	2.48	36.92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2.1	36.9	38.9	10.6	1.5	49.0	38.9	12.1	2.53	38.13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332	10.8	41.3	35.2	11.4	1.2	52.1	35.2	12.7	2.51	37.73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836	14.4	39.2	36.8	8.5	1.1	53.6	36.8	9.6	2.43	35.68
	인터넷정보(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14.7	40.5	34.5	9.7	.6	55.2	34.5	10.3	2.41	35.22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16.9	34.9	33.1	13.4	1.7	51.7	33.1	15.1	2.48	37.06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11.1	20.0	44.4	17.8	6.7	31.1	44.4	24.4	2.89	47.22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10.0	37.3	38.7	12.0	2.0	47.3	38.7	14.0	2.59	39.67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13.9	39.2	36.1	10.3	.5	53.1	36.1	10.8	2.44	36.08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6.1	33.9	37.9	10.5	1.6	50.0	37.9	12.1	2.48	36.90
	전문가 의견	80	13.8	45.0	31.3	8.8	1.3	58.8	31.3	10.0	2.39	34.69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14.2	38.4	38.4	8.3	.7	52.6	38.4	8.9	2.43	35.68
	주변 사람의 의견	62	14.5	30.6	33.9	17.7	3.2	45.2	33.9	21.0	2.65	41.13
	정부 보도 자료	32	15.6	50.0	25.0	9.4	0.0	65.6	25.0	9.4	2.28	32.03
	기타(구체적으로)	4	0.0	75.0	25.0	0.0	0.0	75.0	25.0	0.0	2.25	31.25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28.9	50.9	17.6	2.4	.3	79.8	17.6	2.6	1.94	23.56
	보통	610	7.2	35.4	47.5	9.2	.7	42.6	47.5	9.8	2.61	40.16
	안전	109	3.7	12.8	43.1	35.8	4.6	16.5	43.1	40.4	3.25	56.19

3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효과성 인식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14.0	41.5	35.0	8.5	1.1	55.5	35.0	9.5	2.41	35.30
성별	남자	559	16.1	42.9	31.5	8.2	1.3	59.0	31.5	9.5	2.36	33.90
	여자	541	11.8	39.9	38.6	8.7	.9	51.8	38.6	9.6	2.47	36.74
연령	20대	200	15.0	42.0	36.0	6.0	1.0	57.0	36.0	7.0	2.36	34.00
	30대	241	14.9	44.0	34.0	7.1	0.0	58.9	34.0	7.1	2.33	33.30
	40대	275	14.5	42.5	30.9	10.2	1.8	57.1	30.9	12.0	2.42	35.55
	50대	245	11.0	44.1	36.7	6.9	1.2	55.1	36.7	8.2	2.43	35.82
	60대	139	15.1	29.5	40.3	13.7	1.4	44.6	40.3	15.1	2.57	39.21
거주 지역	서울	229	12.2	42.4	34.9	9.2	1.3	54.6	34.9	10.5	2.45	36.24
	부산	79	12.7	31.6	41.8	13.9	0.0	44.3	41.8	13.9	2.57	39.24
	대구	54	18.5	35.2	37.0	9.3	0.0	53.7	37.0	9.3	2.37	34.26
	인천	64	10.9	45.3	34.4	7.8	1.6	56.3	34.4	9.4	2.44	35.94
	광주	30	16.7	46.7	36.7	0.0	0.0	63.3	36.7	0.0	2.20	30.00
	대전	32	25.0	34.4	31.3	9.4	0.0	59.4	31.3	9.4	2.25	31.25
	경기	265	13.2	42.6	36.6	6.4	1.1	55.8	36.6	7.5	2.40	34.91
	강원	32	12.5	53.1	25.0	9.4	0.0	65.6	25.0	9.4	2.31	32.81
	충청도	75	14.7	34.7	41.3	5.3	4.0	49.3	41.3	9.3	2.49	37.33
	전라도	76	22.4	39.5	30.3	6.6	1.3	61.8	30.3	7.9	2.25	31.25
	경상도	126	12.7	48.4	29.4	8.7	.8	61.1	29.4	9.5	2.37	34.13
	기타	38	7.9	36.8	34.2	21.1	0.0	44.7	34.2	21.1	2.68	42.11
결혼 여부	미혼	342	14.9	44.4	32.2	8.2	.3	59.4	32.2	8.5	2.35	33.63
	기혼	758	13.6	40.1	36.3	8.6	1.5	53.7	36.3	10.0	2.44	36.05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17.9	43.6	28.2	10.3	0.0	61.5	28.2	10.3	2.31	32.69
	2명	175	12.0	40.0	38.3	9.7	0.0	52.0	38.3	9.7	2.46	36.43
	3명	295	13.9	43.4	33.6	8.8	.3	57.3	33.6	9.2	2.38	34.58
	4명	435	13.3	41.1	35.4	8.3	1.8	54.5	35.4	10.1	2.44	36.03
	5명이상	117	17.1	38.5	36.8	5.1	2.6	55.6	36.8	7.7	2.38	34.40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3.2	41.9	35.8	8.4	.7	55.1	35.8	9.1	2.42	35.39
	1명	166	14.5	36.7	34.9	11.4	2.4	51.2	34.9	13.9	2.51	37.65
	2명이상	121	19.0	44.6	29.8	5.0	1.7	63.6	29.8	6.6	2.26	31.40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5.0	44.9	31.1	8.2	.8	59.9	31.1	9.1	2.35	33.74
	블루 칼라	106	13.2	41.5	34.9	9.4	.9	54.7	34.9	10.4	2.43	35.85
	자영업	132	12.9	41.7	34.1	9.8	1.5	54.5	34.1	11.4	2.45	36.36
	학생	85	12.9	41.2	40.0	4.7	1.2	54.1	40.0	5.9	2.40	35.00
	주부	208	11.5	33.7	42.8	10.1	1.9	45.2	42.8	12.0	2.57	39.30
	무직/퇴직	68	17.6	39.7	35.3	7.4	0.0	57.4	35.3	7.4	2.32	33.09
	기타	15	20.0	46.7	33.3	0.0	0.0	66.7	33.3	0.0	2.13	28.33
학력	고졸이하	263	12.9	35.4	40.3	9.5	1.9	48.3	40.3	11.4	2.52	38.02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0.4	41.6	39.0	7.8	1.3	51.9	39.0	9.1	2.48	37.01
	전문대졸	115	17.4	40.9	33.0	8.7	0.0	58.3	33.0	8.7	2.33	33.26
	대졸이상	645	14.3	44.0	32.7	8.1	.9	58.3	32.7	9.0	2.37	34.34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8.8	41.7	31.9	6.3	1.4	60.4	31.9	7.6	2.30	32.47
	200~00만원 미만	408	15.2	42.4	33.3	8.6	.5	57.6	33.3	9.1	2.37	34.19
	400~600만원 미만	355	10.7	41.4	37.5	9.0	1.4	52.1	37.5	10.4	2.49	37.25
	600만원 이상	193	14.0	39.4	36.3	8.8	1.6	53.4	36.3	10.4	2.45	36.14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7.7	38.9	34.3	8.6	.5	56.6	34.3	9.1	2.35	33.84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332	12.7	42.5	32.5	11.4	.9	55.1	32.5	12.3	2.45	36.37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836	14.7	41.6	34.2	8.5	1.0	56.3	34.2	9.4	2.39	34.84
	인터넷정보(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14.3	43.2	33.4	8.5	.6	57.5	33.4	9.1	2.38	34.47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17.4	36.6	33.1	9.9	2.9	54.1	33.1	12.8	2.44	36.05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13.3	26.7	31.1	20.0	8.9	40.0	31.1	28.9	2.84	46.11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10.7	39.3	38.7	10.0	1.3	50.0	38.7	11.3	2.52	38.00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12.4	41.2	37.6	7.2	1.5	53.6	37.6	8.8	2.44	36.08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1.3	40.3	35.5	11.3	1.6	51.6	35.5	12.9	2.52	37.90
	전문가 의견	80	15.0	43.8	28.8	11.3	1.3	58.8	28.8	12.5	2.40	35.00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14.7	41.2	35.9	7.3	.8	56.0	35.9	8.1	2.38	34.56
	주변 사람의 의견	62	9.7	43.5	30.6	14.5	1.6	53.2	30.6	16.1	2.55	38.71
	정부 보도 자료	32	28.1	37.5	25.0	9.4	0.0	65.6	25.0	9.4	2.16	28.91
	기타(구체적으로)	4	0.0	75.0	25.0	0.0	0.0	75.0	25.0	0.0	2.25	31.25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27.6	53.0	17.3	1.8	.3	80.6	17.3	2.1	1.94	23.56
	보통	610	7.5	38.4	45.4	7.9	.8	45.9	45.4	8.7	2.56	39.02
	안전	109	2.8	18.3	38.5	34.9	5.5	21.1	38.5	40.4	3.22	55.50

3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형사정책의 신뢰성 인식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16.0	38.8	31.9	11.9	1.4	54.8	31.9	13.3	2.44	35.95
성별	남자	559	16.8	38.5	32.0	11.6	1.1	55.3	32.0	12.7	2.42	35.42
	여자	541	15.2	39.2	31.8	12.2	1.7	54.3	31.8	13.9	2.46	36.51
연령	20대	200	17.5	38.5	33.0	10.0	1.0	56.0	33.0	11.0	2.39	34.63
	30대	241	18.3	39.4	33.6	8.3	.4	57.7	33.6	8.7	2.33	33.30
	40대	275	18.5	37.1	30.2	12.4	1.8	55.6	30.2	14.2	2.42	35.45
	50대	245	12.2	44.5	27.3	14.3	1.6	56.7	27.3	15.9	2.49	37.14
	60대	139	11.5	31.7	38.8	15.8	2.2	43.2	38.8	18.0	2.65	41.37
거주 지역	서울	229	15.3	41.9	26.6	14.4	1.7	57.2	26.6	16.2	2.45	36.35
	부산	79	15.2	29.1	39.2	16.5	0.0	44.3	39.2	16.5	2.57	39.24
	대구	54	7.4	44.4	33.3	14.8	0.0	51.9	33.3	14.8	2.56	38.89
	인천	64	18.8	29.7	42.2	7.8	1.6	48.4	42.2	9.4	2.44	35.94
	광주	30	30.0	30.0	23.3	13.3	3.3	60.0	23.3	16.7	2.30	32.50
	대전	32	28.1	28.1	37.5	3.1	3.1	56.3	37.5	6.3	2.25	31.25
	경기	265	17.0	37.4	34.3	9.8	1.5	54.3	34.3	11.3	2.42	35.38
	강원	32	18.8	43.8	25.0	12.5	0.0	62.5	25.0	12.5	2.31	32.81
	충청도	75	16.0	34.7	29.3	17.3	2.7	50.7	29.3	20.0	2.56	39.00
	전라도	76	18.4	43.4	27.6	10.5	0.0	61.8	27.6	10.5	2.30	32.57
	경상도	126	11.9	48.4	32.5	6.3	.8	60.3	32.5	7.1	2.36	33.93
	기타	38	7.9	36.8	31.6	21.1	2.6	44.7	31.6	23.7	2.74	43.42
결혼 여부	미혼	342	17.5	41.8	30.7	9.4	.6	59.4	30.7	9.9	2.34	33.41
	기혼	758	15.3	37.5	32.5	13.1	1.7	52.8	32.5	14.8	2.48	37.10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26.9	34.6	28.2	10.3	0.0	61.5	28.2	10.3	2.22	30.45
	2명	175	17.7	33.1	36.6	12.0	.6	50.9	36.6	12.6	2.45	36.14
	3명	295	14.6	40.7	31.5	11.9	1.4	55.3	31.5	13.2	2.45	36.19
	4명	435	14.3	39.1	32.0	12.6	2.1	53.3	32.0	14.7	2.49	37.30
	5명이상	117	16.2	44.4	28.2	10.3	.9	60.7	28.2	11.1	2.35	33.76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5.1	39.1	33.0	11.8	1.0	54.2	33.0	12.8	2.44	36.10
	1명	166	15.7	35.5	31.3	15.1	2.4	51.2	31.3	17.5	2.53	38.25
	2명이상	121	22.3	41.3	25.6	8.3	2.5	63.6	25.6	10.7	2.27	31.82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7.5	40.9	30.7	9.5	1.4	58.4	30.7	10.9	2.36	34.10
	블루 칼라	106	18.9	44.3	23.6	12.3	.9	63.2	23.6	13.2	2.32	33.02
	자영업	132	18.9	32.6	32.6	15.2	.8	51.5	32.6	15.9	2.46	36.55
	학생	85	8.2	37.6	42.4	11.8	0.0	45.9	42.4	11.8	2.58	39.41
	주부	208	9.6	37.0	33.7	16.8	2.9	46.6	33.7	19.7	2.66	41.59
	무직/퇴직	68	23.5	33.8	35.3	7.4	0.0	57.4	35.3	7.4	2.26	31.62
	기타	15	20.0	40.0	26.7	13.3	0.0	60.0	26.7	13.3	2.33	33.33
학력	고졸이하	263	12.9	39.5	31.9	13.7	1.9	52.5	31.9	15.6	2.52	38.02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9.1	33.8	37.7	19.5	0.0	42.9	37.7	19.5	2.68	41.88
	전문대졸	115	18.3	38.3	31.3	12.2	0.0	56.5	31.3	12.2	2.37	34.35
	대졸이상	645	17.7	39.2	31.3	10.2	1.6	56.9	31.3	11.8	2.39	34.69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22.2	44.4	25.0	7.6	.7	66.7	25.0	8.3	2.20	30.03
	200~400만원 미만	408	17.9	38.2	31.1	11.8	1.0	56.1	31.1	12.7	2.40	34.93
	400~600만원 미만	355	12.4	40.8	32.7	12.7	1.4	53.2	32.7	14.1	2.50	37.46
	600만원 이상	193	14.0	32.1	37.3	14.0	2.6	46.1	37.3	16.6	2.59	39.77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6.2	33.3	32.8	16.2	1.5	49.5	32.8	17.7	2.54	38.38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332	10.8	37.7	35.2	14.2	2.1	48.5	35.2	16.3	2.59	39.76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836	16.4	39.4	31.0	12.1	1.2	55.7	31.0	13.3	2.42	35.59
	인터넷정보(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16.3	39.6	30.2	13.0	.9	55.9	30.2	13.9	2.42	35.62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20.3	32.0	27.3	18.6	1.7	52.3	27.3	20.3	2.49	37.35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8.9	28.9	37.8	20.0	4.4	37.8	37.8	24.4	2.82	45.56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12.7	34.0	37.3	14.7	1.3	46.7	37.3	16.0	2.58	39.50
	기타	2	100.0	0.0	0.0	0.0	0.0	100.0	0.0	0.0	1.00	0.0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13.9	41.8	31.4	10.3	2.6	55.7	31.4	12.9	2.46	36.47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5.3	42.7	27.4	12.1	2.4	58.1	27.4	14.5	2.44	35.89
	전문가 의견	80	18.8	35.0	33.8	11.3	1.3	53.8	33.8	12.5	2.41	35.31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16.1	37.6	33.4	12.3	.7	53.6	33.4	12.9	2.44	35.97
	주변 사람의 의견	62	12.9	40.3	30.6	14.5	1.6	53.2	30.6	16.1	2.52	37.90
	정부 보도 자료	32	28.1	34.4	21.9	12.5	3.1	62.5	21.9	15.6	2.28	32.03
	기타(구체적으로)	4	25.0	50.0	25.0	0.0	0.0	75.0	25.0	0.0	2.00	25.00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32.5	45.9	17.3	3.7	.5	78.5	17.3	4.2	1.94	23.43
	보통	610	7.7	38.2	40.5	12.8	.8	45.9	40.5	13.6	2.61	40.20
	안전	109	4.6	17.4	34.9	35.8	7.3	22.0	34.9	43.1	3.24	55.96

3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이행의 적절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16.0	38.9	33.1	10.8	1.2	54.9	33.1	12.0	2.42	35.57
성별	남자	559	17.4	40.1	31.1	9.8	1.6	57.4	31.1	11.4	2.38	34.57
	여자	541	14.6	37.7	35.1	11.8	.7	52.3	35.1	12.6	2.46	36.60
연령	20대	200	16.0	35.5	36.5	10.5	1.5	51.5	36.5	12.0	2.46	36.50
	30대	241	16.6	40.2	34.0	8.7	.4	56.8	34.0	9.1	2.36	34.02
	40대	275	17.8	38.5	29.5	12.0	2.2	56.4	29.5	14.2	2.42	35.55
	50대	245	15.1	42.9	30.2	11.4	.4	58.0	30.2	11.8	2.39	34.80
	60대	139	12.9	35.3	38.8	11.5	1.4	48.2	38.8	12.9	2.53	38.31
거주 지역	서울	229	16.2	39.7	34.9	8.3	.9	55.9	34.9	9.2	2.38	34.50
	부산	79	15.2	36.7	34.2	13.9	0.0	51.9	34.2	13.9	2.47	36.71
	대구	54	9.3	37.0	40.7	13.0	0.0	46.3	40.7	13.0	2.57	39.35
	인천	64	17.2	31.3	43.8	6.3	1.6	48.4	43.8	7.8	2.44	35.94
	광주	30	16.7	36.7	30.0	16.7	0.0	53.3	30.0	16.7	2.47	36.67
	대전	32	34.4	25.0	34.4	6.3	0.0	59.4	34.4	6.3	2.13	28.13
	경기	265	15.1	42.3	29.8	11.3	1.5	57.4	29.8	12.8	2.42	35.47
	강원	32	12.5	46.9	21.9	18.8	0.0	59.4	21.9	18.8	2.47	36.72
	충청도	75	21.3	34.7	36.0	5.3	2.7	56.0	36.0	8.0	2.33	33.33
	전라도	76	23.7	34.2	28.9	11.8	1.3	57.9	28.9	13.2	2.33	33.22
	경상도	126	9.5	45.2	32.5	11.1	1.6	54.8	32.5	12.7	2.50	37.50
	기타	38	13.2	34.2	28.9	21.1	2.6	47.4	28.9	23.7	2.66	41.45
결혼 여부	미혼	342	15.5	36.5	36.8	10.2	.9	52.0	36.8	11.1	2.44	36.11
	기혼	758	16.2	40.0	31.4	11.1	1.3	56.2	31.4	12.4	2.41	35.32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19.2	33.3	38.5	7.7	1.3	52.6	38.5	9.0	2.38	34.62
	2명	175	16.0	40.0	32.6	10.9	.6	56.0	32.6	11.4	2.40	35.00
	3명	295	16.6	38.6	33.2	10.8	.7	55.3	33.2	11.5	2.40	35.08
	4명	435	15.2	39.1	32.9	11.5	1.4	54.3	32.9	12.9	2.45	36.21
	5명이상	117	15.4	41.0	30.8	10.3	2.6	56.4	30.8	12.8	2.44	35.90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5.4	39.7	33.9	10.2	.7	55.1	33.9	10.9	2.41	35.30
	1명	166	16.3	35.5	30.1	15.1	3.0	51.8	30.1	18.1	2.53	38.25
	2명이상	121	19.8	38.0	31.4	9.1	1.7	57.9	31.4	10.7	2.35	33.68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6.0	41.8	31.1	9.9	1.2	57.8	31.1	11.1	2.38	34.62
	블루 칼라	106	15.1	41.5	35.8	6.6	.9	56.6	35.8	7.5	2.37	34.20
	자영업	132	18.2	38.6	30.3	11.4	1.5	56.8	30.3	12.9	2.39	34.85
	학생	85	16.5	31.8	38.8	10.6	2.4	48.2	38.8	12.9	2.51	37.65
	주부	208	14.9	35.1	34.1	14.9	1.0	50.0	34.1	15.9	2.52	37.98
	무직/퇴직	68	16.2	38.2	35.3	10.3	0.0	54.4	35.3	10.3	2.40	34.93
	기타	15	13.3	26.7	46.7	13.3	0.0	40.0	46.7	13.3	2.60	40.00
학력	고졸이하	263	14.1	39.5	34.6	10.6	1.1	53.6	34.6	11.8	2.45	36.31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4.3	33.8	37.7	11.7	2.6	48.1	37.7	14.3	2.55	38.64
	전문대졸	115	18.3	34.8	34.8	12.2	0.0	53.0	34.8	12.2	2.41	35.22
	대졸이상	645	16.6	40.0	31.6	10.5	1.2	56.6	31.6	11.8	2.40	34.96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20.8	40.3	27.1	10.4	1.4	61.1	27.1	11.8	2.31	32.81
	200~00만원 미만	408	16.4	38.0	35.3	9.1	1.2	54.4	35.3	10.3	2.41	35.17
	400~600만원 미만	355	14.9	39.2	32.7	11.8	1.4	54.1	32.7	13.2	2.46	36.41
	600만원 이상	193	13.5	39.4	33.7	13.0	.5	52.8	33.7	13.5	2.48	36.92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8.2	39.4	28.8	12.1	1.5	57.6	28.8	13.6	2.39	34.85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332	13.0	41.0	34.0	10.8	1.2	53.9	34.0	12.0	2.46	36.60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836	16.6	39.2	31.6	11.4	1.2	55.9	31.6	12.6	2.41	35.32
	인터넷정보(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15.9	39.9	33.5	9.8	.9	55.8	33.5	10.7	2.40	34.97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15.1	42.4	23.8	16.9	1.7	57.6	23.8	18.6	2.48	36.92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13.3	31.1	37.8	11.1	6.7	44.4	37.8	17.8	2.67	41.67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11.3	38.7	34.0	14.7	1.3	50.0	34.0	16.0	2.56	39.00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13.9	43.3	30.4	10.3	2.1	57.2	30.4	12.4	2.43	35.82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5.3	39.5	33.1	10.5	1.6	54.8	33.1	12.1	2.44	35.89
	전문가 의견	80	15.0	37.5	37.5	10.0	0.0	52.5	37.5	10.0	2.43	35.63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16.2	37.9	34.6	10.4	.8	54.1	34.6	11.3	2.42	35.43
	주변 사람의 의견	62	14.5	33.9	29.0	19.4	3.2	48.4	29.0	22.6	2.63	40.73
	정부 보도 자료	32	34.4	37.5	18.8	9.4	0.0	71.9	18.8	9.4	2.03	25.78
	기타(구체적으로)	4	0.0	75.0	25.0	0.0	0.0	75.0	25.0	0.0	2.25	31.25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29.7	48.3	17.6	4.2	.3	78.0	17.6	4.5	1.97	24.28
	보통	610	9.5	36.9	42.1	10.8	.7	46.4	42.1	11.5	2.56	39.06
	안전	109	4.6	17.4	36.7	33.9	7.3	22.0	36.7	41.3	3.22	55.50

3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형사처벌 이행의 적절성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전체]		1100	15.3	42.9	31.2	10.1	.5	58.2	31.2	10.6	2.38	34.43
성별	남자	559	17.4	43.3	29.9	8.8	.7	60.6	29.9	9.5	2.32	33.05
	여자	541	13.1	42.5	32.5	11.5	.4	55.6	32.5	11.8	2.43	35.86
연령	20대	200	16.0	42.0	32.5	8.5	1.0	58.0	32.5	9.5	2.37	34.13
	30대	241	17.8	41.1	33.6	7.5	0.0	58.9	33.6	7.5	2.31	32.68
	40대	275	14.2	43.6	29.8	11.6	.7	57.8	29.8	12.4	2.41	35.27
	50대	245	15.5	43.3	30.6	10.2	.4	58.8	30.6	10.6	2.37	34.18
	60대	139	11.5	45.3	28.8	13.7	.7	56.8	28.8	14.4	2.47	36.69
거주 지역	서울	229	13.5	44.5	31.4	9.6	.9	58.1	31.4	10.5	2.40	34.93
	부산	79	16.5	34.2	34.2	13.9	1.3	50.6	34.2	15.2	2.49	37.34
	대구	54	13.0	48.1	29.6	9.3	0.0	61.1	29.6	9.3	2.35	33.80
	인천	64	21.9	35.9	31.3	10.9	0.0	57.8	31.3	10.9	2.31	32.81
	광주	30	30.0	33.3	36.7	0.0	0.0	63.3	36.7	0.0	2.07	26.67
	대전	32	28.1	37.5	31.3	3.1	0.0	65.6	31.3	3.1	2.09	27.34
	경기	265	14.0	44.2	31.3	10.2	.4	58.1	31.3	10.6	2.39	34.72
	강원	32	9.4	53.1	25.0	12.5	0.0	62.5	25.0	12.5	2.41	35.16
	충청도	75	14.7	38.7	34.7	10.7	1.3	53.3	34.7	12.0	2.45	36.33
	전라도	76	21.1	46.1	25.0	7.9	0.0	67.1	25.0	7.9	2.20	29.93
	경상도	126	11.1	46.0	32.5	9.5	.8	57.1	32.5	10.3	2.43	35.71
	기타	38	10.5	42.1	26.3	21.1	0.0	52.6	26.3	21.1	2.58	39.47
결혼 여부	미혼	342	16.1	44.7	31.9	7.0	.3	60.8	31.9	7.3	2.31	32.68
	기혼	758	14.9	42.1	30.9	11.5	.7	57.0	30.9	12.1	2.41	35.22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20.5	42.3	33.3	3.8	0.0	62.8	33.3	3.8	2.21	30.13
	2명	175	13.7	44.6	32.0	9.1	.6	58.3	32.0	9.7	2.38	34.57
	3명	295	15.3	42.7	31.9	10.2	0.0	58.0	31.9	10.2	2.37	34.24
	4명	435	14.9	41.1	31.5	11.5	.9	56.1	31.5	12.4	2.42	35.57
	5명이상	117	15.4	47.9	25.6	10.3	.9	63.2	25.6	11.1	2.33	33.33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4.6	44.0	32.0	9.0	.4	58.7	32.0	9.3	2.36	34.10
	1명	166	14.5	42.2	27.7	15.1	.6	56.6	27.7	15.7	2.45	36.30
	2명이상	121	20.7	36.4	30.6	10.7	1.7	57.0	30.6	12.4	2.36	34.09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6.3	45.1	29.4	9.1	.2	61.3	29.4	9.3	2.32	32.97
	블루 칼라	106	14.2	45.3	30.2	9.4	.9	59.4	30.2	10.4	2.38	34.43
	자영업	132	16.7	39.4	34.8	8.3	.8	56.1	34.8	9.1	2.37	34.28
	학생	85	15.3	40.0	35.3	8.2	1.2	55.3	35.3	9.4	2.40	35.00
	주부	208	12.5	38.5	32.7	15.4	1.0	51.0	32.7	16.3	2.54	38.46
	무직/퇴직	68	16.2	47.1	27.9	8.8	0.0	63.2	27.9	8.8	2.29	32.35
	기타	15	13.3	46.7	33.3	6.7	0.0	60.0	33.3	6.7	2.33	33.33
학력	고졸이하	263	11.8	43.0	32.3	12.2	.8	54.8	32.3	12.9	2.47	36.79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3.0	39.0	36.4	10.4	1.3	51.9	36.4	11.7	2.48	37.01
	전문대졸	115	16.5	42.6	32.2	8.7	0.0	59.1	32.2	8.7	2.33	33.26
	대졸이상	645	16.7	43.4	29.9	9.5	.5	60.2	29.9	9.9	2.33	33.37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9.4	45.1	27.1	8.3	0.0	64.6	27.1	8.3	2.24	31.08
	200~400만원 미만	408	15.2	42.9	33.3	8.1	.5	58.1	33.3	8.6	2.36	33.95
	400~600만원 미만	355	13.8	42.8	29.9	13.0	.6	56.6	29.9	13.5	2.44	35.92
	600만원 이상	193	15.0	41.5	32.1	10.4	1.0	56.5	32.1	11.4	2.41	35.23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②	③	④+⑤	[5점 평균]	[100점 평균]
식품 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5.2	44.9	29.8	9.6	.5	60.1	29.8	10.1	2.35	33.84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332	12.3	47.3	27.4	12.0	.9	59.6	27.4	13.0	2.42	35.47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836	15.8	44.0	29.3	10.3	.6	59.8	29.3	10.9	2.36	33.97
	인터넷정보(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15.6	44.2	29.5	10.4	.3	59.8	29.5	10.7	2.36	33.89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17.4	42.4	23.3	16.3	.6	59.9	23.3	16.9	2.40	35.03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15.6	31.1	33.3	15.6	4.4	46.7	33.3	20.0	2.62	40.56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11.3	42.7	31.3	13.3	1.3	54.0	31.3	14.7	2.51	37.67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0.0	0.0	1.50	12.50
식품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11.3	44.8	32.0	10.8	1.0	56.2	32.0	11.9	2.45	36.34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16.9	35.5	31.5	15.3	.8	52.4	31.5	16.1	2.48	36.90
	전문가 의견	80	18.8	36.3	35.0	10.0	0.0	55.0	35.0	10.0	2.36	34.06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15.2	44.9	31.1	8.6	.2	60.1	31.1	8.8	2.34	33.40
	주변 사람의 의견	62	11.3	41.9	32.3	12.9	1.6	53.2	32.3	14.5	2.52	37.90
	정부 보도 자료	32	34.4	37.5	15.6	9.4	3.1	71.9	15.6	12.5	2.09	27.34
	기타(구체적으로)	4	0.0	75.0	25.0	0.0	0.0	75.0	25.0	0.0	2.25	31.25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30.4	50.1	17.1	2.4	0.0	80.6	17.1	2.4	1.91	22.83
	보통	610	7.7	42.8	38.5	10.7	.3	50.5	38.5	11.0	2.53	38.28
	안전	109	4.6	18.3	39.4	33.9	3.7	22.9	39.4	37.6	3.14	53.44

3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형사정책

		사례수	행정처분	형사처벌
[전체]		1100	22.6	77.4
성별	남자	559	16.1	83.9
	여자	541	29.4	70.6
연령	20대	200	35.5	64.5
	30대	241	24.1	75.9
	40대	275	17.5	82.5
	50대	245	19.6	80.4
	60대	139	17.3	82.7
거주지역	서울	229	23.1	76.9
	부산	79	16.5	83.5
	대구	54	20.4	79.6
	인천	64	21.9	78.1
	광주	30	30.0	70.0
	대전	32	31.3	68.8
	경기	265	26.0	74.0
	강원	32	21.9	78.1
	충청도	75	16.0	84.0
	전라도	76	18.4	81.6
	경상도	126	20.6	79.4
	기타	38	28.9	71.1
결혼여부	미혼	342	29.5	70.5
	기혼	758	19.5	80.5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21.8	78.2
	2명	175	27.4	72.6
	3명	295	21.0	79.0
	4명	435	20.7	79.3
	5명이상	117	27.4	72.6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22.3	77.7
	1명	166	22.3	77.7
	2명이상	121	25.6	74.4
직업	화이트 칼라	486	21.6	78.4
	블루 칼라	106	20.8	79.2
	자영업	132	16.7	83.3
	학생	85	35.3	64.7
	주부	208	26.0	74.0
	무직/퇴직	68	16.2	83.8
	기타	15	33.3	66.7

		사례수	행정처분	형사처벌
학력	고졸이하	263	20.5	79.5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35.1	64.9
	전문대졸	115	20.0	80.0
	대졸이상	645	22.5	77.5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29.2	70.8
	200~400만원 미만	408	22.3	77.7
	400~600만원 미만	355	20.8	79.2
	600만원 이상	193	21.8	78.2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 얻는 방법	정부기관(중앙정부, 식약처 등)	198	18.7	81.3
	인쇄매체(신문, 잡지 등)	332	24.1	75.9
	방송매체(TV, 라디오 등)	836	20.5	79.5
	인터넷정보(인터넷 포털, 블로그 등)	692	22.5	77.5
	소비자 단체 홈페이지	172	22.7	77.3
	대학, 연구기관 홈페이지 및 서적	45	44.4	55.6
	판매원, 길거리캠페인, 주변인, 홍보유인물 등을 통한 정보	150	27.3	72.7
	기타	2	0.0	100.0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막연한 불안감	194	22.2	77.8
	본인 및 가족의 경험	124	29.0	71.0
	전문가 의견	80	33.8	66.3
	방송보도(뉴스 및 프로그램 등)	604	20.2	79.8
	주변 사람의 의견	62	17.7	82.3
	정부 보도 자료	32	25.0	75.0
	기타(구체적으로)	4	50.0	50.0
식품 전반적 안전성	위험	381	17.6	82.4
	보통	610	23.9	76.1
	안전	109	33.0	67.0

3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행정처분

		사례수	시정명령, 폐기 등의 처분	시설의 개수명령 (시설을 고치고 수정하도록 명령)	영업정지 명령	허가의 취소명령	영업소의 폐쇄명령	과징금부과 처분	영업소폐지 + 과징금
[전체]		249	7.6	8.4	21.7	19.3	37.8	4.8	.4
성별	남자	90	8.9	8.9	26.7	18.9	32.2	4.4	0.0
	여자	159	6.9	8.2	18.9	19.5	40.9	5.0	.6
연령	20대	71	8.5	5.6	21.1	14.1	46.5	2.8	1.4
	30대	58	5.2	8.6	27.6	8.6	43.1	6.9	0.0
	40대	48	0.0	16.7	22.9	22.9	31.3	6.3	0.0
	50대	48	18.8	4.2	14.6	20.8	35.4	6.3	0.0
	60대	24	4.2	8.3	20.8	50.0	16.7	0.0	0.0
거주 지역	서울	53	1.9	5.7	15.1	24.5	39.6	11.3	1.9
	부산	13	7.7	0.0	23.1	23.1	46.2	0.0	0.0
	대구	11	0.0	9.1	9.1	18.2	54.5	9.1	0.0
	인천	14	14.3	7.1	28.6	14.3	35.7	0.0	0.0
	광주	9	0.0	0.0	55.6	22.2	11.1	11.1	0.0
	대전	10	0.0	20.0	30.0	20.0	30.0	0.0	0.0
	경기	69	11.6	10.1	21.7	15.9	37.7	2.9	0.0
	강원	7	0.0	14.3	14.3	14.3	57.1	0.0	0.0
	충청도	12	0.0	0.0	25.0	25.0	50.0	0.0	0.0
	전라도	14	14.3	21.4	7.1	21.4	35.7	0.0	0.0
	경상도	26	7.7	3.8	30.8	23.1	26.9	7.7	0.0
	기타	11	27.3	18.2	18.2	0.0	36.4	0.0	0.0
결혼 여부	미혼	101	8.9	7.9	20.8	9.9	47.5	4.0	1.0
	기혼	148	6.8	8.8	22.3	25.7	31.1	5.4	0.0
가족 구성원 수	1명	17	11.8	11.8	41.2	0.0	35.3	0.0	0.0
	2명	48	6.3	8.3	22.9	29.2	27.1	6.3	0.0
	3명	62	8.1	6.5	22.6	19.4	33.9	8.1	1.6
	4명	90	6.7	7.8	16.7	18.9	45.6	4.4	0.0
	5명이상	32	9.4	12.5	21.9	15.6	40.6	0.0	0.0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181	8.3	8.3	20.4	18.8	39.8	3.9	.6
	1명	37	5.4	13.5	29.7	10.8	35.1	5.4	0.0
	2명이상	31	6.5	3.2	19.4	32.3	29.0	9.7	0.0
직업	화이트 칼라	105	4.8	12.4	29.5	15.2	34.3	3.8	0.0
	블루 칼라	22	4.5	13.6	27.3	22.7	18.2	13.6	0.0
	자영업	22	13.6	4.5	9.1	27.3	36.4	9.1	0.0
	학생	30	16.7	3.3	6.7	6.7	66.7	0.0	0.0
	주부	54	5.6	5.6	18.5	27.8	37.0	5.6	0.0
	무직/퇴직	11	18.2	0.0	18.2	18.2	36.4	0.0	9.1
	기타	5	0.0	0.0	20.0	40.0	40.0	0.0	0.0
학력	고졸이하	54	9.3	7.4	18.5	25.9	35.2	3.7	0.0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27	11.1	3.7	7.4	7.4	66.7	3.7	0.0
	전문대졸	23	4.3	13.0	17.4	13.0	43.5	4.3	4.3
	대졸이상	145	6.9	9.0	26.2	20.0	32.4	5.5	0.0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42	11.9	4.8	23.8	14.3	38.1	4.8	2.4
	200~400만원 미만	91	11.0	13.2	23.1	15.4	36.3	1.1	0.0
	400~600만원 미만	74	2.7	5.4	18.9	25.7	41.9	5.4	0.0
	600만원 이상	42	4.8	7.1	21.4	21.4	33.3	11.9	0.0

3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형사처벌

		사례수	벌금	징역	벌금과 징역
[전체]		851	2.9	14.9	82.1
성별	남자	469	3.0	16.4	80.6
	여자	382	2.9	13.1	84.0
연령	20대	129	7.8	18.6	73.6
	30대	183	2.7	17.5	79.8
	40대	227	3.1	17.2	79.7
	50대	197	1.0	12.7	86.3
	60대	115	.9	6.1	93.0
거주지역	서울	176	3.4	19.3	77.3
	부산	66	3.0	7.6	89.4
	대구	43	0.0	14.0	86.0
	인천	50	4.0	14.0	82.0
	광주	21	0.0	14.3	85.7
	대전	22	0.0	18.2	81.8
	경기	196	4.1	15.8	80.1
	강원	25	0.0	16.0	84.0
	충청도	63	4.8	15.9	79.4
	전라도	62	1.6	6.5	91.9
	경상도	100	2.0	17.0	81.0
	기타	27	3.7	7.4	88.9
결혼여부	미혼	241	5.0	17.8	77.2
	기혼	610	2.1	13.8	84.1
가족 구성원 수	1명	61	4.9	14.8	80.3
	2명	127	.8	15.7	83.5
	3명	233	3.9	17.2	79.0
	4명	345	2.6	11.9	85.5
	5명이상	85	3.5	20.0	76.5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632	2.4	14.4	83.2
	1명	129	6.2	18.6	75.2
	2명이상	90	2.2	13.3	84.4
직업	화이트 칼라	381	3.4	18.4	78.2
	블루 칼라	84	2.4	9.5	88.1
	자영업	110	.9	17.3	81.8
	학생	55	5.5	18.2	76.4
	주부	154	1.3	7.8	90.9
	무직/퇴직	57	5.3	10.5	84.2
	기타	10	10.0	20.0	70.0
학력	고졸이하	209	2.9	12.4	84.7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50	6.0	18.0	76.0
	전문대졸	92	1.1	8.7	90.2
	대졸이상	500	3.0	16.8	80.2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02	2.9	11.8	85.3
	200~400만원 미만	317	1.3	15.1	83.6
	400~600만원 미만	281	4.3	15.3	80.4
	600만원 이상	151	4.0	15.9	80.1

40.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문제되는 것(1순위)

		사례수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수입식품에 대한 단속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단속	시도자치단체의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형량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	식품판매(소비)에 대한 단속
[전체]		1100	13.4	9.5	6.4	3.3	7.0	5.9	4.3	19.6	20.1	6.6	4.0
성별	남자	559	12.9	8.4	4.5	3.9	6.6	6.6	5.5	22.2	18.8	6.1	4.5
	여자	541	13.9	10.5	8.3	2.6	7.4	5.2	3.0	17.0	21.4	7.2	3.5
연령	20대	200	12.0	8.5	4.5	7.0	7.5	8.5	5.5	16.5	19.5	7.5	3.0
	30대	241	16.2	7.5	3.3	3.3	6.6	7.1	2.9	22.0	19.1	6.6	5.4
	40대	275	12.0	12.0	6.5	2.5	6.9	6.2	4.7	15.6	21.5	6.9	5.1
	50대	245	14.3	9.0	8.6	2.0	6.5	4.1	3.3	22.4	20.0	6.9	2.9
	60대	139	11.5	10.1	10.1	1.4	7.9	2.9	5.8	23.0	20.1	4.3	2.9
거주지역	서울	229	14.8	7.4	6.6	3.5	6.6	7.4	4.8	23.6	16.6	5.2	3.5
	부산	79	7.6	11.4	5.1	0.0	10.1	10.1	6.3	15.2	27.8	6.3	0.0
	대구	54	13.0	5.6	5.6	3.7	9.3	5.6	3.7	22.2	16.7	13.0	1.9
	인천	64	15.6	9.4	0.0	4.7	6.3	7.8	3.1	17.2	23.4	10.9	1.6
	광주	30	13.3	6.7	3.3	3.3	3.3	6.7	6.7	30.0	10.0	6.7	10.0
	대전	32	6.3	6.3	9.4	9.4	3.1	3.1	3.1	25.0	28.1	0.0	6.3
	경기	265	13.6	11.3	5.3	3.4	8.3	4.9	2.3	16.6	21.9	6.0	6.4
	강원	32	18.8	12.5	3.1	0.0	6.3	3.1	3.1	15.6	25.0	9.4	3.1
	충청도	75	13.3	4.0	12.0	1.3	4.0	4.0	6.7	18.7	26.7	8.0	1.3
	전라도	76	14.5	6.6	7.9	5.3	7.9	3.9	5.3	17.1	17.1	9.2	5.3
	경상도	126	12.7	13.5	9.5	3.2	7.1	4.8	5.6	21.4	14.3	3.2	4.8
	기타	38	13.2	15.8	5.3	2.6	2.6	7.9	2.6	18.4	21.1	10.5	0.0
결혼여부	미혼	342	14.3	9.1	4.4	4.4	5.3	7.0	4.4	20.8	18.7	7.6	4.1
	기혼	758	12.9	9.6	7.3	2.8	7.8	5.4	4.2	19.1	20.7	6.2	4.0
가족 구성원수	1명	78	10.3	10.3	6.4	3.8	5.1	5.1	5.1	24.4	20.5	5.1	3.8
	2명	175	14.9	9.7	6.3	5.1	6.3	3.4	5.1	20.0	17.7	5.7	5.7
	3명	295	13.9	8.5	6.1	1.4	8.8	7.8	1.7	21.0	20.3	6.4	4.1
	4명	435	13.3	9.9	6.4	3.4	6.2	5.1	5.1	19.1	20.7	6.9	3.9
	5명이상	117	12.0	9.4	6.8	4.3	7.7	8.5	6.0	14.5	20.5	8.5	1.7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2.8	10.0	6.5	3.6	6.9	5.9	4.2	19.9	19.4	7.0	3.8
	1명	166	16.9	9.0	3.6	2.4	9.6	5.4	3.0	19.3	21.7	4.2	4.8
	2명이상	121	12.4	6.6	9.1	2.5	4.1	6.6	6.6	18.2	22.3	7.4	4.1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2.6	9.1	5.3	3.3	7.2	6.2	3.9	17.9	22.4	7.4	4.7
	블루 칼라	106	8.5	11.3	5.7	4.7	7.5	6.6	7.5	20.8	16.0	6.6	4.7
	자영업	132	16.7	9.8	8.3	1.5	6.1	3.0	3.8	26.5	10.6	8.3	5.3
	학생	85	10.6	5.9	3.5	7.1	7.1	9.4	5.9	23.5	18.8	5.9	2.4
	주부	208	14.9	11.5	10.6	1.9	7.2	4.3	2.9	16.8	22.6	4.8	2.4
	무직/퇴직	68	19.1	5.9	0.0	1.5	7.4	10.3	5.9	19.1	22.1	5.9	2.9
	기타	15	13.3	13.3	13.3	13.3	0.0	0.0	0.0	26.7	20.0	0.0	0.0
학력	고졸이하	263	10.6	9.9	7.2	2.7	8.0	6.5	6.5	18.6	19.4	6.5	4.2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0.4	5.2	5.2	7.8	9.1	11.7	5.2	19.5	16.9	6.5	2.6
	전문대졸	115	17.4	7.8	7.0	1.7	7.0	6.1	0.0	17.4	21.7	10.4	3.5
	대졸이상	645	14.1	10.1	6.0	3.3	6.4	5.0	4.0	20.5	20.5	6.0	4.2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11.8	16.0	4.9	1.4	7.6	7.6	6.3	21.5	15.3	5.6	2.1
	200~400 만원 미만	408	11.3	7.8	6.6	2.7	8.1	5.9	3.2	20.8	21.8	7.6	4.2
	400~600 만원 미만	355	16.9	8.5	7.0	4.2	4.2	6.5	5.4	16.1	20.3	5.4	5.6
	600만원 이상	193	12.4	9.8	5.7	4.1	9.3	3.6	3.1	22.3	19.7	7.8	2.1

4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문제되는 것(1+2+3순위)

		사례수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수입식품에 대한 단속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단속	시도자치단체의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형량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	식품판매(소비)에 대한 단속
[전체]		1100	30.9	26.4	22.5	13.1	28.7	18.7	20.1	43.1	47.2	31.8	17.5
성별	남자	559	29.7	23.1	18.8	14.3	27.5	21.6	25.4	48.3	42.9	30.8	17.5
	여자	541	32.2	29.8	26.2	11.8	29.9	15.7	14.6	37.7	51.6	32.9	17.6
연령	20대	200	34.0	21.0	16.0	21.0	26.0	25.0	22.0	44.5	43.0	31.5	16.0
	30대	241	34.0	21.2	17.8	12.0	28.2	19.5	18.7	49.4	48.1	31.1	19.9
	40대	275	29.8	30.2	26.5	10.2	28.7	17.8	19.3	38.2	47.3	33.1	18.9
	50대	245	31.4	31.0	24.9	10.6	27.3	13.5	20.0	43.7	46.9	33.1	17.6
	60대	139	22.3	27.3	27.3	13.7	36.0	19.4	21.6	38.8	51.8	28.8	12.9
거주지역	서울	229	32.3	23.6	24.5	13.1	30.1	22.3	19.7	48.0	41.0	30.6	14.8
	부산	79	24.1	27.8	19.0	8.9	32.9	30.4	22.8	35.4	53.2	34.2	11.4
	대구	54	20.4	27.8	29.6	13.0	29.6	20.4	18.5	44.4	50.0	38.9	7.4
	인천	64	29.7	34.4	12.5	14.1	29.7	15.6	18.8	43.8	54.7	26.6	20.3
	광주	30	26.7	30.0	16.7	10.0	23.3	20.0	30.0	53.3	36.7	30.0	23.3
	대전	32	28.1	21.9	28.1	21.9	37.5	15.6	18.8	40.6	50.0	12.5	25.0
	경기	265	32.1	26.0	21.9	12.1	26.4	15.8	16.6	42.3	47.5	35.5	23.8
	강원	32	53.1	25.0	15.6	6.3	37.5	18.8	15.6	37.5	50.0	25.0	15.6
	충청도	75	36.0	24.0	30.7	14.7	20.0	16.0	22.7	40.0	60.0	28.0	8.0
	전라도	76	30.3	21.1	10.5	13.2	35.5	21.1	27.6	40.8	50.0	34.2	15.8
	경상도	126	32.5	29.4	26.2	12.7	26.2	14.3	22.2	44.4	40.5	31.0	20.6
	기타	38	18.4	34.2	28.9	26.3	26.3	13.2	15.8	36.8	47.4	36.8	15.8
결혼여부	미혼	342	35.1	22.5	18.4	16.1	25.1	20.2	21.6	46.5	44.4	32.2	17.8
	기혼	758	29.0	28.1	24.3	11.7	30.3	18.1	19.4	41.6	48.4	31.7	17.4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30.8	30.8	16.7	14.1	30.8	16.7	16.7	44.9	43.6	38.5	16.7
	2명	175	29.7	28.6	25.1	12.6	30.3	16.6	17.7	45.1	48.6	29.7	16.0
	3명	295	27.8	27.5	23.1	11.2	28.8	21.0	22.7	44.1	47.5	30.8	15.6
	4명	435	33.6	24.1	22.1	14.7	26.4	18.2	20.2	42.8	47.4	31.0	19.5
	5명이상	117	30.8	25.6	22.2	12.0	33.3	19.7	18.8	37.6	46.2	35.9	17.9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29.9	26.8	22.1	13.4	29.6	18.5	20.2	44.3	47.1	32.0	16.1
	1명	166	35.5	28.3	22.3	13.3	26.5	16.3	18.7	39.8	46.4	32.5	20.5
	2명이상	121	31.4	20.7	24.8	10.7	25.6	24.0	21.5	39.7	48.8	29.8	23.1
직업	화이트 칼라	486	33.1	25.3	21.2	9.7	28.6	18.7	20.6	43.2	48.1	33.1	18.3
	블루 칼라	106	18.9	27.4	18.9	17.9	26.4	25.5	25.5	48.1	37.7	33.0	20.8
	자영업	132	29.5	28.0	22.7	14.4	32.6	14.4	16.7	50.8	43.9	34.1	12.9
	학생	85	36.5	16.5	12.9	23.5	21.2	24.7	25.9	48.2	44.7	27.1	18.8
	주부	208	30.8	31.3	30.3	12.5	33.2	13.5	13.0	34.6	53.4	29.8	17.8
	무직/퇴직	68	29.4	25.0	17.6	13.2	23.5	26.5	30.9	39.7	47.1	30.9	16.2
	기타	15	33.3	33.3	53.3	26.7	20.0	13.3	13.3	40.0	40.0	20.0	6.7
학력	고졸이하	263	22.8	27.0	23.6	12.5	28.5	21.7	23.6	39.5	47.9	36.1	16.7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35.1	18.2	15.6	23.4	23.4	24.7	24.7	46.8	42.9	26.0	19.5
	전문대졸	115	34.8	26.1	20.9	18.3	30.4	14.8	19.1	47.0	45.2	25.2	18.3
	대졸이상	645	33.0	27.1	23.1	11.2	29.1	17.5	18.3	43.4	47.8	31.9	17.5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23.6	34.7	23.6	16.0	29.9	20.1	25.0	40.3	38.2	33.3	15.3
	200~400만원 미만	408	29.9	25.0	23.0	11.3	30.6	19.1	20.6	42.4	48.5	31.9	17.6
	400~600만원 미만	355	34.4	24.5	21.1	14.4	25.9	20.3	19.2	45.1	47.6	29.9	17.7
	600만원 이상	193	32.1	26.4	22.8	12.4	29.0	14.0	17.1	43.0	50.3	34.2	18.7

4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효과적인 것(1순위)

		사례수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수입식품에 대한 단속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단속	시도자치단체의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형량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	식품판매(소비)에 대한 단속
[전체]		1100	10.1	5.3	5.6	4.2	7.3	8.2	9.4	26.0	13.8	5.9	4.3
성별	남자	559	9.5	5.7	3.6	3.9	5.7	8.6	12.2	29.5	11.6	5.2	4.5
	여자	541	10.7	4.8	7.8	4.4	8.9	7.8	6.5	22.4	16.1	6.7	4.1
연령	20대	200	10.0	7.0	4.5	8.5	6.5	9.5	7.5	22.5	10.0	7.0	7.0
	30대	241	10.4	4.1	2.9	2.1	9.1	7.9	10.0	28.6	14.5	5.4	5.0
	40대	275	12.0	4.0	7.3	2.9	7.6	7.3	12.4	23.6	13.5	6.2	3.3
	50대	245	9.4	4.9	7.8	3.3	6.1	8.6	6.9	32.2	14.3	4.9	1.6
	60대	139	7.2	7.9	5.0	5.8	6.5	7.9	9.4	20.1	18.0	6.5	5.8
거주지역	서울	229	11.4	6.1	5.2	3.5	4.8	7.0	8.7	27.5	14.4	7.0	4.4
	부산	79	6.3	5.1	7.6	6.3	8.9	15.2	12.7	26.6	11.4	0.0	0.0
	대구	54	9.3	3.7	7.4	7.4	11.1	3.7	9.3	22.2	14.8	9.3	1.9
	인천	64	12.5	6.3	6.3	1.6	9.4	6.3	6.3	26.6	14.1	4.7	6.3
	광주	30	20.0	10.0	6.7	3.3	6.7	0.0	13.3	23.3	0.0	6.7	10.0
	대전	32	12.5	3.1	12.5	6.3	3.1	6.3	6.3	25.0	15.6	0.0	9.4
	경기	265	12.5	5.3	3.4	3.0	7.5	7.5	9.4	27.5	15.5	4.9	3.4
	강원	32	3.1	0.0	0.0	0.0	12.5	6.3	9.4	34.4	9.4	12.5	12.5
	충청도	75	9.3	2.7	10.7	4.0	4.0	6.7	9.3	26.7	13.3	10.7	2.7
	전라도	76	3.9	5.3	5.3	6.6	11.8	13.2	9.2	21.1	15.8	5.3	2.6
	경상도	126	8.7	7.1	4.0	4.8	6.3	9.5	9.5	22.2	15.1	5.6	7.1
	기타	38	5.3	2.6	10.5	7.9	7.9	13.2	10.5	26.3	7.9	7.9	0.0
결혼여부	미혼	342	12.9	5.6	3.5	5.8	7.3	7.9	8.2	25.1	12.6	5.8	5.3
	기혼	758	8.8	5.1	6.6	3.4	7.3	8.3	9.9	26.4	14.4	5.9	3.8
가족구성원수	1명	78	10.3	5.1	5.1	3.8	10.3	11.5	11.5	24.4	11.5	3.8	2.6
	2명	175	13.7	6.3	4.0	6.3	6.9	6.3	6.3	25.1	13.7	6.3	5.1
	3명	295	10.2	6.1	6.4	3.7	7.1	7.1	9.2	27.5	12.5	6.1	4.1
	4명	435	9.2	4.8	4.6	4.4	6.4	8.3	10.6	26.7	14.7	6.2	4.1
	5명이상	117	7.7	3.4	10.3	1.7	9.4	11.1	8.5	22.2	15.4	5.1	5.1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10.9	5.4	5.3	5.0	6.4	7.6	8.5	26.6	14.8	5.5	3.9
	1명	166	7.2	4.8	9.0	1.8	9.6	9.6	11.4	23.5	10.8	6.6	5.4
	2명이상	121	8.3	5.0	3.3	1.7	9.9	9.9	12.4	25.6	11.6	7.4	5.0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1.3	5.3	6.0	3.1	6.6	7.0	9.9	25.7	15.0	6.4	3.7
	블루 칼라	106	11.3	2.8	3.8	3.8	6.6	8.5	10.4	21.7	13.2	9.4	8.5
	자영업	132	9.1	6.8	3.8	3.8	6.1	6.8	12.1	35.6	10.6	4.5	.8
	학생	85	7.1	9.4	1.2	5.9	4.7	15.3	5.9	25.9	11.8	5.9	7.1
	주부	208	8.2	4.8	8.2	4.8	9.6	8.7	6.3	24.0	15.4	5.3	4.8
	무직/퇴직	68	8.8	1.5	5.9	8.8	11.8	10.3	13.2	25.0	10.3	2.9	1.5
	기타	15	20.0	6.7	13.3	6.7	6.7	0.0	6.7	13.3	13.3	0.0	13.3
학력	고졸이하	263	7.2	3.8	7.6	4.9	8.4	9.1	9.1	23.2	13.7	6.5	6.5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9.1	10.4	0.0	5.2	5.2	15.6	7.8	22.1	13.0	5.2	6.5
	전문대졸	115	10.4	4.3	7.8	4.3	7.8	7.8	3.5	27.8	13.9	10.4	1.7
	대졸이상	645	11.3	5.4	5.1	3.7	7.0	7.0	10.7	27.3	14.0	5.0	3.6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11.1	2.8	6.3	4.9	8.3	7.6	13.2	20.8	11.8	6.9	6.3
	200~400만원 미만	408	10.5	5.4	4.9	4.9	9.1	7.8	10.0	25.7	14.0	4.9	2.7
	400~600만원 미만	355	10.1	5.4	6.5	2.5	5.9	9.9	7.3	27.0	13.5	7.0	4.8
	600만원 이상	193	8.3	6.7	5.2	5.2	5.2	6.2	8.8	28.5	15.5	5.2	5.2

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근절을 위한 노력 중 효과적인 것(1+2+3순위)

		사례수	식품관련 종사자들의 자체노력	수입식품에 대한 단속	농산물/축산물/수산물에 대한 단속	시도자치단체의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	법원의 형량	식품제조(가공)에 대한 단속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	식품판매(소비)에 대한 단속
[전체]		1100	25.1	19.7	19.1	15.3	26.3	27.5	31.4	48.6	39.7	27.4	19.9
성별	남자	559	25.2	19.3	17.9	14.8	23.3	30.8	36.5	51.5	35.2	26.7	18.8
	여자	541	25.0	20.1	20.3	15.7	29.4	24.2	26.1	45.7	44.4	28.1	21.1
연령	20대	200	28.0	20.5	17.0	20.5	27.5	31.0	30.5	44.0	34.5	24.0	22.5
	30대	241	24.9	17.8	13.7	12.4	30.7	28.2	29.5	49.8	41.9	29.0	22.0
	40대	275	26.5	19.3	18.2	13.8	22.2	29.5	33.8	50.5	38.5	29.1	18.5
	50대	245	26.1	18.4	24.9	15.1	25.3	23.7	32.7	55.1	40.0	24.1	14.7
	60대	139	16.5	25.2	23.0	15.8	26.6	24.5	28.8	38.1	45.3	31.7	24.5
거주지역	서울	229	28.4	18.8	21.0	13.5	21.0	28.8	33.6	49.3	41.0	27.9	16.6
	부산	79	21.5	16.5	20.3	16.5	25.3	35.4	38.0	45.6	48.1	20.3	12.7
	대구	54	22.2	22.2	25.9	14.8	25.9	18.5	18.5	37.0	40.7	42.6	31.5
	인천	64	26.6	25.0	17.2	17.2	31.3	25.0	23.4	51.6	35.9	29.7	17.2
	광주	30	23.3	26.7	16.7	13.3	33.3	30.0	33.3	50.0	23.3	26.7	23.3
	대전	32	15.6	12.5	25.0	18.8	40.6	28.1	40.6	46.9	34.4	18.8	18.8
	경기	265	27.5	20.0	17.7	16.2	27.5	23.8	31.3	49.8	38.9	28.7	18.5
	강원	32	28.1	15.6	6.3	12.5	37.5	18.8	31.3	53.1	43.8	28.1	25.0
	충청도	75	25.3	12.0	22.7	10.7	28.0	28.0	30.7	57.3	48.0	25.3	12.0
	전라도	76	13.2	25.0	15.8	13.2	25.0	35.5	32.9	48.7	40.8	23.7	26.3
	경상도	126	25.4	22.2	17.5	17.5	22.2	30.2	29.4	47.6	36.5	24.6	27.0
	기타	38	26.3	18.4	21.1	21.1	28.9	26.3	31.6	36.8	31.6	31.6	26.3
결혼여부	미혼	342	30.7	16.7	14.6	16.4	28.7	29.2	31.3	49.1	36.5	26.6	20.2
	기혼	758	22.6	21.1	21.1	14.8	25.2	26.8	31.4	48.4	41.2	27.7	19.8
가족구성원수	1명	78	29.5	14.1	16.7	14.1	25.6	32.1	35.9	55.1	38.5	28.2	10.3
	2명	175	26.9	23.4	13.7	18.3	23.4	27.4	30.9	43.4	38.9	31.4	22.3
	3명	295	23.1	19.0	23.7	13.9	25.8	25.8	31.9	52.2	38.0	27.5	19.3
	4명	435	24.1	20.5	17.5	15.4	26.7	28.0	32.4	48.3	41.1	25.5	20.5
	5명이상	117	28.2	17.1	23.1	14.5	30.8	27.4	23.9	44.4	41.0	27.4	22.2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25.5	19.9	18.9	15.4	25.7	26.6	31.4	49.3	41.6	27.1	18.7
	1명	166	22.9	22.3	22.9	16.3	25.3	25.9	30.7	42.8	35.5	29.5	25.9
	2명이상	121	25.6	14.9	14.9	13.2	31.4	36.4	32.2	52.1	33.1	26.4	19.8
직업	화이트 칼라	486	29.0	19.1	19.3	13.8	24.3	28.0	31.9	48.1	40.9	28.4	17.1
	블루 칼라	106	27.4	20.8	17.0	15.1	32.1	28.3	29.2	42.5	30.2	31.1	26.4
	자영업	132	21.2	22.0	18.2	14.4	25.8	24.2	37.1	56.1	39.4	26.5	15.2
	학생	85	22.4	23.5	14.1	16.5	24.7	35.3	28.2	51.8	31.8	25.9	25.9
	주부	208	18.3	21.2	22.1	17.8	28.8	24.5	26.4	48.6	43.8	25.0	23.6
	무직/퇴직	68	23.5	8.8	19.1	16.2	29.4	30.9	38.2	47.1	44.1	25.0	17.6
	기타	15	33.3	20.0	20.0	26.7	13.3	20.0	33.3	33.3	40.0	26.7	33.3
학력	고졸이하	263	19.4	21.7	21.3	13.7	30.4	27.0	30.4	41.8	40.7	27.8	25.9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24.7	20.8	11.7	19.5	24.7	32.5	26.0	48.1	35.1	27.3	29.9
	전문대졸	115	24.3	17.4	22.6	18.3	27.8	28.7	22.6	53.0	37.4	28.7	19.1
	대졸이상	645	27.6	19.2	18.4	14.9	24.5	27.0	34.0	50.7	40.3	27.0	16.4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22.9	18.1	19.4	11.1	30.6	25.7	32.6	41.7	42.4	32.6	22.9
	200~400만원 미만	408	25.5	19.9	19.4	17.9	28.7	26.0	29.9	49.5	37.0	26.0	20.3
	400~600만원 미만	355	26.5	20.8	18.9	16.1	20.8	30.1	29.9	49.6	40.6	26.5	20.3
	600만원 이상	193	23.3	18.7	18.7	11.4	28.0	27.5	36.3	50.3	42.0	28.0	16.1

4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 경험여부

		사례수	경험한 적이 있다	경험한 적이 없다
[전체]		1100	32.9	67.1
성별	남자	559	36.1	63.9
	여자	541	29.6	70.4
연령	20대	200	29.0	71.0
	30대	241	32.4	67.6
	40대	275	34.2	65.8
	50대	245	36.3	63.7
	60대	139	30.9	69.1
거주지역	서울	229	33.2	66.8
	부산	79	25.3	74.7
	대구	54	25.9	74.1
	인천	64	25.0	75.0
	광주	30	43.3	56.7
	대전	32	40.6	59.4
	경기	265	31.7	68.3
	강원	32	34.4	65.6
	충청도	75	36.0	64.0
	전라도	76	31.6	68.4
	경상도	126	38.9	61.1
	기타	38	39.5	60.5
결혼여부	미혼	342	26.9	73.1
	기혼	758	35.6	64.4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28.2	71.8
	2명	175	27.4	72.6
	3명	295	34.9	65.1
	4명	435	33.3	66.7
	5명이상	117	37.6	62.4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29.4	70.6
	1명	166	40.4	59.6
	2명이상	121	46.3	53.7
직업	화이트 칼라	486	36.2	63.8
	블루 칼라	106	34.0	66.0
	자영업	132	38.6	61.4
	학생	85	22.4	77.6
	주부	208	25.0	75.0
	무직/퇴직	68	29.4	70.6
	기타	15	53.3	46.7
학력	고졸이하	263	31.9	68.1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24.7	75.3
	전문대졸	115	27.8	72.2
	대졸이상	645	35.2	64.8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34.0	66.0
	200~400만원 미만	408	31.1	68.9
	400~600만원 미만	355	34.6	65.4
	600만원 이상	193	32.6	67.4

4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 경험시, 신고처 종류(open)

		사례수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식품관련기관	소비자보호관련기관	보건기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구입처 및 제조업체	피해신고센터	신고안함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1100	6.9	31.1	25.0	9.2	.9	1.0	3.7	13.2	1.8	.4	7.4	4.3
성별	남자	559	7.5	35.4	26.7	7.2	.9	1.3	3.0	8.9	1.3	.4	7.0	5.0
	여자	541	6.3	26.6	23.3	11.3	.9	.7	4.4	17.6	2.4	.4	7.8	3.5
연령	20대	200	3.0	25.5	30.5	7.0	.5	2.0	8.5	15.0	.5	.5	8.0	4.0
	30대	241	6.2	33.2	25.7	10.0	1.2	.8	2.1	10.8	1.2	.4	8.7	2.9
	40대	275	6.5	28.4	23.6	12.7	.7	.7	2.9	14.2	2.5	.4	6.9	4.0
	50대	245	10.2	34.7	21.6	8.2	0.0	.8	2.4	13.5	2.0	0.0	6.5	5.7
	60대	139	8.6	34.5	24.5	5.8	2.9	.7	3.6	12.2	2.9	.7	6.5	5.0
거주지역	서울	229	6.1	28.8	30.6	11.8	.9	1.7	6.1	10.0	1.3	.4	5.7	3.9
	부산	79	6.3	35.4	26.6	7.6	3.8	0.0	1.3	17.7	2.5	0.0	2.5	3.8
	대구	54	16.7	20.4	24.1	5.6	3.7	0.0	1.9	7.4	1.9	1.9	14.8	1.9
	인천	64	7.8	26.6	20.3	9.4	1.6	0.0	12.5	12.5	0.0	0.0	10.9	7.8
	광주	30	6.7	30.0	20.0	13.3	0.0	0.0	6.7	10.0	0.0	3.3	10.0	3.3
	대전	32	12.5	31.3	18.8	12.5	3.1	0.0	3.1	6.3	3.1	0.0	3.1	6.3
	경기	265	3.8	35.5	20.8	10.2	0.0	1.5	2.3	16.6	2.3	.4	7.5	3.4
	강원	32	6.3	21.9	31.3	6.3	0.0	3.1	3.1	6.3	6.3	0.0	12.5	6.3
	충청도	75	6.7	30.7	21.3	4.0	0.0	0.0	1.3	17.3	2.7	0.0	13.3	6.7
	전라도	76	3.9	26.3	30.3	6.6	1.3	1.3	5.3	14.5	2.6	0.0	9.2	2.6
	경상도	126	8.7	38.1	23.8	9.5	0.0	0.0	.8	13.5	0.0	0.0	4.0	4.8
	기타	38	15.8	23.7	31.6	5.3	0.0	2.6	2.6	10.5	2.6	0.0	2.6	5.3
결혼여부	미혼	342	5.3	28.1	28.4	8.5	.3	1.5	5.3	12.3	1.2	.3	9.9	3.8
	기혼	758	7.7	32.5	23.5	9.5	1.2	.8	3.0	13.6	2.1	.4	6.2	4.5
가족 구성원수	1명	78	6.4	30.8	25.6	3.8	0.0	1.3	9.0	11.5	2.6	0.0	10.3	6.4
	2명	175	4.0	30.3	28.0	10.3	.6	1.1	1.1	14.3	2.3	.6	7.4	2.3
	3명	295	6.4	35.9	22.7	9.5	1.4	1.0	4.4	11.5	1.0	0.0	6.1	4.1
	4명	435	7.8	30.3	25.5	8.5	.9	.7	3.2	14.5	1.4	.7	6.9	4.6
	5명이상	117	9.4	23.1	23.9	12.8	.9	1.7	4.3	12.0	4.3	0.0	10.3	5.1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7.3	31.0	24.6	9.3	.7	.9	3.7	13.3	2.0	.2	7.6	4.3
	1명	166	7.8	28.9	25.9	6.6	1.8	1.8	4.8	13.9	.6	0.0	8.4	4.2
	2명이상	121	3.3	34.7	26.4	11.6	.8	.8	2.5	11.6	2.5	1.7	4.1	4.1
직업	화이트 칼라	486	5.3	33.3	28.8	9.5	1.2	.6	3.1	12.1	1.0	.4	4.9	3.7
	블루 칼라	106	16.0	33.0	21.7	6.6	.9	0.0	2.8	9.4	1.9	0.0	6.6	5.7
	자영업	132	11.4	25.8	20.5	9.8	.8	0.0	3.0	10.6	3.0	1.5	13.6	6.1
	학생	85	2.4	24.7	31.8	10.6	0.0	3.5	9.4	12.9	1.2	0.0	5.9	4.7
	주부	208	6.3	30.3	19.2	9.6	1.0	.5	2.4	18.8	3.8	0.0	9.6	2.9
	무직/퇴직	68	4.4	32.4	20.6	5.9	0.0	5.9	8.8	14.7	0.0	0.0	8.8	4.4
	기타	15	0.0	33.3	26.7	13.3	0.0	0.0	0.0	13.3	0.0	0.0	6.7	13.3
학력	고졸이하	263	8.7	27.4	18.6	7.2	.4	1.9	2.7	18.6	3.0	.8	11.4	4.2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1.3	26.0	31.2	9.1	0.0	2.6	11.7	13.0	1.3	0.0	5.2	5.2
	전문대졸	115	4.3	31.3	21.7	14.8	0.0	0.0	2.6	14.8	.9	0.0	11.3	.9
	대졸이상	645	7.3	33.2	27.4	9.0	1.4	.6	3.4	10.7	1.6	.3	5.3	4.8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6.3	32.6	20.1	8.3	0.0	2.1	5.6	11.8	2.1	0.0	11.1	7.6
	200~400 만원 미만	408	6.1	32.4	25.5	9.1	.5	1.0	3.2	13.5	2.2	.5	8.1	1.7
	400~600 만원 미만	355	7.6	30.1	25.4	8.7	1.7	.6	3.9	12.7	1.4	.6	6.5	4.2
	600만원 이상	193	7.8	29.0	26.9	10.9	1.0	1.0	3.1	14.5	1.6	0.0	4.7	7.3

46.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 보거나 안 경험여부

		사례수	보거나 안 적이 있다	보거나 안 적이 없다
[전체]		1100	10.6	89.4
성별	남자	559	11.6	88.4
	여자	541	9.6	90.4
연령	20대	200	9.5	90.5
	30대	241	12.0	88.0
	40대	275	8.7	91.3
	50대	245	12.7	87.3
	60대	139	10.1	89.9
거주지역	서울	229	8.7	91.3
	부산	79	7.6	92.4
	대구	54	11.1	88.9
	인천	64	12.5	87.5
	광주	30	10.0	90.0
	대전	32	18.8	81.3
	경기	265	11.3	88.7
	강원	32	3.1	96.9
	충청도	75	13.3	86.7
	전라도	76	9.2	90.8
	경상도	126	12.7	87.3
	기타	38	10.5	89.5
결혼여부	미혼	342	6.4	93.6
	기혼	758	12.5	87.5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10.3	89.7
	2명	175	10.3	89.7
	3명	295	10.5	89.5
	4명	435	9.7	90.3
	5명이상	117	15.4	84.6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9.3	90.7
	1명	166	13.3	86.7
	2명이상	121	15.7	84.3
직업	화이트 칼라	486	11.3	88.7
	블루 칼라	106	14.2	85.8
	자영업	132	14.4	85.6
	학생	85	8.2	91.8
	주부	208	7.7	92.3
	무직/퇴직	68	4.4	95.6
	기타	15	13.3	86.7
학력	고졸이하	263	8.7	91.3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6.5	93.5
	전문대졸	115	8.7	91.3
	대졸이상	645	12.2	87.8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8.3	91.7
	200~400만원 미만	408	9.3	90.7
	400~600만원 미만	355	12.1	87.9
	600만원 이상	193	12.4	87.6

4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위해식품사범을 안 경우, 신고처 종류(open)

		사례수	국가 행정 기관	사법 기관	식품관련 기관	소비자 보호관련 기관	보건 기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구입처 및 제조 업체	피해 신고 센터	신고 안함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1100	5.8	53.2	17.5	4.5	.6	1.3	1.1	9.8	1.1	.3	7.4	3.4
성별	남자	559	6.4	57.8	16.6	4.5	.5	1.3	.5	6.8	.7	.2	5.5	4.7
	여자	541	5.2	48.4	18.3	4.4	.7	1.3	1.7	12.9	1.5	.4	9.2	2.0
연령	20대	200	3.0	51.0	21.5	5.0	.5	1.0	1.5	8.0	.5	.5	7.5	4.5
	30대	241	5.4	57.3	17.4	5.8	.8	2.1	.8	6.6	1.7	.4	7.1	2.9
	40대	275	7.3	49.5	15.3	6.2	.7	1.1	.7	10.2	1.1	0.0	8.0	3.3
	50대	245	7.3	54.3	16.7	2.4	.4	1.6	1.2	12.7	.8	0.0	6.9	2.4
	60대	139	5.0	54.7	17.3	1.4	.7	0.0	1.4	12.2	1.4	.7	7.2	4.3
거주 지역	서울	229	6.6	58.5	17.5	3.5	0.0	1.7	1.7	7.4	0.0	.4	7.0	3.5
	부산	79	6.3	55.7	13.9	2.5	2.5	0.0	0.0	16.5	1.3	0.0	2.5	3.8
	대구	54	13.0	37.0	22.2	0.0	0.0	3.7	0.0	5.6	1.9	1.9	11.1	3.7
	인천	64	10.9	50.0	20.3	6.3	1.6	0.0	6.3	6.3	0.0	0.0	7.8	3.1
	광주	30	0.0	60.0	16.7	3.3	0.0	3.3	3.3	3.3	0.0	0.0	13.3	0.0
	대전	32	15.6	37.5	9.4	6.3	3.1	0.0	0.0	6.3	6.3	0.0	6.3	9.4
	경기	265	3.0	54.3	16.2	5.3	.4	1.5	.4	12.1	.4	.4	8.3	3.0
	강원	32	3.1	50.0	25.0	3.1	0.0	3.1	0.0	9.4	6.3	0.0	9.4	0.0
	충청도	75	5.3	46.7	20.0	4.0	0.0	0.0	1.3	12.0	5.3	0.0	10.7	2.7
	전라도	76	2.6	52.6	15.8	3.9	2.6	1.3	1.3	11.8	0.0	0.0	10.5	1.3
	경상도	126	5.6	57.9	18.3	7.1	0.0	.8	0.0	7.1	0.0	0.0	3.2	4.8
	기타	38	7.9	44.7	18.4	5.3	0.0	0.0	0.0	15.8	2.6	0.0	2.6	5.3
결혼 여부	미혼	342	5.0	55.6	17.8	4.4	.3	1.2	1.5	6.7	.9	.3	8.2	4.1
	기혼	758	6.2	52.1	17.3	4.5	.8	1.3	.9	11.2	1.2	.3	7.0	3.0
가족 구성원수	1명	78	6.4	57.7	16.7	6.4	0.0	0.0	3.8	5.1	1.3	0.0	9.0	3.8
	2명	175	3.4	52.0	20.0	4.0	.6	1.1	.6	12.0	1.1	.6	6.3	3.4
	3명	295	4.4	55.9	16.6	4.4	.7	1.4	1.0	9.2	.7	0.0	7.1	3.7
	4명	435	6.9	53.3	16.8	4.1	.5	.9	.7	10.1	1.1	.5	6.7	3.2
	5명이상	117	8.5	44.4	18.8	5.1	1.7	3.4	1.7	10.3	1.7	0.0	11.1	2.6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6.3	53.8	17.2	4.4	.5	1.0	1.1	10.2	.9	.2	7.1	3.1
	1명	166	3.6	51.2	16.3	4.2	1.2	1.8	1.8	9.6	1.2	0.0	10.2	3.6
	2명이상	121	5.8	52.1	20.7	5.0	.8	2.5	0.0	7.4	2.5	.8	5.0	5.0
직업	화이트 칼라	486	5.8	55.6	19.1	4.3	.8	1.0	.6	8.2	.6	.2	6.0	2.7
	블루 칼라	106	6.6	49.1	18.9	7.5	0.0	0.0	.9	8.5	.9	0.0	5.7	7.5
	자영업	132	9.8	41.7	15.9	3.8	.8	1.5	1.5	12.9	3.8	1.5	10.6	4.5
	학생	85	3.5	54.1	23.5	7.1	0.0	2.4	1.2	7.1	1.2	0.0	5.9	3.5
	주부	208	5.3	53.8	13.5	2.9	.5	1.0	1.0	13.9	1.0	0.0	10.1	1.0
	무직/퇴직	68	2.9	61.8	7.4	1.5	1.5	4.4	4.4	8.8	0.0	0.0	7.4	7.4
	기타	15	0.0	53.3	33.3	13.3	0.0	0.0	0.0	6.7	0.0	0.0	6.7	0.0
학력	고졸이하	263	4.2	49.8	15.2	3.0	0.0	1.1	1.5	14.1	.8	.8	10.6	4.2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2.6	51.9	22.1	6.5	0.0	2.6	1.3	7.8	1.3	0.0	7.8	2.6
	전문대졸	115	1.7	56.5	15.7	7.8	.9	3.5	0.0	12.2	1.7	0.0	7.0	.9
	대졸이상	645	7.6	54.1	18.1	4.2	.9	.8	1.1	7.9	1.1	.2	6.0	3.6
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44	1.4	53.5	19.4	4.9	0.0	2.1	3.5	9.0	.7	0.0	6.9	5.6
	200~400 만원 미만	408	6.4	53.7	17.2	4.4	.5	1.2	.5	9.6	1.0	.2	8.3	2.5
	400~600 만원 미만	355	6.5	51.0	17.2	3.7	.8	.6	.8	10.7	1.4	.6	8.5	2.8
	600만원 이상	193	6.7	56.0	17.1	5.7	1.0	2.1	1.0	9.3	1.0	0.0	3.6	4.7

48.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에 의한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여부

		사례수	경험한 적이 있다	경험한 적이 없다
[전체]		1100	30.5	69.5
성별	남자	559	30.6	69.4
	여자	541	30.5	69.5
연령	20대	200	24.5	75.5
	30대	241	33.2	66.8
	40대	275	33.5	66.5
	50대	245	30.6	69.4
	60대	139	28.8	71.2
거주지역	서울	229	32.8	67.2
	부산	79	22.8	77.2
	대구	54	25.9	74.1
	인천	64	35.9	64.1
	광주	30	36.7	63.3
	대전	32	31.3	68.8
	경기	265	30.2	69.8
	강원	32	25.0	75.0
	충청도	75	33.3	66.7
	전라도	76	19.7	80.3
	경상도	126	33.3	66.7
	기타	38	39.5	60.5
결혼여부	미혼	342	27.5	72.5
	기혼	758	31.9	68.1
가족 구성원 수	1명	78	38.5	61.5
	2명	175	25.7	74.3
	3명	295	31.9	68.1
	4명	435	29.4	70.6
	5명이상	117	33.3	66.7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27.6	72.4
	1명	166	38.0	62.0
	2명이상	121	40.5	59.5
직업	화이트 칼라	486	29.6	70.4
	블루 칼라	106	40.6	59.4
	자영업	132	40.2	59.8
	학생	85	22.4	77.6
	주부	208	26.4	73.6
	무직/퇴직	68	23.5	76.5
	기타	15	40.0	60.0
학력	고졸이하	263	27.8	72.2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23.4	76.6
	전문대졸	115	34.8	65.2
	대졸이상	645	31.8	68.2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26.4	73.6
	200~400만원 미만	408	30.9	69.1
	400~600만원 미만	355	33.2	66.8
	600만원 이상	193	28.0	72.0

4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식품에 의해 식중독이나 질병 경험시, 신고처 종류(open)

		사례수	국가행정기관	사법기관	식품관련기관	소비자보호관련기관	보건기관	방송 및 인터넷 매체	구입처 및 제조업체	피해신고센터	신고안함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1100	5.9	26.9	23.2	7.0	10.7	1.0	4.1	11.6	2.4	.5	8.3	3.2
성별	남자	559	6.3	32.4	25.2	5.2	10.0	.9	2.0	9.8	1.6	.2	6.8	3.8
	여자	541	5.5	21.3	21.1	8.9	11.5	1.1	6.3	13.5	3.1	.7	9.8	2.6
연령	20대	200	4.5	24.0	25.0	7.5	6.5	1.5	6.0	14.0	3.0	.5	9.0	3.0
	30대	241	5.8	28.6	27.8	7.5	6.2	1.7	3.3	10.4	1.7	.4	7.1	4.1
	40대	275	6.9	25.5	19.3	9.1	11.6	.7	5.5	12.0	2.9	0.0	7.6	3.3
	50대	245	6.1	31.4	22.4	4.9	14.7	.8	2.4	11.0	1.6	.4	7.8	2.4
	60대	139	5.8	23.0	21.6	5.0	15.8	0.0	2.9	10.8	2.9	1.4	11.5	2.9
거주지역	서울	229	6.6	28.8	23.6	9.2	8.3	1.7	6.1	9.6	.4	.4	7.9	4.8
	부산	79	3.8	34.2	17.7	2.5	11.4	0.0	3.8	24.1	1.3	0.0	3.8	1.3
	대구	54	9.3	22.2	20.4	1.9	16.7	0.0	5.6	7.4	0.0	1.9	13.0	1.9
	인천	64	9.4	26.6	28.1	6.3	7.8	0.0	7.8	4.7	1.6	3.1	9.4	3.1
	광주	30	16.7	13.3	20.0	10.0	13.3	0.0	3.3	3.3	0.0	0.0	16.7	3.3
	대전	32	9.4	18.8	15.6	9.4	15.6	0.0	3.1	9.4	6.3	0.0	3.1	9.4
	경기	265	2.6	30.2	21.9	8.3	7.5	1.1	3.8	14.3	3.0	.4	9.1	2.6
	강원	32	6.3	31.3	15.6	3.1	12.5	3.1	3.1	12.5	9.4	0.0	9.4	0.0
	충청도	75	4.0	21.3	32.0	9.3	9.3	0.0	0.0	12.0	4.0	0.0	9.3	2.7
	전라도	76	5.3	18.4	25.0	3.9	15.8	2.6	1.3	9.2	3.9	0.0	11.8	3.9
	경상도	126	6.3	31.0	23.0	6.3	15.1	.8	4.0	10.3	2.4	0.0	6.3	.8
	기타	38	10.5	13.2	31.6	5.3	13.2	0.0	2.6	13.2	2.6	0.0	0.0	7.9
결혼여부	미혼	342	6.4	26.0	25.4	6.7	7.0	1.2	4.7	11.7	1.8	.6	8.8	3.5
	기혼	758	5.7	27.3	22.2	7.1	12.4	.9	3.8	11.6	2.6	.4	8.0	3.0
가족구성원수	1명	78	9.0	28.2	19.2	5.1	5.1	1.3	3.8	7.7	2.6	2.6	11.5	3.8
	2명	175	1.7	26.9	22.9	6.9	11.4	1.1	2.9	14.3	2.3	.6	10.3	3.4
	3명	295	6.1	29.5	22.0	6.1	10.8	1.7	5.1	10.5	2.4	0.0	8.1	2.4
	4명	435	7.4	26.0	23.9	7.4	12.0	.2	3.9	12.2	2.1	.5	6.0	3.7
	5명이상	117	4.3	23.1	26.5	9.4	8.5	1.7	4.3	11.1	3.4	0.0	12.0	2.6
12세 미만 자녀 수	없음	813	6.0	26.9	22.5	7.5	11.2	.9	3.7	11.6	2.5	.5	8.5	2.7
	1명	166	5.4	24.7	24.7	4.2	9.0	1.8	5.4	13.3	2.4	0.0	10.2	4.2
	2명이상	121	5.8	29.8	25.6	7.4	9.9	.8	5.0	9.9	1.7	.8	4.1	5.0
직업	화이트 칼라	486	4.9	30.7	26.1	7.4	8.6	.4	3.5	11.5	1.9	.2	6.0	3.1
	블루 칼라	106	9.4	22.6	26.4	9.4	9.4	.9	3.8	12.3	.9	0.0	5.7	5.7
	자영업	132	9.1	22.0	18.2	5.3	14.4	.8	2.3	12.1	3.0	1.5	12.9	3.8
	학생	85	5.9	25.9	24.7	9.4	7.1	2.4	5.9	12.9	3.5	0.0	5.9	1.2
	주부	208	5.8	23.1	15.9	6.7	15.4	1.0	5.3	11.5	3.8	1.0	13.0	1.9
	무직/퇴직	68	2.9	26.5	25.0	1.5	13.2	2.9	7.4	10.3	0.0	0.0	10.3	5.9
	기타	15	0.0	40.0	33.3	6.7	0.0	6.7	0.0	6.7	6.7	0.0	0.0	0.0
학력	고졸이하	263	4.9	20.9	17.9	6.8	14.1	1.9	3.8	16.0	2.7	1.1	10.6	4.2
	전문대/대학교(원) 재학	77	5.2	23.4	29.9	7.8	7.8	1.3	6.5	11.7	2.6	0.0	6.5	1.3
	전문대졸	115	1.7	24.3	27.0	10.4	10.4	.9	2.6	11.3	4.3	0.0	11.3	1.7
	대졸이상	645	7.1	30.2	23.9	6.4	9.8	.6	4.2	9.9	1.9	.3	7.0	3.3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	144	3.5	27.8	22.2	7.6	7.6	2.8	5.6	11.8	0.0	0.0	11.1	5.6
	200~400만원 미만	408	6.9	26.2	22.3	7.1	9.3	1.2	3.7	12.0	2.7	.7	9.3	2.2
	400~600만원 미만	355	5.9	25.1	23.9	6.2	13.2	0.0	4.8	11.3	3.9	.6	7.9	2.0
	600만원 이상	193	5.7	31.1	24.4	7.8	11.4	1.0	2.6	11.4	.5	0.0	4.7	5.7

부록 2. 전문가조사 설문지

식품안전과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전문가 조사
– 제1차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식품안전의 형사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형사정책적 평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 검찰, 학자(연구자)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형사사법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사는 1~3차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1차는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개방형 설문지, 2차와 3차는 폐쇄형 설문지로서 개방형 설문지에서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최종 주요요인들을 도출할 것입니다. 이번 1차 설문지는 전반적인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와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만으로 사용될 것이며 대외적으로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 9월

연구책임자: 박 미 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송 봉 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조사담당자: 김 민 이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 1차 조사 설문을 바쁘시더라도 9월 11일(목)까지 songbonggyu@naver.com 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락처: 송봉규 010-4283-4493).
※ 2차 설문은 9월 15일(월), 3차 설문은 9월 22일(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응답자 정보				
성 명			성별	
소 속			직위	
부 서			최종학력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Ⅰ.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먹을거리의 안전성, 불량식품의 심각성, 국민들의 불안감,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 식품안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서술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Ⅱ.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평가

위해식품사범의 심각성,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식품안전과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전문가 조사
– 제2차 설문지 –

안녕하십니까4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국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식품안전의 형사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형사정책적 평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 검찰, 학자(연구자)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형사사법기관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사는 1~3차까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1차는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묻는 개방형 설문지, 2차와 3차는 폐쇄형 설문지로서 개방형 설문지에서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최종 주요요인들을 도출할 것입니다. 이번 2차 설문지는 개방형 1차 설문지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와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로 구성한 것입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이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만으로 사용될 것이며 대외적으로 절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2014년 9월

연구책임자: 박 미 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송 봉 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조사담당자: 김 민 이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 2차 조사 설문을 바쁘시더라도 9월 25일(목)까지 songbonggyu@naver.com 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연락처: 송봉규 010-4283-4493).
※ 3차 설문은 9월 29일(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응답자 정보				
성 명			성별	
소 속			직위	
부 서			최종학력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Section A. 식품안전에 대한 평가

다음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O, √, 1, 등으로 [동의여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유무**	**동의 여부**
1-1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높은 편이다.	
1-1-1	생산자 및 소비자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다.	
1-1-2	현재 국내 식품안전 및 위생수준은 선진국인 미국, 일본, EU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1-1-3	전반적인 식품안전 수준은 높은 편이다.	
1-1-4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공급사슬 단계별 위해분석을 실시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1-1-5	식품안전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심각성은 과거와 유사한 수준이다.	
1-2	우리나라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은 낮은 편이다.	
1-2-1	일부 비양심적인 업자들로 인해 비위생적인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1-2-2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폭발에 따른 방사능에 오염된 농축산물 등이 원산지가 허위 표시되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1-2-3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식품이 대체로 비위생적이고 안전성이 떨어져 있다.	
1-2-4	식품안전은 식품분야에만 국한된 지엽적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 안전, 나아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다.	
1-2-5	식품이 자급자족의 형태를 넘어 상품이 상거래 되었을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1-2-6	국내유통 및 접객업소에서의 식품안전의 문제보다는 제조업에서 식품안전문제가 심각하다.	
1-2-7	농축수산물의 증산을 위한 농약 및 항생물질 등 인체 위해가능물질의 의도적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침해되고 있다.	
1-2-8	신소재 식품의 생산, 신종 유해물질의 검출에 따른 신규 업무, 수입식품 증가 등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먹을거리 안전성이 침해도 빈번해지고 있다.	
1-2-9	식품안전의 가장 심각한 영역은 제조 유통 분야이다.	
1-2-10	대형업체나 마트가 아닌 소규모 영세 시장의 경우 식품 안전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2-11	건강기능식품의 경우가 일반식품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위법적 공급이 만연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취약한 편이다.	

1-2-12	정부에 대한 불신과 다른 나라와 상이한 식생활 문화 및 섭취량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먹을거리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1-2-13	여전히 음식점 등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편이다.	
2	**불량식품의 심각성 유무**	**동의 여부**
2-1	불량식품의 심각성이 심각한 편이다.	
2-1-1	비위생적 생산시설, 식용불가 식품첨가제 사용 제품 등 여전히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	
2-1-2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재한 편이다.	
2-1-3	먹거리 불안 중 가장 큰 부분은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은 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이다.	
2-1-4	위해식품사범에 의한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가 문제이다.	
2-1-5	특히 악덕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들의 의도적인 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	
2-1-6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는 요소와 실제 위해요소는 차이가 있다.	
2-1-7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학적 사실보다는 경험 등 감성적 판단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2-1-8	소비자와 관리자의 안전에 대한 시각의 차이가 크다.	
2-1-9	불량식품 자체의 의미와 대상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2-2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2-1	일부 동남아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저렴한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2-2	제도권 외의 식품이라도 위해성을 중심적으로 판단해서 범죄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	
2-2-3	식량자급률 저하로 인한 수입량 증가가 식품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2-2-4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가보다는 국제기구 및 국제시장에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2-5	식품 교역이 활발한 곳에서 식품 상행위 관련 부정행위가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2-2-6	중국산 식품에 의한 먹거리 안전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2-2-7	중국산 식품을 국산으로 둔갑하여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례가 많다.	
2-2-8	중국 내에서 제조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2-9	유해성 판단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2-3	불량식품의 심각성이 낮은 편이다.	
2-3-1	관련 제도와 사후관리,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불량식품의 심각성은 양호한 편이다.	
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여부**	**동의 여부**
3-1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편이다.	
3-1-1	대기업 생산 제품 중심의 식품 선호도 집중으로 식품 안전 수준이 상향 평준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요소도 많아지고 있다.	
3-1-2	경제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소비자의 식품안전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3-1-3	수입 농산품(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3-1-4	산업의 발달(유전자 재조합식품, 신소재 식품, 식품첨가물 등)은 불량식품의 심각성을 증대시켰다.	
3-1-5	급속한 자본주의 유입으로 저가의 식품 및 인스턴트의 대량 유통이 가능해져 식품안전의 문제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3-1-6	인체위해 물질의 지속적인 검출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심리가 팽배해지고 있다.	
3-1-7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모호한 정의,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3-1-8	똑같은 식품안전기준에 대해 영업자, 정부관리자는 안심수준으로 인식하지만, 소비자는 불안 상태로 인식하여 사회적 불신감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한다.	
3-2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언론보도에 기인한다.	
3-2-1	식품의 비위생적 처리 및 유통사례가 언론에 보도시 국민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된다.	
3-2-2	식품안전사고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한 언론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3-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낮은 편이다.	
3-3-1	일부의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식품안심도가 낮은 편이다.	
4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와 위협요소 여부**	**동의 여부**
4-1	특히 학교 앞 문구점의 경우 소비대상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4-2	학교 앞 판매식품의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이 미흡하다.	
4-3	학교 앞 불량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대부분 국내영세업체이거나 중국에서 수입된 가공품을 소포장하여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4-4	길거리 음식,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식품안전의 사각지대로 비추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주무부처가 단속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최대 사각지대라고 보아야 한다.	
4-5	무허가 불법 식품제조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등은 식품안전의 사각지대이다.	
4-6	무허가 불법 식품제조업체, 소규모 영세업체 등은 식품의 안전성 보다는 이윤을 목적으로 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	
4-7	수확 후 농산물 생산지 집하장부터 가공라인에 들어오기까지의 단계는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안전에 취약한 편이다.	
4-8	식품공급사슬단계를 연결하는 운송, 원료보관 등의 단계가 원료품질저하, 원료변패, 이물질오염 등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식품안전에 취약한 편이다.	
4-9	식품안전 사각지대는 GM 식품, 위협요소는 악덕 식품제조 및 유통업체의 고의적 위반행위이다.	
4-10	식품안전 사각지대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다원화에서도 비롯된다.	
4-11	식약처에서 유통과정을 통제하고 싶어도 공정위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단속 및 감시영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4-12	특히 노인전문병원, 복지원 등 복지시설분야는 사각지대로서 식품위생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감독이 미흡하다.	
5	**식품안전정책의 문제점**	**동의 여부**
5-1	식품안전정책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	
5-1-1	식품안전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반적으로 구비된 편이다.	
5-2	식품안전정책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5-2-1	식품안전정책과 관련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5-2-2	단속기관이 너무 산재해 있어 비효율성을 가중하고 있다.	
5-2-3	단속기관의 다원화 경향은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5-2-4	단속기관의 다원화는 책임행정 수행을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발 빠른 대응도 어렵게 한다.	
5-2-5	여러 정부부처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분산 관리하기 때문에,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5-2-6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정책의 집행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5-2-7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관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는데 포용력이 넓지 않은 편이다.	

5-2-8	창업한 가공업체의 경우 식품 안전에 대한 통합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기준과 각자 해당되는 부분만 교육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한다.	
5-2-9	제조업체의 경우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번 신고하면 더 이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많다.	
5-2-10	식약처의 출범으로 식품안전의 콘트롤 타워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식약처의 기능과 역할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5-2-11	잔류농약, 식품첨가물 등 기준 규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5-2-12	정보전달매체의 발달은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5-2-13	실제 소비자들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언론,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5-2-14	소비자들이 불량식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발생하는 주 요인 중의 하나가 인터넷 및 정보습득 매체 증가 및 다양화이다.	
5-2-15	국민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론에 의한 보도 및 기사를 자제하여야 한다.	
5-2-16	일부 농가나 일부 가공업체 등에서 안전성 기준을 위반하여 처벌하는 것을 모든 업체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언론이 심각한 문제이다.	
5-2-17	허가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5-2-18	식품업계의 영세성, 대기업과 영세업체의 공존으로 인한 정책 수립, 집행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5-2-19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간 경과한 식자재 유통이 난무하고 있다.	
5-2-20	식품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원료의 허용기준치 초과로 인한 원료건전성 문제나 카제인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커피믹스와 같이 업체간 비방광고 등에 기인한 경우들이 다수이다.	
5-2-21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상의 식품거래가 증가하나 안전대책은 미흡하다.	
5-2-22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여전히 고위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미흡한 편이다.	
5-2-23	외식과 단체급식이 급증하고 있다.	
5-2-24	외식의 안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적 대응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5-2-25	식품안전 입장에서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위해성 확인이 중요하다.	
5-2-26	지자체의 경우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가치가 비교적 열세하고 집중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 식품안전정책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6	**식품안전정책의 개선방안**	**동의 여부**
6-1	식품안전정책을 위해서는 조직의 일원화, 업무분위기 등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6-1-1	식품관련 점검 및 단속 기관을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여 식품관련 one-stop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예) 농산물 및 축산물 원산지표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해양수산부), 축산물 등급 등 정육점 표시(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등 식품업체 위생(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관세청) 기능별로 통합이 필요함	
6-1-2	식품안전 관련법과 관련하여 식약처에서 모두 일관 관리하여야 한다.	
6-1-3	식품 관련 유관 부서 및 국과의 단절 및 불필요한 경계심, 조직에 대한 애사심 부족, 경직되고 억압적인 업무 분위기 등은 식품안전정책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즐겁고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6-1-4	단속 및 조사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6-2	식품안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하다.	
6-2-1	식품안전단속에 대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TF팀을 꾸려 계절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 유통, 소비 분야에 따른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6-2-2	정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업주들에게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업소에 맞게 갖추어야 할 부분이 정리된 안내지를 배부함으로써 처음부터 규정에 맞는 식품관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2-3	중국과의 수사공조 등 사법공조 강화 필요하다. 예) 중국 원산지, 제조공장에 대한 수사공조를 통하여 인체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규명, 외교채널 동원 등 중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추진이 필요하다.	
6-3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3-1	식품안전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1년에 1번 이상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여 변경된 기준을 알려주고 안전한 식품을 만들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6-3-2	심각한 여론몰이식 불안감 조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방법 교육 등이 필요하다.	
6-3-3	식품안전 관리 우선 순위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6-3-4	국민들에게 현재의 식품안전 수준 등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	
6-3-5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6-3-6	내분기장애물질, 대사증후군 등과 같은 장기적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6-3-7	식품안전 전담 강사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강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4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과 효율적인 정부의 안전관리체계가 가장 중요하다.	
6-4-1	이물 등 가공과정 중 100%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의 허용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6-4-2	정부에 대한 신뢰성 확보와 식품산업과 국민안전의 안정적 조절측면에 입각하여 현행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6-4-3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과 무관하거나 통제 및 관리감독 부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과 집중 단속화 할 것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절한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한다.	
6-4-4	식품안전과 관련된 법령에 있어, 인체 유해성 관련 부분은 철저하게 강화하도록 개정하되, 현실과 동떨어져서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6-4-5	식품안전 및 안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관리 및 위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	
6-4-6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위생과 안전, 규정 준수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강화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6-4-7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차별화된 적정한 판별법 마련 등이 필요하다.	
6-4-8	식품에 대한 성분검정 대상 및 물량을 확대하여 위해 물질이나 배합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6-4-9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제품의 소비를 포괄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이 필요하다.	
6-4-10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유통업체에서 관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매입(유통업체에서 매출량 만큼 이를 매입량으로 잡는 것)과 같은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	
6-4-11	공공기관를 통한 식품 위생등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6-4-12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6-5	식품안전정책을 바람직한 운용을 위해서는 언론의 통제가 필요하다.	
6-5-1	식품 안전성에 대한 철저하고 신중한 검증 후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6-6	식품안전에 있어 식품제조업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6-6-1	음식점을 포함한 식품취급업소는 조건부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모두 전환해야 한다.	
6-6-2	개고기와 같은 식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력관리 또는 위생적인 곳에서 도살되어 유통될 수 있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6-6-3	도축장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6-6-4	식중독 등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6-6-5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기준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Section B.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평가

다음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O, √, 1, 등으로 [동의여부]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해식품사범의 심각성 유무**	**동의 여부**
1-1	위해식품사범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	
1-1-1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과거에 비해 위해식품사범 감소하였다.	
1-1-2	특히 원산지표시의 경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후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로 정착단계에 있다.	
1-2	위해식품사범 문제는 심각한 편이다.	
1-2-1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불량식품에 대한 모호한 정의, 단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식품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2-2	식품위생사범은 서울 경기 등에 비해 지방의 경우가 더욱 심각하다.	
1-2-3	식품안전사범은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1-2-4	식품산업의 전문적 지식 및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다.	
1-2-5	간단한 신고만으로 사업체를 설립 및 폐업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위해식품사범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1-2-6	고의적 식품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1-2-7	위해식품사범 중 특히 원산지 위반 사범의 경우는 죄의식을 많이 느끼지 못해 더 심각하다.	
1-2-8	위해식품은 단순한 품질기만이 아니라,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범법행위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수반하고 있다.	
1-2-9	위해식품사범은 피해자가 일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1-2-10	다양한 지능범죄수사 업무 중 식품사범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심각성이 높다.	
2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의 적절성 유무**	**동의 여부**
2-1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은 적절한 편이다.	
2-1-1	단속 및 처벌, 재판 형량 등은 현재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1-2	단순 위해사범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2-1-3	현재 상당부분 먹거리 안전이 정화되어 단속도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2-1-4	원산지관리와 식품위생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2-2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은 적절하지 않다.	
2-2-1	법률상 법정되어 있는 형량은 높은 편이나, 실제로 처분 받는 형량은 낮아 위반자가 줄지 않고 있다.	

2-2-2	위해식품사범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문제이나, 이에 비해 처벌수준은 가볍다.	
2-2-3	위해식품사범은 고의로 추가 이윤을 취하려고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2-2-4	양형에 대한 법원 기준은 경미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2-2-5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은 법에서 정한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처분이 매우 약한 편이다.	
2-2-6	공평하지 않은 처벌 사례가 왕왕 있다.	
2-2-7	대부분이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다.	
2-2-8	식품사범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정형은 약하지 않지만 실제 선고되는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본다.	
2-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관리와 감독이란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다.	
2-3-1	위해식품사범의 처벌수준을 무겁게 하고, 관리와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3-2	대책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2-3-3	식품사범은 적극적이고 엄격한 처벌이 해결책이 아니라, 평소 관리와 감독을 통한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2-3-4	효과적인 식품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지도감독과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가장 중요하다.	
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동의 여부**
3-1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편이다.	
3-1-1	기존의 농관원 자체 단속업무수행보다 경찰의 내사 및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때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크다.	
3-2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문제점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3-2-1	행정기관 소속 행정공무원의 잦은 업무변동과 전보 등으로 형사사법절차 관련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	
3-2-2	단속공무원은 수사전문가가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절차나 증거법에 의한 증명력 확보가 어렵다.	
3-2-3	고의 입증상의 문제 때문에, 식품안전 사건의 실행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통상적인 지시 감독임무가 있는 운영주체들에 대해서는 실질적 처벌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3-3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및 수사에 있어 형사정책적 문제점이 있다.	
3-3-1	합동단속을 했을 때의 효율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3-2	4대 사회악에 불량식품이 포함되어, 경찰업무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	

3-3-3	부정불량식품은 대부분 음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3-3-4	위해식품사범 중 원산지 위반 사범의 경우는 대포폰 이용, 조직화, 대형화 추세로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3-3-5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해,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	
3-4	위해식품사범의 재판 및 형량에 문제가 있다.	
3-4-1	위해식품사범은 처벌에 비해 부당이득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계속적으로 위반되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다	
3-4-2	담당검사의 스타일에 따라 비슷한 일반사건일 경우라도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가 차이가 나기도 한다.	
3-4-3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운영하면서 2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있고,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2-3명씩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며, 각 시도에도 수십명씩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 일반경찰, 해양경찰 등도 식품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중복수사 및 실적을 위한 과잉수사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3-4-4	부실수사나 과잉수사로 무죄를 받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3-4-5	실제 재판과정에서 적용되는 2012년 기준 대법원 양형기준조차 적용할 수 없는 것을 범죄로 기소하는 것이 문제이다.	
3-5	위해식품사범의 형사정책적 애로사항은 언론보도에 의한 것이 많은 편이다.	
3-5-1	위해식품사범과 관련된 지나친 언론보도는 식품안전관련 사건의 본질을 벗어나는 경향이 많다.	
3-5-2	위해식품사범과 관련된 지나친 언론보도로 식품업체의 도산 및 관련식품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3-5-3	위해식품사범에 있어 형사정책의 문제점은 지나친 언론보도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3-5-4	식품사범의 인허가 관련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 정도를 넘어서 인체 유해성 및 안전성에 대한 수사 및 공표는 식품 관련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는 민감한 부분이다.	
3-5-5	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비방, 실적 챙기기에 충분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조사결과 발표가 문제이다.	
4	**위해식품사범의 단속, 수사, 재판, 형량 등 형사정책의 개선방안**	**동의 여부**
4-1	식품에 대한 단속, 수사, 재판 등에 있어 식품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단속부터 사법절차가 진행되도록 식약처 뿐 아니라 경찰, 검찰, 지자체 등도 이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4-1-1	검찰에서 형사부 전담업무별로 전문검사를 대검에서 인증하고, 인증된 검사를 지역이동이 있더라도 식품 전담업무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경찰, 지자체에서도 식품 관련 전담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식품 전문가를 수사기관에서 적극 양성함으로써 범행에 상응한 증거수집 및 최종적인 처벌까지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4-1-2	기존 식약처, 검찰, 경찰뿐 아니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안전성 담보가 필요하다.	
4-1-3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부처간 협력의 상설적인 채널을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새로운 범행 수법, 이슈화 현안에 관한 능동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1-4	안전관리정책 및 형량 등의 형사정책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4-1-5	위해식품사범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회를 운영하여 불량식품의 위해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1-6	식약처, 농링수산부, 자치단체 등 전문지식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이 단속, 수사 등을 하고 제조, 유통,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의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에 한하여만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위해식품사범의 단속을 폭넓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4-1-7	각 기관별 담당분야가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단속업무 등 사후관리를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4-1-8	위해식품사범 단속을 위해서는 차량위치추적, 차량소유자 확인 등 경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4-1-9	식약처, 지자체 특사경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4-1-10	식약처 지역본부에서도 본부에 버금가는 수사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	
4-1-11	지역 식품관련 단속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각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식품 관련 단속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1-12	식약처, 지자체 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및 단속관련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4-1-13	지자체 특사경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1-14	지자체 단속 인력 등과 같은 식품안전 관련 인프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4-1-15	현재 지자체에 위해사범 처벌권이 있어 단속과 처벌간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4-1-16	위해식품사범과 관련하여서는 식품학 쪽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의 논의과정이 중요하다.	
4-1-17	효과적인 식품사범 근절을 위해서는 상시 감시체계 및 단속은 주무 부처에서, 고소 및 고발사건은 경찰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체계가 바람직하다.	
4-1-18	식품담당 특사경의 전문성 키우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4-1-19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경찰과 특사경의 병행이 필요하다.	
4-1-20	수사기관보다 식약처의 단속권한이 오히려 범죄억제력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4-1-21	식약처 등은 수사기관과 달리 행정처분 권한으로 영장없이 현장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속하다.	

4-1-22	식품사범의 경우는 전문성을 지난 주무 부처, 즉 식약처에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23	식품사범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기관은 주무 부처로 하고, 식약처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이 경찰청으로 파견근무하는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4-1-24	수사기관보다 식약처의 단속권한이 오히려 범죄억제력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4-1-25	식품사범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법집행과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 간의 괴리감을 극복해야만 한다.	
4-1-26	식품안전범과 관련하여서는 일선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필요하다.	
4-1-27	사기관과 공기관의 합동을 통한 위생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4-2	합리적인 단속계획으로 실효성 있는 시행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4-2-1	위해식품사범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지로 인한 것이므로, 영세업체나 자영업자 등에게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4-2-2	법원과 검찰 처리절차 전부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일부 관심사건에 대해서만 공개하는 실정인데, 모두 공개로 바뀌어야 한다.	
4-2-3	시장기능에 맡기는 위해업소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4-2-4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 환수제의 운영성과를 발표하는 등 제도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4-2-5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4-2-6	내부 고발자에게 면책 및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 독려가 필요하다.	
4-2-7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자들에게도 일반사경과 같이 수사수당 지급, 특진, 근평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4-2-8	단속부터 형량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조사를 통해서 효율성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2-9	개인이나 영세업체보다 대기업이나 대다수가 참여한 식품사범에서의 단속과 처벌이 중요하다.	
4-3	위해식품사범과 관련한 적정한 형량 제정 및 개정과 같은 법 정비, 집행이 필요하다.	
4-3-1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4-3-2	불량식품 제조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한 것에 대한 형량 집행으로 재발 가능성 최소화하여야 한다.	
4-3-3	벌금의 필요적 병과, 범죄수익 환수 등을 적절하게 법률상 선택적으로 부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해식품사범의 수익까지 철저하게 박탈할 필요가 있다.	
4-3-4	위해식품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취하는 경우의 확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한 사회 및 경제적 이윤 수준과 비용 수준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4-3-5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 위해식품사범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기준을 상향 설정하여 위해식품사범은 엄단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야 한다.	
4-3-6	법원의 일관적 처벌을 확인할 수 있는 양형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4-3-7	현재 양형기준에서의 "유해한 식품"과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을 정확히 구분해 주는 과학적 근거제시가 필요하다.	
4-3-8	공평하지 않은 처벌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형기준도 처벌 전 미리 구체적 기준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4-3-9	경미한 범죄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으로 돌리고, 반복되거나 악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4-3-10	식품사범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수준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평한 처벌이 더욱 중요하다.	
4-3-11	원산지 단속은 식당, 정육점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리기구(칼 등)등으로 인한 신변 위협 등을 받는 경우도 있어, 신변보호 장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 강력한 처벌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4-3-12	일반사범과 식품위해사범과의 차별화된 형량 구형이 가능해야 한다.	
4-3-13	위해식품사범의 형량과 벌금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4-3-14	고의적, 지능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4-3-15	지속적인 단속과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유통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4-3-16	고의적 식품안전과 관련되어서는 강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	
4-3-17	과대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를 넣은 식품제도 등으로 유형화하여 집중 단속 또는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4-3-18	식품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이 중요하다.	

연구총서 14-AA-04

식품안전에 대한 형사정책적 방안 연구

발　　행 | 2014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 박상옥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화신문화(주) (02)2277-0624
I S B N | 978-89-7366-309-5　9336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